

韓日關係史學會 학술대회

동아시아 삼국간의 사신외교

주최 한일관계사학회 /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 삼국간의 사신외교

일시 2016년 10월 8일(토) / 오후 1시~6시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일 정	발표내용
13:00-13:10	〈등록〉 사회 : 홍성화 (건국대학교)
13:10-13:40	〈개회사 및 기조강연〉 개회사 : 남상호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기조연설 통신사행 문화교류의 새 양상 - 1763년 계미통신사행을 중심으로 - 발표 : 하우봉 (전북대학교 사학과)
〈제1부〉 사회 : 홍성화 (건국대학교)	
13:45-14:05	〈제1주제〉 한반도 제국과 왜국의 사신외교-왕족·질·화친을 중심으로- 발표 : 나행주(대진대학교) / 토론 : 박재용(충남역사문화연구원)
14:05-14:25	〈제2주제〉 8세기 중엽 일본의 ‘신라정토’ 소동과 多賀城碑-말갈국 발표 : 이재석(한성대학교) / 토론 : 서보경(고려대학교)
14:25-14:45	〈제3주제〉 조선과 중국(명·청)의 사행외교 발표 : 김경록(군사편찬연구소) / 토론 : 민덕기(청주대학교)
14:45-15:00	중간휴식
15:00-15:20	〈제4주제〉 조선전기 통신사행과 對日外交의 특징 발표 : 장순순(가천대학교) / 토론 : 이승민(동국대학교)
15:20-15:40	〈제5주제〉 인조대의 국정운영과 1636년의 통신사 외교 발표 : 이훈(한림대학교) / 토론 : 신동규(동아대학교)
15:40-16:00	〈제6주제〉 강화도 조약과 제1차 수신사 발표 : 현명철(경동고등학교) / 토론 : 양흥숙(부산대학교)
16:00-16:10	좌석정리 및 휴식
〈제2부〉 사회 : 정성일 (광주여자대학교)	
16:10-17:40	발표자&토론자 전원, 질의응답 코멘테이타 : 中村修也(文教大學)

목 차

기조연설 통신사행 문화교류의 새 양상 - 1763년 계미통신사행을 중심으로 ...	07
발표 : 하우봉 (전북대학교 사학과)	
제1발표 한반도 제국과 왜국의 사신외교 - 왕족·질·화친을 중심으로	21
발표 : 나행주 (대진대학교) / 토론 : 박재용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제2발표 8세기 중엽 일본의 ‘신라정토’ 소동과 多賀城碑 - 말갈국	79
발표 : 이재석 (한성대학교) / 토론 : 서보경 (고려대학교)	
제3발표 조선과 중국(명·청)의 사행외교	99
발표 : 김경록 (군사편찬연구소) / 토론 : 민덕기 (청주대학교)	
제4발표 조선전기 통신사행과 對日外交의 특징	139
발표 : 장순순 (가천대학교) / 토론 : 이승민 (동국대학교)	
제5발표 인조대의 국정운영과 1636년의 통신사 외교	171
발표 : 이훈 (한림대학교) / 토론 : 신동규 (동아대학교)	
제6발표 강화도 조약과 제1차 수신사	215
발표 : 현명철 (경동고등학교) / 토론 : 양홍숙 (부산대학교)	

기조연설

통신사행 문화교류의 새 양상
- 1763년 계미통신사행을 중심으로 -

발표 : 하우봉 (전북대학교 사학과)

1. 조선후기 통신사와 문화교류

1) 조선후기의 통신사

조선후기의 통신사는 일본과의 선린관계를 상징하는 외교사절로서 초기 3회의 回答兼 刷還使를 포함하면 모두 12차례 행해졌다. 통신사행은 47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사절단으로 서울을 출발해서 돌아오기까지 대개 10개월 정도 걸리는 거대한 외교행사였다.

통신사는 본래 정치적 동기로 파송한 외교사절이었지만 동시에 경제적, 문화적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의 막부가 주로 국내정치적 동기를 중시했다고 한다면, 조선 조정은 문화적 의미를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그런 만큼 통신사행에는 製述官·書記·良醫·畫員·寫字官·樂隊 등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다수 편제되었다. 특히 1655년 을미통신사행부터 문화교류를 임무로 하였던 서기의 인원을 늘렸고, 이어 1682년에는 제술관의 직급을 올리고 양의를 추가하는 변화가 나타났다.¹⁾ 1682년 임술통신사행부터 양국 문사들 사이에 필담창화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측 사료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470여 명에 달하는 통신사행이 통과하는 연로의 객관에서는 시문창수를 비롯하여 학술·의학·예술 등 다양한 내용의 문화교류 행사가 이루어졌다. 에도시대 일본에서는 외래문화를 접할 기회가 제한되었던 만큼 통신사의 訪日에 대한 기대는 유학자·문인·의사·화가를 비롯해 민중에 이르기까지 매우 컸다. 통신사행원과 이들 일본인들과의 문화교류는 에도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이루어졌다. 막부의 관리나 儒官뿐 아니라 각 분야와 각 레벨에서의 다양한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통신사 일행이 入國하면 各 藩의 유학자들과 문화인들이 몰려들어 사행원들과 대화를 나누기 원하였다. 통신사행 일행이 통과하는 지역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藩에서도 유관과 문인을 파견하여 문화를 흡수하도록 장려하였다.

1) 장순순, 「조선후기 通信使行의 製述官에 대한 일고찰」, 『전북사학』 13, 1990.

2) 사문사의 필담창화

漢詩는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만국 공통의 문자와 표현방식이었다. 한시 창수는 외교현장에서 의사소통의 주요 매개체였다. 이러한 방식은 중국문화권의 지역에서는 고대부터 근대이전 시기까지 일반화되었다. 또 시는 민족과 사상을 뛰어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이민족의 사신 간에서도 한시 창수를 통해 상호교류와 이해의 지평을 넓혀왔다. 한시 창수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는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교류의 연대를 형성케 하였다. 따라서 외교현안을 부드럽게 전달하고 해결하는 방책으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한편 한시의 수준은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국가의 체면에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였다. 외교의 장에서는 경쟁의식으로 인해 긴장된 분위기도 연출되었다. 북경의 玉河館에는 조선, 일본, 유구, 안남, 태국, 달단 등 각국에서 온 사절들 사이에 한시 창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신을 선발할 때 한시에 뛰어난 문신을 선발하였고, 때로는 사문사와 같이 시문창수를 전담하는 인원이 배치되기도 하였다.

四文士란 제술관과 서기 3인을 통칭해 부르는 용어이다. 이들 4문사는 신분적으로 거의 대부분 서얼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행 내의 위상을 보면 매우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신사 수행원은 신분과 직위에 따라 三使, 上上官, 上官, 中官, 次官, 下官으로 구분된다.²⁾ 이 가운데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원역들은 대부분 ‘上官’에 속하였다. 상관의 위로는 삼사 3인과 상상관에 3인의 당상역관이 있을 뿐이다.³⁾ 또 제술관과 서기의 임명은 1682년부터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다. 그만큼 문화교류를 중시하였음을 보여준다. 통신사행이 궁궐을 떠나며 국왕을 알현하는 辭陞式에도 제술관은 삼사와 함께 참여하였다.

유학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한 筆談과 漢詩의 唱和로 이루어지는 필담창화는 통신사행의 문화교류 활동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하다. 필담창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호응도 대단하여 4문사들은 각자 천 수 이상의 시를 지어야 했다.

2) 『增正交隣志』 권5 「通信使行」.

3) 그런데 제술관과 양의의 경우 일본에서는 상상관의 기준에 따라 접대하였으므로 규정보다 더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원역들이 자제군관과 동급이거나 그보다 상위의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신분에 관계없이 그들의 역할을 매우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문사들은 통신사행원과의 필담창화를 자신의 文才를 과시하는 기회로 삼았다. 일본의 문사들은 三使를 비롯한 통신사행원들에게 서문과 발문을 요청하였고, 시문창화를 통해 이름을 날리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통신사행원과 창화하면 그 내용을 대부분 필담창화집으로 간행하였다. 그래서 에도로 가는 도중에 필담창화가 이루어지면 일본 문사들이 귀로에 창화집을 완성해 사행원들에게 주어 깜짝 놀라는 일도 있었다.

2. 계미통신사행의 문화교류

1) 계미통신사행과 사문사

1763년(영조 39)의 계미통신사행은 조선후기 11번째의 사절로서 에도(江戸)까지 간 마지막 사행이었다.⁴⁾ 계미통신사행은 외교의례가 가장 정례화된 형태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문화교류 또한 가장 활발하였다. 인원은 사행록 등 기록에 따라 475명에서 486명까지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480명 전후로 볼 수 있겠다.

계미통신사행에서 사문사는 제술관에 南玉, 1방 서기 成大中, 2방 서기 元重舉, 3방 서기 金仁謙으로 구성되었다. 사행 출발 전 삼사와 제술관, 세 서기 등은 7월 24일 영조를 인견하였다. 영조는 사문사에게 試題를 주어 시험해 본 후 하교하기를 “너희들은 오로지 문자로써 나라에 욕되지 않도록 하고 돌아오라.”고 하였다.⁵⁾ 조선에서는 통신사행을 문화적 교화의 일환이라고 하는 명분론에 입각해 문화교류를 아주 중시하였지만 임금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하다.⁶⁾ 사문사를 비롯한 통신사행원들은 대마도에서 에도까지 도합 22개 주를 거치며 각지에서 필담창화를 하였다.

4) 계미통신사행은 이외에도 당초 三使로 내정되었던 徐命膺 일행이 교체되었고, 사행도중 오사카에서 都訓導 崔天淙이 대마도 通事에게 살해되는 등 전례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노정을 보면, 사행원들은 1763년 8월 3일 한양을 출발해 1764년 7월 8일 귀환해 복명하였다. 도합 11개월이 소요된 긴 여정이었고, 일본에서의 체류기간이 8개월반이었다.

5) 『乘槎錄』 권1 계미년 7월 24일.

6) 영조는 사행원들이 귀국한 후 복명할 때도 사문사들에게 필담창화한 바를 물어보고 치하하였다.(『海槎日記』, 「筵話」)

2) 일본사행록과 필담창화집

가) 일본사행록의 양상

통신사행 연구에서 일본을 직접 견문한 통신사행원의 사행록이 1차 사료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일본사행록은 특정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쓰는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고 사적으로 쓴 기행록의 일종이다. 따라서 통신사행원 중 누구라도 저술할 수 있었으므로 저자의 직책이 다양하였다. 시기적 경향성을 보면 초기에는 三使의 사행록이 중심이었는데 후기로 올수록 저자가 다양해진다. 예컨대 제술관이 지은 사행록은 1719년 기해통신사행부터, 서기의 사행록은 1763년 계미통신사행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통신사의 임무 중 문화교류의 역할이 커지는 사실과 비례한다고 여겨진다. 또 후기로 올수록 사행록의 숫자도 많아지는데, 1763년 계미통신사행의 경우 14종이나 된다.

계미통신사행에서 저술된 사행록을 통해 몇 가지 변화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저술주체의 다변화이다. 삼사와 역관, 제술관, 서기뿐만 아니라 군관, 기선장도 사행록을 저술하였다. 특히 제술관과 서기 등 사문사가 모두 사행록을 저술하였는바, 필담창화의 실상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둘째, 장르의 다양화이다. 체재면에서도 한글가사체로 된 김인겸의 『일동장유가』가 처음으로 나왔다. 홍대용의 한글가사체 연행록인 『을병연행록』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점도 주목된다. 또 원중거의 『和國志』를 비롯해 조엄의 『海槎日記』, 남옥의 『日觀記』 등 뛰어난 작품들이 나왔다.

셋째, 한 개인이 다수의 사행록을 저술하였다는 점이다. 남옥과 원중거, 김인겸이 그러한 사례이다. 원중거는 使行日記, 聞見錄, 唱酬錄 부분을 각기 『乘槎錄』, 『和國志』, 『日東藻雅』라는 독립된 저서로 저술하였다. 이 점은 비슷한 시기에 홍대용이 연행을 갔다온 후 3부작을 저술한 것과 유사해 아주 흥미롭다.⁷⁾ 이러한 양상은 이 시기 의식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술방식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새로운 의식을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사행록 저술동기의 변화로

7) 이에 관해서는 정훈식, 「원중거와 홍대용의 사행록을 통해 본 18세기 사행록의 향방」, 『조선통신사연구』 7, 2008 참조.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행록의 수록내용으로 볼 때 시문창수보다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필담과 문견록이 중시되었다. 문견록을 저술함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체험보다는 일본서적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원중거의 『화국지』를 들 수 있다. 그는 『화국지』를 서술하면서 사행시의 견문에만 바탕을 두지 않고 많은 한일 양국의 서적을 참고하면서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일본의 지리와 역사,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부문에 걸쳐 백과전서적인 체재를 갖춘 ‘日本國志’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하다.

나) 필담창화집의 양상

계미통신사행 시 필담창화집은 刊本 23종과 寫本 20종 등 도합 43종이 간행되었다.⁸⁾ 이것은 1711년 신묘통신사행 시 24종, 1719년 기해통신사행 시 25종, 1748년 무진통신사행 시의 40종에 비하면 아주 늘어난 것이다. 18세기 초반에 비하면 훨씬 증가했으며, 숫자만으로 보면 1748년 사행과 비슷하지만 다양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남옥의 『日觀記』 ‘唱酬諸人’을 보면 계미사행 때 필담창화에 참여한 일본인 문사가 500여 명으로 나온다. 이것은 1719년 기해통신사행 시 필담창화에 참여한 일본인 문사가 100명 정도이었음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한 숫자이다. 그만큼 문화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필담창화집은 한정된 짧은 시간에 통신사행원을 만나 시문을 창수하고 필담을 나눈 것을 기록한 것이다. 특별히 주제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보다 나눈 대화와 시문을 그대로 기술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 점에서 일본사행록과 차이가 난다. 필담창화집은 저자가 사행원을 직접 만나 교류했다는 증거물이다. 일본문사로서는 통신사행원을 직접 만나 교류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장계에서 위치를 일정하게 인정받는 것이 되었다. 개인이 편찬한 필담창화집은 철저하게 자신과 사행원과의 창화시문과 필담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담창화집은 대체로 筆談, 詩, 書信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요소를 다 갖춘

8) 이에 관해서는 구지현, 「18세기 필담창화집의 양상과 교류 담당층의 변화」, 『통신사 필담창화집의 세계』, 보고사, 2011 참조.

경우도 있는데, 1가지 혹은 2가지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많은 것은 필담과 시로 구성된 것이다. 계미통신사행 시에는 필담창화집의 작자가 藩 단위에서 제작되거나 개인화하는 등 다양화하는 경향이 있다. 또 장르상으로도 시문과 필담이 분리되는 등 세분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필담만으로 구성된 것이 증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신사행원들의 일본 사행록에서도 시문창수보다 필담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본에서의 필담창화집에도 마찬가지로 창화와 필담이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3. 문화교류의 새로운 양상

1) 전수에서 논쟁으로

계미통신사행에서 문화교류활동은 역대 어느 사행 때보다 활발하였다. 그런데 교류양상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나고 있었다. 활발한 문화교류의 이면에는 古文辭學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⁹⁾

에도시대 일본의 사상계와 문학계의 상황을 살펴보면, 17세기까지는 일본의 유학과 한문학, 의학 등이 조선에 비해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교류의 양상 또한 조선의 우위 속에 일본에게 문물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형태를 띠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본인들도 한 수 배우자는 태도였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는 사례는 드물었다.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서 일본 유학계에서는 古學이 발전하고 한문학도 크게 발전하였다. 100년간에 걸친 德川幕府의 文治主義정책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유학계에서는 주자학이 17세기 초반 막부의 교학으로 채택되었으나 이후 林家에게 독점되면서 관학화하였고 별다른 사상적 발전이 없었다. 그런데 17세기 중반 이후 伊藤仁齋, 荻生徂徠 등에 의해 古學이 제창되면서 사상계의 큰 호응을 받았다. 18세기 중반에는 일세를 풍미한 고문사학에 대한 비판으로서 反徂徠學派도 나오고, 이어 절충학과까지 등장하였다. 1790년 寛政異學禁止令이 내려지기 전까지 陽明學, 蘭學, 國學 등도 발전되었다.

9) 이에 관해서는 夫馬進, 『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名古屋大學出版會, 2015) 제2부 9장, 10장, 11장 참조.

18세기 중반 무렵부터 소라이학과 제자들이 전국의 藩校에서 자리 잡으면서 크게 번성하였다. 이에 따라 주자학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의 문화적 우위성이 사라지고 조선의 문화에 대한 존경심도 쇠퇴하였다. 계미통신사행 때는 오규 소라이의 제자들이 각지에서 교류에 참여해 자신들의 새로운 사상에 자신감을 가지고 조선문사들에게 도전을 시도하였다.

한편 이 시기는 일본의 한문학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교토와 오사카에는 幽蘭社, 混沌詩社와 같은 시동호인 그룹이 생겨나 수준 높은 시를 창작했으며, 통신사행원들과 대등하게 창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소라이의 제자들인 고문사학파를 중심으로 조선문사들과 詩論에 관해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고문사학이 토론의 주제로 부상하였고, 고학과 주자학의 논쟁이 벌어지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그들은 고문사학의 입장에서 주자학을 고수하는 조선문사들의 태도를 고무하다고 비판하면서 내심 우월성을 과시하기도 하였다.¹⁰⁾ 당시 소라이학파는 전국적으로 세력이 펼쳐있었는데, 특히 長門州는 소라이의 7대제자로 꼽히는 山縣周南이 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활발한 교류의 이면에서는 격렬한 경쟁의식이 맞부딪쳤다. 그러한 논쟁의 결과를 보여주는 필담창화집이 이 지역에서 많이 저술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고학과 한문학의 발전에 따라 17세기까지의 일방적 수용 양상에서 변화가 일어나 계미통신사행에서는 대등한 교류 내지 논쟁으로 바뀌는 현상이 전개되었다.

18세기 들어 일본에서는 시문창화를 ‘文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어 갔다. 조선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있었다. 기본적으로 통신사행을 파견하는 목적이 문화적 계도를 통해 일본의 문명화를 이끌고 그것을 통해 침략성을 순화시킨다는 명분을 지니고 있었다. 계미통신사행에서도 조엄, 김인겸 등은 이러한 생각을 저술에서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고문사학을 확립한 오규 소라이는 강한 자부심과 함께 경쟁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18세기 중반 이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계미통신사행에서 고문사학파의 문도들이 조선에 대한 강한 경쟁의식을 표현해 갈등양상을 보여주었다.¹¹⁾

10) 전반적으로 유학을 주제로 한 필담에서 조선사행원들이 주자학일존주의에 빠져 일본의 고학과 등을 이단이라고 경직된 태도로 비판하는 반면, 일본은 다양한 사상적 경향 속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인 입장이었다. 조선문사들은 주자학 이외의 고학이나 절충학과 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런 점에서 일본문사들이 조선문사들을 우습게 보는 여지를 제공하였다.

2) 시문창수에서 필담으로

유학과 한문학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시문창화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18세기 중반 이후 일본에서 한문학의 발전양상을 보면, 詩社가 결성되고, 고문사학과에서는 독자적인 詩論을 제기하기까지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준이 떨어지는 통신사행원의 和韻詩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것이다. 이 시기에 오면 필담창화집에서도 조선문사의 창수시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¹²⁾

사실 당시 사문사가 접했던 일본측 문사 500명은 일본을 대표할 만한 문인과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통신사행원과의 교류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시문을 준비하였고, 필담시 질문사항도 예정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의 사문사는 아무런 대비 없이 그들의 시에 화답해야했고,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바둑으로 비유하자면 多面棋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각자 시문만 천 수 이상을 지었다고 하니 그들의 육체적 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짐작이 간다. 화운시도 대부분 즉석에서 만들어야 했던 만큼 수준높은 작품이 나오기 힘들었다. 순발력으로 버티나갔겠지만, 상투적인 표현이나 詩想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퇴고할 여유도 없었다. 이러한 허점에 대해 필담창화집을 저술한 일본문사들이나 주변의 비평가들이 비판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원증거를 비롯해 통신사행원들도 알고 있었다. 사문사들 사이에서도 速作, 多作으로 인한 시문의 질적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조선사행원들에게 창수는 단지 의무일 뿐으로 급하게 만든 시에 대해 부끄러워하였다. 남옥의 『日觀唱酬』를 제외하고는 일본에서의 창수시를 따로 기록한 사행록은 없었고, 더구나 일본문사의 시를 채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사행원들은 후일 자신의 문집을 편찬할 때 일본에서의 창수시를 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그 시의 수준에 대해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졸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원증거는 교류에 있어서 의례화되고 형식화된 시문창수보다 필담을 중시하였

11) 이효원, 「荻生徂徠와 통신사 - 徂徠 조선관의 형성과 계승에 주목하여」, 『고전문학연구』 43, 2013.

12) 그런데 일본문사들은 조선시를 비판하면서도 사행원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매우 노력하였다. 처음 창수를 원할 때는 ‘大國’ 운운하면서 매우 공손한 태도로 접근한다. 조선문사의 평가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비판하는 뒤틀린 의식과 자세를 보인다.

다.¹³⁾ 그는 돌아오는 뱃길에서 사행을 회고하면서 우리측 인사들이 필담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것을 비판하였고, 시문창수를 통해 漢詩의 교양을 과시하는 것보다 필담을 통해 양국 간의 실정을 알고 진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주장하였다.¹⁴⁾ 이것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꼈음을 의미한다. 그는 일본문사와 대화하기를 즐겨하였고 그들의 학문과 문화가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였다.¹⁵⁾

4. 계미사행 문화교류의 특징과 의미

1) 문화교류의 특징

첫째, 계미통신사행에서의 문화교류는 역대 가장 활발하였으며 절정에 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주자학과, 고학과, 고문사학과, 반조래학과, 절충학과, 양명학과, 난학과, 국학과 등 다양한 학파가 풍미하였다. 따라서 통신사행원들도 다양한 학파의 인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사상적인 면에서 고학과와 본격적으로 교류하였는데, 1748년 무진통신사행 때는 伊藤仁齋가 토론대상이었다면, 1763년 계미통신사행에서는 荻生徂徠의 고문사학이 주된 쟁점이 되었다. 그러한 교류의 결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사행록과 필담창화집이 저술되었다. 14종에 달하는 일본사행록은 서술주체 면에서, 정사, 제술관, 서기, 역관, 군관, 선장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고, 형태와 내용면에서도 이전 사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성취하였다. 일본에서도 역대

13) 원중거는 부산을 출발할 당시 동행한 서기 성대중과 김인겸에게 이번 사행에서 일본인들을 程朱學으로 교도할 결심이라고 하며 詩文보다도 經學을 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성대중과 김인겸이 그 말은 바르고 큰 뜻이지만 우리의 역할이 唱酬이지 講學이 아니라고 하자, 원중거는 程朱를 배척하는 무리와는 창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乘槎錄』 권2, 갑신년 3월 10일)

14) 『乘槎錄』 권4, 갑신년 6월 14일.

15) 그래서 일본 측에 正學을 보급하기 위해서 『小學』, 『聖學十圖』, 『擊蒙要訣』, 『喪禮備要』, 『童蒙先習』, 『退溪集』, 『疑禮問解』 등 조선의 성리학서와 예학서 등을 전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乘槎錄』 권4, 갑신년 6월 14일).

가장 많은 43종의 필담창화집이 저술되었다. 창화집의 작자를 보더라도 사상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었고, 형태와 내용면에서도 세분화되고 다양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통신사행원들은 일본문사들과의 직접적 만남과 교류를 통해 일본인관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은 일본문사들이 보여준 인정에 공감하면서 인간으로서의 동질성을 자각하였다. 이 점에는 원중거는 물론 남옥, 성대중, 김인겸 모두 마찬가지였다. 단지 日本夷狄觀을 청산했느냐 하는 문제는 개인차가 있다고 여겨진다. 조엄·남옥·김인겸이 보수적인 반면, 성대중·원중거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원중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그는 충실한 주자학자로서 華夷觀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행시 일본인을 직접 접하고 난 후 그것이 지니는 자기폐쇄성과 비현실성을 자각하면서 日本夷狄觀을 부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해 남옥과 김인겸은 일본에 대해 ‘蠻’으로 표기해 화이관적인 인식을 표출하였다.

셋째, 일본사회와 문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인식하는 태도가 정착되어갔다. 일본에 대한 지적인 관심과 탐색이 본격화하였다. 그러한 차원에서 의례적인 시문창수보다 실질적인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필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넷째, 일본이해의 심화이다, 일본에 대한 객관화를 통해 의미있는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和國志』 같은 종합적인 ‘日本國志’가 저술되었다. 『화국지』는 조선후기 통신사행원의 일본인식의 최고봉으로서 150여 년간에 걸친 일본이해의 축적 결과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¹⁶⁾ 원중거는 귀국 후 『화국지』를 저술할 때 조선서적과 비교검토하고 이덕무 등 학자들과 토론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화국지』에서는 종래의 사행일기가 지니는 ‘주관성’과 국내에서 서적만을 참고해 저술된 기록들의 ‘간접성’이란 한계성이 극복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¹⁷⁾

16) 이와 관련해 박희병은 원중거의 『화국지』와 이덕무의 『蜻蛉國志』를 조선에서의 ‘일본학 성립’이라고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의 일본학 성립 - 원중거와 이덕무』, 『한국문화』 61, 2013)

17) 원중거의 사행록인 ‘和國志’라는 명칭도 주목된다. 이덕무의 『蜻蛉國志』란 서명도 가치중립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본을 ‘倭’가 아니라 ‘和’로 부르면서 ‘和國志’로 서명을 정한 것은 조선시대 유일한 사례이다. 원중거가 주자성리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사행 후에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객관적 인식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섯째, 통신사행과 실학파의 연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계미사행에 이르러 통신사행과 실학파가 비로소 접목되었다는 점도 주목되는 사실이다. 사실 통신사행과 일본 고학파와의 접촉은 1711년 신묘통신사행부터 있어왔다. 오규 소라이와 그 문도들이 통신사행원과의 필담창화에 참여한 사실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1748년의 무진통신사행과 1763년의 계미통신사행 때는 고문사학파들이 교류에 적극 참여하였다. 에도에서는 여전히 太學頭인 林家가 주도하였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들이 교류에 주역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의 실학파와 통신사행의 연결고리가 생긴 것은 계미통신사행이라고 판단된다. 다산 정약용이 일본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참고한 太宰春臺의 『論語古訓外傳』도 이때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대중과 원중거가 가져온 일본 정보는 홍대용·박지원·이덕무·박제가·유득공·이서구 등 북학과 실학자들의 일본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 하나의 일본국지라고 할 수 있는 이덕무의 『蜻蛉國志』는 원중거의 『和國志』를 저본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18세기말 19세기 전반기 실학자들의 일본인식을 보면 원중거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정약용의 「日本論」, 「技藝論」, 「示二兒」 등의 글에 나와 있는 일본문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원중거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많다. 또 김정희의 일본신문과 문화전반에 관한 평가를 보면 원중거가 말한 와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원중거가 교류했던 이가환·박제가와 아주 가깝게 지냈으며, 김정희는 당색과 학맥으로 볼 때 연암일파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인사이다. 원중거의 일본문화관과 일본정세에 대한 전망은 18세기말 내지 19세기 초엽에 있어서 조선지식인의 일본관의 한 줄기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2) 의미와 과제

계미통신사행시 양국 지식인 사이의 교류에서 대립과 경쟁의식으로 격렬한 논쟁만 벌인 것은 아니었다. 실은 인간적인 만남과 우호적인 교류가 훨씬 많았다. 특히 사문사와 오사카의 木弘恭 일파와의 교류는 상호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의 고담준론이었으며, 同文의식을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그 교류의 분위기와 내용은 성대중이 가져온 「蕪葭雅集圖」에 잘 표현되어 있다. 만일 18세기 후반 정조대에 통신사행이 지속되었다면 훨씬 더 수준 높은 교류와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점에서

언기와 파행을 거듭하다 1811년 대마도역지통신을 마지막으로 통신사행이 중단된 사실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마지막으로 통신사와 赴京使를 연결해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미 그러한 시각에서 문제제기를 한 연구가 적지 않다. 그들 가운데는 ‘동아시아학예공화국’¹⁸⁾ 혹은 18세기 유럽에서의 사례와 유사한 형태의 ‘문예공화국’¹⁹⁾이 형성되었다고 하면서 동아시아문화공동체의 선행모델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통신사연구의 방향에서도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보다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통신사행에 대한 시각이 한일 양국의 양자간 구도 속에서만 파악하였고 그것도 민족주의의 과잉의식 하에 대립구도적인 시각에서 보아온 요소가 적지 않다. 시야를 넓혀 동아시아적인 구조 속에서 파악하려는 시도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事大와 交隣도 분절된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묶음으로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근세에는 조선·중국·일본 모두 海禁體制 하에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었으며 그 이전의 시기보다 폐쇄적이었다. 정부 간의 공식적인 사절단의 왕래를 제외하고는 민간의 교류가 철저히 금지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조선의 통신사행과 부경사행은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거의 ‘유일한’ 정보통로이자 문화교류의 파이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동북아시아 공동체와 동북아 삼국의 문화교류와 관련해 베세토(Beseto; 베이징-서울-도쿄)란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조선시대 통신사행과 부경사행이야말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면서 중국의 베이징과 일본의 도쿄를 연결하는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이런 점에서 통신사와 부경사를 매개로 한 삼국의 교류를 통해 조선·중국·일본 등 각국의 문화 학술의 위상을 정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통신사와 부경사가 획득한 외국의 학술정보가 서울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상호 교차하였는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8) 高橋博己, 『東アジアの文藝共和國』, 新典社, 2009.

19) 정민,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 문학동네, 2014.

제1발표

한반도 제국과 왜국의 사신외교 - 왕족 · 질 · 화친을 중심으로 -

발표 : 나행주 (대진대학교) / 토론 : 박재용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 서언
2. 백제 · 신라의 대왜 사신외교
3. 질 · 왕족 파견과 혼인을 통한 화친관계
4. 결어

1. 서언

외교의 실패는 전쟁!!

외교는 국가 상호간의 이해절충의 교섭과정이며, 그 외교의 성패를 가르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외국에 파견되어 상대국과 교섭하는 실무 담당자가 바로 사신(사자)이다.

고대 동아시아제국의 국제관계 특히 고대 한일관계사에 있어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국가·왕권 간의 정치적 교류·교통(즉 외교교섭)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즉 가장 일반적인 외교형식으로서의 사신파견을 통한 사행외교(①)가 있고, 특수한 형태로서 ‘질’(②)이나 왕족(③)의 장기간에 걸친 파견을 통한 특별외교(소위 특사외교), 그리고 혼인(④)을 매개로 한 화친외교 등이 존재한다. 백제와 왜국 간에는 ①, ②, ③, ④의 사례가 전시대에 걸쳐 확인되며, 신라와 왜국 간에는 ①, ②의 사례, 특히 ①의 형태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된다(후술).

중래, 한반도제국과 왜국(일본) 간의 이러한 외교 형태상의 차이에 주목하여 특히 신라와 구별되는 백제의 대왜외교의 특징을 왕족외교<김현구 2009, 연민수 1998·2002 등>, 질 체제<나행주 2006>, 혼인관계 즉 화친<김기섭 2005, 홍성화 2011>에 주목해 왔다.¹⁾

본론에서는 신라와 백제의 대왜외교의 성패는 과연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하는 문제관심에서 한반도제국의 대왜외교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백제와 신라의 대왜외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시기적으로는 <<일본서기>>의 시대인 천무·지통기까지로 한정하고, 그 대상은 백제와 신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를 행하며, 외교형태는 ①, ②, ③, ④의 사례를 통해 추구해 보기로 한다.

1) 왕족 및 질에 관한 종합적인 논고로 김영심 2008, 김병곤 2012 등이 있으며, 질로 파견된 인물에 관한 개별연구로는 곤지<이재석 2001, 정재운 2008>와 김다수<이재석, 2010>에 관한 연구가 있다. 신라의 질 미사흔에 관해서는 채미하 2012 논문이 최근 제출되어 있다.

2. 백제·신라의 대외 사신외교

1) 외교에 있어 사신이란?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 사신·사절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선, 이와 관련해서 흠명조(540~570) 성립 이후 실로 오랜만에 來倭한 신라사의 발언이 주목된다.<흠명기 21-9조 및 동 22년조의 기사 참조>

대가야의 멸망을 눈앞에 둔 560년 9월, 신라가 왜국의 欽明조정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 이 신라사는 532년의 금관가야 병합 이후 신라가 왜국에 파견한 사실상 최초의 사절이라 할 수 있다.²⁾ 그런데 560년에 래왜한 나말(11위) 신분의 신라사신은 그 지위·신분이 결코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국 측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빈대·빈례)를 받았는데, 귀국 길에 앞서 그 신라사는 기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

“조부를 바치는 사자는 나라에서 귀중하게 여기지만 사람들은 뒤에서 경멸합니다. 사자에게 백성의 운명이 달려있는데도 뱉아 쓰는 것은 비천하고 낮은 사람이어서 왕정의 폐해가 이로 말미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좋은 집안의 자제를 뱉아 사자로 삼으시고, 비천한 사람을 사자로 삼지 마십시오.” (흠명기 21년 9월조)

백성의 운명이 달린 국가의 중차대한 임무인 외교를 담당하는 사자의 중요성과 함께 사자의 인선에 있어서는 특히 고귀한 신분의 인물을 선발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이 신라사의 발언은 신라사 자신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왜국 측의 의향이 반영된 말하자면 신라에 전하는 왜국의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중국과 주변국의 외교에 있어서도 확인된다. 일찍이 漢代의 흉노는 한과 빈빈하게 외교교섭을 가졌었는데, 흉노의 單于是 한과의 외교사절 파견에 있어서 “非得漢貴人使, 吾不與誠語(한의 사자가 귀인이 아니라면 나는 그와 성심으로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자신도 한에 귀인을 사절로 파견했다고 전한다.

2) 일본서기 흠명기 원년조에 사국사(고·백·신·임)의 동시조공 기사가 있으나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사카모토, 1985 참조> 즉, 한과 흉노의 외교 사례에 있어서도 모름지기 국가를 대신하는 사신은 고귀한 존재를 뽑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사신의 파견주체 즉 국왕의 몸을 대신하는 존재가 바로 사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만큼 국가 간의 외교현장에서는 종종 파견되는 사자·사신의 신분·지위가 중대한 외교문제로 대두되는데, 이 또한 말할 나위도 없이 선발된 사자의 지위와 신분은 곧 파견국의 상대국에 대한 국제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 정도(즉 사자의 경중) 여하에 따라 상대국에 신뢰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애써 찾아온 사자에 대한 대우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리고 때로는 그 결과가 국가 간의 극한 대립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선 이와 관련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1) 계제기 23년 3월 시월조

파견된 사절의 관위가 너무 미천해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한 사례인데, 임나왕이 개최한 소위 안라고당회의에서 백제와 신라가 파견한 백제사와 신라사의 신분이 낮아 결국 고당에 오르지 못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

사례2) 흠명기 22년 1월조 및 동 22년 시세조

왜국에 파견된 신라사가 이전과 다른 대우 즉 향응의 횟수가 적음에 불만을 갖고 사자가 귀환한 사례이다. 후자는 왜국에서 신라사가 백제사와의 쟁장(서위 다툼)으로 귀국한 사례이다.

561년, 전년에 이어 신라가 왜국에 사신을 파견한다. 그런데 왜국이 이전에 파견된 나말(제11위) 신분의 신라사를 후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나말보다 그 지위가 더 높은 급별간(급찬, 제9위) 신분의 사자가 파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왜국 측의 대응(신라사의 향응)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신라사는 그 대우에 불만을 품고 분해하며 그대로 귀환하고 있다.

신라가 전사인 나말보다 상급의 관위인 급찬을 사신으로 파견한 것은 물론 나름대로 왜국의 의향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왜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급찬의 관위를

지닌 사절은 충분한 빈대를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신라가 파견한 사신의 신분·지위(관위)를 둘러싼 신라와 왜국 간의 상호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해에 파견된 또 다른 신라사(관위는 大舍)는 왜국 측이 사절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백제사보다 자신을 뒤에 위치시켰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토로하고 귀국하고 있다. 이 사례도 역시 왜국 측의 외국사자(신라사신)에 대한 사자의 지위·신분을 고려한 처우의 일례이자 동시에 외교사절 사이에 발생한 국가 간의 爭長·爭禮의 일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신라사의 행동은 단지 신라사의 자존의식에 기초한 쟁장사건에 그치지 않고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신라와 왜국 간의 긴장관계로 이어져 신라가 왜국(일본)의 공격에 대비하여 안라지역에 성을 쌓는 등의 방비태세를 갖추기에 이른다.<흙명기22년시세조>

사례3) 지통기 3년 4월조

지통천황 3년(689), 신라는 급찬(9위) 김도나(金道那)를 천무천황의 조상사로서 일본에 파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절은 전년에 있었던 일본의 견신라사(고상사)에 대한 신라 측의 대우문제와 함께 외교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일본 측이 문제로 삼은 것은 이전 천지천황의 경우는 신라가 조상사로서 일길찬(제7위) 김살유를 파견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관위가 낮은 급찬(제9위)의 인물을 천무천황의 조상사로 파견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측의 고상사에 대한 신라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전년에 천무천황의 상을 알리기 위해 파견한 고상사(田中朝臣法麻呂)에 대해 신라 측에서는 蘇判(제3위)의 인물이 대응을 했는데, 이에 대해 왜국 측은 이전 효덕천황의 고상사 파견의 경우 신라 측에서 翳瀧(제2위)인 김춘추가 대응했던 점을 들어 전례를 무시한 조치로 문제시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 사신이 지닌 관위(위계)의 차이는 외교문제로 비화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4) 속일본기 천평보자 4년(760) 9월조 및 동 7년(763) 2월조

일본과 신라 간에는 종종 외교사절이 지닌 신분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신라 조공사가 경사(輕使)라는 이유로 왜국(일본)이 방환한 사례가 확인된다.
(속일본기 천평보자 4-9조[760년 9월])

『続日本紀』卷廿三天平宝字四年(七六〇)九月癸卯《戊子朔十六》

九月癸卯。新羅國遣級浪金貞卷朝貢。使陸奥按察使從四位下藤原惠美朝臣朝獵等問其來朝之由。貞卷言曰。不脩職貢。久積年月。是以。本國王令齋御調貢進。又無知聖朝風俗言語者。仍進學語二人。問曰。凡是執玉帛行朝聘。本以副忠信通禮義也。新羅既無言信。又闕禮義。弃本行末。我國所賤。又王子泰廉入朝之日。申云。每事遵古迹。將供奉。其後遣小野田守時。彼國闕禮。故田守不行使事而還歸。王子尚猶無信。況復輕使。豈足爲據。貞卷曰。田守來日。貞卷出爲外官。亦復賤人不知細旨。於是。告貞卷曰。使人輕微不足賓待。宜從此却迴。報汝本國。以專對之人。忠信之禮。仍舊之調。明驗之言。四者備具。乃宜來朝。

천평보자 4년(760) 9월, 급찬 김정권의 來日 시, 일본 측은 이전(753년)에 파견한 일본의 견신라사 小野田守(중5위하)에 대해 신라가 취한 태도, 즉 일본국사가 래조하였으나 태도가 오만하고 무례하여 인견하지 않고 귀국시킨 일<삼국사기 신라본기9 경덕왕 12년(753) 8월조. 경덕왕 원년(742) 10월에도 일본국의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신라사 김정권(金貞卷)은 “田守來日, 貞卷出爲外官. 亦腹賤人不知細旨”라고 답해 일본 측을 또한 화나게 하고 있다. 이에 일본 측은 “使人輕微, 不足賓對”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이는 사인이 경미한 신분의 경우라면 賓對할 수 없다는 것으로 외교사절로서 고위고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권이 귀국 한 후 3년이 지난 천평보자 7년(763) 2월, 급찬 김체신이 래일하였다. 이전에 파견된 신라사 김정권과의 약속 사항에 대해 묻자, 김체신은 “承國王敎唯調是貢. 至宇余事, 非敢所知”라고 답했는데, 이 또한 “是乃爲使之入, 非所宜言”이라 비난을 받고, “非王子者, 令執政大夫等入朝”라고 왕자나 집정대부의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파견된 사절의 지위·신분이 경미한 경우에는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며(使人輕微不足賓待), 상대국에 신뢰를 주는 사자는 그 조건으로서 4가지 요소(專對之人, 忠信之禮, 仍舊之調, 明驗之言)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 간의 외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권을 위임받은 사자(專使)가 忠信의 예를 갖추고 구례에 따른 예물을 갖추며 명확한 의사를 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2) 사자의 조건·자격(능력)과 지위 및 신분

(1) 사자의 조건과 자격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知彼知己면 百戰不殆(不敗)!’는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도 그대로 통용된다. 따라서 외교교섭에서 최대한의 외교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책으로 사절 파견국은 외교사절의 선발(인선)에 충분히 궁리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례1) 삼국사기 신라본기9 효성왕 2년2월조

사신외교에 있어 사자선발 시의 고려사항으로 상대국의 실정을 적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에 적합한 인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는 상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상대를 설득하여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사자의 인선·선발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당의 견신라사 파견시의 사절 인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당의 황제 현종은 개원 25년(737), 신라왕 김홍광(성덕왕)이 죽자, 당조정은 左贊善 大夫인 형도(邢濤)에게 鴻臚寺의 少卿(외무차관)을 겸하게 하여 신라에 파견, 弔祭와 다음 국왕의 책봉을 행하게 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형도의 출발에 즈음해 현종황제가 직접 “신라는 군자의 나라로 書記를 아주 잘 알며, 중국과 유사하다. 경은 학술이 있고 강론에 뛰어나 이번 사절에 선발되었다. 그곳에 가서 잘 경전을 선양하고 대국 유교의 번창함을 알리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형도의 부사로는 바둑의 명인 率府兵曹의 參軍인 양계웅(楊季鷹)이 선발되었는데, 그 이유는 신라에 바둑의 명인(고수)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구당서 권199상, 동이전 신라국조 및 삼국사기 신라본기9 효성왕 2년2월조>

즉, 중국(당)이 신라에 사신 파견 시 사신의 자격·조건으로 유교에 뛰어난 문인·지식인, 바둑의 달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견신라사의 정사와 부사로 임명하고 있다. 소위 문화외교를 위해 대사와 부사의 인선에 있어 외교 대상 즉 상대국 신라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인선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당은 신라에 학문이나 바둑이 성행함을 전제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 이상의 실력을 지닌 학자나 바둑의 명인을 외교사절에 임명하는 등 상대국의 국정에 맞춘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있다. 즉 당은 외교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전략 하에 사절을 인선해 파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례는 외교사절이 지닌 자국에서의 신분(관직)이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즉 형도에게 홍로 소경을 겸하게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세심한 외교전략은 외교성과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다름 아닌 당의 사신 형도에 대한 신라 측의 후대(王厚贈壽等金寶藥物)<삼국사기 효성왕 2-2조>와 신라에서 당으로의 사은사 파견(遣金元玄入唐賀正)<동 2-3조>으로 이어지고 있고, 신라의 바둑 고수들이 모두 양계웅의 아래에 들었다(國高奕皆出其下)<동 2-2조>고 한다.

아울러, 이처럼 외교사절로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형도는 이후 4월에도 당의 견신라사로 재차 파견되어 노자 도덕경 등 문서를 신라왕에게 바치고 있으며, 귀국길에는 신라왕으로부터 황금 30량, 포 50필, 인삼 100근을 하사받고 있다.<삼국사기 효성왕 2년 4월조 및 3년 정월조>

이러한 당사의 경우와는 반대로, 때로는 파견된 사신의 지위나 그에 대응하는 상대역의 지위(관위나 직위), 또는 상대국 사신에 대한 대우(취급)가 문제가 되어 외교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이 종종 있으며, 이는 결국 외교목적(사행목적)이나 외교교섭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1) 계제기 23년(529) 4월 시월조

안라에 파견된 근강모야신이 천황의 칙서를 전하기 위해 신라왕과 백제왕을 불렀으나 백제와 신라가 왕을 대신해 신분이 낮은 자를 파견하였기 때문에 결국 칙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이 사례는 사자의 신분이 문제가 되어 외교활동이 성사되지 못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례2) 흙명기 5년(544) 정월조

외교대상인 사자의 신분의 문제로 인해 결국 외교교섭이 성사되지 못한 사례인데, 544년(흙명5) 정월, 백제 성명왕이 임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두 번째로 임나와 일본부에 사신을 보내어 임사집사와 일본부 집사를 소집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후에 임나와

일본부가 신분이 낮은 자를 백제에 보내어 결국 외교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외교현장은 국가 간의 자존의식이 부딪히는 현장이기도 한다. 그것은 국가 간의 외교의 장이 때로는 상호간의 자존의식의 발로의 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선, 외교현장에서의 爭禮·爭長 사례로는 앞서 살펴본 흠명조의 왜국에서 있었던 신라사와 백제사의 자리다툼 사례(흠명기 22년 시세조)와 사신에 대한 대우(향응)에 불만을 품고 귀국한 신라사의 경우(흠명기 22년 1월조)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왜국에서 신라가 백제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이며, 자존의식의 발로인 석차문제로 인한 사신의 귀국은 결국 외교문제로 비화되어 양국의 긴장관계를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전술). 즉 지나친 자존의식이 때로는 외교의 실패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후자는 향응문제로 인해 신라사가 화를 내고 귀국한 경우로 이는 결국 외교교섭의 실패를 시사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역시 신라사의 자존의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명한 사례로서, 당 조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왜국(일본)의 견당사가 신라에 대한 자존의식에서 문제제기를 한 경우이다. 즉 753년 1월의 당조 蓬萊宮 含殿에서의 朝賀의식 석상에서 일본의 견당사 부사 大伴古麻呂가 신라사의 석차를 문제 삼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신라와 발해 간에도 쟁장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즉 발해 측의 신라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897년 발해왕자인 大封裔는 元旦朝賀의 의식에서 신라의 사자보다 상석을 차지하려고 석차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당이 이를 불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라가 당에 감사의 상표문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명한 최치원의 문장인 ‘謝不許北國居上表’이다.³⁾

이상의 사례는 어디까지나 제3국의 외교의 장에서 표출된 자존의식의 발로로 인해 발생한 해프닝의 경우라 할 수 있는데, 다음에 보는 경우는 보다 직접적으로 당사국 간의 외교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로서 이는 곧 외교의 실패로 귀결된다. 이하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3) 이에 대해서는 하마다 고사쿠 2016 참조.

사례1) 당사 高表仁의 왜국에서의 사례(구당서 왜국전)

630년에 파견된 일본 최초의 견당사에 대해 당측은 그 답사로서 632년에 고표인을 왜국에 파견한다. 일본서기 서명기 4(632)년 8월조에는 고표인의 래왜기사가 보이고 있고, 632년 10월에는 고표인 일행이 난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고, 이에 왜국 측이 당의 사절을 맞는 안내자 즉 掌客을 파견하고 있다(서명기 4-10조). 이어 다음 해 1월에는 외교사행을 마치고 고표인이 귀국길에 올랐다고 전하고 있다(동 5-1조). 이처럼 일본서기의 관련 기사를 통해서는 당사 고표인의 왜국사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인식되나, <<구당서>> 왜국전에 관련기사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를 통해 고표인의 대왜 외교사행의 결과를 알 수 있다. 즉,

貞觀五年, 遣使獻方物. 太宗矜其道遠, 勅所司無令歲貢, 又遣新州刺史高表仁持節往撫之. 表仁無綏遠之才, 与王子爭禮, 不宣朝命而還.

이에 따르면, 서명 4년(632)에 래일한 당사 고표인이 왜국의 왕자(혹은 왕)와 예를 다투어 조명을 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귀국하고 말았다. 즉 당사와 왜국 측의 트러블로 인해 당시의 외교교섭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외교사절의 무능이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이다. 즉 ‘고표인에게는 제변을 위무할 재능이 없었다(表仁無綏遠之才)’고 힐책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2) 왜국(일본)의 견신라사 小野田守의 외교 실패 사례(삼국사기 경덕왕 12년 8월조)

- ① 경덕왕 원년(742) 10월조, 일본국사가 이르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不納).
- ② 경덕왕 12년(753) 8월조, 일본국사가 이르렀는데 오만하고 무례하여 왕이 이를 보지 않고 돌려보냈다(王不見之乃廻).

①의 일본국사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742년 10월에 도착한 일본의 견신라사는 결국 신라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부여된 외교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귀국하고 있다. 신라가 일본국사를 그대로 돌려보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같은 해 2월에 파견된 신라의 견일사 일행(사찬 김흠영 등 187인)의 대응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다.

②의 경우는 이때 파견된 일본국사가 누구인지, 왜 일본국사를 신라 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인지 등 비교적 상세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일본의 견신라사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대응기사가 있기 때문이다. 즉 속일본기 천평승보 5년(753) 2월9일조에 종5위 하 小野田守를 견신라대사로 임명하는 기사가 보인다. 이를 통해 8월에 도착한 일본의 견신라사는 小野田守로 보아 틀림이 없고, 그가 신라에서 외교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되돌아온 이유에 대해 삼국사기는 사자의 태도가 오만하고 무례했기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⁴⁾ 이는 田守가 신라에서 자존의식을 내세운 결과로 이해된다. 아울러, 田守가 애써 외교상대국인 신라에 가서 자존의식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중요한 배경의 하나는 전술한 753년 1월에 당의 蓬萊宮 含殿에서 열린 朝賀의식의 자리에서 발생한 일본사와 신라사의 자리다툼 소위 쟁장사건이 아닐까 생각된다.⁵⁾ 결국, 田守의 행동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며 양국의 자존의식이 외교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표출된 결과인 것이다.

이상은 외교사절로 파견된 사신이 상대국 조정에서 직접적으로 자존의식을 표출하여 외교목적·외교교섭에 실패한 경우인데, 결국 이는 사신의 무능이 낳은 외교실패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외교의 장에 있어 때로는 外交辭令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례3) 흙명조의 신라사 귀국 사례(흙명기 22년 1월조 및 동 시세조)

561년에 來倭한 신라사가 왜국에서 자신에 대한 대우에 불만을 품고 귀국한 사례도 결국 외교실패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백제사와 쟁장으로 불만을 품고 귀국한 또 다른 신라사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이해된다.

사례4) 왜국의 견수사 오노노 이모코(小野妹子)의 사례(추고기 16년(608) 6월조)

일본 최초의 견수사 오노노는 608년 귀국길에 백제를 경유하게 되는데 백제에서 수 양제의 국서를 분실하는 사건(백제인에 의한 국서탈취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비난이

4) 이와 관련해 속일본기 천평보자 4년(760) 9월16일조에는 ‘其後遣小野田守時. 彼國闕礼. 故田守不行使事而還歸.’이라 적고 있다.

5) 속일본기 천평승보 6년 1월30일조, 善隣國寶記, 東大寺要錄 本願章 등.

제기되고 군신들은 이모코에게 流刑을 결정하나 천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추고기). 결국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오노노 이모코의 중대한 과실은 미봉되었으나, 외교사절로서의 책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사자가 겸비한 능력이 외교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김춘추의 경우이다. 김춘추는 상대국에 외교사신으로서의 능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일본서기 효덕기 대화3년 시세조에 따르면 ‘質’로 來倭한 김춘추에 대해 수려한 용모와 아울러 뛰어난 말솜씨(화술)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의 왜국의 지배층에게 강하게 각인된 이 두 가지 요소(즉 용모와 화술)는 외교관이 겸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말할 것도 없이 수려한 용모는 상대에게 호감을 주고, 유창한 언변은 상대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즉, 외교의 장에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상대측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으며, 사실 신라 측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한 위에서 질의 대상으로서 김춘추를 선정해 파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왜국 내에 비로소 구축된 신라의 질 체제에 다름 아니다.<나행주, 2006> 위에서 살펴 본 사례 가운데 신라 효성왕 대에 파견된 당사 정도의 사례가 상기된다.

이상, 외교를 위해 파견된 사신·사절을 둘러싼 제문제를 관련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다. 결국, 이상의 검토를 통해 외교사행을 담당하는, 외교교섭의 성패가 달린 사자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으로서는 전술한 것처럼 專對의 人(전권대사)·忠信의 禮·明驗의 言·仍舊의 調(예를 갖춘 예물)<속일본기 천평보자 4년9월16일조>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여기에 사자 개인이 지닌 능력으로서의 높은 학문적 소양과 재능, 그리고 뛰어난 화술(언변)과 수려한 용모도 외교사행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백제사와 신라사의 지위

기본적으로 외교사절(사자·사신)은 왕의 몸을 대신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고귀한 신분(왕자·왕제·왕족·骨族)이나 고위급 신분의 인물이 사자로 선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흙명조(흙명기 21년 9월조)에 래왜한 신라사(나말)의 발언이 다시 상기되며, 앞서 사자의 낮은 신분으로 인한 외교실패 사례로 지적한 바 있는, 계체기(期)에 칙을 전하는 임무를 띠고 勅使로 파견된 근강모야신의 발언도 역시 비천한 신분의 사자에 대해

외교상대가 되지 못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자의 4조건 가운데 專對의 인물 즉 전권대사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마찬가지로 성왕대 외교사례, 즉 임나와 일본부가 백제에 하급 관리를 파견하여 결국 외교가 성립되지 못한 사례도 궤를 같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외교업무를 위해 파견된 사절의 지위·신분(그 상징이 관위·관직)은 당해시기의 현안의 중대사 즉 외교사안의 비중에 따라 때로는 고위급, 중급의 인물을, 경우에 따라서는 하급의 관인을 사자로 임명하여 외교교섭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리고 이 사자의 관위는 물론 파견 당시의 상대국에 대한 파견국의 국제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백제와 신라가 왜국(일본)에 파견한 백제사와 신라사의 관위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우선, 백제와 신라가 왜국에 파견한 사절에 대해 그 관위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⁶⁾

〈표 1〉 백제의 대외사절위계표

위계	견일(왜)사 횟수	견수사 횟수
*왕족(왕자/왕제/왕질 등) **질(왕자/왕제/달솔)	견지/(주군)/곤지/(마나군)/사아군/혜/아좌/풍장/교기 무자/장복/(意斯)	
(1)좌평	3	1
(2)달솔	8	
(3)은솔	2	
(4)덕솔	3	
(5)간솔	3	1
(6)나솔	7	
(7)장덕	2	
(8)시덕	1	
계	29	2

6) <표 1>과 <표 2>는 사카모토 씨가 작성한 사절관위표를 기초로 작성했다. 사카모토, 1978 참조.

우선,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백제의 경우는 전체 29사례 중 반 이상을 고위급의 달솔(2위) 8회, 중위급의 나솔(6위) 7회가 차지하고 있어서 백제가 왜국에 상당한 비중의 사절을 파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백제에 있어서 외교교섭 대상으로서 왜국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백제가 견왜(일)사로 파견한 사례 29사례 중 26사례, 즉 거의 대부분이 나솔(6위) 이상이며, 더욱이 19사례가 귀족계층이라 할 수 있는 간솔(5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백제의 대왜사절은 전체의 과반 이상이 간솔(5위) 이상의 상급관료, 전체의 거의 대부분이 나솔(6위) 이상의 중급~고급 관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신라와 비교되는 백제의 왜국(일본) 중시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표 2〉 신라의 대외사절 위계표

위계	견일(왜)사 횟수	견수당사 횟수
*왕족(왕자/왕제/왕질 등) **질(왕자/왕족/사찬/급찬)	4[김춘추/김충원/김양립/김태립(가왕자)] 4[미사흔/김춘추/김다수/미무]	
(1)이별찬		1
(2)이찬		4
(3)잡찬(逆飡)		
(4)파진찬	1	2
(5)대아찬	3	3
(6)아찬	2	1
(7)일길찬	3	
(8)사찬	15	1
(9)급찬	12	3
(10)대나말	7	4
(11)나말	10	1
(12)대사	2	
계	55	20

신라의 경우는 어떠할까. 우선, 전체 55사례 중 그 빈도에 있어 눈에 띄는 것은 사찬과 급찬, 그리고 나말의 경우이다. 즉 전체 55회 중 이 3개의 관위가 반을 넘어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총 37회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제8위인 사찬이 15회로 가장 많고, 이어 제9위인 급찬이 12회, 그리고 제11위인 나말이 10회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신라의 대왜외교 담당자는 8위에서 11위에 걸친 중하급 관위의 인물이 선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별표 1~9>를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신라의 대왜외교를 담당했던 사절의 주요 관위를 시기별로(645년 대화개신 전후와 660년 백제멸망 전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급 관위에 해당하는 사찬은 15회 중 1회, 급찬은 12회 중 2회만이 645년 이전에 파견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645년 이후, 특히 백제멸망 이후의 신라사가 차지하는 관위이다. 이에 대해 하급관위에 해당하는 나말(11위)의 경우는 10회가 모두 대화개신 이전에 파견된 신라사가 지닌 관위이다. 즉, 대화개신 이전의 신라의 대왜외교를 담당하는 신라사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하급관료인 제11위 나말 신분의 인물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⁷⁾

한편 신라의 왕족으로 왜국에 파견된 인물은 천일창의 사례를 예외로 하면 402년의 미사흔의 질로서의 래왜가 그 최초이자 645년 이전의 유일한 사례이다. 645년 이후의 사례는 질 김춘추가 최초이며 이후의 왕자 래왜(래일) 사례로서는 천무·지통기의 사례가 2건(675년의 왕자 김충원과 695년의 왕자 김양림) 더 확인된다.

이상을 통해 大化전대의 推古朝를 중심으로 하는 대왜외교에 있어서 신라가 왜국에 파견한 사신의 관위는 나말(11위)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신라의 대왜외교업무는 하급관리가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왜국에 대한 신라의 대왜인식·국제인식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645년을 전후해 신라의 대왜인식, 다른 아닌 신라사의 관위에 변화가 나타난다. 즉 신라는 대화개신 이후의 왜국 내 정권교체와 이에 따른 대외정책상의 정책변화에

7) 참고로, 4번째 빈도를 차지하는 제10위 대나말의 경우는 7회 파견이 확인되는데, 모두 천무·지통조 이후에 진조사 등의 부사(천무기10-10조)나 송사(천무기13-12조)로 파견되고 있다.

부응해, 왜국에 대한 국제인식 및 중요성이 반영되어 그 결과로서 대왜사절의 관위가 11위의 하급에서 6, 7위 이상의 중급관위로 상승하고 있다. 이후 신라의 대왜외교는 기본적으로 8위(사찬), 9위(급찬)의 인물이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개신정권 성립 이후 왕족 김춘추가 ‘질’로 파견되었고, 김춘추 파견 이후는 신라의 대왜외교 담당자가 사찬(8)·급찬(9)급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신라의 대왜(대일)외교는 대화개신을 전후로 크게 성격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신라 파견의 견일사의 신분(관위) 차이이다. 동시에 이는 외교대상으로서의 신라의 일본에 대한 국제인식=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 배경은 물론 대화개신 정권의 탄생 이후 신라와 왜국(왜왕권) 간에 새로운 외교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이며, 결론적으로 왜국 내 신라의 소위 질 체제가 성립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왕족·질 외교와의 차이는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비록 양국 정권의 이해관계의 일치에 의해 왜국 내 신라의 질 체제가 성립되었지만, 그 질의 중심이 최초의 질인 김춘추 이후에는 왕족이 아닌 중급 관료(그 위계가 사찬(8) 김다수와 급찬(9) 미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물론 백제의 질체제 즉 왕족외교가 왜국 내에서 여전히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왜국에 파견된 백제사와 신라사의 지위·신분의 차이를 확인하고, 아울러 시기별 사절의 신분 변화를 보기 위해 <표 3>을 작성했다.

〈표 3〉 시기별 백제·신라사의 지위(관위)

시기(연차)	백제사(최고/최저)	신라사(최고/최저)	비고
계체기-안한·선화기	*일반사 장군(관직)/장덕(7) 혹은 시덕(8)	*일반사-불명	
흠명기	*질-왕자(혜) *고상사-왕자(혜) *일반사 달솔(2), 장군(직위)/ 시덕(8)	*조상사-불명 *일반사 급찬(9)/나말(11)/대사(12)	
민달-용명-송준기	*일반사-불명	*일반사-나말(11)	

추고기	*왕자(아좌) *일반사-불명 *송사-불명	*일반사-나말(11)/ (임나사)대사(12)	
서명기	(*질-왕자) *일반사 달솔(2)/덕솔(4)	*일반사-불명 *송사-불명	
황극기	*질-왕자/달솔(2) *조상사-불명 *일반사-대좌평(지적)?/불명	*하등극사-불명 *조상사-불명	
효덕-제명기	*조상사-불명 *일반사-좌평(1)/달솔(2) *송사-불명	*질-왕족/사찬(8)/급찬(9) *일반사-불명 *조상사-불명	
천지기	*일반사-달솔(2)	*일반사-사찬(8)/급찬(9)	
천무기		*왕자 *하등극사-한아찬(5) *조문사-일길찬(7) *일반사-아찬(6)/급찬(9) *송사-한나말(10)/귀간(외4)	
지통기		*왕자 *조문사-급찬(9) *일반사-불명	신라 조문사의 관등 및 방물이 전례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방환

위 표에서 확인되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우선 백제사의 경우는 흠명조에서 천지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달솔(제2위)이라는 최고급 신분의 사자가 파견되고 있다. 왜국에 파견된 백제사의 최고위의 신분(지위나 관위)을 시기별로 보면, 계체기-장군(직위), 흠명기-왕자, 추고기-왕자, 서명기-달솔, 황극기-대좌평, 효덕조-좌평, 제명조-좌평과 달솔이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백제 16등 관위 중 제2위인 달솔 신분의 인물이 대외외교의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무엇보다도 이는 백제가 일관되게 왜국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신라사의 경우는 가장 큰 특징으로서 대화개신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있음이 확인된다. 즉 추고조를 중심으로 하는 대화전대에는 대외외교를 담당하는 신라사의 관위

는 17등 관위 중 제11위인 나말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하급관료가 대외 업무를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화개신 이후에는 대왜외교 담당자의 관위가 제8위의 사찬 및 제9위의 급찬급의 인물로 2~3단계 상승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대화개신 이후의 시기에는 중급관료가 대왜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라의 대왜인식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며, 동시에 대왜정책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그 결론을 제시한 것처럼, 그것은 왜국 내 신라의 질체제 구축에 의한 신라의 대왜정책의 전환 및 대왜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3) 사신외교의 결과

백제와 신라는 자국의 대외(외교)전략에 기초하여 왜국(일본)을 대상으로 한 치열한 외교공세를 펼쳤다.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별표1-9>각 시기별 국제관계연표 참조).

백제의 대왜외교 결과(성공)는 왜국의 백제에 대한 ①직접적인 원군 파견과 군수물자 등 지원[웅략기23-시세조, 계체기6-4조, 동9-2조, 흙명기7-1조, 동9-10조, 동11-2조, 동12-3조, 동14-6조, 동15-5조, 동17-1조, 동23-8조, 천지기 원년 정월 및 5월조, 동 2년 3월 및 5월조 등], ②영토의 할양과 하사[응신기16-시세조, 웅략기21-3조, 계체기6-12조, 동10-9조, 동23-3조, 효덕기 대화원년7월조 등], ③왕의 책봉·책립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의 사례를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가) 應神紀2년, 이 해에 백제 辰斯王이 즉위하여 貴國 천황에게 무례하였다. 그래서 기각숙네 등을 파견하여 그 무례함을 꾸짖었다. 이에 백제국은 진사왕을 죽여 사죄하였다. 기각숙네 등은 阿花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왔다.

(나) 應神紀16년, 이 해에 백제 阿花王이 죽었다. 천황이 直支王을 불러 “그대는 나라로 돌아가서 왕위를 이으라.”고 말하고 東韓의 땅을 돌려주면서 보냈다.

(다) 雄略紀23년, 백제 文斤王이 죽었다. 天王은 昆支王의 다섯 아들 중 둘째인 末多王이 어린데도 총명하므로 內裏로 불러 친히 머리와 얼굴을 어루만지며 은근하게 훈계하고 그 나라의 왕으로 삼았다. 이에 병기를 주고 筑紫國의 군사 500인을 함께 보내어 나라까지

호송하게 하였다. 이가 東城王이 되었다.

(라) 天智紀 원년, 대장군 大錦中 阿曇比羅夫連들이 수군 170척을 이끌고 豐璋 등을 백제국에 보내고 풍장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 칙을 선포하였다.

신라의 대외외교 결과(실패)는 왜국의 다음과 같은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①신라정토군의 파견 및 정토 움직임[승준기4-11조, 추고기3-7조, 동8-시세조, 동10-2조, 동11-4조, 동31년 시세조 및 동년 11월조, 효덕기 백치2년(651) 시세조 등], ②신라사의 방환·불납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日本書紀』 卷二十敏達天皇九年(五八〇) 六月

九年夏六月。新羅遣安刀奈末。失消奈末進調。不納以還之。

(나) 『日本書紀』 卷二十敏達天皇十一年(五八二) 十月

十一年冬十月。新羅遣安刀奈末。失消奈末進調。不納以還之。

4) 사절의 종류 및 구성

(1) 사절의 종류

국가 간의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사자·사신은 그 역할이나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① 일반사절과 ② 특별사절(고상사·하등극사·조상사(조문사)), ③송 사, ④ 특사외교[질·왕족·혼인(和親)]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일반사절은 그 파견목적이 보통 ‘진조’ ‘조공’ ‘來朝’ 등으로 표현되는 통상의 외교사절이며, ② 특별사절은 자국왕의 죽음을 알리는 고상사, 상대국 왕의 죽음을 위로하는 조사(조문사·조상사), 그리고 새로운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하등극사가 있으며, ③은 사절의 왕래 즉 교통편을 담당하는 送使인데, 이 경우 자국의 사신을 상대국에 보내는 일과 상대국 사신의 귀국을 돕는 송사의 일을 함께 수행한다. ④는 외교특사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그 성격이나 사자의 신분에 있어 ①, ②, ③의 경우와는 두드러진 차이가 인정된다.

①의 경우가 통상의 일반사절인데 반해 ②는 특별한 경우에 파견되는 사절이다. 그런 만큼 ②의 경우는 ①에 비해 의례적인 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다. 따라서 우호국가 간에는

물론 적대적인 국가 간에도 종종 ②의 사절의 왕래가 확인된다.

기본적으로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왕의 상을 알리는 고상사와 즉위를 축하하는 하등극사의 왕래이다. 전왕의 상을 조문하기 위해 파견하는 弔使(조문사)는 동시에 다음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하등극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양자는 표리관계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정세의 안정기에 이러한 성격의 사절 왕래는 상대국에 대한 최대의 우호적 표시이기도 한다.

우선, 백제와 왜국의 경우를 보면, 555년(흙명16-2조)에 백제가 왕자 혜를 왜국에 파견하여 부왕 성왕의 죽음을 알리고 있다. 사료상 확인되는 최초의 고상사의 사례이다. 왜국에서 백제로의 고상사 파견도 인정된다. 서명천황의 상을 알리기 위해 파견된 고상사 아즈미노무라지(阿曇連)의 경우가 그것이다.<山尾, 1989> 아울러 황국기 원년 정월조의 서명천황을 위한 백제의 弔使, 효덕기 백치5년 시세조의 효덕천황을 위한 조사파견 사례를 전제로 생각하면, 백제와 왜국 간에는 기본적으로 조상사(고상사는 물론)의 상호 파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라와 왜국의 경우를 보자.

먼저 자국왕의 죽음을 알리는 고상사에 관해서는 지통기 3년 5월조를 통해 왜국이 신라에 효덕천황의 고상사 및 천무천황의 고상사를 파견했음을 알 수 있고, 신라 측에서는 693년 1월에 神文王의 고상사<일본서기>, 700년 11월에 孝昭王 母의 고상사<속일본기>, 그리고 703년 1월의 효소왕의 고상사<속일본기> 파견 사례가 확인된다.

다음으로 조상사에 관한 기록은 폭넓게 확인된다. 즉, 신라가 왜국에 파견한 조상사 즉 弔使 파견 사례로는 윤공기 42년 정월조 및 11월조의 윤공천황의 조상사, 흙명기 32년 8월조의 흙명천황에 대한 조상사, 황국기 원년 10월조의 서명천황에 대한 조상사, 효덕기 백치5년 시세조를 통해 고·백·신이 모두 효덕천황의 조상사를 파견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지통기 3년 5월조를 통해 천지천황 및 천무천황에 대한 조상사 파견 사례도 확인된다. 아울러, 위 사례 가운데 황국 원년(642)에는 조상사와 하등극사를 함께 파견하고 있고, 672년 천무의 즉위 시에도 하등극사와 함께 천지의 조문사를 보내고 있다.

결국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서 왜국과 신라 간에는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고상사 파견에 대해 조상사 파견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절의 구성 및 규모

사절단은 기본적으로 그 책임자와 일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신단의 책임자 즉 대표자는 대사와 부사이다. 부사는 혹은 소사라고도 부른다.⁸⁾ 사절단의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위로서 中客이 존재한다. 백제의 질 장복 일행으로 중객이 확인되며<황극기 원년8월조>, 효덕기 대화5년시세조의 신라의 질 김다수 일행 가운데에도 중객 5인이 보이며, 천무천황 2년(674)8월조의 신라의 하등극사 김승원 일행에 중객이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사절단의 하급관리라 할 수 있는 下客도 사절단의 구성원으로 확인된다. 대당사인=수사 배세청의 경우에 하객 12인을 동반하고 있다.<추고기 16-4조>)

백제 사절단의 경우에는 參官이라는 존재도 확인된다.<황극기 원년 8월조> 참관은 사절단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관직을 나타내는 것인지 불명이나, 參軍(참관)의 직위를 지닌 인물이 당에서 신라에 보낸 사절단의 부사로 파견된 사례<삼국사기 효성왕 2년 2월조>나 5~6세기의 백제, 고구려, 왜국에서 중국에 파견하는 사신에 보이는 장사, 사마, 참관(참군)의 사례<梁書 고구려전 등>를 참조하면 혹은 사절단의 3등관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본래의 명칭이 參軍官이라는 점에서는 문관적 성격보다는 무관적 성격을 지닌 존재가 아닐까. 적어도 중객보다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절단의 상층 구성원이 아닐까 추측된다. 또한, 민달기 12년 시세조에도 참관의 존재가 확인되는데, 이 경우는 백제의 송사사절단의 관직명으로 생각된다. 즉, 日羅를 왜국으로 보내는 송사 사절단의 일행 중에 보이고 있는데, 은술이 대사, 참관이 부사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민달기 12년 시세조를 통해 송사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대사와 부사의 체제를 갖추고 있고, 여기에 항해책임을 맡은 타사(舵師), 노를 젓는 수수(水手) 등이 사절단을 구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절단의 구성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신분이자 일반잡무를 맡아보는 존재로서 僉人(雜僉人)이 있다.⁹⁾ 이 겸인은 종자와 같은 지위로 이해되는데, 참고로 <<延喜

8) 서명기 2년3월조의 백제사와 고구려사의 구성을 보면 대사와 소사로 구성되어 있다.

9) 황극기 원년2월조의 백제사 일행에 겸인, 효덕기 대화5년 시세조의 신라 질 김다수 일행 중 雜僉人 16인이 존재하고 있다.

式>>大藏조에 건당사 파견에 동반하는 건당학생·학문승에게는 관비로 僉從을 붙이고 있고, 그 외에도 僉人을 승선시키고 있다.

이상을 통해 사절단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그 책임자인 대사와 부사, 대사와 부사의 수행원 역할이자 실질적인 대외 실무를 담당한 참관·중객·하객, 그리고 일반잡무나 노무를 담당한 점인=종자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사절단의 구성 인원은 일정 정도의 규모를 지녔다고 할 수 있는데, 종자37인이나 총규모 80명, 100명, 150명 등의 사례가 확인된다.

언어를 달리하는 국가 간의 외교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통역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사절단의 구성에는 통역관의 역할을 하는 통사도 존재했을 것이다. 통사는 사료상 譯語 또는 通事로 표시되는데, 왜국의 견수사 오노 이모코 파견 시의 사절 구성에 통사(以鞍作福利爲通事)가 보이고 있고<추고기 15년 7월조> 649년에 래왜한 신라의 질김다수 사절단의 일행 중에도 譯語 1명이 존재하고 있다.<효덕기 대화5년 시세조> 거슬러 올라가면 통역(통역사)에 관한 기록은 웅략기 7년 시세조의 백제에서 왜국에 파견한 각종 재기 중에 보이는 전문 통역사 譯語 묘안나(卯安那)의 존재가 그 최초이다.

그렇다면 이 이전 시기의 백제·신라와 왜국 간의 외교교섭에 있어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와 관련해 윤공기 42년 11월조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보인다. 왜국에 파견된 신라사(윤공천황의 조상사)가 의사소통(언어)의 문제로 감금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 통역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를 전제로 생각해 보면, 웅략기 7년 시세조의 백제가 왜국에 파견한 전문 통역사 譯語 묘안나(卯安那) 파견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왜국에 파견된 백제·신라사가 모국어(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국의 견백제사나 견신라사도 역시 상대국의 외교현장에서는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특히 왜국의 경우에 있어서 대외외교·대외교섭의 임무는 주로 도래계 씨족들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吉士씨의 경우는 민달기 4년(575)4월조에 의하면 吉士譯語彦, 吉士金子, 吉士木蓮子 등이 각각 신라·임나·백제에 파견되고 있고, 특히 吉士譯語彦을 통해서 吉士씨가 기본적으로 역어 즉 한국어와 일본어의 통역 역할이 가능한 씨족집단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도래계 씨족인 倭漢씨의 경우도 외교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그 일족인 倭漢書直씨가 642년에 래왜한 백제와 고구려사에 직접 응대하고 있으며(황극기 원년2월조), 왕진이 일족인 船史씨도 수사 배세청 일행의 掌客으로 船史王平이 활약하고 있다(추고기 16년 6월조).

3. 질·왕족 파견과 혼인을 통한 화친관계

1) 질·왕족외교

한반도제국과 왜국(일본) 간의 외교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이자 동시에 백제·신라가 왜국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사례 가운데 일반사행의 외교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바로 질·왕족외교 및 혼인을 통한 화친관계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대왜외교에 있어서 백제와 신라의 결정적인 차이는 질 외교, 왕족 외교, 그리고 화친관계의 성립 유무이자 그러한 관계의 안정적인 지속 여부라 할 수 있다.

우선,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료상 확인되는 백제와 신라의 질·왕족·혼인의 사례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백제의 왕족 · 질 · 혼인 관련표

연번	대상 및 신분	파견-귀국시기	파견-수용주체	비고(성격 등)
①	직지(전지):왕자/태자	397-405	아신왕-응신	질
②	신제도원:王의 妹	428?-	전지왕(구이신왕/비유왕?)-응신	화친(전지왕의 누이)
③	주군:왕족	인덕조 (41년 3월)	비유왕?-인덕	왕족
④	지진원:왕족	?-458이전?	비유왕-웅락	화친
⑤	적계여랑:왕족	458-	개로왕-웅락	화친(모니부인의 딸)
⑥	곤지군:왕제	461-475(477)?	개로왕-웅락	왕족
⑦	의다랑:왕족	?-501	동성왕?-무열	왕족/왜국에서 사망

⑧	마나군:왕족(非骨族)	504-505?	무령왕-무열	왕족/取質
⑨	사아군:왕족(骨族)	505-513?	무령왕-무열/계체	왕족/왜국에서 사망
⑩	진모선문:덕술(4)	547-547/8?	성왕-흠명	(질)
⑪	삼귀:장군·간술(5)	554-554/5?	성왕-흠명	(질)
⑫	혜:왕자	555-556	위덕왕-흠명	왕족, 고상사
⑬	아좌:왕자·태자	597-?	위덕왕-추고	왕족
⑭	(풍장:왕자·태자)	(631-661)	(무왕-서명)	질
⑮	무자:달술(2)	?-642이전?	무왕(혜왕 혹은 법왕)?-서명(혹은 추고)?	질
⑯	장복:달술	?-642	무왕-서명	질
⑰	교기=풍장:왕자	642-661	의자왕-황극	질
⑱	의사:달술	645-?	의자왕-효덕	(질)/처자 파견 의뢰

〈표 5〉 신라의 왕족·질·혼인 관련표

연번	대상 및 신분	파견- 귀국시기	파견- 수용주체	비고(성격 등)
①	천일창(왕자)	(전28년) 수인기	? - 수인	왕족(왕자)
②	불명(아찬 急利女)	312(흘해왕3)	흘해왕- 응신?	혼인·화친
③	미사흔(왕자)	402-418(도귀)	실성왕- 인덕?	질(왕자)
④	김춘추(왕족)	647-647	진덕왕- 효덕	질(왕족)
⑤	김다수(사찬)	649-654?	진덕왕- 효덕	질(사찬)
⑥	미무(급찬)	655-655(사망)	무열왕- 제명	질(급찬)

우선, <표 4>와 <표 5>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양국의 질·왕족·화친 관계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질·왕족의 경우, 그 횟수(빈도)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신라의 경우 질·왕족외교가 총 5회 확인되나, 백제의 경우는 총 16회 확인된다. 혼인을 통한 화친관계의 사례도 신라는 1회(<표 5>의 ②)에 그치나 백제의 경우는 3회(<표 4>의 ②, ④, ⑤) 있었다. 질 체제·왕족외교가 유지된 시기 및 기간에서도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한다. 신라의 경우는 왜국 내에 신라의 질 체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한 기간은 647년(김춘추)부터 655년(미무)까지

의 약 10년 정도이나, 백제의 경우는 397년부터 661년(풍장귀국)까지 약 270년 가깝게 항상적으로 유지되었다.

즉, 백제의 경우는 397년의 백제 최초의질 전지(직지)의 파견 이후 풍장에 이르기까지 아화(아신)왕대에서 의자왕대(왜국의 응신조에서 천지조)에 이르는 390년대에서 660년대까지 약 270여 년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질·왕족이 왜국에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신라의 경우는 402년 최초의 질 파견을 통한 질 체제 구축이 시도되었으나 미사흔의 도귀(逃歸)가 상징하듯이 결국 불발로 끝난 후 긴 공백기를 거치게 되었고, 마침내 645년에 이르러 대화개신정권의 탄생에 의한 대외정책 전환을 배경으로 김춘추의 질로서의 래일에 의해 왜국 내에 신라의 질 체제가 성립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647년에 공식적으로 성립한 신라의 질 체제는 불과 10여년이 채 지나지 않은 655년에 이르러 결국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여기에는 긴박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이러한 차이가 전절에서 본 백제와 신라의 대왜외교 성과(성패)의 차이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일반사절의 외교활동 성과도 마찬가지로 왜국 내의 질 체제 지속 유무와 깊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질과 일반사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양자의 사절로서의 성격(①)과 신분·지위 및 그 대상(②), 파견기간(상대국에서의 체재기간)(③), 파견목적(④)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구별된다.

①파견된 질의 성격은 그 질을 파견한 국왕의 몸을 직접적으로 대신하거나 체현하는 최고·최상급의 ‘외교특사’이며, 현대적 의미의 각국 주재 ‘대사관’(질 사절단은 각국 주재 대사관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 질은 곧 ‘대사’에 해당하는 존재)이라 할 수 있다.

②질이 이러한 성격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로서 선택되는 대상은 신분적으로도 상당한 지위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보통 왕의 근친을 비롯한 최고위층에 속하는 인물이 그 대상이 된다. 즉 파견국의 왕자나 왕제(혹은 왕녀) 등의 왕족계층이거나 최고급 귀족 혹은 그 자제가 일차적인 대상이 된다. 일반 외교사절의 경우 보통 중하급의 관위를 지닌 관인이 사자로 임명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차이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질의 대상이 보통 왕족이나 귀족 신분이기 때문에 귀국 길에 오를 경우 당연한 조치로 일정한 규모의 호송병(위송병)을 파견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 할 수 있다.¹⁰⁾

③일회성의 외교임무를 띠고 단기간의 일정으로 파견되어 임무 수행 후에 곧바로 귀국

하는 일반사절과 달리, 질은 중장기적인 전망 즉 장기적인 국가적 대외전략 하에서 보내지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국에서의 중장기간의 체재·상주를 대전제로 하여 파견된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질의 대상인물이 만약 처자가 있을 경우에는 파견 시에 가족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곤지와 풍장(교기)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곤지는 ‘既而有五子’(웅략기 5년 7월조)라 하여 이미 5명의 자식이 있었고 또한 파견 시에 형 개로왕으로부터 부인을 내려 받았다고 전하며, 풍장(교기)은 ‘翹岐將其妻子’‘乃遣人葬兒於石川’(황극기 원년 5월조) 이라 기록하고 있어서 처자식의 동반과 자식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다. 의사의 경우는 후에 처자식의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효덕기 대화원년7월조).

따라서 ④의 외교임무에 있어서도, 청병이나 지원요청 등 파견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긴급한 외교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나 혹은 물과 인, 정보의 제공·교환 등 통상의 외교업무를 위해서, 조상사 등의 의례적인 예방을 위해 파견되는 일반사절과는 달리, 질의 경우는 중장기적인 대외전략·전망 하에서 책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질·왕족외교는 말하자면 로열패밀리 간의 장기간의 교류를 통해 양국 간에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자 주요한 외무임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왕족외교와 질 외교는 과연 차이가 있는가. 질과 왕족의 차이, 즉 질과 왕족의 구분이 가능한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백제의 대왜외교에 있어서 ‘질’ 외교와 ‘왕족’ 외교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사료상의 ‘질’ 표기를 보아도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삼국사기의 경우, ‘질’로 표기된 인물은 백제의 경우는 전지와 풍장에 한하며, 신라의 경우는 미사흔이 유일하다. 일본서기를 보면 質로 규정된 백제의 인물 중 왕족으로는 풍장의 경우가 유일하다. 결국, 풍장만이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에 질로 나타나고 있고, 전지의 경우는 삼국사기에만 질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지 이후에 파견된 곤지나 왕자혜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질로 표기되고 있지 않다. 신라의 사례로는 왕족으로서는 미사흔(왕자)과 김춘추(왕족)의 경우만 質로 표기되고 있는데, 전자는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에 공통적으로 보이며, 후자는 일본서기에서만 질로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표

10) 전지의 경우는 왜병 100여명, 곤지의 왕자 동성왕(479~500) 귀국 시에는 축자의 병사 500명, 그리고 성명왕의 왕자 혜 귀국 시에는 병사 1천 명 정도가 귀국길에 함께하고 있다.

4>와 <표 5>에서 제시한 다수의 사례 중에서 사료상 質로 표기된 백제와 신라의 왕족신분의 인물은 전지와 미사흔, 풍장과 김춘추 4명뿐이다.

즉,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으로서 질 외교와 왕족외교의 구분이 모호하다. 따라서 질외교=왕족외교라고 이해해도 커다란 지장은 없을 것이다. 단지 엄격하게 구분하고자 한다면, 왕족이 로열패밀리로 그 대상이 한정되는데 대해 질의 경우는 왕족+비왕족(즉 귀족) 신분의 인물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아가 질로 명기된 비왕족의 경우를 보면, 백제의 질은 제2위의 달솔 신분의 귀족계층의 인물인 무자와 장복에 대해 질로 표기되고 있고, 신라의 경우는 결코 귀족계층이라 할 수 없는 관위 8-9위의 인물인 김다수와 미무를 질로 표기하고 있다. 질의 신분은 통해서도 양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백제의 질의 신분은 왕족+고위귀족이며, 신라의 경우는 왕족+중급관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백제의 경우는 백제의 질=왕족외교라는 등식이 성립하나, 신라의 경우는 질=왕족외교라는 등식이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라와 구별되는 백제의 대왜외교의 특징인 질=왕족과견을 통해 추진한 질·왕족외교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사료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사료상 ‘질’ 과견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백제 최초의 질로 397년에 과견된 전지의 경우는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광개토대왕비문에 관련기사가 보이고 있는데, 각각 ‘王與倭國結好’(아화왕 6년5월조) 즉 ‘結好’, ‘脩先王之好’(웅신기 8년 3월조 소인 백제기) 즉 ‘修好’, ‘與倭和通’(영락9년조) 즉 ‘和通’으로 기록하고 있다.¹¹⁾ 전지 귀국 후 약 60여년 뒤에 보이는 왕제 곤지의 과견 목적을 일본서기는 ‘以脩兄王之好’(웅략기5년7월조) 즉 ‘修好’라 적고 있다. 전지의 래왜목적과 동일한 표현이다. 신라 최초의 질인 미사흔의 과견(402년)에 대해 삼국사기는 ‘與倭國通好’(신라본기 실성이사금 원년3월조) 즉 ‘通好’라 기록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결국 국가 간의 질=왕족의 과견목적은 結好, 脩好, 和通, 通好에 있었다고

11) 단, 광개토대왕비문 영락9년조에서 말하는 백제와 왜국의 ‘和通’은 399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전인 397년에 있었던 質 전지의 왜국 과견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구려가 질을 매개로 한 백제·왜 양국의 관계강화를 인식한 시점이 바로 399년이 아닐까 생각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550년대의 고구려와 신라의 정치적 동맹관계를 일본서기는 ‘通和’(흠명기13년 5월조)라 규정하고 있다. 광개토왕비문에서 백제와 왜국의 정치적 결합을 말하는 ‘화통’과 동일한 의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삼국사기는 650년대의 백제 의자왕에 의한 왜국과의 관계강화를 ‘通好’(의자왕 13년<653> 8월조)라 특필하고 있다. 또한 일본서기 계체기 10년(516) 9월조에는 백제와 왜국, 즉 무령왕대의 왜국(계체조)과의 관계를 ‘結好’로 표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서기 계체기23년(529) 3월조에서는 가라와 신라의 혼인관계 성립을 ‘結攬’으로 표기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는 혼인을 통한 화친관계의 성립도 기본적으로 질의 파견과 동일한 정치적 의미를 지녔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질·왕족 파견의 의미는 국가 간의 가장 우호적이고 가까운 동맹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인 ‘수호’, ‘결호’, ‘화통’, ‘통화’로 규정할 수 있으며, 혼인을 매개로 한 화친관계의 성립도 ‘結攬’으로 표현되고 있어 결국 질·왕족 파견과 혼인을 통한 화친은 정치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닌 외교의 가장 중요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전제로 우선 질=왕족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고대한반도 제국에서 왜국에 파견된 質에 대해서는 이미 파견목적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검토한 바 있다.<나행주, 1993·1996·2006> 다만, 전고에서는 질과 왕족을 구별해 일본학계에서 질로 이해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앞에서의 검토를 통해 질 외교와 왕족외교의 구분이 상당히 애매하고 이미 구별 자체가 무의미(국가 간의 외교에서 지닌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하에서는 전고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대상을 중심으로 간단히 부연하기로 한다.

우선 백제의 질·왕족은 기본적으로 중장기적 전망(대외전략) 하에서 파견된 외교특사로서 공통적으로는 잠재적(?) ‘청병사’라는 외교사절로서의 성격이 강한 존재이다. 따라서 왕족이나 질로 파견된 인물은 결코 상대국에서 그냥 무위도식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로열패밀리 간의 유대강화를 1차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자국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상대국 요인과 접촉하며 항상적으로 외교교섭을 행하는 것이다.

먼저, ③주군(酒君)은 왕족으로서는 전지에 이어 왜국에 파견되었는데, 구이신왕의 장

자 혹은 전지왕의 서자가 아닐까 추정되고 있다.<김영심, 2008> 그가 파견 대상으로 인 선된 배경에는 백제 내부의 정치세력 간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주군의 왜국 파견은 백제왕권 내부의 대립세력에 의한 정치적 추방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주군에 대해 묘사된 그의 무례한 행동과 그로 인해 죄사슬에 묶여 왜국에 끌려갔다고 하는 심상치 않는 장면(인덕기 41년 3월조)에 대한 이해가 문제인데, 이를 주군이 백제의 대외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에 왜국에 보내졌다고 이해<김영심, 2008>하기보다는 주군의 왜국으로의 파견 배경 즉 주군이 그 대상으로 선정된 것 자체가 주군의 의지와는 무관한 정치적 결정, 다시 말해 주군의 의사와는 별개로 백제왕권 차원에서 대외 파견이 결정된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즉 주군의 왜국행에는 정치적 추방의 의미가 다분히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질의 파견이 정치적 추방의 구실로 이용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일면에서는 전지의 경우도 그렇고, 곤지와 풍장의 경우도 그러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신라의 경우는 애장왕 때에 일본으로의 질 파견 시도가 있었던 균정의 경우(삼국사기 애장왕 3년 12월조)가 이에 해당한다.

⑥곤지의 경우는 461년에 형 개로왕의 명을 받들어 ‘修兄王之好’를 위해 처자식을 거느리고 래왜하고 있는데, 그의 파견목적과 관련해서는 당시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곤지를 직접 파견해 양국의 군사동맹으로 고구려의 움직임에 공동대처하기 위해서<이도환 1984, 스즈키 야스타미 1985 등>라고 이해되고 있다. 다만 477년에 귀국하기까지의 곤지의 왜국 체재 기간 동안에 직접적인 백제 측의 원군요청이나 왜국 측의 원군파견을 말해주는 사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백제에서 파견된 질=왕족은 공통적으로 참제적인 청병사라고 할 수 있지만, 백제 왕족들의 도왜는 직접적으로 즉각적인 청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외교전략 하에서 유사시에 언제든지 청병과 그에 부응한 왜국 측의 원군 파견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백제의 질=왕족에 부여된 첫 번째 임무이자 왜국행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이다. 그리고 사실 흙명기의 제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흙명기 8년 4월조의 덕술을 파견한 청병, 동 9년 4월조의 간술 파견을 통한 원군 파견 보류 요청, 동 14년 정월조의 덕술 파견을 통한 구원요청, 동 15년 2월조의 간술 파견을 통한 구원요

청 등의 사례가 확인된다) 실제로 청군을 요청한 경우의 사절 즉 청병사의 지위는 왕족이 아닌 일반사절·일반관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⑫혜의 경우가 그러한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즉 성왕의 왕자 혜는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기 위한 고상사로서의 임무를 띠고 일차적으로 래왜하여 1년여에 걸친 왜국에서의 왕족외교 활동을 지속한 후에 이듬해 정월에 군수물자와 천명의 위송병(실질적인 원병)을 거느리고 귀국하고 있다. 왕자 혜는 고상사로 파견되어 청병사로 귀국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장기간에 걸친 왕족 혹은 질자의 파견은 백제의 입장에서는 상시라도 왜국에 청병을 요청할 수 있고, 왜국 내에서 그러한 체제가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그들에게 부여된 본연의 외교임무라 할 수 있고, 이를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각국 주재 대사관의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질=왕족외교가 피크를 맞이한 시기가 바로 무령왕(501~523)·성왕(523~554)대 왜국의 계체·흙명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무령왕 재위 기간에 백제와 왜국 간의 관계가 가장 밀접했다는 사실은 무령왕이 503년에 즉위 전의 계체에게 동경을 증여하고 있는 점<와카야마현 스다하치만궁 소장 인물화상경> 및 무령왕대에 왜국에 대해 선진의 인적자원의 대명사인 오경박사의 정기적인 파견·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계체기 7년6월조 및 동 10년9월조>이나 계체기에 특히 백제에 대한 영토할양 사례<계체기 6-12조, 동10-9조, 동23-3조>가 다수 보이는 것은 양국의 깊은 관계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서기에 보이는 백제에 대한 각종 영토할양 기사는 왜국이 백제가 추진하는 가야지역으로의 대외평창정책에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연민수, 2016>

성왕대의 백제와 왜국의 흙명조의 관계를 상징하는 질의 사례가 ⑩진모선문이다. 왜국에 파견된 백제의 질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즉 질의 신분이 왕족급에서 率位의 신분으로 낮아지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왜국 내의 질체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¹²⁾

12) 신라의 경우 647년 실질적인 신라 최초의 질 김춘추의 도왜로 질 체제가 성립된 이후 질의 파견에 있어 8위와 9위의 관위를 지닌 중급관인이 그 대상으로 선발되고 있는 점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신라와 비교해 질의 신분에는 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 백제의 질 ⑩, ⑪은 뒤에 보이는 ⑮, ⑯, ⑰의 달솔(2위) 신분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본적으로 5위 이상의 귀족으로 말하자면 고급관료라 할 수 있기 때문이

바꾸어 말하면 ⑩이후 일반관위(2위 및 4위~5위)의 인물이 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질 체제의 안정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흠명조 기간을 통해 백제와 왜국 간에 가장 많은 인적·물적 자원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웅변하고 있다. 흠명4년~17년에 이르는 14년 동안에 10년과 16년의 2년간을 제외하고 매년 양국 간에는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物과 人의 왕래 즉 물적·인적자원의 상호교류·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횡수로 보면 14년 동안에 17회의 왕래가 있었다. 백제가 9회, 왜국이 8회 보내고 있다. 더욱이 흠명조가 지속되는 32년 동안 9년간을 제외한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류왕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백제의 대왜외교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교류의 기간이다. [*<별표2> 및 <자료1> 참조]

마지막으로 ⑦意多郎, ⑧麻那君, ⑨斯我君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⑦意多郎은 ‘意多郎卒’(무열기 3(501)-11조)이라 하여 사망기사만이 전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다. 다만, 477년에 곤지가 귀국한 후에 왜국에 남겨진 그의 아들들 즉 동성왕과 무령왕이 본국으로 귀국한 이후의 어느 시기에, 그것도 무령왕이 즉위하는 501년 이전 시점에 왜국에 파견된 것이 아닐까 추측하는 이해가 있다. 혹은 곤지왕의 5자 중의 한명이 아닐까도 억측되고 있다. <김현구, 2009>

⑧麻那君은 무열기 6년(504)10월조에 따르면 백제의 진조사 즉 일반사행을 위해 파견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실은 대고구려·말갈전에 대비한 청병사로 래왜하였다. 그러나 청병은커녕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왜국 측에 억류당하는 신세가 된다. 양국의 교류·교통상에 생긴 약간의 트러블로 인해 발생한 소위 ‘取質’의 사례라 할 수 있다.<나행주, 1996> 그의 경우는 결코 ‘질’로 파견된 경우가 아니며, 곧바로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추측된다. 귀국 후에도 그는 백제의 대외외교의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흠명기 2년4월조 등). 계체기 23년3월 시월조의 麻那將軍과 동일인물로 간주된다. <김현구, 2009>

⑨斯我君은 마나군에 이어 505년 4월조에 래왜하고 있는데, 무령왕과 가까운 왕족의 일원으로서(‘百濟國主之骨族’) 일차적으로는 전년에 발생한 마나군을 둘러싼 해프닝을 수습하고 현안인 대고구려·말갈전에 대비한 청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나군의 귀국 직후

다. 신라의 질이 모두 8~9위의 중급 관위에 그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경우도 역시 백제와 신라의 대왜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에 서둘러 파견된 것으로 추측된다.<나행주, 1996> 다만, 사아군은 ‘遂有子 曰法師君’(무열기 7년(505) 4월조)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마나군과는 달리 파견 시에 처자를 동반한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이는 장기간의 왜국 체재를 전제로 한 왜국행임을 말해준다. 즉 질=왕족외교를 위해 래왜한 것이다. 사아군의 아들이 法師君이며 倭君의 조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아군을 무령왕의 왕자인 순타태자와 동일인으로 보는 이해가 이미 제시되어 있다.<산미 1989, 연민수 1998 타> 다만, 이미 그러한 이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있는 것처럼,<김현구 2009> 사아군과 순타태자를 별인으로 볼 충분한 여지가 있다. 구체적인 논증은 기회를 달리하기로 하고, 순타태자는 무령왕의 아들(百濟武寧王之子純陀太子)<속일본기 연력8년 12월조>이라고 전해지는데 대해 사아군은 ‘百濟國主之骨族’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점, 太子와 君이라는 호칭의 차이, 죽은 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薨(‘百濟太子淳陀薨’)<계체기 7년(513) 8월조>과 卒(단 사아군의 아들인 법사군의 죽음에 대한 표기에서 추측)의 차이, 그 후예들의 씨족명 및 가바네 표기상의 차이 즉 순타태자의 후손 和史와 사아군의 아들인 법사군의 후손 倭君의 차이 등을 중시하면 양자는 다른 인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아울러, 순타태자의 태자는 무령왕의 첫째 아들의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닐까. 무령왕의 왜국 체재 동안에 왜국에서 태어나 왜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신라의 질·왕족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해 두기로 한다.<나행주, 2006>

먼저, 전개한 <표5>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신라의 대왜외교 형태에도 질·왕족외교와 혼인을 통한 화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백제의 경우와 비교해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①신라왕자 천일창의 설화는 왕족외교의 최초의 형태로 간주되며, ②의 경우도 백제에 앞서 맺어진 왜국과의 혼인을 통한 화친의 한 형태로 이해가 가능하다. ③은 402년에 최초로 시도된 신라의 질 외교이다. 다만, 신라의 경우는 ①·②·③의 형태 모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만다. 645년의 대화개신 이후에야 ④김춘추(왕족)에 의해 질외교가 개시되었고 이후 649년의 ⑤김다수(사찬), 655년의 ⑥미부(급찬)으로 이어지며 안정적으로 왜국 내 신라의 질 체제가 구축되게 되었다. 따라서 647년 이전까지의 신라의 대왜외교는 기본적으로 일반사절을 통한 외교형태가 그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 질과 관련해 우선 ③미사흔의 경우는 왜국에 대한 신라 최초의 질 외교 시도인데, 이러한 시도는 물론 신라의 대외전략에 입각한 것으로 이보다 한 발 앞선 397년에 성립한 왜국 내 백제의 질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즉 백제·왜의 질체제 성립 즉 양국 간의 정치문화 및 군사적 동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와 동시에 그 배경에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왜인 왜병기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왜국과의 우호관계 구축을 통해 왜인의 빈번한 신라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러한 시도는 결국 충분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그 상징이 질 미사흔의 왜국에서의 逃歸이다.

왜국 내 신라의 질 체제는 전술한 것처럼 김춘추의 질로서의 래왜에 의해 구축된다. 김춘추(신라)의 대왜외교 목적 즉 사행목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가 제시되어 있다.¹³⁾ 즉, (가)군사적인 원군 요청<말송보화 타>, (나)적정탐색 즉 일본내부의 동향파악<무전행남 타>, (다)일본과 백제의 우호관계 견제<주보돈 타>, (라)백제에 대한 고립 시도<서인한 타> 등의 이해이다. 이 가운데 일본학계의 통설적 이해는 (가)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기회를 달리하여 상론하기로 하고 그 결론만을 제시하면, 신라의 대왜 질 외교 성립은 기본적으로는 양국의 이해관계 일치의 산물이나 일차적으로는 왜국 측의 유도에 부응해 성립한 것이라는 점, 신라의 대왜외교의 기본노선은 결코 왜국에 대한 직접적인 청병(원군요청)이 아닌 어디까지나 대백제견제책으로서의 신라와 왜국 간의 관계개선, 그리고 이에 기초한 직접적인 왜국의 백제지원 움직임 즉 對신라출병을 저지하는데 최대의 외교목적이 있었다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파견된 인물이 바로 김춘추이다.

2) 혼인·화친관계

(1) 혼인의 제사례

한반도제국과 왜국 간의 혼인은 왕족(왕권·국가) 간 혼인과 일반 호족층 사이의 혼인 사례가 확인된다.<니토, 2004 참조>

13) 이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사 정리로는 김병곤, 2012 참조.

먼저 호족층의 혼인사례를 살펴보면, 한반도제국과 일본열도의 제 세력 간에는 정치와 교상(교역·외교·군사 등)의 목적으로 상호 왕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지역에 장기간의 체재도 필요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현지 여성과의 혼인관계가 성립되게 된다. <<일본서기>>에 다수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소위 ‘韓子’‘韓腹’이라 칭하는 혼혈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인과 임나인 사이의 혼인, 그 소생이 ‘韓子’(계체기 24년 9월조)
 장기간 임나에 거주, ‘韓婦’를 취해 자식을 낳음(흠명기 2년 7월조)
 가야인 좌로마도는 ‘韓腹’(흠명기 5년 3월조)

이상에서 본 일본열도에서 한반도로 건너와 가야지역의 현지여성과 혼인관계를 맺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간 사람들도 왜국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현지 여성과 혼인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이해와 관련해 <<수서>> 백제전 및 신라전에는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기사가 보인다. 즉

其人雜有新羅·高麗·倭等. 亦有中國人. (수서 백제전)
 故其人雜有華夏·高麗·百濟之屬. (수서 신라전)

이에 따르면 백제에는 신라, 고구려, 왜, 중국인이, 신라에는 중국, 고구려, 백제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서 확인한 일본열도와 한반도 사이뿐만 아니라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 간에는 물론, 가야지역을 포함한 4지역 간에, 더 나아가 중국인과의 서로 혼인을 통한 결합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국가 간의 혼인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사카모토, 1978 참조>

먼저, 고구려의 瑠璃明王은 왕비 사후에 계실로서 鵲川 사람의 딸 禾姬와 漢人의 딸 雉姬를 맞이했고, 東川王은 동해인으로부터 미녀를 헌상 받아 이를 후궁으로 삼았다고 한다.<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유리명왕 3년 10월조, 고구려본기 동천왕 19년 춘 3월조>
 백제에서는 責稽王이 대방왕녀 보과를 맞아들여 부인으로 삼았다고 한다. <백제본기 책

계왕 즉위조>

이상의 사례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각 왕조 초기에 이러한 화친관계를 통해서 상호간에 세력 확대를 도모했다는 점은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사카모토, 1978>

보다 확실한 사례로서는 백제와 신라, 신라와 가야의 혼인관계를 들 수 있다. 즉,

- (가) ① 백제 동성왕이 청혼, 신라왕이 이벌찬의 딸을 보냄(신라본기 소지마립간 15년(493) 3월조)
- ② 백제의 청혼에 신라왕이 이[벌]찬의 딸을 보냄(백제본기 동성왕 15년(493) 3월조)
- ③ 신라왕이 백제왕녀를 소비로 맞음(신라본기 진흥왕 14년(553) 10월조)
- ④ 백제왕녀가 신라에서 귀국(백제본기 성왕 31년 10월조)
- (나) ① 가라국왕이 견사 청혼, 신라왕이 이찬 比助夫의 누이동생을 보냄(신라본기 법흥왕 9년(522) 3월조)
- ② 가라왕이 신라왕녀를 취해 자식을 둠(계체기 23년(529) 3월 시월조)

(가)는 신라와 백제의 혼인관계로서 ①과 ②는 동성왕과 소지왕 사이의 혼인을 통한 화친관계 성립을, ③과 ④는 진흥왕과 성왕 사이에 맺어진 혼인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④가 말해주는 것처럼, 백제왕녀의 귀국 즉 양국의 화친관계가 파탄을 맞이하고 있다. (나)는 가라와 신라의 화친을 말해주는데, 가라국의 요청으로 신라가 여성을 보냄으로써 혼인이 성립되었다. 특히, ②의 경우는 가야가 帶沙津을 둘러싸고 백제와 대립하는 가운데 백제에 동조한 왜국의 움직임에 반발해 신라와의 정치적 결합을 강화한 사례로서 주목된다. 다만, 이 가야와 신라의 혼인동맹은 장기간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의복 착용의 문제로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

이 사례와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점은 가야와 신라의 혼인(계체기23-3)을 매개로 한 화친관계 성립을 일본서기는 가야가 신라와 ‘結讎’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같은 계체기(10년(516)9월조)에 백제(무령왕)와 왜국(계체)의 정치적 우호관계를 ‘結好’라고 적기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혼인을 통한 화친은 곧 질이나 왕족 파견을 통한 우호 관계 강화와 서로 같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신라와 관련된 혼인사례로 다음의 경우도 확인된다.

(다) 신라문무왕과 당 유인원 사이의 혼인 ‘約之以婚姻’(신라본기 문무왕 5년 8월조)

(라) 신라가 일본에서 파견된 소쓰히코에게 미인을 제공(신공기 62년조 소인 백제기)

(다)는 정치적 약속을 담보하는 맹약의 의미로 당황제의 명으로 백제의 진장 유인원에 게 신라의 왕녀가 혼인을 한 것이며, (라)는 신라가 왜국의 사자(신라를 치기 위해 파견된 왜의 장군)를 회유하기 위해 미인계를 사용한 사례이다.

(2) 왜국과 신라·백제·가야의 화친

먼저 신라와 왜국의 사례로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흘해 이사금 3년(312) 3월조에는 왜국왕이 자식의 혼사를 위해 구혼하였고, 이에 신라가 아찬 急利의 딸을 보냄으로써 화친 관계가 성립되었다. 신라와 왜국 사이의 최초의 혼인을 통한 화친의 사례이다.

최초의 화친관계 성립부터 약 30여년이 지난 후인 동 35년(344) 2월조에 또 다른 혼인관련 기사가 보인다. 이에 따르면 왜국이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청혼하였으나, 신라 측이 왕녀의 출가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 그 거절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즉, 동 36년 2월조에 ‘倭王移書絶交’라 전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후에 나타난 왜병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는데, 풍도 침입, 금성 포위 등 신라침범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왕권 간의 혼인을 통한 화친관계의 수립과 지속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사례이다.

신라와 왜국의 혼인을 통한 화친관계는 왜국 측의 요청으로 성립이 되었으나 결국 신라 측의 거부로 인해 중단되었고, 그 이후 양국의 화친이 맺어지는 사례는 결코 사상에 확인되지 않는다. 백제의 경우와 비교되는 커다란 차이점이다.

가야와 왜국의 혼인 사례도 1건 확인된다. 즉, 신공기 62년조 소인 백제기에 가라국왕이 妹 既殿至를 왜국에 파견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대가야와 왜국의 혼인을 통한 화친을 말해주고 있다.

백제와 왜국의 혼인·화친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응신기 39년 2월조에는 직지(전지)왕이 누이동생 新齊都媛을 파견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백제와 왜국 간의 최초의 화친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신제도원이 파견된 응신39년은 간지로는 戊辰년(308)이며, 일본서기의 수정기년으로 하면 428년에 해당한다. 그런데 누이를 파견한 직지(전지)왕은 재위 기간이 405년~420년이다. 결국, 428년은 전지왕이 아닌 비유왕[427-455] 2년에 해당하며, 왜국(일본)의 윤공천황 17년에 해당된다. 이점을 중시하면 직지(전지)왕이 그 누이동생을 일본 천황에게 보냈다는 기사에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사실 일찍이 三品은 이러한 이유로 응신기 39년조에 보이는 직지왕을 비유왕의 오기로 추정하고 있고<三品, 1962>, 이러한 이해는 이후 일본학계의 일반적인 견해가 되고 있다.

일본서기 응신기 기사의 신빙성 문제와 관련해, 파견시기를 말해주는 간지 戊辰을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파견주체로 명기된 주인공 직지왕을 중시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한편으로 응신기 25년(414)조에는 직지왕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일본서기의 연차 기년에 상당한 혼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일본서기의 연차 즉 기년에 절대적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웅략기 2년(458) 7월조[백제 池津媛, 遣天皇將幸~以火燒死] 및 동조 소인 백제신찬에 따르면 己巳년(429 혹은 489) 개로왕[455-475] 때에 백제가 왜국의 화친을 요청받고 慕尼夫人의 딸인 適稽女郎을 파견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新齊都媛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適稽女郎의 경우도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하게 된다. 즉 기사년이나 개로왕이냐의 선택이다. 기사년의 경우라면 428년 혹은 489년이 되어 그 어느 경우도 개로왕의 재위기간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지진원과 적계여랑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가 제시되어 있는데, 대별해 보면 지진원=적계여랑설과 신제도원=적계여랑설로 구분된다. 전자는 응신기 39년조의 직지왕이 파견했다고 하는 7부녀 가운데 하나가 웅략기 2년 7월조에 보이는 지진원이고, 이가 곧 분주에 보이는 적계여랑이라는 견해이다. 후자는 전지왕의 동생 신제도원이 곧 적계여랑이라는 견해<池內, 1970>이다.

그러나 양설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우선 신제도원과 지진원, 적계여랑 삼자는 그 인명 표기가 전혀 다르므로 동일인으로 보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김현구, 2009> 무엇보다

다도 신제도원(전지왕의 누이동생), 지진원(왕족이나 귀족의 여식?, 石川楯과 淫行), 적계여랑(왜국 측의 요청에 의해 파견, 모니부인의 딸)은 기술에 있어 상당히 구체성이 있다. 결국은 삼자를 각각 별개의 인물로 이해해야만 한다.<김현구, 2009>

여기에 불확실한 간지보다는 파견주체로 명시된 구체적인 인명을 중시하면, 신제도원은 전지(직지)왕이 그 누이동생을 응신에게 보내어 화친을 맺은 사례이며, 지진원은 비유왕대(427~455)에 윤공에게 보낸 것이며, 적계여랑은 개로왕이 모니부인의 여식을 웅락에게 보내어 화친관계를 맺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을 통해 ‘질 체제’가 성립한 전지왕=응신조 이후 개로왕=웅락조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에 왕족의 파견과 왕실 여성의 파견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결호·수호의 동맹화친의 관계가 더욱 굳건하게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혼인을 통한 화친관계의 성립 사례는 공통적으로 한반도제국에서 왜국에 왕실 여성이나 귀족집안의 여성을 파견해 화친관계가 성립한 사례이다.

그렇다면, 왜국 왕실 여성과 백제왕실 남성의 혼인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질·왕족 파견과 혼인(화친)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질은 중장기적 외교전략·전망 하에서 파견된다. 따라서 기혼인 경우에는 그 처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관례라 할 수 있다. 곤지의 경우 파견시에 형 개로왕이 부인을 하사하고 있고, 또 왜국에 도착했을 때 이미 5명의 자식이 존재했다고 하고 있다. 사아군의 경우도 ‘遂有子’라 하고 있으며, 그 아들이 바로 법사군이다. 황국기에 파견된 교기의 사례도 처자와 함께하고 있으며, 왜국에서 자식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효덕기의 달솔 의사의 경우도 왜국 측이 백제에 그의 처자를 보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모두 장기간의 왜국 체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견된 질·왕족이 상대국(파견국)에서 성년의 나이가 되었을 경우, 상대국이 배우자를 제공하여 결혼을 통한 화친관계가 맺어진다. 대체로 본국으로의 귀국 시, 처를 내려주는 경우가 상례이다. 사료상 확인되는 백제의 질·왕족 귀국 시의 혼인사례로서는 천지기 즉위 전기 9월조에 보이는 풍장의 경우가 있다. 즉 풍장은 귀국시에 왜국이 내린 多臣蔣敷의 妹를 처로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하면, 397년에 파견된 전지왕이 장기간에 걸친 왜국에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405년에 귀국하는데 이때 왜국의 부인을 맞았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즉 팔수부인=구이신왕의 모이다.<김기섭 2005, 홍성화 2011> 다만,

김기섭의 경우 팔수부인의 출신을 갈성씨 출신의 여성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인덕천황의 비로 와니씨의 여성이 있었던 점을 중시하면 오히려 와니씨 일족의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 곤지의 아들인 동성왕의 경우도, 귀국 전후에 왜왕권으로부터 부인을 맞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무령왕의 경우도 출생 후 바로 귀국길에 올랐다는 것은 의문이다. 따라서 왜국에서 상당히 장기간 체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513년 사망하는 무령왕의 아들 순타태자는 아마도 무령왕이 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왜국 왕실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아닐까. 501년 즉위한 무령왕은 2년 후인 503년, 즉위 전인 남제왕 즉 계체(507년에 즉위)에게 사적으로 인물화상경을 증여하고 있는데<와카야마현 스다하치만궁 소장 인물화상경의 명문>, 이는 왜국에서의 다년간에 걸친 사마왕(무령왕)과 계체왕의 사적인 왕족 간의 교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상을 통해서 사료상 직접 확인되지는 않지만 백제의 왕족과 왜국왕실(혹은 귀족)의 여성 사이에는 혼인을 통합 화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4. 결어를 대신해

“외교(국제관계)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그렇다. 신라와 왜국(일본)의 관계가 그러하다. 국제관계에도 영원한 우방이 있다. 그렇다. 바로 백제와 왜국의 관계가 그렇다.”

이상, 서론에서 제시한 문제관심에 입각해 본론에서는 외교에 있어 사자·사신이란 어떤 존재이며, 그 자격·조건은 어떠한지, 그리고 사신외교의 결과는 사신의 능력에 따라 어떻게 귀결되는지, 그 성패를 가르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주로 왜국을 대상으로 한 백제와 신라의 외교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백제의 대왜외교는 성공의 결과를, 신라의 대왜외교는 실패의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왜국을 대상으로 한 백제와 신라의 대왜외교의 성패는 결국 ‘질’ 체제=왕족외교의 성립·지속 유무라 할 수 있고, 백제의 대왜 사신외교의 성공 배경은 바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질’ 체제=‘왕족’외교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양국 간에 사소한 트러블(예를 들면, 504년의 마나군의 취질 등)이나 사건(백제에 의한 민달조의 왜계백제관료 日羅 살해<민달기 12년 시세조> 및 추고조의 견수사 국서 탈취<추고기 16년 6월조>), 그리고 백제에 대한 왜국 내부의 강한 불신감(추고기 31년 시세조의 ‘百濟是多反覆之國’이라는 언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백제멸망 시까지 기본적으로 (對신라)우호친선·동맹의 관계가 지속된 사례는 세계외교사에 있어서도 매우 희귀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국제관계·외교에 있어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 말해진다. 고대의 외교에 있어서는 바로 신라와 왜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말은 고대 백제와 왜국의 관계에서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 死語에 불과하다.

대립과 갈등이 온존하고 있는 작금의 한일관계·외교에 있어 필요한 외교상의 전범(典範)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고대 백제와 왜국(일본)의 외교에 있지 않을까.

* 남겨진 검토과제

— 금후의 과제로서 왜국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제국의 대외외교·대왜교섭에 대해 기존의 연구¹⁴⁾를 참고하면서 각 국가별, 각 시기별로 외교현안 및 교섭과정을 개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구두외교나 문서(표문)외교냐?

고대한일 간의 외교에 있어서 국서(표문)외교와 구두외교의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왜국(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대중국외교는 기본적으로 국서(표문)외교였다. 이는 5세기 왜5왕에 의한 남조외교 사례나 견수사 오노 이모코의 국서분실 사건, 저명한 일출처 국서(수서왜국전), 동천황·서황제의 문면(일본서기) 등을 통해 이해된다. 대고구려외교는 570년대 왕진이에 의한 고구려국서 해독 에피소드를 통해(민달기 원년5월조), 백제와의 경우는 흙명조의 성왕에게 보낸 조서를 통해(흙명기 2년4월조 등) 표문외교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신라외교는 추고기 29년 시세조에 보이는 최초의 표문외교 기사, 이전은 구두외교의 시대, 왜 신라의 경우만 그러한가?

14) 김현구, 김은숙, 연민수, 정효운, 홍성화, 서보경, 박재용 등의 훌륭한 연구 성과가 제출되어 있다.

[참고문헌]

〈별표 1〉 계체조 · 안한조 · 선화조 국제관계연표

연차	백제	신라	왜국
계체3(509)			2월, 왜 백제에 견사[穗積臣押山]
6(512)	12월, 조공사, 表로 임나4현을 요청		4월, 축자국의 말 40필 제공
7(513)	6월, 견사{장군}, 5경박사 단양이 파견, 기문 땅을 요청		(*7월, 백제태자 순타 사망[薨]) 11월, 기문·대사를 백제에 사여
9(515)			2월, 백제에 수군(舟師) 500인 제공 백제사(은귀장군) 귀국에 송사 파견
10(516)	9월, 견사{장군}, 기문 건에 감사, 5경박사 한고안무(단양이와 교체) 파견. 견사{장군}, 結好		
23(529)	3월, 가라의 다사진을 요청 (*가라, 왜의 조치에 반발, 신라와 結讎, 즉 신라왕녀와 혼인함)		3월, 왜, 백제에 다사진을 賜함 (*24-9, 임나사 래왜, 왜, 임나에 견사[調吉士])
안한1	5월, 견사조공, 상표{脩德(시덕?8)/都德(장덕?7)}		
선화2			10월, 임나·백제 구원군 파견

〈별표 2〉 흙명조 국제관계연표

연차	백제 ·(고구려)	신라	왜국
540(흙명1)	8월, 조공사 [고·백·신·임 조공]	8월, 조공사 [고·백·신·임 조공]	

541	7월, 백, 안라에 견사{나술(6)}		
542(흙명3)	7월, 견사{나술(6)}[하한의 임나의 정무를 주청, 상표]		
543	9월, 견사{나술(6)} 등 [扶南財物과 奴 2구를 바침]		11월, 백제에 견사(津守連)
544(흙명5)	2월, 임나에 견사{시덕} 3월, 견사{나술(6)} 上表[任那之政에 관해]		
545	5월, 견사{나술(6)} 상표 9월, 임나에 견사{호덕}		3월, 백제에 견사(膳臣)
546(흙명7)	6월, 調貢使{나술(6)}		정월, 백제에 양마 70필, 선 10척 제공
547	4월, 견사{덕술(4)}, [구원군 요청/학자,오경박사 등 교대파견]		
548(흙명9)	4월, 견사{간술(5)} [이전 요청한 원군 파견 보류 요청]		6월, 신라에 견사 10월, 백제에 축성인부 370인 제공
549	4월, 견사{나술(6)}[狛奴 10구 보냄] 6월, 백제사{장덕(7)/고덕(9)} 일행 귀국		
550(흙명11)	4월, 왜국 사자의 귀국시에 고구려 奴 6구를 보냄, 별도로 사자에게 노 1구를 내림		2월, 왜, 백제에 견사 矢 30구 제공
551			3월, 왜, 백제에 麥種 3천斛 제공
552(흙명13)	5월, 견사{덕술(4)}(백·가·안라가 견사) [구원군 요청] 10월, 노리사치계{달술(2)} 파견 [불상·불경·번개 등 제공]		
553	정월, 견사{덕술(4)} 구원병 요청 8월, 견사{나술(6)} 군사와 弓馬 요청		6월, 왜, 內臣을 백제에 파견 [양마 2필, 동선(同船) 2척, 활(弓) 50장, 화살(箭) 50구 제공]

			[醫박사/易박사/曆박사의 교대파견 및 卜書, 曆本, 각종 약물 요청]
554(흠명15)	정월, 견사{시덕(8)} 원군요청 2월, 견사{간술(5)·장군} 구원요청 [학자/오경박사/승/각종 박사/채약사/악인 등 대량으로 교대파견] 12월, 견사{간술(5)} 상표		5월, 백제에 군 1천, 馬 100필, 船 40척 제공
555	2월, 왕자 혜 파견, 구원요청(청병사)과 성왕의 전사를 알림(告喪使)		
556(흠명17)			정월, 왕자 혜 귀국 兵仗, 良馬, 위송병 1천명을 제공
560(흠명21)		9월, 조공사{나말(11)}	
561(흠명22)	시세, 백제사[*신라사가 대우상의 문제를 제기]	1월, 조공사{급별간=급찬(9)} [대우(향응의례)상의 문제로 불화, 귀국] 시세, 조공사{대사(12)} [*대우(백제사와의 서열)상의 문제로 불화, 귀국]	
562(흠명23)	8월, 백, 왜와 합동으로 고구려출병	7월, 조공사, 귀화 11월, 조공사[調賦], 귀화	7월, 왜, 신라에 견사, 대장군 파견[신라의 임나공격을 문책하기 위해] 8월, 왜, 백제에 견사[大伴連,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치도록 함]
565(흠명26)	(5월, 고구려인이 왜국에到來)		
570(흠명31)	(4월, 고구려사 왜국에到來)		
571(흠명32)		8월, 弔使(흠명천황의 조상사)	3월, 왜, 신라에 견사[임나를 멸망시킨 사유를 물음]

〈별표 3〉 민달조 · 송준조 국제관계연표

연차	백제·(고구려)	신라	왜국
573(민달2)	5월, (고구려사, 到來, 放還)	11월, 견사진조	
574(민달3)	5월, (고구려사, 到來)		
575(민달4)	2월, 백제, 견사진조, 조물이 상례보다 많음	6월, 견사진조, 조물이 상례보다 많음. 4읍의 조 진조	4월, 백제, 신라, 임나에 견사[吉土譯語彦/吉土金子/吉土木蓮子]
민달6	11월, 경론, 조불공, 조사공 등 증여[대별왕을 통해서]		5월, 大別王 등 백제에 파견
민달8		10월, 견사{나말(11)}, 불상 증여[백제에 대항책]	
민달9		6월, 조공사{나말(11)} [불납]	
민달11		10월, 조공사{나말(11)} [불납]	
민달12			7월, 백제에 日羅의 소환사 파견[紀國造押勝] 시세, 백제에 日羅의 소환사 파견[吉備海部直羽嶋]
민달13	9월, 미륵석상 1구 및 불상 1구 증여 [鹿深臣·佐伯連 등을 통해서]		(백제에 견사[鹿深臣·佐伯連 등]) 2월, 신라, 임나에 견사 시세, 환속승 고려 惠便을 찾음 견고구려사 파견(속일본기 和銅4-12조)
송준1	시세, 송·寺工 등 불교관련물 대량 제공[法興寺 건립 관련]		三尼, 백제에서의 수계를 요청(송준 즉위전기)
591(송준4)			征신라군(임나부흥군) 2만을 축자에 파견, 후에 신라·임나에 견사

〈별표 4〉 참고조 국제관계연표

연차	백제·(고구려)	신라	왜국
595(참고3)	5월, (고려승 혜자 到來, 우마야도왕자의 스승이 됨) 시세, 승 혜충 래일[혜자와 함께 三寶의 동량이 됨]		
596(참고4) 597(참고5)	4월, 왕자 阿佐 래일		11월, 혜자와 혜충, 법흥사에 住함. 11월, 신라에 견사
598(참고6)		4월, 왜의 견신라사 귀국 시 까지 2마리 증여 8월, 공작 1쌍 증여	
599(참고7)	9월, 낙타·白雉 등 珍物 증여		
600(참고8) 601(참고9)		시세, 신라·임나사 진조 (601년 9월, 신라 대마도에 간접 파견, 체포됨)	시세, 신라·임나에 견사 [군대파견, 신라5성공격, 신라왕 6성 할양 항복] 3월, 고구려·백제에 견사
602(참고10) 603(참고11) 605(참고13)	10월, 승 관륵 래일, 역서 등 전수 윤10, (고구려승 승흥·운충 도래) 4월, (고구려왕, 造佛을 위해 황금을 증여)		2월, 신라출병 준비 4월, 신라출병 준비
608(참고16) 609(참고17)	4월, 백제 僧俗, 肥後에 표착 3월, (고구려왕, 승 담징		6월, 견수사 小野妹子, 백제에서 당의 국서를 탈취 당했다고 보고

610(추고18)	과 법정을 보냄)	7월, 신라사{나말(11)}· 임나사{대사(12)} 파견	
611(추고19)		8월, 신라·임나의 조공사 {나말(11)}	
612(추고20)	시세, 백제인 미마지, 伎 樂 전래		
615(추고23)	9월, 송사[견당(수)사 귀 국 시의 송사로 래일] 11월, (고구려승 혜자 귀 국)		
616(추고24)		7월, 조공사{나말(11)}, 불상 증여	
618(추고26)	8월, (고구려사, 方物을 보냄)		
621(추고29)		시세, 조공사{나말(11)} [*表文(문서)외교 시초]	
623(추고31)	4월, 백제승 관륙의 상표, 승정이 됨	7월, 신라·임나 조공사 {나말} 불상 증여 및 입 당학문승의 송사 시세, 신라·임나사 래왜 {나말}	시세, 신라·임나에 견사 및 신라출병
624(추고32)	정월, (고구려왕, 승 혜관 을 파견, 승정이 됨)		

〈별표 5〉 서명·황극조 국제관계연표

연차	백제	고구려	신라·당
서명2(630)	3월, 조공사 대사{은술 (3)}와 소사{덕술(4)} 래왜	3월, 대사와 소사 래왜	
서명3(631)	3월, 풍장 質로 래왜		

서명4(632)			8월, 신라 송사[당사 고 표인, 견당사, 학문승 등]
서명7(635)	6월, 조공사{달술(2)}		
서명10(638)	시세, 백제의 조공사 <신라·임나의 조공사도>		시세, 신라·임나의 조공사 <백제의 조공사도>
서명11(639)			9월, 신라 송사[견당학문승 惠隱 등 귀국]
서명12(640)	10월, 조공사 파견		10월, 신라 조공사 및 송사[견당학문승 淸安, 學生 高向 등 귀국]
황극1(642)	정월, 弔使 4월, 교기{왕자} 등 래왜 5월, 調使 7월, 지적{대좌평} 등 래왜	2월, 견사	3월, 신라 하등극사, 弔使
황극2(643)	4월, 교기와 백제사 축자 도착	6월, 견사	

〈별표 6〉 효덕조 국제관계연표

연차	고구려·백제	신라	당
645 (大化1)	7월, 고·백{좌평(1)}, 來朝 進調 백, 임나의 조 進調	7월, 來朝進調	
646	2월, 고·백·임나사 來朝貢 獻	2월, 來朝貢獻 9월, 고향현리 파견, 質 요 청 임나의 조 폐지 알림	
647 (大化3)	1월, 고, 來朝貢獻	1월, 來朝貢獻 시세, 김춘추{왕자}, 현리 와 함께 來倭, 質이 됨	
648		시세, 來朝貢獻	
649 (大化5)		5월, 遣使 시세, 김다수{사찬(8), 종 자 37인 동반} 래왜, 質이 됨	
650 (白雉1)		4월, 貢調	
651	6월, 백, 래조공헌	시세, 공조사 축자에 도착.	

		당복 착용을 이유로 방환 巨勢대신 신라정토 주청 6월, 래조공헌	
652 (白雉3)	4월, 백, 래조공헌	4월, 래조공헌	
653	6월, 백, 래조공헌	6월, 래조공헌	5월, 견사 2船 241인(학문 승 定惠 등 동행)
654 (白雉5)	7월, 백, 송사 파견, 축자 에 이름 [서해사(견당사) 吉士長丹 등의 송사] 시세, 고·백, 弔使래조	7월, 신, 송사 파견, 축자에 이름[서해사(견당사) 吉士 長丹 등의 송사] 시세, 弔使래조	2월, 견사 2船, 玄理 등 신 라경유 입당(현리 물)

*주 (1)고는 고구려, 백은 백제, 신은 신라의 약칭 (2)고덕은 왜(일본)의 견사를 나타냄.

〈별표 7〉 제명조 국제관계연표

연차	고구려·백제	신라	당
655 (齊明1)	시세, 고·백, 래조진조{달 솔(2), 100여인} 7월, 백제 調使 150명에 향응	시세, 래조진조, 彌武{급찬(9), 재기 12인} 를 質로 삼음	
656	8월, 고, 래사진조{총 81 명} 9월, 고에 견사 시세, 고·백, 래조진조 시세, 西海使(佐伯連) 백제 에서 귀국	시세, 래조진조	
657 (齊明3)	시세, 西海使(阿曇連) 백제 에서 귀국	시세, 견사, 智達 등을 신 라의 사자에 딸려 당에 보 내려 했으나, 신라의 거부 로 실패	
658		7월, 왜국의 요청을 들어줌	7월, 智達등 勅에 따라 新 羅船을 타고 入唐
659 (齊明5)	시세, 고, 견사		7월, 견사 2선, 蝦夷를 공 상
660	정월, 고, 축자 도착{100 여명}, 5월에 난파관에 이		

	름 9월, 백, 사자{달솔(2)}를 보내 신라가 당과 결합해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보고 10월, 백, 건사{좌평(1)}, 당의 포로 헌상, 구원군과 豊璋 귀국을 요청		
661 (제명7)	정월, 백제 구원군 筑紫로 향함 4월, 복신이 건사상표, 왕자 亂解 귀국을 요청		

*주 (1)고는 고구려, 백은 백제, 신은 신라의 약칭 (2)고덕은 왜(일본)의 건사를 나타냄.

〈별표 8〉 천지조 국제관계연표

연차	당	고구려·백제	신라
662 (天智1)		(정월, 백제구원군 도해) 3월, 고, 왜에 구원요청 5월, 왜, 풍장귀국(170척) 6월, 백, 건사{달솔(2)}	
663		2월, 백, 진조{달솔(2)} (3월, 백제구원 제2군 도해<2만7천명>) (8월, 백촌강 전투) (5월, 왜, 고구려에 건사 백제구원군 파견 소식 전함) (8월, 건아 1만여 추가 파견)	
664 (天智3)	5월, 백제진장 劉仁願의 사자 郭務悰 래왜 12월, 광무종 귀국		
665	8월, 倭使, 백제 웅진성에 서 열린 신라와 부여융의誓盟에 참여		

	9월, 당사 劉德高·郭務棕 등 래왜 시세, 견사(守君大石)		
666 (천지5)	정월, 倭使, 고종의 封禪에 참여	정월, 고, 래조진조 10월, 고, 래조진조	
667	11월, 백제진장 劉仁願이 법충을 견사, 遣唐副使를 송환해 줌, 왜, 송사를 파견		
668 (天智7)		4월, 백, 진조 7월, 고, 진조 (9월, 고구려 멸망)	9월, 진조 김동업{급찬(9)}, 왜, 선2척을 내림 11월, 신라왕에 絹등을 사여 11월, 견사
669	시세, 견사 (시세, 郭務棕 등 2000인 래왜)		9월, 진조 독유{사찬(8)}
670			9월, 견사(阿曇連)
671 (천지10)	정월, 백제진장 이수진, 래왜상표 11월, 郭務棕 대마에 이름	정월, 고, 진조 2월, 백(당), 진조 6월, 백(당), 진조	6월, 진조 10월, 김만물{사찬(8)} 래조진조 11월, 신라왕에 絹등을 증여

*주 (1)고는 고구려, 백은 백제, 신은 신라의 약칭 (2)고덕은 왜(일본)의 견사를 나타냄.

〈별표 9〉 천무·지통조 국제관계연표

연차	신라	고구려·탐라	왜(일본)
천무1(672)	(671년 10월, 김만물{사찬(8)} 래일)		1월, 신라사 김압실 등 축자에서 항응 12월, 신라사 귀국
천무2(673)	6월, 김승원{한아찬(5)} 賀騰極使, 김살유{일길찬(7)} 弔喪使, 송사{귀간(외4)} 파견 8월, 송사 파견 김이익{한나말(10)}	8월, 고구려사 래일 (신라의 송사)	
천무4(675)	3월, 박근수{급찬(9)} 파견 진조	3월, 고구려사 래일 8월, 탐라 調使 왕자 래	7월, 신라에 견사

	4월, 김충원{왕자*}	일 9월, 탐라왕 難波 도착	
천무5(676)	11월, 김청평{사찬(8)} 국 정[請政] 보고, 김호유 {급찬(9)} 진조, 김청평 일행의 송사 피진나{나말 (11)}	7월, 탐라사 일행 귀국 11월, 고구려사 래일 (신라 송사 김양원{대나 말(10)} 파견)	10월, 신라에 견사
천무7(678)	시세, 신라사{나말(11)} 축자에 도착. 도중 사신 일행이 풍랑에 행방불명 임을 알림		
천무8(679)	10월, 김항나{아찬(6)} 파견해 조공	2월, 고구려사 래일	9월, 견신라·고구려·탐라 사 귀국
천무10(681)	10월, 김충평{일길찬(7)}, 김일세{대나말(10)} 파견 해 進調		9월, 견고구려·신라사 귀 국 12월, 축자에 사신을 보 내 신라사를 향응
천무11(682)	2월, 신라사 김충평 귀국 6월, 송사 김석기(고구려 사의 송사)	6월, 고구려사 래일	정월, 신라사 김충평에게 축자에서 향응 6월, 고구려사 래일
천무13(684)	12월, 신라 송사 김물유 {대나말(10)} 축자 도착		12월, 견당 유학생 土師 宿禰甥 등 신라 경유 귀 국
천무14(685)			3월, 김물유 축자에서 향 응 5월, 高向朝臣麻呂 등 신 라에서 귀국
지통1(687)			1월, 신라에 천무천황의 告喪使 파견
지통3(689)	4월, 김도나{급찬(9)} 弔 使파견		5월, 신라 弔使 관등 및 방물이 전례를 벗어난다 는 이유로 방환
지통9(695)	3월, 김양림{왕자*} 등 래일, 國政奏請		9월, 小野朝臣毛野 등 견 사

「한반도제국과 왜국의 사신외교-왕족·질·화친-」 (나행주)에 대한 토론문

박재용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본고는 한반도제국과 일본의 다양한 외교형태(크게 4가지)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각 국의 외교성격과 특징을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히 백제와 신라의 대왜외교의 성패 원인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결론을 요약해 보면, 백제의 대왜외교는 성공하였지만, 신라의 경우는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그 이유가 ‘질’체제=왕족외교의 성립·지속 유무와 관계가 깊다는 것이다. 즉 백제는 일본과 ‘질’체제=왕족외교를 장기간에 걸쳐 존속 시킨데 반해 신라는 일반적인 사신외교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백제보다 더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한국측 자료의 한계로 인해 주로 일본측 문헌에 나타나는 외교사례, 특히 백제의 경우는 『일본서기』를 단초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료해석 상의 문제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고대 문헌에 장기간에 걸쳐 보이는 각국의 다양한 외교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거쳤다. 그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고의 주요부분을 이해하는데 복잡하고 난해하게 한 것도 있지만, 고대한일관계사를 연구하는데 기본이 되는 의미가 큰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에 더욱 높은 평가를 내리고 싶다. 게다가 본고의 연구 과정 및 방법, 그 결과는 앞으로 백제·신라와 왜국의 관계뿐만 아니라 양국의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시각의 문제나, 논리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질의하고자 한다. 이후 발표문 결론에도 나와 있듯이 추후의 과제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는 것으로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고 싶다.

1. ‘사신의 신분·지위’가 파견국의 ‘상대국에 대한 국제인식’을 반영한다는 시각

사신의 지위 高下가 파견국의 상대국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은 시기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여러 사례를 통해 전반적인 흐름을 도출해 보면 사신 지위문제는 상대국에 대한 인식보다는 해당 사안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大和 전후 한반도제국과 일본 관계-. 따라서 사신의 고하문제를 당해 시기 상대국에 대한 인식으로 직결시키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로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고대 한반도 제국의 외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이 서로 통용되던 시기는 언제이고, 이것이 언제 일본으로 까지 확산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뜻 본고의 기본전제를 받아들이기에는 부담감이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제국과 왜국과의 외교형태 및 사신의 신분·지위를 논하고자 할 때는 諸상황의 변화 시기나 이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7세기 후반 사신의 위계를 중5위하로 통일하는 등 신라와의 외교관계를 급속히 제도화하였다. 신라로부터의 사신을 맞이하는 방식도 당나라의 ‘번국’에 대한 외교형식의 모방이었고,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신라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양국의 객관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더욱 위험하며, 이 시기 신라와 당과의 관계 개선이나 일본과 발해의 교섭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 『속일본기』 등에 대한 철저한 사료비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신라사 김정권의 반각 사유

김정권은 관위가 급찬(9위)이었으므로 8세기 대 다른 신라사신에 비해 관위가 특별히 낮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관위가 낮다는 것만을 반각사유로 들 수는 없다.

- 일본사 小野田守의 무례한 태도

신라에 대한 일본의 자존의식을 내세운 결과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존의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당시 일본이 당나라의 외교의례를 모방하여 신라를 조공국으로 취급한 결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는지 보충설명 부탁드린다.

- 사신의 지위 문제

발표자도 언급했듯이 실제로 사절의 지위·신분은 당해 현안의 중대사 즉 외교사안의 비중에 따라 때로는 고위·중급의 인물, 경우에 따라서는 하급의 관인이 임명되어 외교교섭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사신의 지위 문제를 논할 때는 파견 목적과 해당시기 국제적 환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찰이 선행된 이후에 백제·신라와 왜국의 관계 속에서 사신의 지위문제가 제기되어야 하며, 같은 시기 백제·신라 및 일본의 견당사들과의 비교·검토는 매우 주요한 연구방법일 것이다.

- 사신 외교의 결과

백제의 대왜사신의 외교 결과로 거론한 『일본서기』의 백제에 영토의 할양 및 하사한 기사, 백제 왕의 책봉 및 책립 등에 대한 내용은 사료비판을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발표문 내용대로 두면 반드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본고의 사료 접근시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거론될 수 있으므로 각주 등으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본고에서는 신라의 대왜외교가 ‘실패’한 것으로 주장하는데, 실제 이시기 신라는 경제적 이점을 얻었으며, 일본은 당시 한창이던 율령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다고 이해하는 기존연구가 있으므로 참조 바란다. 즉 외교란 겉과 속이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사신의 종류

일반사절과 특별사절, 송사, 특사외교로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발표자의 용어사용을 그대로 따르면서 외교사를 분석해 보면 8~9세기 대에는 특별사절이 많아지고 이것이 일반화되어 간다. 발표문에서는 특사외교 즉 질·왕족·혼인외교와 다른 외교방식을 구분하기 위해 세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오히려 일반사절, 특별사절, 송사를 모두 일반사절로 묶어 양분하여 비교·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논지를 더욱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통역 문제

“5세기 후반 백제가 왜국에 전문 통역사를 파견하기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왜국에 파견한 백제, 신라사가 모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직접 사용하였을 것이며, 왜국의 견백제사나 견신라사도 역시 상대국의 외교현장에서는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2. 質 외교(체제)=왕족 외교 문제

본고에서는 대화개신 이후 신라의 대왜외교 담당자의 관위의 상승은 김춘추의 질 외교 이후 신라의 대왜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왜국 내 신라의 질 체제 구축에 의한 신라의 대왜정책의 전환 및 대왜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해되지 않는 점과 논리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 질 외교(체제)와 왕족 외교의 모호한 관계

본고에서는 질 외교와 왕족 외교가 거의 같다고 피력하는데 굳이 반론을 제기한다면 분명히 차이가 드러난다. 이른바 질 외교를 수행하는 사신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체류자이며 왕족 이외에 다른 신분도 포함된다. 즉 왕족 외교는 질 외교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 동등한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질’ 외교는 사료 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왕족 외교는 연구자들이 편의상 부르는 표현에 불과하다.

그보다 문제는 『일본서기』라는 같은 사서에서 백제와 신라 모두 ‘질’에 포함되는 신분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과 양국의 사신들의 관위 차가 크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할까이다. 즉 『일본서기』 편찬자가 ‘질’에 대한 표현을 쓸 때 다른 사신들과 차별을 두고자 한 의도와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썼다고 볼 수 있는지(『삼국사기』와 비교하여)에 대한 근본적인 사료비판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 한 사서에서 신분과 관위가 차등이 많이 나도 질이라고 표현할 때는 무슨 공통점 혹은 이유가 있었을텐데... 현 단계에서는 명확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아울러 혹시 김춘추의 질 외교가 실패로 끝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표 4~5>를 보면 기간문제는 아닌 듯하다.

- 질을 현대 대사관(대사)에 비유하는 문제

고대 일본에 오늘날의 대사관과 같은 곳이 있고, 그곳에 대사가 항시 주재하고 있었다고 봐야하는지, 그리고 백제의 경우는 질의 신분이 점차 왕족급에서 솔위의 신분으로 낮아지는 문제를 질 체제의 제도적 정착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질 외교나 대사관 문제도 당시 일본에서 제도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린다.

토론자는 대화 전후 일본에서 오늘날과 같은 대사관은 사찰이 그 역할을 했고, 승려의 외교나 불교를 통한 한반도제국의 대왜교섭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다.

3. 고찰 시기 및 대상 문제

본고의 목적은 신라와 백제의 대왜외교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 시각을 넓히고자 시도를 했으나 지나치게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추후 논문의 분량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간단한 정리가 요구된다. 반면 고구려와 가야의 대왜외교에 대한 고찰이 없어 나름의 한계가 보이기도 한다.

4. 기타

- 연구사 검토 문제

추후 해결된 문제겠지만 주가 거의 인용되고 있지 않아 발표문을 통해서는 전공자가 아니라면 발표자와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거의 알지 못함.

- 표현 · 표기 문제

·원문 인용시 일본측 제공 사료를 인용하고 있는 곳에서는 일본식 한자가 그대로 나옴.
·‘래왜’라는 표현이 거슬림. 도왜 또는 도일로 쓰는 것이 맞춤법에 맞다고 생각함.

- 사실 확인

스다하치만궁 소장 인물화상경을 무령왕이 계체에게 사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소수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후에 연구사를 반드시 언급해야 함.

제2발표

8세기 중엽 일본의 ‘신라정토’ 소동과 多賀城碑-말갈국

발표 : 이재석 (한성대학교) / 토론 : 서보경 (고려대학교)

I. 문제의 소재

II. 多賀城碑文의 검토

III. 碑文 이해의 전제

- 藤原仲麻呂의 ‘新羅征討’ 계획과 에미시 經略

IV. 藤原氏의 顯彰과 蝦夷·말갈·‘신라정토’

V. 맺음말

I. 문제의 소재 - 多賀城碑文과 말갈국

多賀城碑는 일본 宮城県 多賀城市에 있는 石碑로서 8세기 당시 陸奥國의 國府가 있던 多賀城의 입구에 자리하고 있으며 일본 고대의 碑 중에서는 가장 북단에 위치하며 또한 그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것이기도 하다. 후술하는 것처럼 비에 새겨진 건립 일자는 天平寶字 6년(762) 12월 1일인데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즉 京(나라 평성경), 常陸國, 下野國, 靺鞨國, 蝦夷國으로부터 多賀城까지의 거리를 각각 적은 부분과 多賀城이 大野朝臣東人(오오노노아손 아즈마비토, ?~742년)의 주도로 神龜 원년(724)에 조영되었으며 天平寶字 6년에 藤原惠美朝臣朝獵(후지와라노에미노아손 아사카리, ?~764년)이 다시 修造하였다는 부분이 그것이다. 비의 건립연대와 수조 연대의 일치는 이 비가 多賀城의 수축 기념으로 만들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多賀城碑에 대해서는 과거 에도시대에 땅속 혹은 풀숲에서 발견되었다는 경위 자체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메이지·다이쇼 시대 이래로 일찍부터 偽作說이 제기되어 왔다. 偽作說의 근거로는 書體와 문자를 새기는 방법 등이 당시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비문의 내용에서도 藤原惠美朝臣朝獵의 관직, 위계가 天平寶字 6년(762) 12월 1일 당시의 『続日本紀』의 기재와 차이가 나는 점, 당시 일반적 국명이었던 발해국을 두고 말갈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常陸國界와의 거리 표기가 당시의 正史의 기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¹⁾

그러나 현재 일본 학계의 통설은 8세기 당시의 것으로 인정하는 眞作說이 유력하다.²⁾ 1963년의 多賀城跡 발굴 조사에서 8세기 중반에 대폭 수축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으며 서체를 비롯한 기존의 지적 사항 또한 반론이 제기되고 1997년 비의 주위 발굴 조사 결과 建碑 당초부터 현재의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어³⁾ 眞作說이 보강되었다. 현재는

1) 위작설의 결론은 仙台藩이 佐々木義和에게 명하여 多賀城碑를 제작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진작설의 연구로서는 安部辰夫·平川南編『増補版 多賀城碑 - その謎を解く』(雄山閣, 1999)이 진작설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성과이며 기타 논저들도 이 비문을 언급할 때는 대개 진작설에 입각하고 있다.

眞作說이 거의 부동의 통설로 굳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⁴⁾ 따라서 본고 또한 多賀城碑 =眞作說의 전제 위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일차적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多賀城碑文 속에 보이는 ‘말갈국’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동북아의 북방에는 발해국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한 일본과의 통교도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비문은 느닷없이 ‘말갈국’을 거론하고 있는가, 또한 여기서의 말갈국은 곧 발해국을 지칭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당시 일본을 둘러싼 국내외적 정세와의 연관성 속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 비가 건립되는 762년이란 시기는 藤原朝臣朝獺의 부친인 당시의 실권자 藤原朝臣仲麻呂가 소위 ‘신라정토’를 슬로건으로 대대적인 군사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던 때였다. 따라서 이런 정치적 상황을 도외시킨 채, 多賀城碑의 건립을 단지 일본과 에미시(蝦夷)간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좀 더 시야를 넓혀, 에미시 정토와 신라 정토라는 당시 일본의 국내적·국제적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 비의 건립 문제를 바라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多賀城碑의 건립과 그 비문의 ‘말갈국’도 지금까지의 해석과는 다른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II. 多賀城碑文의 검토

먼저 多賀城 비문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비문의 탁본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비문은 多賀城의 위치와 多賀城 조성 내력, 비문 건립 시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문 전체를 커버하는 모양새로 ‘西’라는 방위 표시가 들어가 있다. 비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3) 宮城縣多賀城跡調査研究所『宮城縣多賀城跡調査研究所年報 1997 多賀城跡』(1998).

4) 多賀城碑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선학의 연구와 지적이 있었는데 岡田茂弘「陸奥国府多賀城の建設」(『東北歴史博物館研究紀要』4, 2003), 桑原滋郎「多賀城碑に関する2・3の疑問」(『東北歴史博物館研究紀要』3, 2002)....추가

西

去京一千五百里

多賀城 去蝦夷國界一百廿里

去常陸國界四百十二里

去下野國界二百七十四里

去靺鞨國界三千里

此城神龜元年歲次甲子按察使兼鎮守將軍從四位上勳四等大野朝臣東人之所置也天平寶字六年歲次壬寅參議東海東山節度使從四位上仁部省卿兼按察使鎮守將軍藤原惠美朝臣朝獺修造也

天平寶字六年十二月一日



(해석) 多賀城은 京으로부터 1500리, 蝦夷國界로부터 120리, 常陸國界로부터 412리, 下野國界로부터 274리, 靺鞨國界로부터 3000리 떨어져 있다. 이 성은 神龜 원년 歲次 갑자년에 按察使兼鎮守將軍 從四位上 勳四等 大野朝臣東人이 설치하였다. 天平寶字 6년 歲次 임인년에 參議東海東山節度使 從四位上 仁部省卿兼按察使鎮守將軍 藤原惠美朝臣朝獺이 修造하였다.

天平寶字 6년 12월 1일

먼저 비문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西’라는 방향 표시는 통상 수도인 나라 平城京의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이 일본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⁵⁾ 하지만 굳이 평성경을 의식하지 않고 단순히 <이 비문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서쪽>이라는 점을 나타낸다고 받아들여도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다. 오히려 이렇게 볼 때 비문의 뒷면(즉 반대쪽)이 향하는 방향이 자연스럽게 ‘東’이 되며 따라서 그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蝦夷 집단은 자연스럽게 일본 열도 속의 ‘東夷’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것이다.⁶⁾

5) 伊藤循 「多賀城碑の<國界>認識と天皇制」(『歴史評論』 555, 1996).

國界의 표시에 관해서는 통상 四方의 위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즉 多賀城→京 외에 多賀城→蝦夷國(동), 多賀城→常陸國(남), 多賀城→下野國(서), 多賀城→靺鞨國(북)의 지리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⁷⁾ 물론 이러한 지리관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常陸國과 下野國이 각각 南과 西로 설정된 것이라고 보는 이면에는 下野國을 京과 동일한 西로 간주하고, 동해도 소속의 常陸國이 동산도 소속의 下野國보다 남쪽에 있기에 常陸國은 多賀城에서 보면 남쪽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기 4개의 국계는 반드시 四方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만 할까? 常陸國과 下野國은 각각 坂東 8국의⁸⁾ 일원으로서 京에서 볼 때 모두 동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國들이다. 이런 관념에서 보면 常陸國과 下野國은 東國의 가장 끝 쪽에 있는 陸奥國의⁹⁾ 위치에서 보면 모두 西에 해당한다. 따라서 陸奥國 소재 多賀城 비문에서는 양자를 일괄하여 둘 다 西로 인식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이것은 반드시 상기 국계가 동서남북 모두를 하나씩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표현을 달리 하자면 상기 京+4개의 국계는 방위를 나타내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多賀城과 관계되는 지역을 나열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常陸國과 下野國은 陸奥國의 바로 후방에 위치하는 동해도·동산도의 일국이며 蝦夷國과 靺鞨國은 정복 내지 교류의 대상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¹⁰⁾ 물론 단순 나열설보다는 四方표시설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방위중복의 문제를 제기해두고 싶다.

한편 京 및 4개국까지의 거리에 대해서는 먼저 얼핏 보아도 京=1500里, 靺鞨國界

6) 오늘날의 방위 관념에서 보면 蝦夷는 多賀城의 북방에 위치하고 있으나 비문의 방향을 ‘서’로 설정함으로써 多賀城의 동방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7) 伊藤循 전개. 吉野武 「出土文字資料と多賀城碑」(熊谷公男編『東北の古代史3 蝦夷と城柵の時代』, 吉川弘文館, 2015).

8) 坂東은 오늘날의 関東 지방인데 고대 일본에서 坂東八國은 相模·武蔵·上総·下総·安房·常陸·上野·下野 등 8국을 말한다.

9) 陸奥는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道奥(미치노오쿠)’로 표기된 사례가 보이며 陸奥國의 전신은 道奥國이었다. 道奥는 畿内에서 볼 때 東海道·東山道の 奥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10) 비문의 인접국 표시에 出羽國이 왜 빠졌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왜 말갈국이 들어가 있는가의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000里라는 표기는 대충 어림짐작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蝦夷國界=120里, 常陸國界=412里, 下野國界=274里는 매우 구체적인 느낌을 준다.¹¹⁾ 京과 多賀城 간의 거리는 비록 대략적인 수치이기는 하나 이미 多賀城의 건립 이래로 다년간 왕래의 경험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라고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수치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말갈국의 경우는 거리의 수치 표기에서 보아도 비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상징적으로라도 말갈국을 언급해야 할 필요성에서 기재하였다는 느낌을 받는다.

多賀城의 최초 건립자 按察使兼鎮守將軍 從四位上 勳四等 大野朝臣東人에 대해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는 神龜 元年(724)의 시점에 관위는 從五位上이었으며 勳四等を 받는 것은 이듬해인 神龜 2年(725)이며 비문에 보이는 從四位上으로 승진한 것은 天平 3年(731)의 일이었다. 또한 陸奥按察使 관직이 사료에 처음 보이는 것이 천평 9年(737)이며 동 11年(739)에 參議에 보임되었으며 740년 藤原広嗣의 난을 제압한 공을 인정받아 이듬해 741년(천평 13)에 3단계 파격 승진을 이루어 從三位가 되어 742년에 사망하였다. 이러한 大野朝臣東人の 이력에서 볼 때 비문의 그의 관위-관직은 神龜 元年 당시의 것도 아니며 임종시의 최종 관직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비문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陸奥國에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올라간 최고의 관위-관직이었다.

이에 비해 藤原朝臣朝獬의 경우는 建碑의 시점 당시 그의 관위는 從四位下이며 764년 사망시까지 비문에 보이는 從四位上 승진의 사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후자는 參議·從四位上 승진 예정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비문에 이렇게 새겼으나¹²⁾ 위계의 승진만은 보류되어 결과적으로 비문과 일치하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있지만¹³⁾ 관위든 관직이든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비문에서 과장되게 사칭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¹⁴⁾ 예컨대 東海東山節度使의 경우도 실체는 東海道節度使이지만 그 관할 아래에 東山道の 國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관직명을 아예 東海東山節度使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11) 吉野武 「出土文字資料と多賀城碑」에서는 蝦夷國界=120里도 어림짐작의 대략적인 수치(概數)로 보았으나(208쪽) 필자는 단거리인데다 가장 중요한 접경 거리였기 때문에 대충 기재했을 가능성보다는 구체적인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12) 多賀城碑를 세운 天平寶字 6年 12월 1일은 『續日本紀』에 의하면 자신이 參議로 승진한 날로 기재되어 있다.

13) 木本好信 「多賀城碑文について一大野東人・藤原朝獬の官職官位表記に關して」(『米沢史学』12, 1996).

14) 吉野武 「出土文字資料と多賀城碑」 전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볼 때 藤原朝臣朝獺가 多賀城碑를 세운 목적은 결국 多賀城의 수조가 藤原朝臣朝獺의 업적임을 현창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비를 세웠다고 하는 현재의 통설적 이해가¹⁵⁾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후술하는 것처럼 필자는 藤原朝臣朝獺 일신의 현창뿐만이 아니라 일족의 현창이라는 요소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세운 多賀城碑는 공적인 성격의 碑라기보다는 지극히 사적인 성격의 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신의 관위를 부풀려 새긴 것이나 천황의 명을 받아 만들었다는 점을 ‘奉勅’ 등의 형태로 언급할만한데도 전혀 그런 언급이 없는 점은 국가가 공적으로 세운 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편 神龜 元年(724)의 多賀城 조영과 天平寶字 6년(762)의 수조 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1963년에 시작된 多賀城跡의 고고학적 발굴 조사의 결과 多賀城의 변천에는 모두 4번의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I기(8세기 전반) - II기(8세기 후반) - III기(8세기 말~9세기 후반) - IV기(9세기 후반~10세기 중엽)로 이어지는 변화상 가운데 I기가 大野朝臣東人の 창건기에 해당하고 II기가 藤原朝臣朝獺의 수조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비문의 내용과 고고학적 발굴 성과 사이에 큰 모순점 없이 정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¹⁶⁾

이상으로 多賀城碑文의 내용에 관해 간략하나마 선학의 연구 성과를 빌어 현재의 연구 도달점을 확인하고 필자 개인의 의견도 개진해 보았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多賀城의 수축 및 建碑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藤原朝臣朝獺의 부친 藤原朝臣仲麻呂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藤原朝臣朝獺의 陸奥國에서의 활동과 성과는 모두 부친이 최고의 권력 절정기였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사실 朝獺의 활동은 철저하게 부친 仲麻呂의 의도와 맞물려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천평보자 연간(757~764)을 중심으로 한 藤原仲麻呂 정권은 적극적으로 군사적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양대 축으로서 소위 ‘新羅征討’와 에미시 經略을 들 수 있다.¹⁷⁾ 따라서 多賀城의 수조와 碑文도 ‘新羅征討’와 에미시 經略이라는 중심축의 연장 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5) 吉野武 「出土文字資料と多賀城碑」 전계 등등.

16) 多賀城跡의 발굴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石松好雄・桑原滋郎, 『古代日本を發掘する4 大宰府と多賀城』(岩波書店, 1985)를 참조하였다.

17) 岸俊男 『藤原仲麻呂』(吉川弘文館, 1969)

III. 碑文 이해의 전제 - 藤原仲麻呂의 ‘新羅征討’ 계획과 에미시 經略

먼저 ‘新羅征討’ 계획의 전개에 관해서 살펴보자. 藤原仲麻呂 정권이 신라정토 계획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758년에 견발해사로 파견되었던 小野朝臣田守로부터 당에서 일어난 安祿山の 난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부터였다. 小野田守의 보고를 들은 淳仁天皇은 大宰府에게 안록산은 하늘을 어기고 반역을 일으켰기에 불리하게 될 것이며, 서쪽을 도모할 수 없게 되면 도리어 海東을 노략질할까 걱정되니 계책을 세우고 대비하라는 취지의 칙을 내렸다.¹⁸⁾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준비되는 상황을 『續日本紀』의 사료에 의거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759년 6월에 신라 정벌을 위해 大宰府에 行軍式을 만들게 하고,¹⁹⁾ 동 8월에는 大宰帥 三品 船親王을 香椎廟에 보내어 신라 정벌을 아뢰게 하였다.²⁰⁾ 동 9월에는 5백 척의 병선(北陸道 89척, 山陰道 105척, 山陽道 161척, 南海道 105척)을 3년 내에 건조시킬 것을 諸國에 명하였다.²¹⁾ 760년 11월에는 授刀舍人과 中衛舍人 등 6인을 大宰府에 보내어 제갈량과 손자 등 중국의 병법을 배우게 하고²²⁾, 761년 정월에는 신라 정벌을 위해 美濃와 武藏의 소년 각 20명에게 신라어를 배우게 하였다²³⁾. 또한 그해 11월에는 동해, 남해, 서해의 절도사가 임명되었으며 아울러 그 관할 諸國으로부터 선박, 병사, 자

18) 『續日本紀』 천평보자 2년(758) 12월 무신조에 “遣渤海使小野朝臣田守等奏唐國消息曰…於是。勅大宰府曰。安祿山者。是狂胡狡豎也。違天起逆。事必不利。疑是不能計西。還更掠於海東。(중략) 其府帥船王。及大貳吉備朝臣眞備。俱是碩學。名顯當代。簡在朕心。委以重任。宜知此狀。預設奇謀。縱使不來。儲備無悔。其所謀上策。及應備雜事。一一具錄報來”라고 나온다.

19) 『續日本紀』 천평보자 3년(759) 6월 임자조에 “令大宰府造行軍式。以將伐新羅也”라고 나온다.

20) 『續日本紀』 천평보자 3년(759) 8월 기해조에 “遣大宰帥三品船親王於香椎廟 奏應伐新羅之狀”라고 나온다.

21) 『續日本紀』 천평보자 3년(759) 9월 임오조에 “造船五百艘。北陸道諸國八十九艘。山陰道諸國一百五艘。山陽道諸國一百六十一艘。南海道諸國一百五艘。並逐閑月營造。三年之內成功。爲征新羅也”라고 나온다.

22) 『續日本紀』 천평보자 4년(760) 11월 병신조에 “遣授刀舍人春日部三關 中衛舍人土師宿禰關成等六人於大宰府。大貳吉備朝臣眞備 令習諸葛亮八陳 孫子九地及結營向背”라고 나온다.

23) 『續日本紀』 천평보자 5년(761) 정월 을미조에 “令美濃武藏二國少年。每國二十人習新羅語。爲征新羅也”라고 나온다.

제, 水手 등을 동원하는 양을 모두 집계해보면, 33國 1섬으로부터 선박 394척, 병사 4만 7백명, 자제 202명, 수부 1만7천360명을 동원하는 명령이 내려왔다.²⁴⁾ 762년 11월에는 군사훈련을 익히기 위해 藤原朝臣巨勢麻呂 등을 香椎廟에 보내어 폐백을 바치고 전국의 神祇에게도 폐백과 弓矢를 바치게 하였다²⁵⁾. 이상이 신라 정토를 위해 취해진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기사들인데, 물론 이것이 관련 기사 전부를 취합한 것은 아니다.

당초 이 신라정토 계획에 관해서는 주지하는 것처럼 실제로 일본은 신라를 칠 의도가 있었는가? 아니면 藤原仲麻呂의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전쟁 예비상황을 조성한 일종의 국내용 퍼포먼스였는가? 그리고 당의 국내 혼란 소식이 왜 일본의 신라 침공 계획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는가? 아울러 이 과정에서 발해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갈 여의는 없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신라정토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이유로서 신라정토의 추진자였던 藤原仲麻呂의 세력약화 및 반란~몰락으로 이어지는 실각 과정, 그리고 일본과 제휴하고 있던 발해가 대당관계의 호전으로 굳이 신라 정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가 사라진 점 등으로 일본의 독자적인 힘만으로 신라정토를 실행에 옮기기 어려웠다는 점은 현실적 요인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²⁶⁾ 또한 신라정토의 배경으로서 일본=‘동이의 소제국’, 신라=반국이라는 일본 내부의 체제 이념을 강조하는 것은 연민수의 지적처럼 이념에 나타난 기대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전쟁상태에

24) 『續日本紀』 천평보자 5년(761) 11월 정유조에 “以從四位下藤原惠美朝臣朝狩爲東海道節度使。正五位下百濟朝臣足人。從五位上田中朝臣多太麻呂爲副。判官四人。錄事四人。其所管遠江。駿河。伊豆。甲斐。相摸。安房。上總。下總。常陸。上野。武藏。下野等十二國。檢定船一百五十二隻。兵士一萬五千七百人。子弟七十八人。水手七千五百廿人。數內二千四百人肥前國。二百人對馬嶋。從三位百濟王敬福爲南海道使。從五位上藤原朝臣田麻呂。從五位下小野朝臣石根爲副。判官四人。錄事四人。紀伊。阿波。讚岐。伊豫。土左。播磨。美作。備前。備中。備後。安藝。周防等十二國。檢定船一百廿一隻。兵士一萬二千五百人。子弟六十二人。水手四千九百廿人。正四位下吉備朝臣眞備爲西海道使。從五位上多治比眞人土作。佐伯宿祢美濃麻呂爲副。判官四人。錄事四人。筑前。筑後。肥後。豐前。豐後。日向。大隅。薩摩等八國。檢定船一百廿一隻。兵士一萬二千五百人。子弟六十二人。水手四千九百廿人。皆免三年田租。悉赴弓馬。兼調習五行之陳。其所遣兵士者。便役造兵器”라고 나온다.

25) 『續日本紀』 천평보자 6년(762) 11월 경인조에 “遣參議從三位武部卿藤原朝臣巨勢麻呂 散位外從五位下土師宿禰犬養, 奉幣于香椎廟。以爲征新羅調習軍旅也”, 동 경자조에 “奉幣及弓矢於天下神祇”라고 나온다.

26) 酒寄雅志 「八世紀における日本の外交と東アジア情勢」(『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2001).

돌입했다는 이해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²⁷⁾

여기서는 그런 문제보다는 762년이란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주목해보고 싶다. 앞서 759년 9월에 약 500척의 배를 3년 안에 완성하라는 기사를 소개하였는데 이것은 적어도 3년 뒤인 762년 가을 즈음 이후에는 신라 공격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가 읽혀진다. 즉 신라 정토는 최소 3년간을 그 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762년은 신라 정토 준비의 가장 막바지 절정기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해 12월 1일에 신라 공격 루트와는 정 반대에 위치한 동북 일본의 최전선 多賀城에서는 성의 수조 사실을 새긴 碑文이 건립되었다.

이제 눈을 돌려 동북의 에미시 접경 지역을 주시해보자. 일본 조정과 에미시의 관계는 언제나 전쟁 등으로 점철된 관계는 아니었다. 8세기 에미시와의 전쟁 추이를 보면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나라 시대 초기로서 709년~724년의 전쟁이고 또 하나는 나라 시대 후기 소위 38년전쟁으로서 774년~811년의 전쟁이 그것이다.

그런데 藤原朝臣朝鸕이 從五位下로 승진과 동시에 陸奥守로 임명된 것이 757년(天平寶字 원년) 7월인데²⁸⁾ 사실 聖武太上天皇이 사망하는 천평승보 8세(756) 5월까지의 동북 지역이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성무천황의 영토 불확대 방침에 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성무천황의 사후 곧바로 동북 변경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藤原仲麻呂였다.

藤原仲麻呂의 에미시 경략 정책은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영토를 북으로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주목할 부분이 陸奥國 桃生(모무노후)城과 出羽國 小勝(오가치)城에로의 진출이었다. 桃生城은 당시 에미시 경략의 최전선에 있던 牡鹿柵(모록책)보다 더 북방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 지역에 성책이 본격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천평보자 2년(758) 이듬해 10월 이후로 보이며 小勝城(雄勝柵)의 경우 또한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성책이 설치되는 것은 이듬해 2년 12월이었다. 그런데 다음의 사료는 정식으로 성책이 조영되기 전인데도 이미 조정에서는 이 두 곳에 성책을 설치하며 관리할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7) 연민수.

28) 『續日本紀』 천평보자 원년(757) 7월 갑인조.

『續日本紀』 천평보자 원년(757) 4월 신사조

(중략)古者。治民安國必以孝理。百行之本莫先於茲。宜令天下。家藏孝經一本。精勤誦習。倍加教授。百姓間有孝行通人。鄉閭欽仰者。宜令所由長官。具以名薦。其有不孝不恭不友不順者。宜配陸奧國桃生。出羽國小勝。以清風俗。亦捍邊防。(하략)

이 기사는 국가적으로 孝를 장려하면서 각 집마다 효경 1부씩을 소장하며 배울 것을 명하는데 不孝·不恭·不友·不順한 무리들은 陸奧國의 桃生과 出羽國의 小勝에 안치하여 풍속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아직 제대로 조영조차 되지 않은 곳에 사람들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결정한 사람은 사실상 藤原仲麻呂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鎭兵을 다시 부활시켜 배치하기로 결정해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²⁹⁾ 진병은 坂東諸國의 군단병 중에서 선발한 일종의 전업 병사를 말하는 것으로 과거 多賀城을 만들 때에 陸奧國의 병력을 증강하기 위해 각지의 성책에 배치한 병사였다. 하지만 이 진병은 천평 18년(746)에 일단 폐지되었는데 이번에 雄勝城과 桃生城의 조영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

藤原仲麻呂는 桃生城과 出羽國의 小勝城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秋田과 陸奧를 잇는 역로도 개설하고자 하였다. 천평보자 3년(759) 秋田과 陸奧 사이에 陸奧國의 嶺基(미네모토), 出羽國의 玉野(타마노), 避翼(사바네), 平戈(히라보코), 橫河(요코가와), 雄勝, 助河 등의 일곱 역을 두어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藤原朝臣朝鴉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분위기의 陸奧國이었다. 757년 부임 이후 雄勝城과 桃生城 조영, 雄勝郡·平鹿郡의 설치, 秋田과 陸奧를 잇는 역로 개통은 모두 그의 관할 지역 소관이었기에 그가 책임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해 내었지만 그 뒤에는 부친 藤原仲麻呂의 그림자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多賀城의 수조 또한 이런 동북 변경 확장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多賀城의 수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기에 한편에서는 秋田城에서도 대규모 改修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고고학적 발굴조사의 결과 판명되었다고 한다. 동북 변경의 확대는 多賀城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29) 『續日本紀』 천평보자 원년(757) 4월 신사조에 鎭兵이 등장한다.

천평보자 4년(760) 정월 按察使鎮守將軍 藤原朝臣朝獺은 雄勝城과 桃生城의 조영 성과를 인정받아 조정으로부터 從四位下の 위계를 받고 그 휘하의 陸奥介, 出羽守와 介 이하의 사람들에게도 위계가 하사되었다. 이런 일련의 경과를 보면 동북 변경의 에미시 경략에 적극적이었던 藤原仲麻呂이 먼저 플랜을 짜고 곧바로 자신의 아들 藤原朝臣朝獺를 陸奥에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에미시 경략을 추진해 나갔음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IV. 藤原氏の 顯彰과 蝦夷・말갈・‘신라정토’

지금까지 필자는 762년 多賀城의 수조가 어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였다. 당시 조정의 권력을 장악한 藤原仲麻呂는 대외적으로 ‘신라정토’와 에미시 經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며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 가려고 하고 있었다. 신라정토는 과거 660년 백제 멸망 직후에 이루어진 백제구원을 위한 대대적인 파병 이래 가장 대규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신라정토’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신라정토’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동안에 동북 지역에서는 에미시 경략의 거점인 秋田城과 多賀城에 대해 대대적인 수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인 변경 확대 정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변경 지배정책의 추진은 필연적으로 에미시의 반발을 불러올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견지에서 후속하는 소위 38년전쟁의 단추는 藤原仲麻呂 부자가 달아주고 간 유산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서 多賀城碑의 건립은 藤原朝臣朝獺의 자신의 업적을 현창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의 통설적 인식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방금 언급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생각해본다면 과연 비의 건립이 藤原朝臣朝獺의 자신만의 현창으로만 끝날 수 있을까? 플랜의 총괄 지휘자인 부친 藤原仲麻呂의 위광, 나아가 藤原氏 전체의 위상 제고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그래서 필자는 이 절에서 多賀城碑文 속의 내용이 현창할 수 있는 대상 및 내용의 최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일단 비문의 내용 중에서 필자의 관점에서 인물 내지 씨족 등의 현창과 관련이 있을 법한 요소를 추려내면 ‘京’, ‘蝦夷國’, ‘靺鞨國’, ‘大野朝臣東人’, ‘藤原朝臣朝獺’ 정도가 아닐

까 한다. 먼저 京(미야코), 蝦夷國, 靺鞨國에 대해서는 伊藤循의 연구가 있는데 伊藤은 이 비가 기본적으로 천황제 왕권을 현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⁰⁾ 비문에 전체 방향 표시인 西와 京과의 거리가 제일 먼저 기재되어 있는 것은 곧 천황(왕권)과의 거리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점, 藤原朝臣朝獺의 자기 자신에 대한 현창은 천황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점, 化內·化外の 경계점으로서 蝦夷國/靺鞨國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왕권과의 연관성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伊藤의 견해에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교화와 복속의 대상인 이종족 집단, 동북의 지방지배와 불가분의 관련성 속에서 만들어진 비석이니만큼 왕권을 현창의 대상에서 생각해볼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왕권과의 연관성만으로만 비와 비문의 표상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먼저 藤原朝臣朝獺이 비문에서 大野朝臣東人の 존재감을 나름 비중 있게 다루어주었다고 생각한다. 多賀城의 최초 창건자를 어떻게 표현해주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朝獺의 선택의 문제이다. 창건자의 이름을 안 쓰고 수조의 사실만 강조할 수도 있었을텐데 왜 朝獺은 東人の 존재감을 의식하였을까? 박약한 근거가 되겠지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양자 간의 씨족적 유대감 정도인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료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大野氏は 毛野氏의 동족(『新撰姓氏錄』右京皇別) 이자 車持君과도 동족 관계였으며 고대에는 소위 東國六腹朝臣으로³¹⁾ 불리고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車持君氏は 中臣鎌足の 부인 車持与志古娘을³²⁾ 배출하였으며 車持与志古娘은 장남 定惠(644~665)와 차남 藤原不比等(659~720)의 모친이

30) 伊藤循 전제.

31) 東國六腹朝臣(아즈마노쿠니 무츠하라노아손)은 毛野 지역 출신으로서 동일 出自를 공유하는 6개의 씨족(上毛野朝臣, 下毛野朝臣, 大野朝臣, 池田朝臣, 佐味朝臣, 車持朝臣)을 말한다.

『日本三代實錄』元慶 원년(877) 12월 25일 辛卯조에 “(전략)左京人從五位下行讃岐介都宿祢御西、文章博士從五位下兼行大內記越前權介都宿祢良香、散位正六位上都宿祢因雄、正七位下都宿祢興道四人、賜姓朝臣。其先、御間城入彦五十瓊殖天皇之後、與上毛野、大野、池田、佐味、車持朝臣同祖也。(후략)”이라고 나온다.

32) 『公卿補任』에는 不比等에 대해 설명하면서 “內大臣大職冠鎌足の二男。一名史, 母는 車持国子君의 女, 与志古娘也. 車持夫人”이라고 나온다. 平安時代の『竹取物語』에서 카구야히메(かぐや姫)에 구혼하는 5명의 귀공자 중의 한 사람인 車持皇子는 不比等を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불비등의 모친이 車持氏 출신이었다고 헤이안 시대에도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있다. 不比等の 모친이 鏡王女(원래 중대형황자의 妃)라는 설도 있으나³³⁾ 車持君氏 소생이라는 설도 당시 꽤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속일본기를 보면 종종 中臣鎌足과 藤原不比等の 치적과 功田의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車持君氏 소생의 藤原不比等は 소위 등원씨 四家の 시조로서 나라시대 초기의 최고 권력자였던만큼 藤原不比等の 외가인 車持君氏를 동족인 大野氏도 무시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만약 車持君氏를 매개로 한 大野氏와 藤原氏의 친분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면 비문 속의 大野朝臣東人 문제에도 실마리같은 단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다.

또 등원씨와의 혼맥 관계에서 중요한 씨족이 阿倍氏이다. 藤原朝臣朝獺의 할아버지이자 藤原仲麻呂의 아버지인 藤原武智麻呂(藤原不比等の 장남)의 부인 阿倍貞媛은 阿倍貞吉(阿倍真虎)의 딸이자 阿倍御主人의 손녀였다. 그녀의 소생이 장남 藤原豐成과 차남 藤原仲麻呂였다. 즉 藤原仲麻呂의 외가집은 바로 아베씨(阿倍御主人)였던 것이다. 阿倍氏의 존재감이 藤原仲麻呂와 藤原朝臣朝獺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多賀城 비문의 蝦夷國, 靺鞨國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왜냐 하면 7세기 중반 제명천황 시절에 전개된 蝦夷國과 속신국(靺鞨國)³⁴⁾ 정벌의 주인공이 阿倍比羅夫였기 때문이다. 阿倍比羅夫는 658년부터 660년까지 3년간 혼슈의 동해(일본해)쪽에서 홋카이도까지 올라가 蝦夷를 복속시키고 肅慎과도 교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참고로 阿倍比羅夫의 蝦夷와 속신 정벌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서기』 제명천황 6년(660) 3월조

遣阿倍臣。〈闕名。〉率船師二百艘伐肅慎國。阿倍臣以陸奧蝦夷令乘已船到大河側。於是渡嶋蝦夷一千餘屯聚海畔。向河而營。々中二人進而急叫曰。肅慎船師多來將殺我等之故。願欲濟河而仕官矣。阿倍臣遣船喚至兩箇蝦夷。問賊隱所與其船數。兩箇蝦夷便指隱所曰。船廿餘艘。卽遣使喚而不肯來。阿倍臣乃積綵帛。兵鐵等於海畔而令貪嗜。肅慎乃陳船師。繫羽於木。舉而爲旗。齊棹近來停於淺處。從一船裏出二老翁。廻行熟視所積綵帛等物。便換著單衫。各提布一端。乘船還去。俄而老翁更來脫置換衫。并置提布。乘船而退。

33) 『興福寺緣起』, 『大鏡』, 『公卿補任』, 『尊卑分脈』 등에는 天智天皇의 御落胤이라고 나온다.

34) 속신과 말갈의 이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

阿倍臣遣數船使喚。不肯來。復於弊賂辯嶋。食頃乞和。遂不肯聽。〈弊賂辯。度嶋之別也。〉據已柵戰。于時能登臣馬身龍爲敵被殺。猶戰未倦之間。賊破殺已妻子。

『일본서기』 제명천황 6년(660) 5월조

是月。(중략) 又阿倍引田臣,〈闕名〉獻夷五十餘。又於石上池邊作須彌山。高如廟塔。以饗肅慎卅七人。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阿倍比羅夫 집안과 藤原武智麻呂의 처가인 阿倍御主人 집안은 따지고 들어가면 계통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아베씨는 내부적으로 크게 두 계통이 있었는데 하나는 阿倍引田朝臣 계통이며 또 하나는 阿倍普勢朝臣 계통이다. 阿倍引田朝臣 계통은 阿倍臣比羅夫에서 阿倍朝臣으로 개성하였으며 阿倍朝臣宿奈麻呂는 그의 차남이었다. 이에 반해 阿倍普勢朝臣 계통은 효덕조의 左大臣 阿倍内麻呂에서 阿倍朝臣御主人로 이어지는데 아베씨 전체의 氏上 역할은 阿倍御主人이 하였으며 그의 사후에는 阿倍比羅夫의 아들인 阿倍宿奈麻呂 쪽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阿倍比羅夫의 에미시 숙신 정벌 기사는 아마도 당시 氏上 노릇을 하고 있던 아베씨 본종가(阿倍普勢氏 계통)가 최종적으로 수합하여 제출한 씨족 기록에 의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재 藤原仲麻呂와 藤原朝臣朝獵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며 추진하고 있었던 8세기 중반의 신라정토와 에미시 정략은 7세기 중반의 신라정토(백제구원전), 에미시 정토(나아가 숙신 정토)와 오버랩되는 이미지가 많다. 만약 이 오버랩을 인정할 수 있다면 비문의 말갈국은 7세기 중반 阿倍比羅夫의 숙신국의 재현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가지 부연해 두고 싶은 것은 비문의 말갈국이 발해국과는 별개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續日本紀』 養老 4년(720) 정월 병자조에도 “遣渡嶋津輕津司從七位上諸君鞍男等六人於靺鞨國。觀其風俗”이라고 보이듯이 말갈국이 나오는데 이 말갈국을 발해국으로 보기에는 사신의 위계나 신분 그리고 수행원 숫자 등 모든 면에서 발해사와는 격이 맞지 않는다. 이 점은 伊藤循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본다.³⁵⁾ 伊藤는 京에서 種子島까지의 거리를 5000여리라고 한 일본서기 천무천황 10년 8월조의 사례를 참조하여 비문에 보이는 京

35) 이등순.

및 말갈국까지의 제각각의 거리를 합친 4500리보다도 종자도가 더 멀리 있다고 느끼고 있던 고대 일본인에게 3000리 떨어져 있다고 한 말갈국은 일본열도 연해에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어차피 말갈국의 거리 3000리라는 수치 자체가 그다지 신빙성이 없는 수치라고 보면 말갈국은 관념상의 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V. 맺음말

「8세기 중엽 일본의 ‘新羅征討’ 소동과 多賀城碑·말갈국」에 대한 토론문

서보경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연구교수)

이 발표문은 고대 일본의 東北 지역 전체를 군사적, 행정적으로 지배하는 역할을 담당 한 多賀城의 修築 기념 비문을 소재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多賀城碑는 762년에 후지와라노에미노아손아사카리(藤原惠美朝臣朝獺)가 업적을 현창하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고, 비문에 새겨진 다하성과 京·蝦夷·常陸·下野·靺鞨과의 거리 산출 문제와 비문의 진위여부가 주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다하성비를 이른바 ‘후지와라노나카마로(藤原仲麻呂)정권’의 군사적 확대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 관련 사료는 전반적으로 잘 분석해 주셨습시다만,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1. p.8에서 ‘다하성비 건립 자체를 비 건립자 아사카리뿐 아니라 나카마로의 위광 나아가서는 후지와라씨 전체의 위상 제고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2. p.9에서 ‘만약 구루마모치노키미(車持君)를 매개로 한 오오노(大野)씨와 후지와라(藤原)씨의 친분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면 비문 속의 오오노아즈마비토(大野東人) 문제도 실마리같은 단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 758년(천평보자 2년)년 8월 고켄(孝謙)은 오오이오우(大炊王, 淳仁天皇)에게 양위하였다. 주닌(淳仁)은 나카마로에게 姓에 에미(惠美) 2자를 더하고 오시카쓰(押勝)라는 이름을 주었으며 惠美家印 사용을 허가하였다. 쇼무(聖武), 고묘(光明), 고겐에 대한 존호 봉정과 더불어 「尙舅」라는 존호를 부여했다. 이러한 존호의 부여는 나카마로가 다른 황족과 동등화 의식을 노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60년(천평보자 4년) 정월 나카마로는 황족 이외에 신하로서 처음으로 太師에 임명되었다. 일련의 사례는 나카마로가 후지와라씨 내에서도 別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惠美家の

아사카리가 오오노씨와의 씨족적 유대감에 관해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을까 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아즈마비토는 나라시대 무장으로 724년(神龜 1년) 이후 蝦夷 정토에 매진하여 739년(천평 11년)에 참의가 되었고, 741년(천평 13년)에는 후지와라노히로쓰구(藤原廣嗣)의 난을 진압한 훈공에 의해 종4위상으로 승진하였다. 743년(천평 15년) 5월 쇼무(聖武)천황이 皇嗣를 아베(阿倍)내친왕으로 정한 뒤 다치바나노모로에(橘諸兄)를 좌대신, 후지와라노토요나리(藤原豐成), 고세노나데마로(巨勢奈呂麻呂)가 中納言으로 승진하고 후지와라노카마로(藤原仲麻呂), 기노마로(紀麻路)가 참의로 새롭게 참가하는 형태로 태정관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 체제는 다치바나노모로에를 좌대신으로 승진시키고 있지만, 그가 중용하던 아가타이누카이노이와스키(縣犬養石次)와 오오노아즈마비토가 참의 직을 상실하게 된 반면 그 후임으로 후지와라노카마로가 의정에 참여한 점을 고려하면 정권 내에서 발언권과 주도력은 오히려 이전보다 억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아즈마비토의 활동은 다치바나씨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제3발표

조선과 중국(명·청)의 사행외교

발표 : 김경록 (군사편찬연구소) / 토론 : 민덕기 (청주대학교)

1. 머리말
2. 명 중심 국제질서와 사행외교의 정립
3. 명청교체와 대중국 사행외교의 변화
4. 청 중심 국제질서와 사행외교의 의미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 대외관계는 국내정치와 외적 표현이자 국제정세의 내적 수용이라 할 것이다. 즉, 국내정치에서 중시되었던 왕위의 계승, 첨예한 정치사건, 사회·경제적 변화 등 사안을 대외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요구하였는가에, 원명교체와 명청교체 등과 같은 국제질서에서 다양한 대상 국가 내지 민족간의 충돌과 화합의 긴장관계를 국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여 대응하였는가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시대 대외관계는 절대적으로 대중국관계가 중시되었으며, 대중국관계는 국내적·외적으로 치열하게,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은 고려말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공민왕대 명 중심 국제질서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과 봉전체제를 유지하며 조선의 안위와 필요성에 의해 대명사행이란 외교수단을 통해 조명관계를 맺었다. 조명관계에서 대명사행은 조공제도의 일환으로 홍무연간에 정립된 이후 조청관계에 이르기까지 준용되었다.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책봉국으로서 명과 조공국으로 조선은 상호간에 주어진 권리와 의무로서 책봉·조공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행을 통해 정례적이든 비정례적이든 상대국에 해당 외교사안과 사건에 대해 자국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하였으며, 상대국의 반응을 접수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 사행의 의미에 주목하여 그 동안 방대한 연구성과가 있어 조선시대 대중국 사행의 대략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사행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한정적이다. 사행은 조선과 명·청의 가장 강력한 정치·외교적 행위로서 시대별 사안별로 치열하게 자국의 이익에 충실한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행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경향이 현 학계의 사행연구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것이다.¹⁾ 사행연구는 1960년대 이후 사대사행, 무역, 문화전래, 사행을

1) 이춘희, 「19세기 燕行文人の 文學交流 양상 및 의미 - 藕船 李尙迪를 中心으로」, 『한국어문학연구』 45, 2005; 李迎春, 「麟坪大君의 燕行錄 : 燕途紀行」, 『사학연구』 82, 2006; 김주한, 「燕行錄을 통해 본 韓中文化交流」, 『모산학보』 2, 1991; 임기중, 「수로연행록과 수로연행도」, 『한국어문학연구』 43, 2004; 김명순, 「洪錫謨의 游燕藁 研究」, 『동방한문학』 27, 2004; 정훈식, 「홍대용 연행록의 구성방식과 성격」, 『한국문학논총』 40, 2005; 노기춘, 「李翊模의 丙辰燕行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3,

통한 조선의 북학흐름 등의 기본적인 연구경향으로 진행되었다.²⁾ 물론 외교, 사상, 경제, 문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사행을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도 사행의 역사상을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명·청으로 사행을 파견하였던 근본적인 목적을 도외시하고 길과 聞見에만 천착한다면, 역사적 진실과 적지않은 간극을 가질 것이다. 조선시대 대중국 사행에 참여하였던 사대부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항목은 왕명을 받아 사행에 임하면서 충실히 왕명을 수행하여 옥됨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정작 사신들이 부여받은 사행목적은 간과하고 이전에 수없이 왕래하였던 여정에서 문견한 바를 해당 사신이 유일하고 처음으로 인지하고 서술한 것처럼 분석한다면 사행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 발표는 조선시대 대중국 사행의 본질적인 의미를 정리하기 위해 조선시대 국제질서의 변화과정, 대중국 사행의 제도, 사행의 절차, 사행구성, 사행명칭, 외교문서, 사행원의 역할, 사행기록, 사행의 종료와 주재관(大使體制) 등을 조명, 조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대중국 사행의 역사적 의미를 분석해본다.

맺음말에서 거듭 정리하겠지만, 조선시대 사행연구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칫 제도사라고 하여 사상사, 정치사, 문화사에 비하여 낮추어

2005; 김경록, 「조선초기 대명외교와 외교절차」, 『한국사론』 44, 2000;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1970; 이현종, 「明使接待考」, 『향토서울』 12, 1961; 김경록, 「조선시대 사신접대와 영접도감」, 『한국학보』 117, 2004; 김구진, 「朝鮮前期 韓·中關係史의 試論: 朝鮮과 明의 使行과 그 性格에 대하여」, 『홍익사학』 4, 1990; 백옥경, 『조선전기 역관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0; 김경록, 「조선초기 통사의 역할과 위상변화」, 『한국학보』 101, 2000; 김일환, 「조선후기 중국사행의 규모와 구성」, 『연행의 사회사』 경기문화재단, 2005; 이원순, 「赴京使行의 文化史的 意義」, 『史學研究』 36, 1983; 정석원, 「朝鮮의 中國書籍輸入과 燕行의 機能」, 『중국어문학논집』 4, 1992; 金聖七, 「燕行小考」 『歷史學報』 12, 1960; 임기중, 『연행록전집』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박원호, 『최부 「표해록」역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최부 「표해록」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홍성구, 「두 외국인의 눈에 비친 15·16세기의 중국」, 『명청사연구』 24, 2005; 권인용, 「명중기 조선의 입명사행-소세양의 『부경일기』를 통하여-」, 『명청사연구』 19, 2003; 「명중기 조선의 종계변무와 대명외교-權機의 『조천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4, 2005; 김구진, 「조선전기 한·중 관계사의 시론-조선과 명의 사행과 그 성격-」, 『홍익사학』 4, 1990; 정은주, 「명청교체기 對明 海路使行記錄畵 연구」, 『명청사연구』 27, 2007; 최소자·정혜중·송미령, 『18세기 연행록과 중국사회』, 해안, 2007.

2) 김성철, 「연행소고」, 『역사학보』 12, 1960. 본격적인 사행관련 연구의 시작이었던 위 글은 한국전쟁시기 납북된 김성철 교수의 未稿를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다.

보거나 그 오랜 정리과정의 피로감으로 회피한다면 사행연구는 제 위치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한 편의 발표문에서 모든 것을 정리할 수는 없더라도 개별 사행이 아닌 보편적인 사행의 모습을 통해 향후 사행연구를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명 중심 국제질서와 사행외교의 정립

최근에 조선시대 국제질서에 관련하여 조공체제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조공체제가 조선시대 국제질서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유용한 측면이 더 많다는 판단이다.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통시대적으로 설명하면서 조선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고대 중국사회에서 책봉과 조공은 이후 시대변화 과정을 거쳐 국제사회로 전환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주변국에 대해 강요한 책봉·조공은 고대 중국사회의 책봉·조공과는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그러나 형식과 이념을 적용하였을 뿐이지 시대변화에 따른 국제정세를 반영하여 시대별로 조공체제는 중층적이고 다원화되어 변화하였다. 그럼에도 조공체제의 핵심사항은 계서적인 단일성이다.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 중심 국제질서로 전환되면서 고려는 양 국제질서 가운데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고려전기, 동아시아 제 세력의 독자적인 발전과 진출이 있었지만, 중원의 송은 文治主義 崇文정책으로 군사적 무력함을 초래하여 요, 금, 원으로 이어지는 다원화된 국제질서를 형성하였다. 다원적인 국제질서에서 고려 역시 국가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稱帝하고 고려 중심의 다원적 천하관에서 外蕃人을 인식하는 등 능동적이고 실리적인 국제관계를 맺었다.³⁾ 즉, 10~13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중원의 왕조에 의한 일원적인 국제질서가 아

3) 노명호, 「東明王篇과 李奎報의 다원적 天下觀」, 『진단학보』 83, 1997; 「고려시대의 다원적 天下觀과 海東天子」, 『한국사연구』 105, 1999; 추명엽, 「고려전기 ‘번’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2002; 「高麗時期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한국사연구』 129, 2005; 박재우, 「고려 군주의 국제적 위상」, 『한국사학보』 20, 2005, 54~58쪽; 박경안, 「고려전기 다원적 국제관계와 국가-문화 귀속감」, 『동방학지』 129, 2005, 186~187쪽; 「고려전기 외래인의 문화적 특성과 정착과정」, 『한국중세사연구』 42, 2015, 250~254쪽.

나라 다국가체제 혹은 다원적 국제관계가 성립되었다.⁴⁾ 세계제국 원의 등장은 다원적 국제질서를 일원적인 국제질서로 전환시켜 조공체제에서 존중되었던 쌍무적 관계를 패권적·계서적으로 전환시켰다.⁵⁾

원은 광범위한 지역에 다양한 세력에 대한 일원적인 통치를 위해 법제와 의식을 제정하고 동아시아 제 국가에 대해 조공체제의 각종 제도와 의례를 강요하였으며, 고려는 사행의 파견, 국왕의 사후에 諡號를 追尊하는 등 이를 준행했다.⁶⁾ 고려는 원간섭기의 여원관계를 華夷論의 천하관으로 정당화하고, 관학적 원의 성리학을 도입하여 심화시키고, 지식인들은 강압적이고 침탈성격이 강한 원간섭기 국제질서를 현실적으로 인식했다. 고려는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虎符國王之印’의 印章 收受, 年號와 頒曆하여 책봉을 받음으로써 사행을 파견하여 조공했다.⁷⁾

고려가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공관계를 맺었다가 변화의 단초는 열린 시기는 공민왕 치세였다. 공민왕이 즉위한 뒤 강력한 국왕권 확립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기철로 대변되는 부원세력을 일신하였지만, 이는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이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민왕의 입장에서 대안없이 원의 책봉과 원에 대한 조공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인군웅이 등장하여 원의 통치권이 이완되면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주목했다. 강력한 명이 건국되면서 원에 대한 정벌을 진행하자 공민왕은 명 중심 국제질서에 새로 편입하여 고려의 안위를 도모하고자 했다.⁸⁾ 즉, 공민왕은 원 중심 조공

4) 윤영인, 「10-13세기 동북아시아 다원적 국제질서에서의 책봉과 맹약」, 『동양사학연구』 101, 2007. 120~121; 138~140쪽. 12세기 초 고려는 송의 책봉에 대해 명목적 책봉이므로 거부하였다.

5) 전해중, 「韓中朝貢關係考：韓中關係史의 鳥瞰을 위한 導論」, 『동양사학연구』 1, 1966. 31~34쪽.

6) 『고려사』 世家32, 충렬왕 34년 정월 丁亥; 世家38, 공민왕 2년 5월 乙酉; 世家33, 충선왕 2년 7월 乙未.

7) 『東文選』 卷62, 上征東省書; 『櫟翁稗說』 前集1; 『稼亭集』 卷8, 送金同年東陽遊上國序; 『牧隱文藁』 卷9, 選粹集序; 이익주, 「14세기 후반 원명교체와 한반도」, 『동북아 국제질서 속의 한국사』, 역사학회, 2006, 175쪽; 「세계질서와 고려-몽골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2010, 176~191쪽.

8) 『史文』 卷2, 歸附各國山川降香致祭事; 前元平章劉益投順開設遼東衛指揮使司事.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현실』 64, 2007, 201~226쪽. 공민왕대 고려의 대외관계는 조공체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원 중심 조공체제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국내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던 시기(공민왕 즉위~공민왕 9년), 원의 통치체계가 붕괴되고 명 중심 조공체제가 등장하는 시기(공민왕 10년~공민왕 16년), 명 중심 조공체제 하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던 北元세력을 외교카드로 활용하여 요동에

체제에서 점차 이원적인 조공체제를 외교적으로 활용하였다.

고려말 이원적인 국제질서를 활용하였던 외교인식과 정책은 이성계의 집권이후 명 중심 국제질서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역성혁명 세력은 명분론적 화이론에 입각하여 天命을 받은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될 것을 주장했다.⁹⁾ 공민왕의 시해, 우왕 초기 친원세력의 득세, 홍무제의 고려에 대한 외교적 강압 등이 겹쳐지면서 고려말 조명관계는 긴장과 대립의 격동기를 경험하였다.¹⁰⁾ 위화도 회군으로 집권한 이성계에 의해 역성혁명이 일어나 조선이 건국되면서 대외관계는 보다 긴밀하게 변화되었다. 조선시대 국제질서는 엄연히 중심국가로서 명은 책봉국의 지위를 가지고 주변국에 대해 책봉을 통해 명 중심 국제질서를 형성했다. 이러한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된 조선은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아 대외적인 안정과 국내정치에서 왕실의 위엄과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¹¹⁾

홍무제는 원말 사회혼란의 근본 원인이 천명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은 원에 있다는 天命論의 인식을 하고,¹²⁾ 무엇보다 황실과 귀족의 만연한 부정부패, 황제에게 집중되지 못한 통치권과 군사권, 통치의 기반이 되는 禮制의 부재, 지역차별 및 민족차별로 인한 민심이반, 가혹한 착취로 인한 경제불안, 황실과 귀족의 과도한 종교집착 등을 일소하기 위한 개혁작업을 단행했다.¹³⁾ 홍무연간 정치변화, 문물·제도정비, 군사상황, 대외관계 등을 종합하면 한인군용으로 성장하는 시기(1352~1366), 오왕 즉위 및 명 건국초기(1367~1380), 중서성을 폐지하고 본격적으로 황제중심 통치체계를 형성하는 시기(1381~1398)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⁴⁾ 이 가운데 홍무제는 오왕으로 즉위한 뒤 다음 해 명을 건국하면서 황제중심의 일원적인 통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각종 예제와 제도를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 시기(공민왕 17년~공민왕 23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9) 『三峰集』 卷3, 贈任鎮撫詩序.

10) 김경록,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 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 35, 2011, 13~21쪽.

11) 『三峰集』 卷3, 陶隱文集序; 『高麗史』 列傳30, 鄭夢周; 『陽村集』 卷25, 事大表箋類.

12) 『명태조실록』 권26, 오 원년 10월 병인. 홍무제는 북벌격문을 반포하여 중국이 안에서 이적을 제어하고 이적은 밖에서 중국을 받들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천명으로 송을 이어 원이 중국이 되었지만 원은 이후 조훈을 지키지 않고 강상을 무너뜨려 천명이 떠나게 되었다고 천명했다.

13) 김경록, 「명초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과 ‘대명률」, 『법사학연구』 53, 2016; 「명초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 『군사』 99, 2016.

14) 김경록, 「명대 홍무제의 종교정책과 통치구상」, 『동양사학회 2016년 춘계연토회 발표문』, 2016.

정비하였다. 특히 홍무제는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예제와 법제를 정비하고, 황제중심의 일원적인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공문제도를 정비하였다.¹⁵⁾

홍무제는 전통 한족 중화국가의 건설을 표방하고 각종 법률, 禮制 등을 정비하여 통치체계를 확립하고, 무력에 의한 통치를 넘어 禮治와 德治를 지향했으며, 대외적으로 조공제도를 정비했다. 중화주의에 기반한 서계적 성격의 조공제도는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필수적인 외교 교섭방식이자 절차로 조공국은 이의 준용을 강제되었다. 홍무제는 원대에 체계적이지 못했던 조공절차를 보다 제도화시켜 조공국과 사행규모의 확대, 사행횟수·사행로·구성·외교문서 등 수속·절차의 엄격함, 사행의 관리조직을 정비했다. 『諸司職掌』, 『洪武禮制』, 『大明會典』 등이 명대에 순차적으로 제정된 점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조공제도의 정비를 통해 명 중심 국제질서 하의 책봉국과 조공국 관계를 ‘一視同仁’의 관념에서 중화적 세계질서로 구상한 것으로 중화의 명으로부터 德과 禮가 퍼져나가는 것은 해와 달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고, 事大字小라는 禮에 입각한 소통을 강조하였다.¹⁶⁾

1392년 역성혁명으로 건국된 조선은 역성혁명의 정치, 윤리적 문제와 건국초 불안한 정세를 극복하기 위해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책봉을 받음으로서 왕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에 조선은 대명사행을 통해 조명관계를 원활히 전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조선의 대명사행은 역성혁명이후 知密直司事 趙胖을 파견하여 이성계의 즉위 사실을 통보하면서 시작되었다.¹⁷⁾ 조반의 사행은 이성계가 壽昌宮에서 즉위한 다음 날, 대소신료가 건의하여 都評議使司 명의의 奏文을 지참하여 전달했다.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선위하는 양식으로 전개된 이성계의 즉위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국세력에 의해 철저히 준비되어 진행되었다. 즉위이후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명에 사행을 파견하여 즉위를 통보하는 것이었다. 이후 태조는 군사조직이었던 義興親軍衛를 설치하여 都摠中外諸軍事府를 폐지하고, 백관으로 하여금 고려시대 제도의 연혁과 장단점을 아뢰도록 하고, 개국세력이었던 종친과 대신으로 하여금 여러 도의 군사를 분장하도록 했다.¹⁸⁾ 즉위이후 조명관계와 군사문제가 최우선 문제로 사행은 조선의 시작과 함께 최우선시 되

15) 김경록, 「명대 공문제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 26, 2006.

16) 김경록, 「홍무제의 대외인식과 조공제도의 정비」, 『명청사연구』 37, 2012.

17) 『명태조실록』 권221, 홍무 25년 9월 경인.

18)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정유.

었으며, 조선시대 사행의 정치외교적 의미가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대명사행은 여말선초 긴장상태였던 대명관계로 인하여 우선적으로 명에서 제정한 사행제도를 철저히 준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조선은 건국이후 홍무제가 추진하여 정비된 각종 전장제도를 모범으로 문물제도를 정비하였다. 형벌체계는 명의 『大明律』 체계를 도입하여, 의례정비는 『洪武禮制』를 도입하여, 공문체계는 명대 공문체계를 수용하여 조선에 적합하도록 적용했다.¹⁹⁾ 조공제도의 핵심사항이었던 사행, 외교문서의 행이 제도 등도 명 중심 조공체제의 조공제도에 입각하여 시행되었다.²⁰⁾

조선시대 대중국 관계에서 사행은 국왕 명의의 문서를 지참하고 구체적인 외교목적의 왕명을 받아 이를 수행하는 외교활동이었다. 명 중심의 국제질서라는 계서적인 국제관계에서 조선은 조선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대외관계를 목적으로 했다. 조선과 명 사이에 이익의 충돌현상이 발생하면 이익의 해결을 위해 조선중심의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하는데 대외활동은 적극적으로 사행을 파견하여 조선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하고 전달받았으며, 명 사행을 접대하여 명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받고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전달했다. 즉, 조명관계에서 외교활동은 사행파견과 명사접대로 구성되었다.²¹⁾ 이때 조선과 명의 사행은 필수적으로 조선국왕과 명 황제 또는 관부 명의의 외교문서를 지참하여 전달하였다. 이런 점에서 조선시대 조선과 중국의 사행은 외교문서 전달이라는 기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중간 사행의 일반적인 절차는 ① 사행목적 설정, ② 사행원 구성, ③ 외교문서 작성, ④ 出行(慕華館에서 拜表儀式 거행), ⑤ 遼東都司에 통보(청대는 봉황성에 통보하여 성경으로 보고되도록 하였으며, 명·청대 義州를 출발하면서 票文을 발부받음), ⑥ 遼東八站-遼東都司-山海關 入關, ⑦ 京師 도착, ⑧ 會同館 入館, ⑨ 禮部를 통해 行事日程 통보받음, ⑩ 表箋文을 納入, ⑪ 儀禮行事에 참가, ⑫ 賞賜를 지급받음, ⑬ 開市, ⑭ 先來通事の 파견,

19)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경인문화사, 2007, 34~65쪽; 이범직, 「國朝五禮의 성립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122, 1989, 16~17쪽; 박준호, 「洪武禮制와 조선 초기 공문서제도」, 『고문서연구』 22, 2003, 144~147쪽; 김경록, 「명대 공문제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 26, 2006; 「명초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과 '대명률」, 『법사학연구』 53, 2016.

20) 김경록, 「조선초기 대명외교와 외교절차」, 『한국사론』 44, 2000, 10쪽; 「조선시대 사대문서의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 134, 2006. 39쪽.

21) 김경록, 「조선시대 사신접대와 영접도감」, 『한국학보』 117, 2004.

⑮ 京師 출발 등이었다. 돌아오는 순서는 赴京하는 순서의 역순이었다. 또한 대명사행은 赴京使行과 요동사행으로 구분하고, 부경사행은 節行과 別行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대명사행은 구체적으로 計稟使, 奏聞使, 謝恩使, 千秋進賀使, 聖節使, 賀正使, 千秋節使, 押馬使, 節日使, 謝恩進表使, 登極使, 陳慰使, 進香使, 謝誥使, 進賀使, 納徵使, 告朔使, 處女進獻使, 唐人押送官, 欽問起居使, 種馬管押使, 正朝使, 賫進官, 押領官, 押馬官, 賫咨官 등이 있었다.²²⁾ 이 가운데, 절행은 정조사, 성절사, 천추사, 동지사 등이 있으며, 별행은 謝恩使, 奏請使, 進賀使, 陳慰使, 進香使, 辨誣使, 問安使, 參覈使, 進獻使, 賫咨行 등이다.²³⁾

외교문서는 조·중간 발생한 외교사안에 대한 조선의 외교정책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외교목적을 달성하고자 작성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서였다. 최고 등급의 외교문서에 의해 사행의 종류, 목적지, 경로, 등급, 구성 등이 결정된다. 조·중간 대외적 충돌이 발생하면 외교사건이나 사안이 발생하면 조선은 해당 사건에 대해 외교목적을 설정하고, 외교목적 달성을 위한 요구나 대응을 조선의 최고 문장과 재료로 ① 製述, ② 繕寫, ③ 讀准黑草(黑草查對), ④ 畢寫, ⑤ 安寶, ⑥ 封裏의 단계를 거쳐 생산되어 서울과 사행로에 서의 查對를 반드시 시행하였다.²⁴⁾

외교문서는 조선문서는 접수대상을 기준으로 對皇城문서와 對關아문서로 구분할 수 있으며, 對皇城문서는 表文, 箋文, 祭文, 奏文으로 구성되고, 對關아문서는 咨文, 申文, 呈文, 單子 등이 있다.²⁵⁾ 대皇城문서는 京師까지 사행하여 전달하였으며, 대관아문서는 경사 또는 요동도사(청대는 盛京)에 전달하여 명의 공문체계에 의해 경사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외교문서에 의해 사행의 등급, 명칭, 경로 등이 결정되는데, 명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皇城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대관아문서를 지참하는 경우는 사행이라 하지 않고 賫咨官이라 하여 差官의 의미가 있었다. 대표적인 대皇城문서였던 표문은 賀表, 方物

22) 김경록, 「조선초기 대명외교와 외교절차」, 『한국사론』 44, 2000, 23~34쪽.

23) 구체적인 개별 사행에 대한 설명은 김경록, 「조선시대 조공체제와 대중국 사행」, 『명청사연구』 30, 2008, 참조.

24) 김경록, 「조선후기 사대문서의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5, 2005; 「조선시대 사대문서의 생산과 전달 체계」, 『한국사연구』 134, 2006;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의 접수·보존체계」, 『한국사연구』 136, 2007;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와 외교정보의 수집·보존체계」, 『동북아역사논총』 25, 2009; 「조선시대 외교문서 자문의 행이체계와 변화과정」, 『고문서연구』 46, 2015.

25) 김경록, 「조선후기 외교문서의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5, 2005, 185~192쪽.

表, 謝恩表, 進賀表, 陳慰表, 起居表, 告訃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²⁶⁾ 성절·동지·정조표문을 지참하면 성절사행, 동지사행, 정조사행, 사은표문을 지참하면 사은사행, 주문을 지참하면 進奏使行, 奏聞使行, 奏請使行, 진위표문은 陳慰使行, 進香使行, 起居表文은 欽問起居使行, 告訃表는 告訃使行 등이라 지칭했다.

한편, 외교문서를 지참할 등급을 고려하여 사신을 선정하는데, 경사까지 가는 赴京使行의 경우는 정사, 부사, 서장관을 모두 포함한 사신단을 구성하였다. 이에 비하여 요동도 사까지 가는 요동사행의 경우는 사신 한 명으로 구성되었다. 정사는 사행의 등급을 반영하는 사신으로 正使는 사행을 대표하는 역할과 使行의 등급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사는 宗親·皇親·宰相班列 등 종친이나 재상 품계 이상으로 차정했는데, 경사에서 중국의 접대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종은 사은사행 정사로 勳親으로 1품 판부사 李澄보다 명이 부마를 우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駙馬를 차정하기도 했으며,²⁷⁾ 사행의 외교활동 중 가장 비중이 큰 儀禮에서 정사는 사행을 대표하였다. 부사는 정사를 보조하는 외교에 정통하여 명 관원을 專對할 능력이 있는 관원이 임명되었다. 서장관은 사행을 규찰하고 사행기록을 담당하였던 관원이 임명되었다.²⁸⁾

조선은 사신선정, 외교문서 작성과 함께 당시 정세를 고려하여 발행시기와 사행경로를 결정했다. 경사에 도착하는 시기와 계절, 여진과 몽골 등 사행경로의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발행시기에 맞춰 사신에게 외교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지침으로 사행절목이 하달되어 발행했다.²⁹⁾ 사신이 사행과정에서 황제와 명 관원을 주대할 때 구체적인 활동의 지침으로 받아가는 사행절목은 해당 사행의 사행목적에 포함하며,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신이 발행에 앞서 국왕을 입대하였을 때 거듭 전달되었다.

사행의 구성은 三使 이외에 정관에 해당하는 從事官과 수종원으로 구성되어 200여명을 넘는 규모까지 있었다. 조선후기 조청관계에서 사행은 교역을 위한 인원이 추가되면서 300여명을 넘는 규모도 있었다.³⁰⁾ 이 가운데 정관의 많은 수가 역관이 담당했는데, 통사

26) 『典律通補』別編, 事大文字式.

27) 『세종실록』권46, 세종 11년 10월 경자.

28) 김경록, 「조선초기 대명외교와 외교절차」, 『한국사론』 44, 2000, 25~30쪽. 서장관은 2품 이상 정사에 파견되었다가 1432년(세종 14)이후 3품 정사에도 차정되었다.

29) 『성종실록』권123, 성종 11년 11월 을유.

로 임명된 인물 이외에 敎誨 이하로 名目이 있는 인원(押物官, 打角夫 등)이었다. 이들 통사는 실무 외교관으로 사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출입절차 및 중국 관원과의 교섭, 외교문서의 해당 관부 전달, 중국의 외교문서 수령, 각종 외교정보의 수집, 교역 등을 담당했다.³¹⁾

사행로는 명대 의주를 출발하여 요동도사를 경유하여 경사로 이어지는 경로가 일반적이며, 명청교체기 해로사행을 시행하기도 했지만, 청대 심양의 성경을 경유하여 경사로 들어가는 경로였다. 사행로는 서울에서 義州까지 1,186리의 국내구간과 의주에서 북경까지 2,012리의 국외구간으로 구분되는데, 요동을 비롯한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아 안전한 사행로가 선택되었다. 여명관계는 登州와 萊州를 거쳐 남경으로 들어가는 해로가 이용되었는데, 1372년(공민왕 21) 사행이 폭풍을 만나 39명이 사망하자 육로로 전환됐다.³²⁾ 홍무연간 조선사행의 정보수집을 우려하여 육로와 수로를 병행되었다가 영락연간 북경으로 천도이후 육로가 정례화되었다. 건주여진의 위협이 높아지자 조선의 요구로 成化연간 遼東八站 이남에 도로를 만들고 城堡를 설치하여 1489년(성종20) 새로운 노정이 완성됐다.³³⁾

이러한 사행로의 확정은 사행주기(貢期)와 관련되는데, 사행주기는 외교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집행은 사행주기가 일정하였지만, 주청사행, 진주사행 등은 해당 외교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되어 사행주기가 대체로 집행에 비해 길었다. 조명관계에서 사행주기는 1372년(홍무 5)에 제정된 朝貢國의 貢期규정을 준수했다. 중국 경사에 머무는 기일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명대는 40여일을, 청대에는 60일 정도였다. 이와 달리 중종대 정조사 安瞻은 52일을 머물기도 하였다.³⁴⁾ 경사체류기일은 외교문서의 접수기간이며, 교역의 기간이며, 체류하는 동안 황실喪事의 발생, 황제의 避暑, 사행로의

30) 김경록, 「조선초기 대명외교와 외교절차」, 『한국사론』 44, 2000, 30~33쪽. 정관은 堂上譯官, 上通事, 次上通事, 漢學習讀官, 通事, 押馬, 押物, 理馬, 司僕官, 寫字官, 醫員, 打角夫, 監廚, 廚子, 乾糧掌務官, 養馬, 馬醫, 軍官 등이며, 수종인원은 驅趕馱子軍, 牽馬陪, 各官의 從人, 別破陳, 火砲匠, 官奴 등이었다.

31) 김경록, 「조선초기 통사의 활동과 위상 변화」, 『한국학보』 101, 2000; 서인범, 「조선전기의 외교 실무자 通事」, 『동국사학』 53, 2012.

32) 『명태조실록』 권75, 홍무 5년 8월 계묘; 권106, 홍무 9년 5월 임오.

33) 『명효종실록』 권30, 홍치 2년 9월 임신; 『殊域周咨錄』 卷1, 東夷, 朝鮮.

34) 『중종실록』 권10, 중종 5년 3월 계유.

賊情, 사행원의 發病 등 공적업무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변화되었다. 1572년(선조 5)에 隆慶帝의 崩逝에 대한 진향사 吳祥은 교역금지로 인해 경사체류 26일 만에 回程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奏請使 외에는 30일 이내에 회정하도록 했다.³⁵⁾ 이러한 외교문서, 사행종류, 사행절차, 사행구성, 사행로, 사행주기 등은 대체적으로 조명관계에서 큰 변화없이 홍무연간에 제정된 사행제도에 입각하여 시행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의 건국과 동시에 조·명간 사행은 시기별 외교사안의 해결을 위해 활발하게 시행되었다. 15세기 사행은 다음 표와 같이 조선의 대명사행 및 명의 대조선사행이 있었다.

〈표 1〉 朝鮮初期 對明使行과 明使出來 횟수

國王 使行	太祖	定宗	太宗	世宗	文宗	端宗	世祖	睿宗	成宗	平均	合計
赴京使行	73	5	125	215	19	18	106	6	102	74.33	669
遼東使行	13	0	85	132	7	16	22	1	40	35.11	316
明使出來	9	1	44	40	2	3	8	1	8	13.50	116
合計	95	6	254	387	28	37	136	8	150	122.33	1,101

* 전거: 김경록, 「조선초기 대명외교와 외교절차」, 『한국사론』 44, 2000. 재인용.

* 주요참고사료: 『朝鮮王朝實錄』(태조~성종), 『明實錄』(태조~효종)

* 赴京使行은 節行(正朝使·聖節使·千秋使), 謝恩使, 奏聞使, 計稟使, 管押使 등을 포함.

* 遼東使行은 使行 목적지가 遼東都司였던 押領官, 質正官, 賫咨官 등을 포함.

* 明使는 여진지역에 파견되었다가 서울에 들어온 明使까지 포함.

조선은 부경사행 669회, 요동사행 316회를 포함하여 총 985회의 사행을 파견하였으며, 명사는 116회 출래하여, 조명간 총 1,101회의 사행이 왕래했다. 즉, 1392년부터 1494년까지 102년 동안 연 평균 10.8회 왕래한 것이다. 단순히 건국초기 조명간 긴장관계로 인한 사행왕래 뿐만 아니라 15세기 조·명간 활발한 외교활동이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태조대 건국직후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기 위한 조선의 봉전외교가 활발하게 시도되었지만, 여진족과 요동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홍무제의 부정적인 조선인식이 작용하여 조명 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조선 건국직후 홍무제는 고려의 요동정벌 군사행동, 위화도회

35) 『선조실록』 권182, 선조 37년 12월 계축.

군의 정변, 조선의 친명정책 표방에 대해 다소 완화된 외교정책을 시행하여 이전까지 첨예하게 강요하였던 국경선문제를 강제하지 않았다.³⁶⁾ 1392년(홍무 25) 조선개국과 동시에 명에 이성계의 즉위를 통보하는 사행을 파견하자 홍무제는 불간섭의 입장을 견지했다. 태조는 즉위통보, 국호선정 의뢰, 고명의 요구 등 사안으로 채워 6년간 부정사행 73회, 요동사행 13회 등 86회의 사행을 파견했다. 이에 대해 홍무제는 지속적으로 조선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책봉을 거부하고, 혼단사건에 대한 질책, 말교역의 요구, 사행을 통한 정보 및 邊將회유 질책, 윤이·이초사건과 종계문제, 표전문사건, 여진족 회유 질책 등 강압적인 외교정책을 시행했다.³⁷⁾ 이 시기 명사출래가 적었던 것은 홍무제 스스로 요동도사로 하여금 조선사행의 국경출입을 금지하였기 때문이며, 명의 의도는 조선사행의 복귀시 전달되었다. 특히, 여진족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전개된 조·명간 첨예한 대립은 양측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았다. 주목되는 점은 홍무제의 대조선 압박이 실제 군사적 행동이 아닌 외교적 사행단절로 표현된 것이다.³⁸⁾ 사행의 단절은 조공의 단절이며, 외교적으로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선의 고립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조선은 사행단절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봉전의 거부와 사행단절은 책봉국 명으로서 조공국 조선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외교적 압박이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조선이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사단이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홍무제는 윤이·이초의 고변을 왜곡하여 종계문제로 활용하거나 국내의 文字獄을 대외적으로 적용시켜 표전문사건으로 강제하였다.³⁹⁾

조·명관계의 전환은 태종대에 이루어졌다. 조선에서 왕자의 난으로 즉위한 태종은 중앙집권적 국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신과 외척을 제거하고, 의정부 기능을 축소하여 六曹直啓制를 단행하였다. 代言司를 강화하여 6대언이 육조의 사무를 맡도록 하고, 의정부·사헌부·사간원·승정원·한성부 등을 제외한 중앙의 조직을 육조에 분속시켰다. 문란한 지방조직을 정비하여 8도체제를 확립하였다. 군사지휘체계를 정비하여 承樞府는 군기를, 都摠

36) 『명태조실록』 권190, 홍무 21년 4월 임술.

37) 『태조실록』 권9, 태조 5년 3월 병술.

38) 『명태조실록』 권247, 홍무 29년 9월 정묘.

39) 박원호, 「명초의 문자옥과 조선표전문제」, 『명초조선관계사연구』, 일조각, 2002; 김경록, 「조선초기 종계변무의 전개양상과 대명관계」, 『국사관논총』 108, 2006.

制府는 군령을 나눠 담당하도록 하고, 병조가 군정을 맡았다. 각 도에 도절제사를 파견하여 지방군을 지휘하고, 해안을 중심으로 營鎮軍과 守城軍을 정비하였다. 이외 雜色軍을 조직해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했다. 대대적인 양전사업을 벌여 약 120만여 결의 전지를 확보하고, 공신전을 크게 줄여 국가의 토지 지배를 강화했다. 왜구를 소탕하여 조운체계를 개선하고, 私賤辨正를 통해 屬公된 12만여 口를 관에 분속시켰다. 이외 각종 편찬사업과 의제정비를 단행하여 朱子家禮를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문묘제도, 廟制, 혼례, 葬制, 朝冠服制를 정비했다.⁴⁰⁾

태종의 이러한 대내적 왕권강화는 대외적으로 정난지역의 정세를 활용하여 책봉을 받고, 종계변무, 여진족에 대한 영향력 강화, 만산군문제의 해결 등 조명관계의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가능했다.⁴¹⁾ 특히,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책봉을 받지 못하여 봉전이 미완의 상태로 지속되었던 문제를 해결하여 고명을 받아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한 점과 만산군문제를 군인송환의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한 점, 여진족의 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영락제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여진족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한 점 등은 사행을 통해 성취한 외교적 성과였다.

태종대의 제도정비를 통해 세종은 집현전을 통한 인재양성과 의례·제도정비, 방대한 편찬사업, 한글창제, 농업과 과학·의약기술의 발전, 貢法의 제정을 통해 유학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여진정벌을 단행하여 4군6진을 개척함으로써 국토를 확장했다. 세종대의 문화융성은 명으로부터 각종 예제를 도입하고, 예조·儀禮詳定所·집현전 등을 중심으로 국가의례으로서 五禮 및 士庶의 의례인 四禮(冠禮·婚禮·喪禮·祭禮) 등 유교적인 제반 제도를 정비했다. 이 과정에 사행은 명의 문물을 도입하는 외교적 통로로 활용되었다. 역법을 정비하기 위해 명으로부터 回回曆을 도입하여 『칠정산내외편』을 편찬했으며, 의약을 조선화를 위해 명 의약학을 도입하여 『鄉藥採集月令』·『鄉藥集成方』·『醫方類聚』 등

40) 김성준, 「태종의 외척제거에 대하여 : 민씨형제의 옥」, 『역사학보』 17·18, 1962; 이희관, 「朝鮮初太宗의 執權과 그 政權의 性格」, 『역사학보』 120, 1988; 남지대, 「조선 태종의 왕위와 왕통의 정당화」, 『한국문화』 63, 2013; 「조선 태종의 권위 확충」, 『규장각』 45, 2014.

41) 박원호, 「영락연간 명과 조선간의 여진문제」, 『명초조선관계사연구』, 일조각, 2002; 김경록, 「조선초기 종계변무의 전개양상과 대명관계」, 『국사관논총』 108, 2006; 「조선초기 귀화정책과 조명관계」, 『역사와현실』 83, 2012; 「조선초기 군인송환문제와 조명간 군사외교」, 『군사』 83, 2012.

의약서적을 편찬했다. 특히, 여진정벌은 명으로부터 관작을 수여받은 여진족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이었기 때문에 명과 외교적 교섭을 통해 실시했으며, 명을 침구한 왜구의 소식을 사행을 통해 접하고 대마도 정벌의 강경책을 시행한 점 등에서 사행의 의미가 있다.⁴²⁾ 태종대에서 세종대까지 대명사행은 물론 재위기간의 오래됨도 있지만, 태종대 210회, 세종대 347회의 사행뿐만 아니라 명사출래도 44회, 40회로 조·명간 사행을 통해 당시 외교 사안을 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유정난으로 즉위한 세조는 왕위계승의 정당성에 흠결이 있어 이를 부국강병정책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이징옥의 난을 진압하고, 梁誠之로 하여금 地理誌와 지도를 撰修하도록 하였다. 1458년(세조 4) 號牌法을 시행하고, 『經濟六典』을 정비함과 동시에 『경국대전』을 전장으로서 찬술하여 「호전」과 「병전」을 반행했다. 부국강병의 근간인 군사력 양성에 진력하여 둔전을 장려하고 군적을 정비하였으며, 五衛체제를 완성했다. 중앙집권적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지휘를 중앙에서 파견하자 반감을 품은 李施愛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평정하여 집권체제를 강화했다.

세조는 즉위이전 직접 대명사행에 참여하여 명에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으며, 즉위이후 승습외교를 위해 활발하게 사행을 파견하여 책봉을 받고자 했다. 책봉여부는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의 절박한 외교현안이자 최대 정치현안이었다. 세조는 정난으로 즉위했지만, 단종의 사위와 세조의 승습이란 형식으로 명에 책봉을 요구했다.⁴³⁾ 세조가 즉위한 뒤 예조판서 金何, 형조참판 禹孝剛을 명에 보내어 請辭位, 請承襲하는 주문을 전달하였다. 한편, 당시 조선에 출래하였던 명사 高黼를 통해 명에 세조의 즉위사실을 보고하도록 사신접대의 외교를 전개했다. 김하에 이어 신숙주를 주문사로 삼아 승습에 대해 거듭 주문하고, 이 시기 정조사행, 사은사행 등도 승습에 대해 명에 주문하도록 했다.⁴⁴⁾ 조선의 총력외교에 대한 결과로 명의 승습을 윤허하는 칙서를 받았다. 조선은 노산

42) 차문섭, 「세종대의 국방과 외교」, 『세종학연구』 12·13, 1998; 한형주, 「對明儀禮를 통해 본 15세기 조명관계」, 『역사민속학』 28, 2008; 문형진, 「朝鮮太宗時期大明律運用情況」, 『아시아문화연구』 10, 2006; 「중국문화의 수용과 변용」, 『중국학연구』 59, 2012; 문중양, 「‘鄉曆’에서 ‘東曆’으로」, 『역사학보』 218, 2013; 지두환, 「세종대 동아시아 정치상황」, 『한국학연구』 51, 2014; 한영호, 「조선의 回回曆法 도입과 ‘칠정산외편」, 『민족문화』 45, 2015.

43)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9월 계미. 『승문원등록』에 기재된 주본과 『세조실록』에 기재된 주본은 일부 글자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 格式은 동일하다.

군과 세조의 사은표문을 전달하는 사은사행을 파견하여 책봉에 대해 사은했다.⁴⁵⁾ 한편, 奏聞使行을 통해 명의 事目과 禮部奏草를 구하여 고명사행의 發程을 미리 파악하기도 했다. 세조의 고명사행 접대준비는 칙서의 도래이후 고명사행이 도착할 때까지 수시로 고명사행의 일정과 사신을 파악하고 사신접대를 위해 각도에 파견되었던 分臺를 철수시키고 『경제육전』의 수찬을 중단하는 등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었다.⁴⁶⁾ 이처럼 철저히 준비한 명사접대의 연회자리는 사육신의 의거가 계획된 자리이기도 했다.

중종대 조선의 대명인식은 변화되었는데, 사림정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사대인식은 변함이 없더라도 주로 사행을 통해 명 절대황제체제의 고식화, 황제의 정치적 무관심, 환관 정치와 내각정치의 전횡, 부정부패의 만연 등을 경험한 지식인들은 부정적인 대명인식을 가졌다. 승습외교, 종계변무사안, 嘉靖帝의 大禮儀문제, 국경문제, 무역문제, 弓角수입, 공녀·공마문제, 쇄환문제, 여진·몽고의 흥기에 따른 군사적 긴장상황 등이 연속되면서 중종대 조명관계는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들 사안에 대해 조선은 적극적으로 사행을 파견하여 조선의 외교목적을 요구하였다. 대표적인 사행파견으로 승습외교, 종계변무, 궁각수입 등이 있다.⁴⁷⁾

조선에서 최초로 신료에 의한 군주교체였던 중종반정은 연산군의 폐정에서 기인했지만, 신료에 의한 군주교체라는 사실 때문에 대외적으로 명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승습외교는 반정직후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황제절대주의적 통치구조를 지향하고 장자상속의 조훈을 엄격하게 지켰던 명의 입장을 고려하여 반정의 사실을 은폐하되 승습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행절목을 설정하고, 연산군의 신병으로 선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외교적으로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반정의 명분과 어긋나는 모순을 가져 반정세력의 약점으로 향후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승습외교는 외교문서를 작성하여 명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한 1차 사행, 환관세력의 활용 및 승습의 조건을 재확인한 2차 사행, 중종의 승습을 인정받는 3차 사행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사행파견에 있어 명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청과정을 예상하여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이 시기 모든 사행이 승습사

44) 『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9월 임진.

45) 『명영종실록』 권257, 경태 6년 8월 을유; 『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10월 을묘; 병인.

46)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2월 임인; 갑진; 을사.

47) 조영록, 「水牛角貿易을 통해 본 鮮明關係」, 『東國史學』 9·10, 1966.

안에 대해 집중하였듯이 총력적인 사행외교를 전개했다. 당시 명 황제의 정치적 무관심, 환관의 전제권력 행사, 행정체계의 문란, 환관을 통한 직접적인 문서전달 및 재가여건의 조성 등 상황이 조성되어 승습외교는 성공했다.

이러한 중종대 승습외교는 반정과 중종의 즉위를 인정받은 의미뿐만 아니라 조명관계에서 왕위계승 및 책봉의 국내외적 의미를 보여준다. 또한, 승습을 위해 반정세력은 反正을 正道라 주장하면서 대명관계는 權道를 채택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치모습을 보였다. 신료에 의한 군주교체는 명의 통치원칙에 용납되기 어려웠지만, 조선은 반정이란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현실적인 사위와 승습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반정군주의 승습이란 실리를 얻었다.⁴⁸⁾

선조대 대명사행은 크게 종계변무와 청병 등 2가지 외교목적에 의해 파견되었다. 명종 사후 德興大院君의 아들로 즉위한 河城君 李鈞이 선조이며, 왕실의 방계자손으로 처음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다. 혈통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조는 종계변무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종계변무 사행을 여러 차례 파견했다. 종계변무를 완료하면서 선조는 공신을 책봉했는데, 건국과 동급의 '光國'을 천명했다. 16세기말 동아시아 국제전쟁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명군파병을 요구하는 사행을 긴급하게 파견했다. '萬曆三大征'으로 표현되듯 당시 만력연간 명은 군사적 여력이 없었지만, 조선을 통한 일본의 명 침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군을 파병했다. 명 조정의 파병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조선사행은 파병의 필연성을 강조하여 결국 경략 송응창과 총병관 이여송이 지휘하는 명군을 파병했다.⁴⁹⁾

3. 명청교체와 대중국 사행외교의 변화

명청교체의 격동기였던 17세기에 조선은 임진왜란에 따른 전후 대일 외교정책을 선택하고, 명·후금간 전쟁에 대해 정치·군사적 대응을 결정해야 했다. 전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48) 김경록, 「中宗反正 이후 承襲外交와 朝明關係」, 『한국문화』 40, 2007.

49) 김경록, 「임진왜란시 조명연합군 지휘체계와 수군파병 과정」, 『이순신연구논총』 19, 2013; 「선조대 홍순언의 외교활동과 조명관계」, 『명청사연구』, 2014.

상황에서 이러한 조선의 외교정책 결정은 어려운 난제였다. 조선은 일본과 평화통교체제를 정립했다. 7년간 임진왜란으로 왕권의 위상은 추락되었으며, 통치 및 사회질서는 붕괴되었다. 선조는 임진왜란 와중에 누르하치의 통교요청을 받고 1596년(선조 29), 申忠一을 건주 누르하치성(奴兒哈赤城)에 파견하여 정세를 확인하도록 하고, 일본과는 1607년의 회담검쇄환사를 통해 피로인 쇄환이라는 전후처리를 달성하고 통교에 따른 교역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교재개 교섭을 추진하여 대일전략을 주도했다.⁵⁰⁾ 명에 대해 재조지은의 인식에서 조명관계를 강화했다.

1583년 기병한 이후 1589년 건주여진을 통일하여 만주족의 통합을 달성한 누르하치는 1593년 葉赫部 등 9部연합군의 공격 격퇴, 1598년 瓦爾喀(Warka)部 정복, 1603년 허투아라(赫圖阿拉)지역 이주, 1607년 布占太(Bujantai) 공략 등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면서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였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선에 여진족의 인민을 쇄환할 것을 요구했다.⁵¹⁾ 후금의 흥기와 요동진출은 조선으로 하여금 대일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도록 강제하여 결국 1609년(광해군 1) 일본과 己酉約條를 체결하고 평화체제를 맺었다.⁵²⁾ 南倭北虜의 역학구도에서 후금에 대해 외교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선택을 취한 광해군은 대중국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⁵³⁾ 광해군대 조선의 대명관계는 국왕 광해군의 책봉문제와 정치적 갈등, 국경무역을 비롯한 경제적 갈등 등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명의 대후금 출병을 둘러싸고 명과의 갈등, 심하전투의 패전과 그 여파, 명의 재징병 요구와 조·명간 긴장관계 등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50) 이인영, 「建州紀程圖記」, 『진단학보』 10, 1939; 「申忠一의 建州紀程圖記에 對하야」, 『진단학보』 10, 1939; 이훈, 「임진왜란 이후 회담검쇄환사로 본 대일본외교 전략」, 『한일관계사연구』 49, 2014. 273~285쪽.

51) 『청태조실록』 권2, 무술 정월; 정미 정월; 기유 2월 계축; 張瑞文, 「赫圖阿拉—後金第一都」, 『百科知識—上』, 2006, 51~52쪽; 李景蘭, 「試論后金政權의 性質」, 『社會科學輯刊』 1980-6, 95쪽; 孫文良, 「論明與後金的遼瀋之戰」, 『社會科學輯刊』 1980-5, 83쪽.

52)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抄冊』 1609년 3월, 5월. 선조가 승하하자 대마도주 宗義智가 선조의 魂殿에 致奠하고자 했지만 조선은 약조이전에 진향을 거부했다. 기유약조는 1608년부터 시작되어 약조내용과 일본사신의 접대사목, 세건선의 수 등이 정해졌고, 일본사신이 來朝한 뒤 선박의 접대, 文引, 受職, 圖書 등 제반사항을 규정한 12조항의 약조가 체결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민덕기 편저,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7, 4장, 6장 참조.

53)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244~301쪽.

국제정세를 분석하여 능동적인 외교를 취하고자 하였던 광해군의 외교정책은 대내적인 廢母殺弟와 토목공사로 인한 민생도탄과 함께 인조반정의 명분을 제공했다. 1623년(광해군15) 3월 金瑬, 李貴, 李曙, 崔鳴吉 등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으로 명·후금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취하고자 하였던 조선의 외교정책을 적극적인 친명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명의 군사·외교적 목적에 동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조대 조선의 대중국관계에서 모문룡문제는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내부적으로 이괄의 난으로 반정의 정당성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다. 이괄의 난으로 후금군대의 조선출병이 계획되었다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으며, 조선은 하삼도의 병력을 양계에 배치하여 전쟁에 대비했다.

1626년 황제에 즉위한 홍타이지(皇太極)는 정명전쟁에 앞서 조선에 대한 후원차단을 계획했다.⁵⁴⁾ 조선은 인조반정으로 인한 인조책봉에 정치적 비중을 높이 두었기 때문에 친명정책으로 일관했다.⁵⁵⁾ 즉 반정 이후 서인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명 중심 국제질서를 회복하고자 하였지만, 후금관계의 악화를 초래하여 정묘호란, 병자호란의 전란으로 이어졌다. 후금은 1627년(인조5) 가도를 정벌하고 조선을 징계한다는 명분으로 정묘호란을 일으켰다.⁵⁶⁾ 기병중심의 속전전략을 취한 후금군은 근왕병과 세자의 분조 등 의외로 강력하게 대응한 조선군에 의해 군량과 후방차단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화친과 전투의 양면전략을 취했다. 조선군도 후금군에 대해 항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강화도에서 맹약을 체결했다.

후금은 세력확장 과정에서 제 세력과 맹약을 체결하여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했다.⁵⁷⁾ 상호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 명 중심 국제질서에 여전히 편입되지만 현실적으로 후금과 맹약(맹서)을 맺는다는 명분도 어느정도 있었다. 그러나 누르하치시대에 조·후금관계가 평등관계였다면 강도맹약과 평양맹약은 조선이 후금에 사신을 파견하여 納貢하고, 군비의 건설을 정지하는 등 제약사항이 포함되어 계서적인 측면이 있었다.⁵⁸⁾ 조선은 정묘호란이후 명에 사행을 파견하여 불가피하였던 정황과 명 중심 국제질서

54) 『청태종실록』 권2, 天聰 원년 3월 신사.

55) 김경록, 「조선의 대청관계 인식과 외교체제」, 『이화사학연구』 37, 2008, 152~153쪽.

56) 『청태종실록』 권2, 天聰 원년 1월 병자.

57) 鄭微, 「論清入關前盟誓根源」, 『邊疆經濟與文化』 97期, 2012-1, 51~52쪽.

58) 宋慧娟, 侯稚文, 「論後金朝鮮“兄弟之盟”的性質」, 『長春師範學院學報』 22卷 2期, 2003, 49~50쪽. 특히

의 유지를 설명했다.⁵⁹⁾ 홍타이지는 총력전으로 정명전쟁을 수행하였지만, 산해관을 넘지는 못했다. 이자성의 난으로 명이 내부적으로 붕괴하자 후금은 청을 개칭하고 병자호란을 일으켜 조선을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시켰다.

임진왜란이후 再造之恩 관념에 입각한 명 중심 국제질서를 강조하던 조선은 명청교체의 격동기를 경험하면서 대중국 사행의 변화를 맞이하였다. 선조말엽은 전후복구와 통치권위의 확보차원에서, 광해군은 즉위이후 책봉인준을 위해, 인조는 반정이후 반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명사행을 강화되었으며, 정묘호란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 대중국 사행의 변화는 외형적으로 명·후금 전쟁으로 인한 사행로의 변화, 椴島를 통한 교섭 및 폐단, 대후금사행의 정례화 등이며, 내용적으로 封典과 전쟁관련 외교사안에 집중화 경향 등이다.

조선은 인조반정이후 친명반청정책을 추진하면서 東江鎮에 주둔한 총병 毛文龍의 군사활동을 지원했다. 지정학적 요충지 가도에 주둔한 모문룡은 조선에 군기·군량을 요구하고, 요동주민을 모아 후금을 배후에서 위협하였다. 이 결과 정묘호란이 일어나 조·후금 사이에 ‘江都約誓’, ‘平壤約誓’, ‘兄弟之盟’ 등이 체결되었다. 정명전쟁의 다급함으로 맹약을 강요하는 후금과 현실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조명관계를 명분으로 맹약을 거부하는 조선이란 역설적 상황이 초래되었다. 결국 강도약서를 통해 조선과 후금은 상호 和好를 講定하고 封疆을 수호하여 쟁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군사적 침범을 불가한다는 관계를 설정했다.⁶⁰⁾ 동급수준의 맹약이라 하지만, 후금의 강제에 의한 맹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은 이후 후금이 주도하는 조·후금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됐다.⁶¹⁾ 만족스럽지 못한 맹약에 대해 후금은 철군하면서 평양약서를 맺어 예물, 사행, 쇄환, 군비금지 등 군사·외교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포함시킴으로서 이익을 강화했다.⁶²⁾

명청교체기 대중국사행에서 후금사행의 등장과 정례화는 향후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조선후기 대청사행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된다. 17세기 초 아래

세페에 대해 후금은 군사적 정벌에 따른 전리품으로 인식한 반면, 조선은 통상적인 예물로 인식했다.

59) 『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 4월 정유.

60)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3월 경오.

61) 김경록, 「조선의 대청관계 인식과 외교체계」, 『이화사학연구』 37, 2008, 152~153쪽.

62) 『청태종실록』 권2, 천총 원년 3월 신사; 을유; 권10, 천총 원년 5월 경오.

표와 같이 조선은 대명사행과 대후금사행을 병행했으며, 대후금사행은 春信使, 秋信使의 사행명을 사용했다.

〈표 2〉 17세기 초(1600-1636) 조선의 대중국 사행현황

시기	대상	사행명	시기	대상	사행명
1601	明	奏請使	1627.04	명	奏聞使
1601.04		進賀使	1628.12	후금	春信使
1602		夏節使	1629	明	謝恩使
1602.10		奏請使	1629	후금	秋信使
1603.03		?	1629	明	冬至使
1604		奏請使	1630	明	館餉使
1604		奏請使	1630.06	후금	秋信使
1605.04		千秋使	1630.12	후금	春信使
1607		聖節使	1631	明	冬至使
1609		告訃請諡承襲使	1631.06	후금	秋信使
1609		謝恩兼聖節使	1632.06	明	奏請使
1610.08		冬至使	1632.07	후금	秋信使
1611		奏請使	1632.12	후금	春信使
1611		奏請使	1633.02	후금	回答使
1613		?	1636	후금	春信使
1614		聖節使	1636	明	冬至聖節千秋陳賀使
1615		謝恩使			
1616.11		奏請使			
1617.08		冬至使			
1619.05		謝恩兼千秋使			
1620		?			
1620.06		?			
1622		賀極使			
1623.07		聖節兼謝恩使			
1623		奏請使			
1624		奏請使			
1624		奏請使			
1625		?			
1626		성절겸사은진주사			

* 전거 : 『동문회고』 사행록, 『인조실록』

대중국사행에서 명칭은 지참한 외교문서에 의해 정해지는데, 대후금사행을 춘신사와 추신사로 정한 것은 조·후금관계가 교린수준이었음을 밝히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즉, 명 중심 국제질서 하에서 대명관계와 대후금관계를 원만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며, 춘신사와 추신사의 수준에서 행이하는 외교문서도 國書로 정해졌다. 조선에서 후금에 보내는 문서는 ‘國書’, ‘書通’이라 하였으며, 후금에서 조선에 보내는 경우는 조선에서 ‘書’라고 불렀다. 사행명과 외교문서 등에 조선의 주장이 적용되었던 것은 이 시기 후금의 공문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⁶³⁾

대후금사행은 승문원에서 작성한 國書를 전달하는데, 춘신사는 음력 1월, 추신사는 9월에 발행했는데, 정세에 따라 일정이 조정되기도 했다.⁶⁴⁾ 사행기간은 대략 2달 정도였다.⁶⁵⁾ 사행노정은 의주에서 심양까지이며, 조·후금관계에 대한 반감으로 가도의 명군에 의해 위협받기도 했다.⁶⁶⁾ 사행구성은 당하관의 사신 한 명을 차정하였는데, 후금과 연관 있는 무관이 주로 차정되었다.⁶⁷⁾ 사행규모는 관련 사료가 없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신사의 규모 및 조·후금간 외교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 및 연 2회 파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100여명 남짓으로 판단된다. 경비조달을 위해 예단을 쇠마로 운송하여 상인들이 춘신사행에 참여하였다. 한편, 조선에 오는 후금사행은 정례적인 例差와 별도의 別差로 구분되는데, 예차에게는 例給을 주었지만, 별차는 필요에 따라 贈給하였다. 이들 후금사행

63) 丁曉昌, 冒志祥 主編, 『中國公文發展史』 蘇州大學出版社, 2004, 306쪽. 후금은 1629년 文館을 설치하여 공문을 작성하는 임무를 부여했으며, 1636년 문관을 內三院으로 개칭하여 內國史院, 內秘書院, 內弘文院 등을 갖추으로써 국가 주요 공문제도의 찬술을 전담하도록 했다. 입관이후 명대 내각과 한림원의 기능을 내삼원에 확대시켜 內翰林國史院, 內翰林秘書院, 內翰林弘文院으로 확대 개편했다.

64) 『비변사등록』 4책, 인조 12년 1월 4일.

65) 『인조실록』 권22, 인조 8년 6월 갑술; 권23, 8월 갑자. 추신사 吳信男은 1630년 6월 26일 발행하여 8월 17일 복명하여 50여일의 사행기간이었다.

66) 『인조실록』 권21, 인조 7년 8월 신유. 秋信使 朴蘭英이 후금사신 阿之胡 등과 함께 귀국도중 가도의 副摠 徐數奏가 위협하기도 했다.

67) 『인조실록』 권21, 인조 7년 9월 신해; 권24, 9년 6월 정사. 吳信男, 박난영 등은 여러 차례 반복 차정되었으며, 후금사신의 접대를 전담하기도 했다. 특히 박난영은 광해군대 무신으로 강홍립과 함께 심하전투에 참전하였다가 후금의 포로가 되었다. 정묘호란 때, 후금군과 함께 조선에 들어와 강도맹약을 체결하는데 일조하여 인조에 의해 등용되었다. 回答官·宣慰使·宣諭使·秋信使·春信使 등으로 대후금사행에 차정되어 후금의 대조선 압박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했다.

은 외교목적 이외의 물건판매를 강요하여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조선은 정묘호란 이후 후금의 전황과 汗의 동향, 후금의 군사상황과 포로현황 등 정보 파악 및 조·후금관계가 긴밀해지자 대후금사행에 대한 역할을 중시했다.⁶⁸⁾ 採蔘, 犯越 등 조·후금간 외교문제 전반을 사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편, 병자호란 이후 일정 기간 심양관이 존재하여 조청관계의 사행에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다. 세자와 관료들이 심양에 상주하여 조청간 외교관계는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사행을 통해 청에 조선의 정책을 전달해야 하는데, 중간에 심양관이 조선을 대변하기도 하는 반면, 청의 외교적 목적으로 조선조정과 의도하지 않은 반목을 발생시켰다.⁶⁹⁾ 즉, 사행의 역할을 적지 않게 수행함으로써 조선에서 파견한 사행의 역할을 한정되기도 했다.

대명사행은 정묘호란 이전까지 연 1회 이상 파견되었지만, 병자호란 직전까지 節使 3회 등 총 7회 파견되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형식상 대명·대후금사행을 병행했지만, 주된 사행은 대후금사행이었다. 17세기 초 조선의 대중국사행은 정묘호란 이전까지 대명사행만을, 정묘호란 이후 대명사행과 대후금사행을 병행했으며, 병자호란 이후 대청사행으로 전환됐다. 조선은 요동과 중국정세에 따라 능동적으로 사행을 파견했으며, 병자호란 이후 청의 강제로 인해 대청사행을 年貢사행으로 일원화시켰다.⁷⁰⁾

이 시기 대표적인 대청사행은 인조의 3왕자였던 麟坪大君 李潯의 사행이었다. 인평대군은 잠시 귀국한 소현세자를 대신하여 볼모로 청에 간 이후 총 12회 대청사행을 수행했다. 왕자신분으로 7회의 곁행을 수행하여 조·청간에 민감한 외교사안을 해결했다. 청군과 연합으로 출병하여 명군과 싸운 錦州전투는 조선의 난처한 입장을 반영한 전투였다. 청은 금주전투에 대한 조선의 의견을 통보하라는 외교압박을 가했으며, 인평대군은 ‘陳和戰重事非藩國與議奏’를 전달하여 청의 요구를 무마시켰다.⁷¹⁾ 볼모경험과 여러 차례 사행으로

68) 『비변사등록』 4책, 인조 12년 3월 27일; 4월 3일. 復命을 지연한 춘신사를 추고하거나 사행의 문건사건을 통해 대후금정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외교정보는 사행도중 필요시 치계하거나 의주에 도착하면 곧 치계했다.

69) 성당제, 「정묘호란시 소현분조와 세자의 역할-소현분조일기를 중심으로-」, 『규장각』 31, 2007; 김남윤, 「심양일기와 소현세자의 볼모살이」, 『규장각』 29, 2006, 56~59쪽.

70) 김경록, 「17세기초 명청교체와 대중국사행의 변화」, 『한국문화와 예술』 15, 2015. 연공사행의 시작은 청의 민족적 특징에서 연유한다. 조선이 청 중심 국제질서에 조선이 편입되었음을 반증하는 사행으로 공헌뿐만 아니라 병자호란의 세폐를 매년 청에 보내야 하는 조·청관계가 정립되었음을 보여준다.

청 황실과 인연이 많았던 인평대군은 청 황실 및 관료들에게 조선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전달했다. 이 시기 조청관계에서 최대 관건이었던 소현세자의 귀국에 대한 사은사행, 오삼계 투항이후 斥和대신의 서용을 허가하고 세폐의 감면에 대한 사은사행, 소현세자의 급사 및 봉림대군의 세자책봉 등 인조말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중원에서 鄭成功의 反清起兵으로 청은 조선의 반청분위기를 경계하자 이를 무마하는 사행 등 1657년(효종8)까지 주요 외교현안을 해결하는 사행을 시행했다.⁷²⁾

정조대 편찬된 조선의 외교문서 집대성인 『동문휘고』에 수록된 외교문서의 상한선은 1636년(인조14)으로 연대기 자료에는 부분적으로 외교문서가 남아 있음에도 후금관계에서 행이된 외교문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⁷³⁾ 이는 산실되거나 명 중심 국제질서 하에서 행이된 문서라 제외했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조·후금간 행이된 문서가 交隣之交의 國書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정식으로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편입되어 계서적인 문서체계의 형식과 내용에 미달되어 수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청 중심 국제질서와 사행외교의 의미

18세기 조선은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자 했다. 국내적으로 지배층의 북벌론과 반청의식이 고조되어 청을 이적시하였지만, 대외적으로 청의 조공제도를 적용하였다. 조·청관계에서 貢期는 1년 1使를 준행하였으며, 사행노정은 압록강을 건너 入境하고, 鳳凰城을 경유하여 육로로 盛京, 山海關을 지나 京師에 이르는 경로였다.⁷⁴⁾ 1679년(숙종5) 이후 청대의 사행노정이 확정되고, 항해노정의 경우는 1621년(광

71) 『동문휘고』 별편 권1, 進賀, 壬午 賀捷表; 方物表; 賀捷箋; 方物箋; 禮物總單.

72) 김경록, 「조선시대 대중국 사행의 정치외교적 의미-인평대군의 사행을 중심으로」, 『온지학보』 42, 2015.

73) 김경록, 「조선후기 ‘동문휘고’의 편찬과정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2, 2005, 191쪽.

74) 『大清會典則例』 권93, 禮部, 主客清吏司, 朝貢上. 조·명관계에서 절행은 동지, 정조, 성절, 천추였지만, 조·청관계에서 송덕이후로 천추절은 제외되고, 三節과 歲幣도 한 번의 사행으로 처리하되 이름을 동지사(年貢使)라 했다.

해군13)이후 확정됐다. 사행노정의 확정은 사행주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북경체류는 외교문서의 접수기간, 사행무역, 공적업무나 상황발생 등에 의해 일정이 결정됐다.⁷⁵⁾ 사행원은 삼사 이외에 大通官(通事) 3인, 護貢官 24인 등으로 賞賜를 받는 有賞從役이 30인에 無賞從役은 제한이 없었다.⁷⁶⁾ 대청사행은 兼行경향의 보편화, 사행의 행동제약 완화, 일부 熱河까지 사행하여 문서전달, 청 관원의 人情요구 증가, 사행의 문서전달이 내각과 군기처로 이원화, 사행의 盛京경유 및 문서행이 정례화, 賫咨官 증가 등 특징이 있다.⁷⁷⁾

조선은 조청관계에서 발생하는 국가간의 관계를 사안별로 분류하고 이를 정리하여 원만한 대외관계를 전개하고자 했다. 이러한 국가간의 관계에 대한 고심은 조선이 바라본 대외인식이라 할 것이며, 조선초기 『이문』, 조선중기 『괴원등록』을 거쳐 조선후기에 『동문회고』이란 성과물을 도출하였다. 특히, 정조대 편찬된 『동문회고』는 보다 대외관계에 대한 체계화를 이루어 25개의 외교사안으로 분류하여 대외정세 파악에서 대외정책 형성 및 시행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대외관계를 구성하고자 했다.⁷⁸⁾

정조는 대청관계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종합 외교문서집인 『동문회고』를 편찬하였다. 대청관계에서 발생할 외교사건에 대한 조선의 체계적인 대응절차 및 외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리된 『동문회고』는 방대한 분량의 외교문서를 유사 사건들의 시간별, 원인별, 절차별 관련성에 따라 25개 외교사안으로 분류하였다.⁷⁹⁾ 조선이 분류한 외교사안은 필연적 외교사안과 실질적 외교사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례적인 성격이 강한 필연적 사안은 封典, 哀禮, 進賀, 陳慰, 問安, 節使, 表箋式, 曆書, 日月式 등으로 왕실관련 사안이며, 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선이 필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외교사안이었다. 정례적이고 의례적인 사행이 가장 중요한 정치외교 활동으로 필연적 사안은 국내 정치성의 외적 표현이었다.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75) 김경록, 「조선시대 조공체제와 대중국 사행」, 『명청사연구』 30, 2008, 108~109쪽.

76) 『大清會典』 권56, 禮部, 主客清吏司, 賓禮, 朝貢.

77) 『通文館志』 권3, 事大 上, 赴京使行.

78) 김경록, 「조선초기 <이문>의 편찬과 대명 외교문서의 성격」, 『이화사학연구』 34, 2007;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의 접수·보존체계」, 『한국사연구』 136, 2007.

79) 김경록, 「조선후기 ‘동문회고’의 편찬과정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2, 2005.

외교사건을 정리한 실질적 사안은 陳奏, 請求, 석재, 건폐, 칙유, 교역, 강계, 범월, 범금, 쇄환, 표민, 추정, 군무, 부휼, 왜정, 잡령 등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내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발생하였다. 필연적 사안보다 경제적 성격이 강한 실질적 사안은 외교목적 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국경의 교역과 범월, 표류민의 송환 등 단순 경제·사회사건 이 정치·외교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대상이 왕실보다는 변경민이나 표류민 등 광범위 한 백성, 또는 관아이며, 일정한 주기성이 없이 외교사건이 발생하면 고려되었던 사안이었 다.⁸⁰⁾

대청사행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데, 대명사행과 비교하여 여전히 최대 외교현안이 었던 封典, 陳奏 등이 중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犯越, 蠲弊, 交易, 犯禁, 漂民, 推徵 등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외에 倭情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대청사행의 봉전은 『동문회 고』의 봉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봉전은 원래 황제가 황실을 포함한 신하 및 그 家屬에 게 爵位의 名號를 하사하는 榮典이다. 역대 봉전은 晋代에 시작되어 唐代에 완비되었는데, 시대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책봉국의 천자가 신하 및 그의 조상에게 爵位의 名號를 賜給하는 榮典을 의미하며, 조선이 중국의 천자로부터 爵位를 賜給받는 내용이다.

조선후기 봉전은 ‘建儲(世子冊封)’, ‘嗣位’, ‘王妃冊封’, ‘金印下賜’, ‘追崇’ 등의 세부사안 으로 구성되었다. 建儲사안은 효종의 請冊封世子, 현종의 請冊封世子, 경종의 請冊封世子, 영조의 請冊封世弟, 영조대 孝章世子和 思悼世子的 請冊封世子, 정조의 請冊封世孫, 순조 의 請冊封世子 등 8건이며, 嗣位사안은 효종의 請世子嗣位, 현종의 請世子嗣位, 숙종의 請世子嗣位, 경종의 請世子嗣位, 영조의 請世弟嗣位, 정조의 請世孫嗣位 등 6건이며, 王妃 冊封사안은 숙종대 仁敬王后 金氏의 죽음과 仁顯王后 閔氏의 請繼封王妃, 仁顯王后 閔氏의 폐위와 禧嬪 張氏의 請改封王妃, 仁顯王后 閔氏의 請王妃復位, 仁元王后 金氏의 請繼封王 妃, 영조대 정순왕후 김씨의 請繼封王妃 등 5건이며, 金印下賜사안은 효종대 禮部換頒淸漢 字金印咨, 영조대 淸漢篆體金印襲封時另鑄換頒 등 2건이며, 追崇사안은 정조 초년의 請追 崇 1건이다.

이러한 봉전관련 대청사행은 가장 중시되어 奏請, 謝恩, 陳奏使行이 파견되었으며, 사

80) 김경록, 「조선의 대청관계 인식과 외교체계-조선후기 외교문서의 정리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37, 2008.

신이 가장 높은 직급을 가지거나 結銜을 시행하기도 했다. 建儲는 왕세자의 책봉으로 조선의 왕위계승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숙종이 나이 어린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파견한 봉전사행은 “朝鮮國王臣姓諱謹奏爲請封儲貳事”의 외교문서를 전달했다.⁸¹⁾ 일반 사행이 4개월인 것에 비해 건저사안은 적게는 1개월 이상, 많게는 6개월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특히, 숙종대 나이 어린 경종을 세자로 책봉하는데 두 차례의 사행파견과 10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책봉외교가 매우 어렵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建儲는 왕세자책봉이 주 대상이지만, 경종대 世弟책봉, 영조대 世孫책봉과 같은 예외적인 건저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봉전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조선은 건저를 진주와 연계시켜 진주의 특징인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세우고(‘奏請’), 외교상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 오해를 사전에 제거하는(‘陳奏’)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嗣位는 왕이 죽으면 세자에게 承襲을 청하는 것으로 영조와 정조처럼 각각 世弟와 世孫으로 嗣位를 청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사위는 告訃로부터 시작되는데, 告訃는 承襲으로 이어지며, 승습의 주체는 승하한 국왕의 왕비가 된다.

책비는 조선후기 숙종과 같이 네 차례의 왕비책봉은 관련 문서만 보더라도 仁顯王妃의 復位를 요구할 때는 많은 분량의 문서가 소요될 정도로 외교활동이 있었다. 왕비책봉의 사례는 仁敬王后 金氏사후 仁顯王后 閔氏 책봉, 仁顯王后 閔氏 폐위후 禧嬪 張氏를 책봉, 仁顯王后 복위, 仁顯王后 사후 仁元王后 金氏 책봉 등이다.⁸²⁾ 한편, 왕비책봉은 단순한 왕비를 봉전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향후 왕위계승자의 종법적 명분을 사전에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金印은 황제와 고급관원의 印璽, 印章으로 관직에 공식적으로 封爵됨을 의미한다. 병자호란이후 청 중심의 조공체제에서 조선국왕은 황제로부터 금인을 하사받음으로서 조선국왕의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 청은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각종 금인의 印文을 滿字, 漢字, 滿漢字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시 조선에 하사되었던 금인을 회수하고 새로 주조한

81) 『同文彙考』原編, 卷2, 封典2. 丙子 請冊封世子奏. 互陳奏. 奏文은 崔錫鼎이 짓고, 徐文重이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82) 『同文彙考』原編, 卷1, 封典1. 辛酉 請繼封王妃奏; 己巳 請改封王妃奏; 卷2, 封典2. 甲戌 請王妃復位奏; 壬午 請繼封王妃奏; 補編, 卷33, 陳奏1. 庚申 請繼封王妃奏; 己巳 請改封王妃奏; 甲戌 請王妃復位奏; 辛巳 請繼封王妃奏.

금인을 하사하였다. 특히, 국가적인 경하가 있으면 금인을 새로 주조하기도 하였다. 금인의 하사는 조선국왕의 봉작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조선은 ‘金印下賜’를 봉전으로 분류하였다.⁸³⁾

추숭은 사망한 이를 높여 봉작하는 경우로 왕실의 권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정조에 의해 孝章世子와 孝純王后를 추숭하는 사례로 국내적인 의미보다 대외적인 공인을 획득하고자 하였던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조선후기 수 많은 추숭이 있었지만, 청의 추숭 승인을 받았던 사례는 드물다. 그러나 정조는 영조 사후에 즉시 효장세자를 추숭하면서 함께 思悼世子の 尊號를 莊獻로, 수은묘의 封號를 永祐園으로, 사당을 景慕宮으로 하였다. 추숭이지만, 국왕을 시호를 올리는 것이므로 봉전이 필수적이었다.

조선후기 대청사행에 있어 다수의 외교문서 뿐만 아니라 사행기록이 남겨졌는데, 이를 통해 점진적인 대청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⁸⁴⁾ 대표적인 사행기록인 「열하일기」를 남긴 박지원의 대청인식은 북학론으로 정립되어 이후 조선의 지식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박지원은 청의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번성을 인정하고, 기존의 대명의리론을 비판하고, 君臣之義를 강조하였다.⁸⁵⁾ 청이 이룩한 四庫全書의 편찬, 고증학의 발전, 각종 법제와 문물 전장의 정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이를 조선에 적응하기 위해 북학을 주장하였다. 박지원은 청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시대적 상대성을 인정하는 화이론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洪大容은 지리적 상대주의 관점에서 華夷一體論을 주장했다.⁸⁶⁾ 박지원과 홍대용 등의 이러한 화이론은 중화와 夷狄를 명확히 구분하여 夷狄를 배타적으로 인식하였던 이전의 화이론과 차별된다. 중화와 이적을 동일한 사유체계에서 인식하여 민족·지역별 풍속과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현실 청 중심의 국제질서를 배타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⁸⁷⁾

83) 『同文彙考』原編, 卷1, 封典1. 癸巳 禮部換頒清漢字金印咨; 卷3, 封典3. 戊辰 禮部知會清漢篆體金印襲封時另鑄換頒咨; 卷4, 封典4. 甲申 請世孫嗣位奏; 禮部抄錄勅使饋遺減半等上諭及換頒印信原奏咨; 換頒金印原奏; 盛京禮部抄錄禮部遣官冊封賜祭諡頒討平詔換金印賜追諡原奏咨; 原奏; 回禮部換頒金印咨.

84) 김경록, 「조선시대 사행과 사행기록」, 『한국문화』 38, 2006. 사행에 관련한 문서는 기본적인 외교문서, 사행과정에 생산되어 처리되었던 사행문서(票文), 사행의 문건을 국왕에게 보고한 공적 사행기록(使臣別單, 聞見事件), 공적 사행기록을 바탕으로 사신이 문집으로 정리한 사적 사행기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85) 『熱河日記』, 「審世編」.

86) 『湛軒書』內集, 卷4, 鑿山問答.

18세기 이후 조선 지식인들은 사행을 통해 청의 문물을 접하고 점차 청 중심 국제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였다. 청의 학문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서양의 지식은 천문, 역법, 지리정보 등 광범위하였는데, 조선사행은 이에 주목했다. 홍대용은 서양 지식이 청에 들어온 이후 算數를 가지고 傳道하고, 儀器를 전공하여 기후를 귀신처럼 측량하고, 曆象에 精妙한 것은 漢唐 이후 없던 것이라 평가하고, 康熙 말년에 황제가 서양기술을 채집하여 欽天監에 내려준 數理精蘊書가 曆象에 있어서 심오한 근본이 된다고 극찬하였다. 또한, 북경에 있던 天象臺를 자세히 소개하는 등 서양지식에 대한 자세한 인식이 있었으며, 지구 등 지리정보를 통한 인식의 변화는 조선의 세계관을 변화시켰다.⁸⁸⁾ 이때 세계관은 서양을 포함한 세계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었지만, 동아시아의 차원에서 청 중심 국제질서를 보편적인 국제질서로 인식하였다.

박지원, 홍대용 등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대청인식의 변화는 사행을 통하여 청 중심 조공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가져왔지만, 대내적으로 여전히 북벌론적 인식체계가 잔존하고 있었다. 박지원은 북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벌을 위한 한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시기 북학은 청을 전면적으로 중화로 인정하고 문물을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화와 청의 문물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수준이었다.⁸⁹⁾

이러한 조선의 대청인식 변화는 청의 대조선정책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명에 비해 청은 우호적인 대조선정책을 취했다. 물론 정치, 외교적으로 대조선정책을 강압적으로 취하기도 했지만, 명 황제는 대체로 정치적 무관심과 향락적 경향으로 공녀, 공물, 특산물 등을 요구했지만, 반면에 강희후반 이후 조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옹정제이후 매우 우호적인 정책을 취했다.⁹⁰⁾ 중국사신의 접대부담은 동일했지만, 明使의 탐학적인 면을 淸使에서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청 황제가 청사의 탐학을 강력하게 제지하기도

87) 조성산,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대청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중화 관념의 형성」, 『한국사연구』 145, 2009, 82~83쪽. 조선 지식인들은 관념상의 화이론과 현실적 국제질서의 중간개념으로 예의개념을 상정했다. 중화와 이적이 하나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적이 중화와 동일하다면 그 기준으로 禮義이 중시되었다. 이적이 예의에 부합되면 중화가 될 수 있는데, 이를 禮義中華이다.

88) 『湛軒書』 外集 卷7, 燕記, 劉鮑問答.

89) 『燕巖集』 卷7, 別集, 北學議序; 『北學議』 進北學議.

90) 『熱河日記』 行在雜錄. 박지원은 구체적으로 청의 입관 이후 조공물품의 감소경향을 평가하여 청이 조선에 대해 우호적인 경향으로 변화되었다고 인식하였다.

했다. 이러한 청 황제 및 사신의 조선인식 및 태도변화는 중화를 자처한 청을 새롭게 인식하는 이유가 되었다.⁹¹⁾

조선후기 대청인식의 변화와 정책변화는 사행기록 뿐만 아니라 외교문서에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적 사행기록을 시대구분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명대 사행기록은 ‘朝天錄’이라 하지만, 청대 사행기록은 ‘燕行錄’이라 하여 차별적인 인식을 반영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식 외교문서에서 청에 사행하는 것을 ‘朝天’으로 표기한 사례가 발견된다. 제일 앞 선 사례는 1676년(숙종 2) 冬至使 吳廷緯가 전달한 方物表이며, 이후 성절표, 서장관의 문건사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⁹²⁾ 실제 사행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은 ‘赴京’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식 외교문서에 대청사행을 대명사행과 동일하게 ‘朝天’으로 표기하였던 점은 공식적인 외교정책의 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청 중심 조공체제는 서구의 진출이라는 외적 요인으로 변화를 맞이한다. 19세기 서양의 동양진출이 현실화되면서 조선은 청과 조선의 국가안위를 동일시하는 인식이 발생하였다. 청 중심의 조공체제에서 청의 위기는 조공국이었던 조선의 위기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청 중심의 조공체제에서 이탈되어 서양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되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양에 대한 위기의식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이에 중화문화의 현실적인 수호자로서 청을 인식하게 되었다. 조선의 대청인식은 명·청교체 이후 지속적으로 반청의 의식흐름에서 18세기이후 점차 중화와 구분된 청의 문화인식으로 변화되었다가 19세기이후 중화문화의 수호자로서 청을 인식하는 경향으로 변화되었다. 인식변화는 외교정책의 변화와 연계되어 19세기 중반이후 親淸政策이 견지되었다. 이러한 인식변화에는 중화를 중심으로 개념으로 하는 것으로 중화문화의 최후였던 명에 대한 인식이 기저에 존재하였다. 즉, 대명의리의 전통적인 인식이 있었다.

19세기 말 대청사행은 조선의 직제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대외관계를 담당하였던 부서는 예조이며,⁹³⁾ 屬司인 稽制司가 대중국관련, 典客司가 대일외교관련 업무를

91) 김경록, 「조선시대 사신접대와 영접도감」, 『한국학보』 117, 2004.

92) 『同文彙考』 原編, 卷21, 節使4. 丙辰 方物表; 卷32, 節使15. 丙午 謝使臣參宴表; 補編, 卷2, 使臣別單. 癸亥 冬至行書狀官鄭濟先聞見事件; 卷5, 使臣別單. 庚亥 謝恩兼冬至行書狀官李日躋聞見事件.

93) 『六典條例』 권5 예전. “禮曹 掌禮樂祭祀宴享朝聘學校科擧之政 稽制司-典享司-典客司 各掌其事 判書一員 正二品 參判一員 從二品 參議一員 正三品 正郎三員 正五品 佐郎三員 正六品 稽制司 掌儀式制度朝會經

전담하였다. 예조의 이런 업무는 개항과 함께 변화되었다. 1876년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하여 萬國體制로 전환되는 시대상황 속에서 西洋諸國과 開國通商이 불가피해지자 1880년(고종 17) 12월에 비변사에서 新設衙門節目을 上啓하여 三軍府를 혁파하고 예조의 대외교섭 기능을 統理機務衙門으로 통합하였다. 통리기무아문은 ‘總領中外軍國機務’하는 관서로 대외관계 뿐만 아니라 국가통치를 총괄했다. 대외관계는 事大-交隣-通商-語學 등이 관련되는데, 1881년 11월에 同文-軍務-通商-理用-典選-律例-監工의 7司로 개편되고, 1882년 6월 10일 임오군란을 계기로 대원군이 집권하자 폐지되었다. 7월 13일 청 제독 吳長慶에 의해 대원군이 납치되자 통리기무아문의 후신인 機務處가 설치되고, 11월 17일에 統理衙門이 설치되어 외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였다. 통리아문은 12월 4일에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개칭되고 掌交-征權-富交-郵程의 4司와 同文學을 설치하였다.

외교기구의 개편은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국교체계를 수립하려는 조선의 시도였다. 또한, 1881년 외교문서에 사용할 國璽를 새로 大朝鮮國寶로 주조하였으며, 1882년 『通文館志』를 간행하여 이전의 청 중심 국제질서하에서 시행되었던 외교관례와 제도를 정리했다. 1883년 『通文館志續編』를 간행하여 보완했다. 이러한 근대 외교제도를 도입하려는 조선의 노력은 자주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외교를 뒷받침하는 국력의 미흡함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개항이후 근대적인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은 조선에 『만국공법』이 보급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조선은 서구열강과의 관계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청관계의 정리하고자 했다. 병자수호조규 등 일본의 조선간섭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던 청은 朝美修好通商條約의 체결을 주선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종속관계로 대응했다.⁹⁴⁾ 조선은 海禁, 關禁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에 통상을 제기하며, 사행제도 대신 상주 사신제도를 제안하였다. 난항으로 진행되던 협상은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청에 유리하도록 전개되어 조선에 대한 적극적인 속방화정책이 시행되었다. 이후 ‘朝中商

筵史官學校科舉印信表箋冊命天文漏刻國忌廟諱喪葬繼後等事 典享司 掌宴享祭祀牲豆飲膳醫藥等事 典客司 掌使臣倭人迎接外方朝貢宴設賜與等事”

105) 이태진, 「19세기 한국의 국제법 수용과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 청산을 위한 투쟁」, 『역사학보』 181, 2004.

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어 조선의 대청 종속관계를 명문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빌미로 불법적으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의해 군사적 강점으로 이어졌다.⁹⁵⁾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대중국(명·청) 사행은 조선의 대중국 관계에서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했던 외교활동으로 조선과 중국의 치열한 갈등과 조화 속에서 정립, 변화되었다. 조선시대 대중국 사행은 당면 외교사건의 해결을 위한 외교목적의 달성에 중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행의 가장 큰 의미는 정치·외교적 의미였다. 대중국 사행의 전형은 홍무연간에 제정되어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된 조선이 이를 준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조·중관계에서 발생하는 외교문제를 해결을 위한 외교활동은 사행과 사신접대이며, 외교문제 발생, 외교목적 설정, 외교문서 작성, 사신선정, 발행, 사행, 문서전달 및 접수, 귀국의 순서로 사행은 진행되었다. 지참하는 외교문서에 의해 사행명칭, 사행규모 등이 결정되며, 목적지에 따라 부정사행과 요동사행으로 구분된다. 삼사와 통사를 주축으로 한 종사원 등으로 구성되며, 홍무연간까지는 해로와 육로를 병행하였다가 영락제이후 육로로 일원화되었다.

대명사행은 15세기 초 조명관계의 긴장으로 사행은 긴밀하게 파견되었으며,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책봉을 통해 왕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封典사안이 최대 사행목적이었다. 특히, 태조, 세조, 중종 등의 봉전은 조명간 외교적 입장이 충돌되었던 사례였다. 기타 사행을 통해 중계와 혼단 등의 변무, 우마를 포함한 교역, 의례와 서적 등의 문물전래, 궁각수입과 범월인의 쇄환 등 다양한 외교사안을 해결하였으며, 출래한 명사의 접대를 통해 조선의 외교적 입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16세기말~17세기의 임진왜란과 명청교체 시기에 임진왜란시 명군파견을 위한 주청 사행, 광해군대의 봉전사행, 대명사행과 대후금사행의 병행, 병자호란이후 청 중심 국제질

95) 김경록,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경복궁 침략에 관한 군사사적 검토」, 『군사』 93, 2014; 「청일전쟁 초기 朝日盟約의 강제체결과 일본의 군사침략」, 『한일관계사연구』 51, 2015.

서에서 대청사행의 본격화 등 사행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대중국 사행의 전형은 홍무연간에 규정된 사행제도가 준행되었으며, 명의 제도를 계승하였던 청대까지 시행되었다. 조선후기 대청사행은 보다 외교사안이 복잡하게 분화되었는데, 이는 활발한 조청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조선의 대청인식은 외교문서, 사행기록 등을 통해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조선은 보다 체계적으로 대청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 외교문서집인 『동문휘고』를 편찬하였다. 개항이후 서구와의 접촉은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세기 후반 근대적인 외교관계가 설정되면서 사행제도는 폐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대중국 사행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행과 사행기록에 대한 명칭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학계에서 대중국 사행을 연행사(또는 연행사행)으로, 사행기록을 연행록이라 부르고 있다. 연행사, 연행록의 명칭은 큰 학술적 문제점을 가진다. 백배 양보하여 조선후기 남겨진 사행기록에 연행 내지 연행록이란 명칭이 있으니 연행록이란 명칭까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연행사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행 명칭으로 부르는 심각한 오류를 남긴다. 동일한 연구자가 대중국 사행을 연행, 사행, 중국 사행 등으로 논문별로 혼란스럽게 사용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사행관련 사람, 사물, 사건의 명칭은 그 의미를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용어로서 이들 용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사행의 대상시기는 조선시대이며, 이 시대에 사신으로 사행에 참여한 인물은 유학적 소양을 가졌던 당대의 지식인이자 관료였다. 당연히 국가차원의 사행이므로 사신의 최대 관심사는 사행목적으로 부여받은 왕명의 수행이다. 그러기에 사신들은 자신의 문집이나 줄기 등에 왕명으로 부여받은 공식 사행명칭을 기재하여 자신이 수행한 사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훈을 남기고자 했다. 공식적인 직함과 사행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가치개념이 개입된 연행사라 지칭하고 이를 학술용어로서 사용하는 점은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외교사 뿐만 아니라 사상사, 문화사, 경제사 등 제반 사행관련 연구분야에서 사행의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교문서와 사행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고, 사행기록 작성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행기록 가운데 사적 사행기록은 역사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사료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사행

기록은 그 작성에 있어 자신이 직접 문견하거나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내용에 이전 기록을 취합하여 작성하기 때문이다. 사신을 포함한 사행원은 신분별 활동범위에 제약이 있었으며, 주로 통사를 통해 전해 듣는 이야기가 많아 소문에 근거한 기록이 적지 않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적 사행기록은 사행과정에서 모두 기록하기 어려워 발행하기 이전부터 이미 사행기록의 틀을 작성하고 사행도중 문견한 바와 기록한 바를 엮어 작성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행기록에서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사행 연구를 진행한다면 역사적 사실관계의 오류를 범한다. 사행의 정치·외교적 임무를 배제하고 장기간 동일한 경로의 사행노정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행노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설화에 대해 이전의 사행기록에 유사한 감회와 인식을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신의 독특한 감회와 인식인양 분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사행노정 뿐만 아니라 청의 문화, 풍속, 관원들의 인정요구 등에 걸쳐 유사하게 분석한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사행연구의 심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행제도와 사행목적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며, 사행이 있었던 시기의 정치외교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사상사적, 문화사적, 경제사적 사행연구가 의미있을 것이다.

셋째, 사행연구는 국내외 학제간 연구가 필수적이다. 사행은 연관되는 분석대상이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제도, 문학, 철학, 인식체계, 미술, 무용, 음악, 과학, 신분 등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학문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학제간 연구에 있어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제도사적 이해이다. 사행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없이 제 분야에서 단편적인 사적 사행기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는 사상누각이라 할 것이다.

「조선과 중국(명·청)의 사행외교」 토론문

민덕기 (청주대학교)

(1) 본 논문의 의의

김경록 발표자는 조선시대 쏠 시대에 걸쳐 한중관계를 제도사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 분석한 정열적이며 독보적인 학자이다.

a) 기존연구의 문제 지적

① 使行路와 旅程에서의 聞見 중심으로의 연구 경향 지적. 또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설화를 특정 사신의 독특한 감회와 인식인양 분석하는 경향 지적하고, 사신이 일정
한 틀을 미리 작성한 후 이에 보충하거나, 通事를 통한 傳聞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고
축소 평가

② 사행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에 소홀

b) 使行 중심의 한중관계 연구 시각 제시

① 조선시대 국제질서의 변화과정과 대중국 사행의 제도화 과정 검토

② 사행의 절차, 사행구성, 사행명칭, 외교문서, 사행원의 역할, 사행기록, 사행의 종료
와 주재관(大使體制) 등에 대한 검토

③ 明·清代 대중국 사행의 역사적 의미 분석

c) 韓中 사행외교 연구는 제도사 연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객관적으로 강조

d) 19쪽 ; “이러한 조선의 대청인식 변화는 청의 대조선정책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명에
비해 청은 우호적인 대조선정책을 취했다. 물론 정치, 외교적으로 대조선정책을 강압적
으로 취하기도 했지만, 명 황제는 대체로 정치적 무관심과 향락적 경향으로 공녀, 공물,
특산물 등을 요구했지만, 반면에 강화 후반 이후 조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옹정제
이후 매우 우호적인 정책을 취했다. 중국사신의 접대부담은 동일했지만, 明使의 탐학적
인 면을 淸使에서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청 황제가 청사의 탐학을 강력하게

제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청 황제 및 사신의 조선인식 및 태도변화는 중화를 자처한 청을 새롭게 인식하는 이유가 되었다.” → 明·淸사행의 비교를 통한 참신한 시각으로 주목

e) 발표자에 대한 금후 연구 기대 ; 한중관계를 한일관계와 비교하는 연구

(2) 부연 설명이 요망되는 부분

- a) 조선시대 全 시기를 언급해서일까 註 등을 통해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散見
- b) “최근에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조공체제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경향”
- c) 6쪽 ; “외교문서는 (중략) 중요한 문서였다. 최고 등급의 외교문서에 의해 (중략) 구성 등이 결정된다. (중략) 조·중간 대외적 충돌이 발생하면 (중략) 조선의 최고 문장과 재료로 (중략) 시행하였다.” → ‘최고 등급의 외교문서’란? ‘조선의 최고 문장과 재료란’란?
- d) 9쪽 ; “홍무제는 윤이·이초의 고변을 왜곡하여 중계문제로 활용하거나 국내의 文字獄을 대외적으로 적용시켜 표전문사건으로 강제하였다”
- e) 9쪽 ; “태종의 이러한 대내적 왕권강화는 대외적으로 정난지역의 정세를 활용하여 책봉을 받고”
- f) 9쪽 ; “(태종이) 만산군문제를 군인송환의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한 점, 여진족의 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영락제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여진족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한 점 등은 사행을 통해 성취한 외교적 성과였다” → 영락제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태종이 여진족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여 그 귀화를 적극 수용할 수 있었음이 사행 외교의 성과였다는 것인지?
- g) 21쪽 ; “동일한 연구자가 대중국 사행을 연행, 사행, 중국사행 등으로 논문별로 혼란스럽게 사용하는 실정이다.” → 중요한 지적임에도 註를 통한 典據 인용이 간과되어 있음.

(3)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

- a) 註 12에 “(홍무제는) 天命으로 宋을 이어 元이 중국이 되었지만 원은 이후 조훈을 지키지 않고 江上을 무너뜨려 천명이 떠나게 되었다고 천명했다.” → 明은 기본적으로 元을

천명을 받지 않은 오랑캐 침입자로 규정하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 漢은 秦을 天命을 받지 못한 왕조로 치부.

- b) 11쪽 ; “1589년 건주여진을 통일하여 만주족의 통합을 달성한 누르하치는” →건주여진 통일과 만주족 통합은 별개가 아닌지? 만주족의 통합 달성은 그 이후의 일이 아닌지?
- c) 12쪽 ; “후금의 흥기와 요동진출은 조선으로 하여금 대일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도록 강제하여 결국 1609년(광해군 1) 일본과 己酉約條를 체결하고 평화체제를 맺었다.” →일본과의 평화체제 성립은 1607년 제1차 회담겸쇄환사의 파견과 국서 교환에서 찾아야 할 듯. 기유약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무역적 측면이 중시될 듯. 그런 점에서 對日使行 외교가 더 중요?
- d) 12쪽 ; “이괄의 난으로 후금군대의 조선출병이 계획되었다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으며, 조선은 하삼도의 병력을 양계에 배치하여 전쟁에 대비했다.” →후금의 조선출병 계획은 이괄의 난을 도와주기 위함인지?
- e) 12쪽 ; 후금의 조선과의 관계를 논하는 가운데 “후금은 세력확장 과정에서 제 세력과 맹약을 체결하여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라고 표현. ‘제 세력’이란 누구인지?
- f) 13쪽 ; “이자성의 난으로 명이 내부적으로 붕괴하자 후금은 청을 개칭하고 병자호란을 일으켜 조선을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시켰다.” → 이자성의 명 멸망은 1644년, 병자호란은 1636년.
- g) 19~20쪽 ; “19세기 서양의 동양진출이 현실화되면서 조선은 (중략) 청 중심의 조공체제에서 이탈되어 서양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되었다.” →‘서양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일본’이라면 1858년의 日米 修好通商조약 이후 네덜란드·러시아·영국·프랑스와 동일한 조약 체결한 것을 가리키는지? 일본이 과연 ‘청 중심의 조공체제’에 편입되어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탈’이란 표현은 곤란할 듯
- h) 21쪽 ; “燕行使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행명칭”이라 비판 →全無하지는 않은 듯
 - ① 『숙종실록』 37권, 숙종 28년 12월 20일 병신 3번째기사 ; 병조판서 이유가 청대하여, 해변 방비를 신척하는 일 등을 아뢰는 가운데, “蓋是時燕行使臣狀啓”라 표현
 - ② 『비변사등록』 숙종 45년 1719년 02월02일(음) ; ‘燕行使臣’이란 표현
 - ③ 『비변사등록』 영조 38년 1762년 10월19일(음) ; ‘大異於燕使之行’이란 표현

- ④ 『승정원일기』 27책 (탈초본 512책) 숙종 45년 1월 29일 임인 33/37 기사 1719년 康熙(淸/聖祖) 58년 ; ‘頗異於燕行使臣’이란 표현

(4) 단순 질문

- a) ‘明 중심 국제질서’라 표현 →구체적으로 어떤 질서인가?
- b) 찬탈과 反正인 세조·중종의 承襲에 대한 明의 책봉을, 조선의 열렬한 사행외교의 성과로 자리매김 →기본적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명은 조선의 內政(왕위계승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배워옴
- c) 8쪽 ; 遼東使行은 使行 목적지가 遼東都司. 明代에 요동사행이 316회로 부경사행의 半을 차지 →부경사행과 구분되게 요동사행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지?
- d) 13쪽 ; 대후금사행에서 ‘春信使’, ‘秋信使’란 호칭의 유래는?
 - ① 대일관계에서의 ‘신사’, ‘통신사’가 대후금관계로 轉用된 것인가? 중국사에서의 ‘信使’ 유래는 없는지?
 - ② 宋·遼 양국간에는 975년 이후 ‘國信使’가 왕래. 宋은 고려에도 ‘信使’ 파견. 이와 관련하여 조선조가 사절을 ‘通信使’, ‘信使’라고 命名하여 일본과 後金에 파견한 것은 이 ‘國信使’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민덕기,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關係』 경인문화사, 2007, 97쪽).
- e) 발표 내용이 명·청시대 전체를 커버하려 해서 그런지 개설적이고 自說 중심으로 전개. 기존 연구나 다른 연구자와의 비교 평가가 생략되어 있음
- f) 내용상, 명청교체기 설명에서 정조대로 이동. 효종~영조간의 한중관계가 거의 생략된 느낌
- g) ‘조공체제의 핵심사항은 계서적인 단일성’, ‘중화주의에 기반한 서계적 성격의 조공제도’ → ‘계서적’, ‘서계적’이란 표현이 주목. ‘階序的’, ‘序階的’인지?

(5) 수정 요망 개소

- a) 본문엔 註가 94)로 표기되어 있으나 註의 일련번호는 105)로 처리
- b) 8쪽 ; “태조대 건국직후 (중략) 홍무제의 부정적인 조선인식이 작용하여 조명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조선 건국직후 홍무제는 (중략) 다소 완화된 외교정책을 시행하여 이전까지 침예하게 강요하였던 국경선문제를 강제하지 않았다. 1392년(홍무 25) 조선 개국과 동시에 명에 이성계의 즉위를 통보하는 사행을 파견하자 홍무제는 불간섭의 입장을 견지했다. 태조는 즉위통보, (중략) 등 86회의 사행을 파견했다. 이에 대해 홍무제는 지속적으로 조선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책봉을 거부하고, (중략) 강압적인 외교정책을 시행했다.” →조선 건국기 홍무제의 대응이 ‘부정적’, ‘완화’, ‘불간섭’, ‘의구심’, ‘강압적’이라 하여 호의적·非호의적이란 표현을 동시 사용.

c) 10쪽 ; “(世祖 초기의) 철저히 준비한 명사접대의 연회자리는 사육신의 의거가 계획된 자리이기도 했다” →본문의 논리 전개와 무관하므로 註로 처리함이 좋을 듯

d) 註 52의 ‘민덕기 편저’ →편저가 아니므로 ‘민덕기’로 충분

(6) 漢字 표기 요망 개소

일례 ; ‘한인군웅’ →‘漢人群雄’

제4발표

조선전기 통신사행과 對日外交의 특징

발표 : 장순순 (가천대학교) / 토론 : 이승민 (동국대학교)

1. 머리말
2. 조선전기 통신사행의 실태
 - (1) 통신사 명칭의 정착과 세종대의 통신사
 - (2) 세조대의 통신사
 - (3) 성종이후 통신사의 파견 시도
3. 조선정부의 통신사 외교와 통신사행의 중단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 한일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통신사행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주제 가운데 통신사행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행에 관한 기존 연구가 대부분 조선후기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조선전기 통신사행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조선후기 통신사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간단히 언급되거나 對日使行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져 온 것이 대부분이다. 그 결과 통신사만을 독립해서 다른 연구의 그 수가 적고 연구 주제도 조선전기 통신사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 통신사행의 시작이 언제였는가에 관한 연구, 사행록이나 통신사 복식에 관한 연구가 있다.¹⁾ 이는 조선전기 통신사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가 조선전기 통신사를 독자적인 주제로 하여 그것을 규명하는 형태로 다뤄지기 보다는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언급을 위한 서설 정도로 취급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조선전기의 통신사행은 후기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통신사가 파견된 시기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 해당되며, 일본으로서는 室町時代 초기부터 織豊政權期를 거쳐 江戸時代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그 성격이나 형태는 양국의 독자적인 정치양상과 넓게는 동아시아의 국제적 양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유형화시키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²⁾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선전기 통신사행을 살펴보고자 한다.³⁾ 먼저

1) 조선전기 통신사에 관한 연구로는 三宅英利,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1985년과 한문종, 「조선전기 對日使行과 對馬島」, 『한일관계사연구』 49, 2014년, 손승철, 「통신사의 시작과 연구현황」, 『조선시대사학보』 27, 2003 등을 들 수 있다. 三宅英利는 본 저서의 제2장 「通信使の初期形態」에서 室町幕府と通信使라는 주제로 조선전기 통신사를 다루고 있으며, 한문종은 조선전기 대일사행과 조선후기 대일사행을 비교 분석하여 시기별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조선전기 통신사행에 관한 연구성과는 한문종, 「조선전기 한일관계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손승철, 위의 논문(2003); 장순순, 「통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2, 경인문화사, 2005년)에 정리되어 있다.

2) 三宅英利,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1985년, 41쪽.

3) 豊臣秀吉의 등장과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의 와중에서 이루어진 대일사행은 명칭은 ‘통신사’였지만 조일양

통신사행의 파견 실태와 구성, 파견목적, 사행 기간, 사행의 호송 등을 포함한 조선전기 통신사의 파견과정을 살펴보고, 조선정부가 국왕사절인 통신사를 일본 막부장군에게 파견함으로써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조선전기 통신사 외교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나아가 조선후기와 달리 足利幕府로부터 공식적인 사절 파견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했던 조선정부가 1479년(성종10)통신사를 기점으로 파견이 중단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조선전기 통신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밝혀줄 뿐 아니라 조선전기 한일관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조선전기 통신사행의 실태

(1) 통신사 명칭의 정착과 세종대의 통신사

조선 건국 이후 조선정부의 대일정책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왜구문제의 해결이었다. 때문에 조정에서는 해양 방어와 왜구 회유 등 다양한 왜구대책을 실시하는 한편 막부에게 사자를 파견하여 최고 통치자 선에서 왜구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조선이 건국되던 해인 1392년 11월 승려 覺鋹를 室町幕府의 장군 足利義滿에게 파견하였고, 足利義滿은 九州節度使 今川貞世(源了俊)에게 왜구 금지와 피로인의 쇄환을 명하였다.

1403년(태종3) 조선의 태종과 일본의 足利義滿은 명 황제의 책봉을 받고 명의 조공제도에 편입되었다. 이듬해인 1404년 일본에서 ‘일본국왕 源道義’ 명의의 사신을 조선에 파견함으로써 조일간에는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조선에서는 막부장군을 일본의 정치와 외교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조선국왕과 대등하게 대우하였다. 그 결과 조선 국왕과 일본 막부장군 사이에 대등한 敵禮關係의 교린외교가 성립되었으며,

국의 통신사행 실시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변칙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본 논문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이후 활발한 사절의 왕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사절이 바로 통신사이다. 한편 대마도주를 비롯한 일본의 지방 호족들과는 기미관계의 교린외교를 전개하여 사절의 왕래가 있었다.⁴⁾

조선 건국 후 조선정부가 일본에 파견한 조선국왕사가 통신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413년(태종13) 정사 朴賁의 사행부터이다.⁵⁾ 조선국왕사는 이후에도 회례사와 통신사가 혼용되어 나오다가 1432년(세종14)에 이르러 조선국왕사=통신사라는 명칭이 정착된다.⁶⁾

1413년(태종13) 12월 1일 조선시대 최초의 통신사에 朴賁가 임명되었다. 이때의 통신사 파견은 ‘九州의 使客’이 신장군 足利義持의 습직 사실을 알려오면서 비롯되었다. 통신사 박분 일행은 국왕 앞 서계와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한양을 출발하였으나 박분의 ‘병을 핑계로’ 경상도에서 사행이 중지되었다.⁷⁾ 당시 조정에서는 종사관을 파견하거나 少貳氏의 사자 大護軍 平道全에게 위탁하는 방안, 다른 인물의 선임 등의 논의가 있었지만, 명나라가 왜구를 토벌하려는 상황에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중국 연안에서 발생한 왜구문제의 해결과 1410년 報聘과 장군 足利義滿을 弔喪하기 위해 도일하였던 梁需 일행이 귀국 도중에 만난 해적을 막부가 처벌하지 않은 것이 사행중지 배경이었다.⁸⁾

4) 한문종, 「조선시대 對日使行과 對馬島」, 『韓日關係史研究』 49, 한일관계사학회, 2014, 314~315쪽

5) 1960년대 이후 30 여 년 동안 통신사연구를 해왔던 三宅英利는 통신사를 규정하는 한계, 즉 통신사 개념에 대하여 논하면서 1655년(효종6) 이후 통신사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 그에 따르면 ① 조선국왕이 일본장군에게 파견한 것, ② 일본장군에 관한 길흉경조 또는 양국간에 긴급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회례·보빙의 의미가 아닌 것, ③ 조선국왕이 일본장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와 예단을 휴대하고 감, ④ 사절단은 중앙관리 3인 이하로 편성함, ⑤ 통신사 또는 그에 준하는 국왕사의 호칭을 갖는 것 등의 다섯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하였다. 미야케는 이러한 조건에 합치되는 첫 통신사는 1413년 정사 朴賁이지만, 이 사행은 경상도에서 중지되었기 때문에 최초의 통신사는 1428년 정사 박서생이라고 규정했다(三宅英利,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1985년)

6) 조선시대 태조 이래 임진왜란 이전까지 조선에서 파견한 ‘일본국왕사’는 모두 24회였다. 그러나 이들 사절의 명칭이 모두 통신사는 아니다. 通信官, 朝官, 回禮使, 回禮官, 通信使 등 그 명칭이 다양하였다. 더욱이 동일한 사행에 대해서도 사행 명칭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조선전기 통신사 명칭의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는 줄고, 「조선전기 통신사의 개념과 성격」, 『전북사학』 37, 전북사학회, 2010, 48~54쪽 참조.

7) 『태종실록』 태종 13년 12월 병오(1일), 태종 14년 2월 을사(1일)

8) 이 사절은 통신관과 통신사라고도 불렸다. 『실록』에는 사행 파견 당시에는 ‘통신관’으로(『태종실록』 태종

1428년(세종 10) 1월 장군 足利義持의 사망과 동생 義宣의 장군 습직 사실이 그해 5월 左衛門大郎(早田氏)에 의해 조선에 전해졌다.⁹⁾ 7월부터 세종은 통신사행 실시를 준비하였다. 세종은 통신사에게 일본에서 百篇尙書를 구입해 올 것과 倭紙制作法의 습득, 중국에 바칠 金의 매입 등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같은 달 博多 상인 宗金이 예조앞으로 일본장군의 교체 소식을 알려왔으나 그즈음 左衛門大郎이 일본 국내가 전쟁 중이어서 길이 막혀 다니기 어렵다는 내용의 서계를 보내왔으므로 일시 통신사의 파견을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九州巡撫使 平常嘉가 足利義持의 죽음과 그 동생 足利義教의 즉위 사실을 보고하며 大般若經을 청구하였고, 10월에도 筑前州 太宰 少貳藤原滿貞으로부터도 장군 교체 사실이 전해졌다.¹⁰⁾

그해 12월 7일 통신사 大司成 朴瑞生·副使 大護軍 李藝·서장관 전 副校理 金克柔가 신장군의 습직 축하와 구장군의 致祭를 목적으로 한 사행을 출발하였다. 이들은 신장군의 서계와 예물, 구장군의 치제를 위한 예물 외에도 左衛門大郎, 少貳藤公, 九州都元帥源公, 一岐州 志佐源公, 佐志 외에 大內持世 등에게도 각각 서계 및 예물을 보냈다. 大內氏에는 선대로부터 왜구금지에 노력한 공적과 무자년에 李藝 등의 구호 및 호송한 대가로, 少貳氏에게는 당시 九州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糧米와 雜物을 지급한 것으로, 이들에게 서계와 예물을 보낸 것은 통신사의 파견통지와 향로안전의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¹¹⁾ 이듬해인 1429년 3월에는 사행 중인 일본에서 통신사 박서생이 예조에 기아로 곤궁한 상태에 놓여있는 대마도의 宗彦七과 宗貞盛에게 각각 米豆 2백석과 80석을 하사해줄 것을 요청하자 조정에서 지급하고 있는데¹²⁾ 이것 또한 통신사 호송에 대한 대가로 짐작된다.¹³⁾

13년 12월 병오(1일)), 이듬 해 2월 사행 정지 명령을 내릴 당시에는 ‘통신사’로 나온다.(『태종실록』 태종 14년 1월 을사(1일))

三宅英利는 통신사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조선시대 최초의 통신사로 파악하였다. 그는 “조선왕조 최초의 통신사는 그것이 임명된 시점에 있어서는 형식과 호칭이 분명한 1413년(태종 13)에 편성된 정사 박분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행이 경상도에서 중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완전한 의미의 통신사는 1428년(세종 10) 11월에 임명되어 형식, 호칭을 모두 구비한 후 다음 해에 파견되어 室町幕府와 교섭을 수행하고 귀국했던 정사 박서생 이하 사절을 최초의 통신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였다(三宅英利, 위의 책, 56쪽). 三宅英利가 정의한 통신사의 조건 적을 것.

9) 『세종실록』 세종 10년 5월 무오(7일).

10) 『세종실록』 세종 10년 7월 신해(1일), 8월 계미(4일), 을유(6일), 을사(26일), 10월 갑진(26일).

11) 『세종실록』 세종 10년 11월 갑술(26일), 12월 갑신(7일).

당시 博多는 豊後守護 大友持直의 지배하에 있었고, 막부는 大内盛見을 代官으로 임명하여 筑田直轄을 시도하고, 어럽사리 大内・探題와 少貳・大友와 항쟁이 격화되어 갔다.瀬戸内海를 동쪽으로 항해하여 兵庫에 상륙한 후 京都에 도착한 일행은 1429년(세종 11) 6월 19일 장군 足利義教로부터 仁和寺 燈持院에서引見을 허락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장군 足利義教의 답서와 예물을 받고 역행하여 부산을 거쳐 그해 12월에 귀국하였다.¹⁴⁾

朴瑞生은 세종에게 復命하는 자리에서 ‘對馬島에서 兵庫에 이르기까지’ 직접 견문한 일본의 국내사정을 보고하였다. 그는 足利政權의 허약성을 언급하며 왜구의 단속을 위해서는 대마도와 大内氏의 협조가 필요하며, 막부장군과 수호하는 것이 비록 교린하는 도리는 되지만 왜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책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의 大事 또는 報聘을 제외하고는 일부러 사절을 파견하지 말고, 각 지역의 大名 앞으로 후하게 보내고, 받는 것을 박하게 하여 그들을 달래며, 종종 사신을 보내 지극한 뜻을 효유하여 해적의 금지책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어쨌든 박서생 통신사를 통하여 세종정권은 일본 국내 사정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¹⁵⁾

박서생의 復命 내용은 세종의 대일정책에 충실하게 반영됨으로써 세종은 변방의 충실을 계획함과 동시에 내항하는 일본인에게는 優遇策과 제한적인 규정을 병용하여 교린체제를 확립하였고,¹⁶⁾ 뒤이은 통신사행에서도 반영하였다.

12) 『세종실록』 세종 11년 3월 계유(27일).

13) 또한 대마에서는 통신사가 탄 배(官船)가 좁아서 군량 100석을 적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一岐에서 司正 藤次郎의 배를 빌려 一岐 항해하여 博多에 정박하였다. 이때 조정에서는 그 대가로 등차량의 아들 藤四郎에게 쌀 20석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리고 일본 石城 사람 宗金이 자신의 輕艦으로 질병에 걸린 관선의 조선 사공을 송환하면서 토산품을 바쳐오자 正布 70필을 회사하였다(『세종실록』 세종 11년 4월 무자(13일)).

14) 三宅英利, 『위의 책』, 59쪽; 『세종실록』 세종 11년 12월 을해(3일).

15) 북명에서는 또한 일본국정탐색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만한 왜구에 대해서는 출신지별 분류와 함께, 志賀・瀬戸社島는 대내씨에게, 内外大島는 宗像氏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 등 지방제후의 지배계통까지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또한 그밖에 사신에 대한 薄待, 불전존중의 상황, 농촌에서의 수차활용, 通貨, 교통, 僧司, 錢의 효용, 魚梁稅, 浴屋, 街市制, 수로의 어려움 및 수행원에 대한 賞職, 유구국 피로인의 쇠환, 감저재배의 이익, 금은동철, 珍山の 자유화, 일본재주 피로인의 화환, 연해재주 일본인의 대책 등 15개 조항으로 집약되어 있다(『세종실록』 세종 11년 12월 을해(3일)).

16) 中村榮孝, 『日本と朝鮮』, 至文堂, 1966, 112쪽.

1439년(세종 21) 4월 첨지충추원사 高得宗, 상호군 尹仁甫, 金禮蒙을 정사·부사·서정관에 임명되었다. 이때의 사행 목적은 將軍家の 경조가 아닌 ‘舊好의 회복’이었다.¹⁷⁾ 7월 출발에 앞서 예조에서 작성된 ‘事目’에는 종사관에게 사행 참여 수행원들에 대한 단속 강화 임무가 부여되었다. 수행원들이 사사로이 관할 영역을 벗어나거나 일본인들과 접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밀무역 행위를 규찰하도록 하는 업무 외에 사행 중 일기를 작성하여 계문하도록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리고 수행원으로 선발된 사람 가운데 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富饒한 선군의 뇌물을 받고 이름을 속여 사행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처벌을 강화할 것과 사행 중 해적을 만나는 변을 당했을 때 법규의 준수를 위반할 경우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었던 것이다. 이 ‘사목’은 조선 후기 통신사에 있어서 수행원에 관한 단속 규정과 거의 흡사하며, 종사관의 감찰기능 및 사행 중 기록을 작성하는 임무도 동일하다. 사행 중 작성된 기록은 삼사가 귀국 후 국왕에게 보고되었으며, 통신사를 통한 일본국정탐색의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었을 것이다.¹⁸⁾

통신사 파견에 앞서 조정에서는 大內殿과의 통교가 논의되었으나 영의정 황희·우의정 허조·좌찬성 신개는 大內殿에게 사람을 보내 통신하는 것은 은 마땅한 일이지만 대내씨가 대마도와 원한이 있어서 왕복하는 것을 방해할까 염려되므로 국왕과 통신한다고 이름하고 겸하여 大內殿에게 가서 통신하는 쪽으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조정의 논의는 사람을 대마도에 보내어 사변을 탐지한 연후에 천천히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결국 大內殿과의 통교에 관한 논의는 보류된 상태였다.¹⁹⁾

출발에 앞서 세종은 통신사 파견이 막부와의 ‘구호의 회복’과 함께 구주의 대내씨와의 통신에도 목적이 있으나 大內·少貳氏 간의 전쟁과 일본 국왕이 아우와 화합하지 못하는 등 일본의 국내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파악한 터라 중간에 兵禍를 만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굳이 죽음을 무릅쓰고 大內殿과 일본 국왕에게 갈 필요는 없으나 사소한 어려움

17) 『세종실록』 세종 21년 4월 병오(29일), 7월 정사(11일).

18) 졸고, 위의 논문(2010), 53~54쪽.

조정에서는 일본에서 오는 사자의 수가 무려 1,3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마도주와 여러 사자들의 접대를 논하면서 “매년 사신을 보내 그 정세가 변하는 상황을 살펴서 대응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조선 조정은 여전히 室町幕府의 통제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세종실록』, 세종 21년 4월 갑오(17일)).

19) 『세종실록』 세종 21년 3월 신미(23일).

으로 중간에서 돌아와 일본인의 비웃음을 받는 일은 없도록 임무를 조심하라고 당부하였다.²⁰⁾

1439년 7월 11일 한양을 떠난 통신사 일행은 京都 도착하여 그해 12월 26일 足利義教에게 서계와 예물을 바쳤고,²¹⁾ 이듬해 2월 19일 足利義教의 답서와 예물을 받은 후 교토를 떠나 귀국 도중 大內持世와 防州·長州·豐州·筑州의 4州 通守修理大夫 多多良持世로부터 예조에 답서를 받은 후 5월 19일 한양에 돌아왔다.²²⁾ 1439년 통신사는 사행 출발에 앞서 사전에 예조에 의해 ‘事目’이 작성된 것이나 종사관에게 수행원 감찰과 사행 중 일기를 기록하여 귀국 후에 올리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통신사행의 규례와 형식이 서서히 정비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²³⁾

1443년(세종25) 통신사행의 목적은 足利義教의 사망과 足利義勝의 장군직 즉위 축하였다. 1441년(세종23) 12월 대마도주 宗貞盛이 사자 望古時羅를 보내 足利義教의 살해 소식과 足利義勝의 즉위 사실을 알려오면서 조정에서는 곧바로 통신사 파견을 둘러싸고 논의가 시작되었다. 통신사 파견에 앞서 조정에서는 일본에서 訃告使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사를 파견하는 것은 명나라에 대한 사대의 의리에 어긋나고, 통신사행의 실사가 명에 알려질 것과 崔浣 사건으로 대마도가 우리나라에 대해 원한이 있는 상태에서 통신사의 안전을 염려하여 파견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세종은 통신사의 파견을 주장하며 중국에 이 사실이 알려져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²⁴⁾ 드디어 1442년(세종24) 통신사의 정사에 卞孝文, 부사에는 尹仁甫, 서장관에는 신숙주가 임명되고 사행원은 50騎였다.²⁵⁾

20) 『세종실록』 세종 21년 7월 무오(12일).

21) 『蔭涼軒日錄』, 永享 11년 12월 26일(『增補續史料大成』); 三宅英利, 위의 책, 63~64쪽 재인용.

22) 『세종실록』 세종 22년 5월 병인(25일).

23) 『세종실록』 세종 21년 7월 기사(3일); 三宅英利, 위의 책, 63쪽.

24) 賴沙文은 1442년 6월 宗貞盛의 사자로 조선에 건너왔다. 당시 賴沙文은 小二澱이 전쟁에 패하여 영토를 잃고 군사 5천명을 거느리고 대마도에 머물러 있다고 전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경상 좌·우도 병마도 절제사와 수군도안무처치사에게 대마도가 만약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수 있으니 방어를 철저하게 할 것이며, 왕래하는 왜인을 통하여 돈사문의 정보가 정확한지를 묻도록 전하였다.(『세종실록』 세종 24년 6월 갑진(15일)) ; 『세종실록』 세종 25년 정월 기사().

25) 『세종실록』 세종 24년 12월 을미(9일), 임인(16일), 경술(24일); 仲尾宏·許芝銀, 위의 논문, 140쪽.

1443년 2월 21일 통신사가 한양을 출발하였다. 그들은 足利義勝의 즉위를 축하하는 서계와 예물, 구장군의 치제를 위한 제문도 지참하였다. 동시에 예조에서는 大內氏에 전하는 서계와 예물을 준비하였으며, 少貳·管領·對馬島主·一岐州志佐·松浦志佐 등 여러 영주에게도 서계와 예물을 보냈다.²⁶⁾ 이는 1428년 통신사 박서생이 세종에게 복명했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西國의 여러 영주에게 통신사의 안전을 요청하고 그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⁷⁾

대마도에서 변효문 일행은 宗貞盛에게 서계와 예물을 전하고 선도의 안내를 받아 赤間關에 도착하였다. 赤間關에서 기다리고 있던 大內教弘은 赤崎浦에서 예물을 받고, 京都에 통신사의 도착을 경도에 알리고 4척의 배를 동원하여 尾路까지 호송하였다. 그러나 尾路에서 통신사는 장군의 교서가 없다는 이유로 호송을 받지 못하고, 兵庫에 도착한 후 通事 尹仁始를 먼저 京都로 먼저 보냈다. 당시 兵庫守護官은 통신사에 대하여 京都의 管領과 伊勢에게 보고하였지만 회답의 없고, 다만 그 업무 담당자가 大內氏의 보고에도 아직 회답하지 않았는데 제멋대로 상경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장군의 나이가 어려 여러 대신이 권세를 제멋대로 부리는 상황에서 사신을 접대하려면 각각 비용이 들고, 막부에게는 예물이 있지만 제후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상태에서 접대비용만 들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왔다고 전했다. 그런 와중에 경도에 간 윤인시가 돌아와 관령이 조선사신을 들이지 말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이미 도착하였기 때문에 舊例에 의하여 접대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통신사는 京都에 들어가 서계와 예물을 가지고 장군을 만날 수 있었다.²⁸⁾ 통신사의 入京을 둘러싸고 막부 내부의 논의가 분분했던 이유는 막부의 지방 호족세력에 대한 통제력 결여와 재정궁핍에서 찾을 수 있는데,²⁹⁾ 그러한 상황은 구장군에 대한 제례와 신장군의 즉위를 축하하는 예식의 형식에서도 잘 드러났다. 구장군에 대한 제례는 조선식의 예대로 하나 장군은 나이가 어리므로 참여하지 않고, 모든 예식은 실권을 장악한 관령이 장군을 대신하였다.³⁰⁾

26) 『세종실록』 세종 25년 2월 정미(21일).

27) 三宅英利, 손승철 옮김, 위의 책, 66쪽.

28) 『세종실록』 세종 25년 10월 갑오(13).

29) 『康富記』 嘉吉 3년 5월 6일(『增補史料大成』37); 삼택영리, 손승철 역, 위의 책, 67쪽에서 재인용.

변효문 일행의 귀국 길은 안전하지 못했다. 그들은 경도를 떠나 귀로 중에 伊要에서는 호송하는 자들이 습격하여 장군과 관령이 조선국왕에게 보낸 예물을 탈취하려고 하여 錢貨를 건네주고 해결하였다. 이들 통신사의 불안한 귀국 길은 이후 조선정부가 통신사 파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통신사 이행이 귀국하던 중에 赤間關에서는 請經使 光巖이 뒤쫓아 와서 7월 21일의 足利義勝의 죽음과 그의 동생(三春 후에 義成, 義政)의 장군직 취임을 전하였다. 통신사는 山口에서 전 大內殿(大內持世)을 제사지내고 청경사의 도움으로 一岐에 잡혀있던 남녀피로인을 찾아 쇠환하기도 하였으며,³¹⁾ 대마도주 宗貞盛과 조선 간에 세견선수를 정약한 癸亥約條 체결에도 간여하였다.³²⁾

경상도 옥포에 도착한 통신사는 10월 13일 사행 과정에 대하여 馳啓하였다. 한양에 도착한 변효문 등은 19일 思政殿에서 세종을 알현하고, 막부장군의 서계와 별폭을 바쳤다.³³⁾ 1443년 통신사는 1590년(선조 23) 豐臣秀吉에게 파견하였던 사행을 제외하면 교토에 가서 사명을 완수한 마지막 사행이었는데, 통신사가 막부 이외 지역의 여러 영주와 우호의 임무를 가졌다는 점은 조선후기 통신사와 다른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조선전기의 대일정책은 대단히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조정은 안으로는 대일멀시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국왕이나 諸氏의 사자를 ‘조선적 외교질서’ 속에서 외교의례적으로는 낮은 위치에 두면서도 室町幕府로부터 연락이나 요청도 없는데도 서계·예물·제물을 휴대시켜 막부 장군에게 축하 및 조문을 위한 통신사를 보냈고, 더욱이 서일본 영주층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확대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국제외교질서에서 볼 때 事大政策의 연장으로 정중하고 합법적인 敵禮(대등) 외교라고 할 수 있다.³⁴⁾

어쨌든 세종대의 통신사는 비록 교토까지 왕래하는 과정에서 일본 해적들에게 침탈당하고 안전상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기는 하였으나 모두 京都까지 가서 장군을 직접 만나 조선 국왕의 서계와 별폭을 전달하는 사명을 완수하였다. 특히 세종대에 와서 통신사의 명칭이 정착되게 되는데, 여기에는 세종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들 수 있다. 세종대(1418

30) 『세종실록』 세종 25년 10월 갑오(13).

31) 『세종실록』 세종 25년 10월 갑오(13일).

32) 中村榮孝, 『日朝關係史の研究』 下, 吉川弘文館, 14쪽.

33) 『세종실록』 세종 25년 10월 경자(19일).

34) 三宅英利, 위의 책, 66쪽.

~ 1450)는 조선 건국 이후 찾아온 안정기로 중앙집권체제가 정비되고, 문화의 융성이 이루어졌으며, 국방면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더욱이 對馬島정벌 이후 왜구세력의 침투가 소멸되면서 왜구로부터 자국의 연안을 보전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했기 때문에 왜구문제가 접하는 대일외교상의 비중이 떨어진 시기였다.³⁵⁾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조선정부는 막부정권과 교린에 입각한 통신관계를 설정하여 일본국내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로를 마련하고,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왜구 문제의 해결 루트의 하나로 막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세조대의 통신사

변효문 통신사 일행이 귀국하던 도중에 발생한 足利義勝의 죽음과 그의 동생(三春 후에 義成, 義政)의 장군직 취임 소식이 조선에 전해지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던 1443년 통신사 파견이 중단되고, 1455년(세조원)에 다시 통신사 파견이 논의되었으나 당시 좌참찬 姜孟卿의 주도한 조정의 논의는 일본측에서 세조의 즉위사실을 알게 되면 축하사절이 도래해 올 것이므로 回禮하면 족한 것으로 정리되면서 별도의 통신사의 파견은 실시되지 않았다.³⁶⁾

이후 1460년(세조5) 8월 23일 첨지중추원사 송처검이 통신사에 임명되었다. 부사는 행호군 李從實, 서장관에는 중부주부 李觀이었다. 18년만에 이루어진 통신사는 大內殿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³⁷⁾ 이때의 통신사는 세조 즉위 후 조선을 방문하여 대장경을 구해갔던 일본국왕사 파견에 대한 회례의 사절이었다. 足利義政의 사자 秀彌의 來聘과 佛典·佛具의 거둬진 청구에 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에게는 우리나라에 없는 서적 등을 구입해 오는 임무도 부여되었다.³⁸⁾ 이때의 통신사는 장군교체라는 사안이 아니라 청구한 대장경 등 經書 증정을 임무로 한 사행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35) 참고, 위의 논문(2010), 54~55쪽.

36) 『세조실록』 세조 원년 7월 신묘(18일).

37) 『성종실록』 성종 6년 6월 신사(4일).

38) 사료에는 ‘信使’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신사는 막부 장군이 보내온 일본국왕사를 말한다.(『세조실록』 세조 5년 8월 임신(23일)).

통신사 파견에 앞서 조선정부는 막부장군 외에 여러 영주들에게 전하는 서신과 경전 및 예물을 준비하였다. 이들은 幕府將軍 앞 국서와 예물뿐만 아니라 大內多多量, 畠山修理大夫, 左武衛, 佐佐木大膳大夫, 大和守, 對馬太守 宗氏, 肥前·松浦·一岐州太守 志佐氏에게 전하는 각각의 서계와 예물이 마련되었다.³⁹⁾ 大內多多良에게는 예조판서 洪允成의 명의로 서신과 예물을 준비하여 통신사의 호송과 ‘霸家臺(博多)의 상인들이 여러 곳의 문인을 함부로 받아 조선에 오는 것에 대한 통제를 부탁하였다. 예조참판 黃孝源은 大和守앞으로 서신과 예물을, 畠山修理大夫에게는 예조판서 홍윤성 명의의 서신과 예물을, 예조참판 황효원은 關西道 大友源公에게 보내는 서신과 예물을 준비하였다. 예조참의 徐居正은 對馬州太守(宗成職)에게 서신과 예물을 주어 귀국할 때 대마도 경유시 호송을 부탁하였으며, 예조좌랑 金永堅은 一岐州 佐志源公에게 서신과 예물을 준비하여 호송을 부탁하였다.⁴⁰⁾

그러나 이때의 통신사행은 교토까지 가지 못하였다. 1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세 척의 배에 나눠 타고 일본국왕사신의 배 2척과 대마도 倭船 2척과 함께 10월 8일 부산항을 출발했지만, 당일 오후 강풍을 만나 對馬島 배 두 척과 함께 수몰되었다. 대마도주 宗盛職의 서계를 통해서 통신사 일행의 조난 사실을 보고받은 세조는 잔치를 중단하고, 의정부에 서는 바닷가의 여러 고을에 시체를 수색하고 致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틀 뒤에는 경상도 등 7개도의 관찰사에게 일본 통신사 일행의 사후처리를 명하고, 예조에서는 대마도주 종성직에게는 배가 침몰하여 표류한 통신사행원의 구호에 감사하고, 찾지 못한 정사의 배와 표류민의 수색을 당부하여 회답서계와 예물을 지급하였다.⁴¹⁾

송처검 통신사 일행의 해양조난은 당시 조선 조정으로서는 매우 충격이었던 듯하다. 3년 뒤에 있었던 일본국왕사와 武衛京極殿 九州都元帥 명의의 사자에 대한 回禮使 파견에 대해 논의에서 조선정부는 1460년(세조6) 송처검 통신사의 조난 사실을 들어 사자 파견을 지연시키렸으며, 1468년(세조14)에 있었던 통신사 파견 논의 당시 사람들이 바닷길이 험하다는 이유로 일본에 가는 것을 꺼렸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⁴²⁾

이후 또 한 번의 통신사 파견이 세조대에 논의되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1468년(세

39) 『세조실록』 세조5년 8월 임신(23일).

40) 『세조실록』 세조 5년 8월 임신(23일).

41) 『세조실록』 세조 6년 1월 신사(3일), 임오(4일), 1월 계미(5일), 정축(30일).

42) 『세조실록』 세조 9년 8월 정해(1일), 세조 14년 3월 갑신(24일).

조14) 3월 24일 上黨君 韓明滄가 判決事 金良瓚, 行護軍 權恪, 執義 李克을 통신사로 추천하고,⁴³⁾ 다음날 정승 朴元亨은 일본 사신에게 통신사 파견 계획 사실을 알렸다.⁴⁴⁾ 그리고 1475년(성종6)에 통신사 파견을 위해 정사에 裴孟厚, 부사에 李命崇, 서장관에 蔡壽 등 삼사로 선발되었지만 결국 ‘日本兵革’을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였다.⁴⁵⁾ 그러나 1479년 통신사 등 이후 통신사 파견 준비과정에서 1475년의 예가 참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⁴⁶⁾ 1475년 통신사행을 준비하면서 조선전기 통신사행에 관한 제반 절차, 즉 ‘應行諸事’가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3) 성종 이후 통신사의 파견 시도

1474년(성종 5) 10월 일본국왕사 승 正球가 성종에게 高野山 西光寺의 수리비용을 청구하면서 일본 국내의 병란이 종결되었음을 전하였다.⁴⁷⁾ 국왕사 正球가 막부장군에 대한 사신 파견을 요청하자 성종은 11월 일본 국내 사정이 안정되면 통신사를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다.⁴⁸⁾ 이듬해인 1475년(성종6) 4월 2일과 6월 4일 경연에서 고관들에게 통신사 파견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신숙주는 일본 국내 상황 파악 후 통신사 파견을 주장했다. 領事 鄭昌孫은 막부장군측이 사신 파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통신사 파견에 반대를 표시하였다. 領事 洪允成은 송처검 통신사를 제외한 이전의 통신사는 모두 무사히 일본을 다녀왔으며, 해로가 험하다는 이유로 통신사 파견을 그만 두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일본 국왕사 正球의 사신 파견 요청 사실을 들어 막부가 통신사 파견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성종이 통신사 파견에 적극적이었으므로 예조 또한 통신사 파견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7월 16일 통신사에 의정부 舍人 裴孟厚, 부사 弘文館修撰 李命崇 서장관에 吏曹正郎 蔡壽가 임명되었으나 이 통신사는 실행되지 못하였다.⁴⁹⁾

43) 『세조실록』 세조 14년 3월 갑신(24일).

44) 『세조실록』 세조 14년 3월 을유(25일).

45) 『성종실록』 성종 6년 7월 계해(16일).

46) 1479년 통신사를 준비할 당시 예조의 啓上에 “이제 통신사행의 應行諸事は 을미년(1475년, 성종 6)의 예를 상고하여 조목조목 기록하여 아뢰입니다.”라고 되어 있다(『성종실록』 성종 10년 1월 정축(20일).

47) 『성종실록』 성종 5년 10월 기유(27일).

48) 『성종실록』 성종 6년 6월 신사(4일).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足利義政의 사자 性春이 명에 대한 조공을 위해 조선정부의 중재를 요청해 왔다. 당시 예조에서는 性春에게 통신사 파견을 타진하였으나 일본에 병화가 그치지 않고, 해적 때문에 길이 막혀 가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性春을 통해서 일본 국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서 조정에서는 통신사 파견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아지자 성종은 예조에 통신사 출발을 중단하도록 전교하기에 이르렀다.⁵⁰⁾

이전부터 줄곧 통신사 파견을 희망해왔던 성종은 1476년(성종7) 12월에 우부승지 임사홍과의 대화에서 다시 통신사의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비쳤고, 임사홍 또한 즉위후 일본에서 여러 번 사자를 보내와 來聘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報聘하지 않았으므로 交隣의 도리로 볼 때 파견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⁵¹⁾ 그리하여 다음 해인 1월 예조에서 ‘日本國通信使事目’을 마련하였다. ‘사목’은 조선후기 통신사 파견 전에 조일 양국간에 합의된 ‘통신사강정절목’과 같은 것으로, 정사, 부사, 서장관 외에 통사, 압물 등을 비롯한 수행원수와 막부장군과 대마도주를 비롯한 諸大名에게 보내는 예물과 사행 비용(盤纏)과 약재의 조달 방법, 선박의 마련, 사행 중 행렬의 구성, 格軍 등 하급수행원의 조달 등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규정으로 이루어졌다. ‘사목’에는 정사·부사 이하 각 수행원과 格軍, 일본 해로의 뱃길을 안내해주는 海上指路事知倭人 2, 3명에게는 10개월의 식량·鹽醬·饌物이 전례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⁵²⁾ 그러나 대마도주(宗貞國)가 통신사가 가는 것을 심히 꺼려하고 연기를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불가하며, 도주의 호송 없이는 통신사 파견이 불가능하며, 결국 굴욕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⁵³⁾ 성종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⁵⁴⁾

1479년(성종10) 1월에는 昌城 都護府使 李季소을 통신 부사로, 승문원 저작 趙之瑞가

49) 『성종실록』 성종 5년 11월 병자(25일), 성종 6년 4월 경진(2일), 6월 신사(4일), 을사(28일), 7월 계해(16일).

50) 『성종실록』 성종 6년 8월 정해(11일), 경인(14일), 신묘(15일), 정유(21일), 기해(23일).

51) 『성종실록』 성종 7년 12월 신묘(22일).

52) 『성종실록』 성종 8년 1월 정미(8일).

53) 예조를 비롯한 조정의 논의는 대마도주가 전한 상황을 근거로 병란의 평정을 기다릴 것을 제기하였고, 대마도주 宗貞國이 승 小古를 보내와 일본 국내 병란의 상황, 항로의 위험성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전해지면서 연기론이 주를 이루었다(『성종실록』 성종 8년 5월 갑술(8일), 경인(24일), 계사(27일))

54) 『성종실록』 성종 8년 10월 병오(12일), 임자(18일)).

군관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예조에서 앞서 성종 8년 1월의 ‘일본국통신사사목’을 참고하여 사행 준비를 위한 ‘사목’을 올렸다. 이 사목에 따라 통신사가 지나가는 길의 一岐・小二・九州의 松浦・志佐・大內 등에게 지급할 예물을 준비하였고, 3월에는 대마도주로부터 일본내 병란이 진정되어 사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통고가 있었다. 대마도주에게는 예물을 내려 통신사의 호송을 당부함으로써 사행준비가 완료되었다.⁵⁵⁾

이때의 통신사는 표면적인 파견목적은 수호였지만 일본국정의 탐색이 중요임무로 주어졌다. 더욱이 1443년 변효문 일행의 귀국 이후 36년간 교토까지 왕복한 통신사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 내부의 ‘국정탐색’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사목’에 명기된 국정탐색 내용은 ① 조선측에서 僞使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1474년 일본국왕사 正球首座에게 지급한 牙符 10枚가 제대로 막부에게 전달되었는지 막부 관리들에게 물어볼 것, ② 교토와 그 일대 권력자에게는 布物을 지급하고 그 族系와 職名을 자세히 갖추어 써올 것, ③ 일본 국내의 兵亂이 발생한 이유·기간, 사리의 옳고 그름 및 승패에 대해 조사해 올 것, ④ 山川風土와 族系 가운데 『海東諸國記』에 참고가 될만한 것은 모두 찾아서 묻고, 만약 착오가 있으면 보고 들은대로 標를 첨부할 것, ⑤ 수직인이나 수도서인 본인의 생존 여부의 파악 등이었다. 또한 사행을 수행한 조선인들의 단속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었다. 사적으로 일본인들과 만나는 것을 금하고, 弓矢와 火砲 등의 제작방법 등 조선 무기에 관한 정보가 일본에 새나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약재의 무역, 琉球와 久邊에 대한 정보, 漂流人의 쇄환 등을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⁵⁶⁾

그러나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준비되었던 사행의 실행은 간단하지 않았다. 4월 4일 통신사 이형언 등이 하직인사를 하고 한양을 출발하였으나⁵⁷⁾ 곧바로 慶尙右道水軍節度使로부터 大內殿과 少貳殿의 교전소식이 전해졌다. 성종은 통신사의 일본 도향을 일단 정지시키고, 중신들로 하여금 대책을 의논하도록 지시하였다. 鄭昌孫 등은 한양 체재 중인 大內政弘의 사자를 통해서 병란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하고 병란이 끝나기를 기다려 통신사를 파견할 것을 주장하였다. 尹弼商은 삼포왜인 중 한 두 사람을 厚待하여 대마도에 보내 사정을 살피고 온 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결국 성종은 두

55) 『성종실록』 성종 10년 1월 을해(18일), 병자(19일), 정축(20일), 3월 신사(25일).

56) 『성종실록』 성종 10년 3월 신사(25일).

57) 『성종실록』 성종 10년 4월 경인(4일).

의견을 받아들였다.⁵⁸⁾ 大內殿 사자 瑞興은 大內氏가 少貳氏를 이겼다는 것, 통신사의 호송은 對馬島에서 大內領까지는 對馬島主에서 호송하고, 大內領에서 교토까지는 大內氏가 호송할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 그리고 對馬島에서 파견된 平國忠이 大內領까지의 호송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조정에서는 大內殿의 사자 瑞興과 對馬島主가 특별히 보낸 平國忠을 접견하고 통신사의 안전한 호송을 부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⁵⁹⁾ 그러나 출발했던 통신사는 대마도에서 멈추었다. 대마도주가 兵亂으로 南路가 막혀서 교토까지 갈 수 없다고 전해왔고, 더구나 정사 이형원이 병으로 위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해 6월 통신사가 대마도에 건너오자 宗貞國은 병란 때문에 南路(瀬戶内海 루트)의 航行이 위험하다고 하여 통신사에게 북로(日本海 루트)의 항행을 제안하였다.⁶⁰⁾ 이 보고를 받은 조선정부는 정사 이형원이 발명한 것도 있고 “이제는 다시 병란을 일컬어, 호송하려 하지 않고 또 신사(信使)로 하여금 반드시 일찍이 왕래하지 않았던 길을 경유하게 하려 한다. ...또 세월이 얼마 안되어 (대마)도주가 말을 뒤집는 것이 이와 같으니 그 뜻을 끝내 알 수 없다. 더구나 그대도 병이 중한 터인데 무릅쓰고 행함은 마땅하지 못하니 속히 돌아오도록 하라.”라고 유시하여 통신사에게 귀국을 명하였다. 곧이어 특송사 源茂崎가 조선정부에 “남로는 어렵고 북로는 쉽다”고 말하여 북로항행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는데⁶¹⁾ 동년 9월에 정사 이형원이 거제도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결국 통신사행은 중지되었다.⁶²⁾ 이렇듯 통신사 파견에 대해 대마도가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은 통신사행으로 ‘虛像의 王城大臣’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공작이었고⁶³⁾, 대마도주가 주도한 서일본 각지의 諸氏(深處倭) 명의를 위사를 포함한 위사파견 시스템의 전체를 은폐하기 위한 것에 배경이 있었다.⁶⁴⁾ 7월 14일에 있었던 조정의 논의에서 李承召가 “저들이 일찍이 사신이라고

58) 『성종실록』 성종 10년 4월 계사(7일).

59) 『성종실록』 성종 10년 4월, 5월 임술(7일)·정축(22일).

60) 『성종실록』 성종 10년 7월 무진(14일).

61) 『성종실록』 성종 10년 7월 기사(15일).

62) 『성종실록』 성종 10년 9월 을축(12일).

63) 橋本雄, 『中世日本の國際關係』, 吉川弘文館, 2005.

64) 대마측이 통신사의 북로항행을 주장한 것은 일본의 寛正·應永期부터의 정란으로 瀬戶内해의 航行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북로를 항행해도 통신사가 일기·송포·博多 등을 경유

일컬어 우리나라에 끊이지 않게 왕래한 것은 모두 宗貞國의 詐術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信使가 일본에 도착하여 面質하게 되면 그 거짓이 바로 나타나는 까닭으로 우리 사신이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에서도 145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대마도의 위사파견 사실이 들어날까 염려되어 대마도가 조선의 통신사 파견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9월 12일 도승지 홍귀달로부터 이형원이 거제도에서 사망했다는 보고가 전해지고, 25일에는 押領通事에게 통신사가 휴대해 갔던 일본 각지의 賜送雜物과 路次盤纏雜物 등 예물을 諸司還納하라는 명이 내려졌으며, 指路倭 네 사람에게는 비록 사행이 중단되었지만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므로 賞賜米 20석을 그대로 하사되었다. 10월 15일에는 부사 이계동과 서장관 김흔의 복명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성종은 대마도주의 나이와 일본의 풍습, 풍년의 여부 등 대마도의 상황에 대해서 물었다. 이들에게 1資級이 가자되었다.⁶⁵⁾ 결국 성종은 “使者를 보내 보빙하는 것은 이웃나라와 교제하는 예절이다, 朝宗朝에 일찍이 통신하였던 까닭으로 통신사를 보내려고 했지만 뱃길이 매우 곤란하고, 저들이 또한 대우하기를 매우 야박하게 한다면 반드시 보낼 필요가 없겠다.”⁶⁶⁾고 하면서 통신사 파견의 의지를 접었다.

이후 임진왜란기에 있었던 1590년 통신사가 있기까지 조정에서의 통신사 파견논의는 세차례 더 있었다. 그러나 통신사 파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483년(성종14) 9월에는 大內義弘의 사자 定林寺住持 淸鑑의 요청으로 통신사 파견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 성종은 교린의 道에는 왕래교빙이 있어야 한다면 통신사의 파견의사를 피력했지만 조정의 논의는 일본국왕이나 大內氏로부터 요청도 없었고, 사행로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행되지 않았다.⁶⁷⁾ 1489년 足利義尙이 사망하고, 다음해

하여 京都에 도달하면 위사파견 시스템의 노출은 불가피한 것이 때문에 대마측이 굳이 북로항행을 주장한 것은 그것이 통신사행의 저지에 유효하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조선정부가 알지 못하는 북로를 항행하는 것에 신중하였다는 것이다. 이전에 통시사선이 대마근해에서 침몰사고가 있었고(세조 6년 정월 신사) 조선정부에게는 일본열도로의 항해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다. 이러한 조선정부의 자세를 살펴 알고 있던 대마측이 통신사파견의 중지를 의도하고, 특송사 源茂崎에게 북로항행을 아뢰게 하였다고 추측된다.(荒木和憲, 책, 95~96쪽)

65) 『성종실록』 성종 10년 9월 을축(12일)·병인(13일), 무인(25일), 10월 정유(15일).

66) 『성종실록』 성종10년 12월 경신(9일).

에는 義政이 사망하였다. 더욱이 義材가 장군습직을 할 때에도 통신사 파견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때에는 통신사 파견이 없었다. 조정에서는 전례에 따라 예를 중시하면서도 ‘國家多事’를 이유로 일본국왕사 慶彭首座에게 국서와 예물을 위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후 1535년(중종30)과 1557년(명종12년)⁶⁸⁾ 에도 통신사 파견이 논의되었지만 더 이상 통신사의 파견은 없었다.

결국 조선전기 통신사가 교토까지 상경한 것은 1443년 변효문 사행이 마지막이었다. 즉, 이후 임진왜란기인 1590년까지 약 150년간 일본국왕사인 통신사가 교토에 가서 막부 장군과 직접 만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정부는 일본의 국내정세에 관한 정보를 대마도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조선으로 하여금 임진왜란 전야의 일본 국내 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⁹⁾

이상, 조선전기 통신사행의 파견 실태를 간단하게 표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전기 통신사행 일람

년대	사행직명			인원	사명	사행요청 주체	길안내	사행기간/비고
	정사	부사	종사관					사행록
(1)1413 /태종13	朴賁				(조)왜구금지요청, 국경탐색(일)	九州使客이 신장군 습직을 알려옴	司正 藤次郎의 배를 빌려 一岐까지 감. 배삐로 쌀20석 지급	박분이 경상도에서 발병, 불시행
(2)1429 /세종11	朴瑞生	李藝	金克柔		(조)足利義宣 장군습직축하, 구장군 足利義持 致祭(일)장군취임축하, 구장군 치제	1)左衛門大郎(早田氏), 2)九州巡撫使 平常嘉 3)筑前州 太宰 少貳藤原滿貞 가 장군교체사실 통고	조정에서는 九州를 지배하고 있던 少貳 및 大内씨에게 물품	12개월 大内持世 通好 九州諸領主 通好

67) 『성종실록』 성종 14년 9월 을묘(25일)·병진(26일).

68) 『성종실록』 성종14년 9월 무인(5일)·계묘(9일)·을묘(25일)·병진(28일)·계묘(30일), 『명종실록』 명종12년 1월 갑술(20일)·신사(27일)·계미(29일)·갑신(30일)

69) 한문종, 위의 논문(1996), 138-143쪽

							하사/통신사 호송 대가로 대마도의 宗彦七과 宗貞盛에게 각각 米豆2백석과 80석 하사	
(3)1439 /세종21	침지중 추부사 高得宗	대호군 尹仁甫	金禮蒙		(조)交聘회복, 왜구금지요청 (일)舊好 회복			1439년 8월 출발, 1440년 5월 귀국, 10개월 ⁷⁰⁾ 大內持世 通好 九州諸領主 通好
(4)1443 /세종25	침지중 추부사 卞孝文	대호군 尹仁甫	훈련원 주부 申叔舟	약50	(조)장군습직축 하, 구장군 치제 (일)장군취임축 하, 구장군 치제	宗貞盛이 망고시라를 보내 足利義教 살해소식과 足利義勝 즉위사실 알려움.	赤間關까지: 對馬 宗貞盛 赤間關→尾 路: 大內教弘 호송 尾路→京都: 호송하지 않음,	1443년 2월 출발, 10월 귀국. 8개월 피로인 쇄환 大內教弘 통호(持世 치제) 九州諸領主 通好
(5)1460 /세조5	宋處儉	李從實	李觀	약10 0	(조)일본국왕사 回答, 대장경·諸經 증정 (일)대장경 요청	大內殿의 통호 요청	大內多多良, 對馬島主 宗成職, 一岐州 志佐源公에 호송 요청	해상 조난으로 좌절, 시행되지 못함 해난 조난 사실 대마도주가 알려움
(6)1479 /성종10	홍문관 직제학 李亨元	대호군 李季全	金沂		(조)舊好 회복 (일)	일본국왕사 正球의 요청	對馬島→大 內殿: 대마도에서 호송, 大內殿→京 都:大內殿에 서 馳報	일본 兵亂과 이형원의 중병으로 對馬에서 돌아오다가 知世浦에서 사망. 시행되지 못함

70) 『중종실록』 중종 30년 2월 신해(20일)

3. 조선정부의 통신사 외교와 통신사행의 중단

조선전기에는 통신사 파견에 조일 양국간에 합의된 정형화된 절차가 없었다. 室町幕府는 공식적인 외교통로를 통해서 조선에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구장군의 사망과 새 장군의 장군직 습직 사실을 직접 조선에 통지하지 않았다. 장군의 교체 사실을 조선에 알린 것은 막부가 아니라 조선과 통교하는 大内氏·早田氏·少貳氏·對馬島主 등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통신사의 파견을 災禍라고 여기기도 하였고, 관의 대접도 매우 야박했다고 한다.⁷¹⁾

그리고 국초 이래 대일외교의 최대현안이었던 왜구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자 조선 정부는 足利幕府를 교린의 대상으로 삼고, 통신사행 실시의 정례화를 시도하였지만 막부는 교린에 입각한 외교적 관계보다는 대장경 청구나 불사의 비용 조달 등 물적 요구에 집착할 뿐이었다. 게다가 통신사행은 예상치 못한 해난조난과 일본 국내의 내란상황으로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조선의 통신사의 파견에 대한 빈약한 환경, 그리고 室町幕府의 대단히 소극적이 대응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교린우호’, ‘舊好回復’을 앞세우며 지속적으로 통신사행의 실시를 논의하고, 파견을 위한 시도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조선정부가 통신사 외교를 통해서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본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통신사 외교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변국과의 ‘교린관계’를 중시하는 조선의 대외정책과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조일관계의 유지를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건국 초부터 조선정부의 대일정책에 있어서 최대 과제는 왜구의 침입 저지였다. 1419년(세종1)의 對馬島정벌과 같은 무력적인 대응과 함께 왜구세력을 평화적인 통교자로의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도 그 일환이었다. 조선정부는 통교왜인에 대하여 서계·도서·문인 등 왜인통제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癸亥約條가 체결된 1443년(세종25) 이후부터 외교의 교섭대상을 막부장군과 대마도주로 二元化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왜구대책으로 왜구문제는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왜구문제는 언제 다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당면한 외교 현안이었으므로 조선정부는

71) 『성종실록』 성종 10년 12월 경신(9일).

통신사 파견으로 막부정권과 교린에 입각한 통신관계를 설정하여 일본 국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정례적인 통로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둘째, 조선전기 통신사는 막부 이외 지역의 여러 대명과 우호의 임무를 가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조선초기 조선정부가 대일사행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막부장군은 왜구를 금지시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외교교섭의 대상을 왜구를 통제할 수 있는 대마도주와 구주지방 세력까지 확대한 다원화 정책의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도 보인다.

1460년 통신사행에서는 물론 1477년 정월에 예조에서 마련한 ‘日本通信使事目’에 따르면 통신사가 파견될 때 幕府將軍 앞 국서와 예물을 비롯하여 管領, 左武衛, 大內殿, 畠山殿, 京極殿, 山名殿, 大友殿, 少貳殿, 一岐州佐志, 九州松浦志佐, 大馬州太守에게 지급할 서계와 예물을 준비하였다. 이들 諸大名에게 지급할 서계와 예물은 이미 초기 통신사행부터 있어왔던 일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규례화 되었던 것이다. 이것들은 교토까지 통신사의 호송을 요청하고 항로 안전의 확보와 통신사 호송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었다. 이렇듯 서계와 예물지급을 통해 사행중 이들 지역의 세력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다짐으로써 대일현안을 해결할 통로를 유지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전기 대일외교에서 있어서 多元外交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사가 ‘일본국왕’ 즉 막부장군에게 파견되는 조선국왕사임에도 불구하고 막부 이외에 여러 大名들에게 계와 예물을 전달하였다는 것은 대일외교현안의 해결에 있어서 조선정부의 室町幕府 약체관이 반영된 것이다. 왜구문제 등 對日관계에 있어서 당면한 외교현안들을 해결하고자 외교의 파트너로 최고 권력자인 幕府장군을 설정하였고, 그래서 막부에게 직접 통신사를 파견하였지만, 조선정부는 室町幕府의 통치력이 九州를 비롯한 西國지역에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에 조선정부가 통신사행을 위해 마련한 경비는 사행 등의 임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제반 경비 외에 일본 지방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물품 등이 여기에 더해졌던 것이다.⁷²⁾ 조선후기와는 달리 京都까지 上京하는 동안 체계적인 접대나 호송체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셋째, 더욱이 대일사행을 통해서 얻은 정보로 대일외교체제의 정비를 꾀하였다. 통신사가 교토까지 가면서 직접 일본을 견문함으로써 일본의 국내정세, 즉 일본의 국내정세,

72) 민덕기,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7, 92~93쪽.

막부장군과 지방호족과의 세력관계, 일본 내의 해적 분포 등에 대한 지식이 확대됨으로써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대일외교체제 재점검할 수 있었을 것이다.⁷³⁾ 일례로 1429년(세종 11) 통신사 朴瑞生은 사행 후 對馬에서 兵庫에 이르기까지 倭賊의 분포와 지배계통을 분석하고, 室町幕府 장군과의 수호가 왜구를 금지시키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구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서일본지방의 제후들과 직접 교섭하여 왜구를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이러한 통신사 박서생의 보고는 室町幕府의 통제력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교왜인에 대하여 서계·도서·문인·세건선 정약 등 왜인통제제도를 정비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음을 추정케 한다.

넷째, 조선전기 통신사는 왜구금압, 왜구정보의 제공, 피로인의 송환 등 왜구문제의 해결과 함께 사행을 통해서 얻은 일본 정보를 토대로 대일정책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통신사 박분의 질병을 핑계로 사행이 경상도에서 중단된 1413년 통신사행 이후 세종 대까지의 통신사는 구장군의 弔喪과 신장군의 장군직 취임 축하에 통신사 파견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세조대와 성종대의 통신사는 그 파견 목적이 보빙, 구호 회복 등이었다. 이는 통신사행 실시가 장군교체에 대한 치제와 축하 외에 일본의 국정탐색에 주목적이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1479년(성종10) 통신사 파견에 앞서 예조에서 통신사행 준비로 마련한 ‘사목’에는 사행 중 통신사에게 부여된 일본 국정 탐색을 위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사목’에 명기된 국정탐색 내용은 조선에 건너온 사절의 진위여부, 즉 1474년 일본국왕사 正球首座가 僞使인지 여부를 파악해 올 것, 즉 교토와 그 일대 권력자에게 布物을 지급하고 그 族系와 職名을 자세히 알아보고 적어올 것, 일본 국내에서 兵亂이 발생한 이유·기간, 사리의 옳고 그름 및 승패에 대해 조사해 올 것, 일본의 山川風土와 族系 가운데 『海東諸國記』에 참고가 될 만한 것은 모두 찾아서 묻고, 만약 착오가 있으면 건문한대로 標를 첨부할 것, 수직인이나 수도서인 본인의 생존여부의 파악 등 막부 정치권력의 동향과 지방 호족 세력의 판도, 수직인·수도서인들에 관한 정보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외에 통신사 수행원의 단속 규정도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73) 한문종, 「조선전기 倭人統制策과 통교위반자의 처리」, 『일본사상』 7,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4, 57~58쪽

그 즈음 교토에서 일어난 병란의 배경, 진행 결과, 일본의 산천과 풍토, 수직인·수도서인 본인의 생존여부의 파악, 일본 국왕의 族系 가운데 『海東諸國記』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도 조사를 요구하였다는 점이다.⁷⁴⁾

『해동제국기』는 1471년(성종2)에 1443년(세종25) 통신사행의 서장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신숙주가 성조의 명을 받아 일본의 地勢와 國情, 交聘來往의 연혁, 일본사절의 접대 절목 등을 정리하여 편찬한 조선전기 대표적인 대일외교 규정집이다.

1477년(성종8) 정월의 「일본국통신사사목」, 「日本國王處傳書幣儀」 등 통신사 관련 전례와 절차가 규범화된 『해동제국기』가 토대가 되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성종은 통신사로 하여금 『해동제국기』 내용 가운데 보완해야 할 사항의 조사나 일본국정 탐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것은 성종이 막부장군이 있는 교토까지 가는 통신사 파견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대일정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를 『해동제국기』에 재반영함으로써 기존에 제작된 대일외교 매뉴얼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고 정책에 활용하고자 한 의도였음을 짐작케 한다.

성종대에는 중국에서의 명왕조의 패권확립의 확대를 통한 사대정책으로 명조의 채봉체제가 고정되어 국제적으로는 대외관계가 안정되면서, 국내적으로는 文運을 발전시켜 나간 시기이다. 또한 유학의 융성에 따라 禮分論도 성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관제가 확립된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은 안정적인 대일외교체제의 성립을 유도하게 되었는데, 먼저 시도된 것이 대일외교 교섭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해동제국기』의 편찬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사 외교를 통해 조일관계를 적극적으로 전개·유지하는 조선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1479년(성종10) 이형원 일행의 통신사가 대마도에서 사행을 중도에서 그만두고 귀국한 후 임진왜란기인 1590년에 통신사 파견이 있기까지 통신사의 파견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1489년(성종20) 足利義材의 장군직 취임에 통신사의 파견 없이 일본국왕사 慶彭首座에게 국서와 예물을 위탁하는 선에서 그치고, 1535년(중종30)과 1557년(명종12)에도 논의로만 그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사행중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해상조난과 내란 상황이라는 일본의 국내사정이

74) 『성종실록』 성종 10년 3월 신사(25일).

사행이 중단되는 상황을 거듭 초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정부는 세조대와 성종대를 거치면서 통신사에 대한 제반 규정을 상세하게 마련하고, 통신사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통신사 파견에 임하였다. 각종 정보수집을 통하여 일본국왕의 지역통제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린우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행 중에 벌어진 예상치 못한 해상조난과 내란 상황의 일본 국내사정으로 사행은 번번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통교왜인에 대한 각종 통제제도의 실시와 계해약조 등으로 대일외교에 주요 현안이었던 왜구문제가 해결된 상황과 맞물리면서 대일외교의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室町幕府의 역할의 축소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室町幕府의 무례한 외교자세⁷⁵⁾와 중앙정권으로서의 취약성 때문에 내란을 진정시킬 여력이 없는 막부에 대해 실망하면서,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감수해가며 사절을 파견할 필요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이로써 조선정부는 통신사 파견에 대한 적극성을 점차 상실해갔다.

둘째, 통신사를 받아들였던 일본측의 公家を 중심으로 한 지도자 계층의 국제 감각의 회박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전국통제에 절대성을 결여한 足利政權의 역량, 연합정권이라고 하는 권위상의 무질서와 함께 정권의 기본적인 결함파도 관련된다.⁷⁶⁾ 그 결과 통신사를 포함한 대일사행의 빈도가⁷⁷⁾ 태종·세종대와 달리 단종·예종·세조·성종대에는 적어졌고 그 대상도 대마도에 한정되었다.⁷⁸⁾

셋째, 통신사 파견에 대한 대마도의 조직적인 방해와 ‘僞使의 시대’라고 명명되기도 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들 수 있다.⁷⁹⁾ 조선정부는 1410년대에 宗氏와 대마도인이 개별로

75) 足利幕府의 無禮한 대조선 외교자세에 대해서는 민덕기,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한·일관계』 74~84쪽에 자세하다.

76)

77) 조선전기 대일사행은 막부장군과 대마도주에게 집중되었다. 조선전기 대일사행 65회 가운데 막부장군에게는 18회, 대마도주에게는 33회의 사행을 파견하였다. 특히 대일사행의 절반 이상을 대마도주에게 파견하였다는 사실은 조선전기 대일외교에 있어서 대마도와의 관계가 중시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한문종, 위의 논문(2104), 316쪽).

78) 關周一, 「高麗王朝末期·朝鮮王朝初期の對日使節」, 『年報 朝鮮學』 18, 2015, 16쪽.

79) 荒木和憲는 대마도주의 위사파견의 근본적인 요인은 1443년 계해약조에서 도입된 도주 세건선제도의 한계성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위사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라고 보았다(荒木和憲, 위의 책, 66~67쪽, 291~292쪽).

통교하고 있던 상황을 문제시하여 대마도 내부에 분산하는 통교자 명의를 宗氏 명의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서계제도를 실시하여 서계발행권의 독점화를 시도하였다. 1439년에는 도주 문인제도가 확립되고, 1443년 계해약조로 도주 세건선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대마도주 종씨가 대마도내의 통교권을 일원화하게 되었다.⁸⁰⁾ 그러나 이것은 대마도에 있는 여러 가지 통교명의를 宗氏 명의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그 통교회수를 연간 50회로 제한한 것이다. 이로써 대마도주 宗氏는 통교권의 ‘준독점’ 상태를 독점상태로 이행시킬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교권익의 제한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연간 50회라는 통교회수의 제한에 직면한 종씨가 1450년대에 처한 정치·외교적 과제는 통교권 독점상태의 해소 및 도주세건선 제도(연간 통교회수의 제약)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였다. 그래서 1450년대 전반에 종씨는 아직은 연간 통교 회수에 제한이 없었던 深處倭 명의를 이용하여 위사통교를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심처왜 명의를 통교가 갑자기 급증하였기 때문에 1455년(세조1)부터 1456년에 걸쳐 조선정부는 심처왜에게도 세건선의 파견을 연간 1-2회로 한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심처왜 명의를 이용한 위사통교에도 제한이 가해지게 되고, 1450년대 후반에는 두 가지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⁸¹⁾ 대마도 종씨의 위사통교는 1450년대부터 활발해졌는데,⁸²⁾ 하나는 여전히 연간 통교회수에 제한이 없던 王城大臣 명의로 주목하여 실재의 명의로 바뀌 위사통교를 하는 것이며, 다른 또 하나는 종씨 휘하의 守護代·直臣들에게 자기명의로 세건선 권익을 입수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는 1455년, 후자는 1457년부터 진행되었다.⁸³⁾

그리고 16세기인 1510년 삼포왜란 후에 다시 변화하여 위사 파견의 주체가 막부장군의 측근이나 일본 본토의 호족에서 대마도주로 변화하였다. 당시 대마도주는 壬申約條로 단절되었던 조선과의 통교를 재개하였으나 이전보다 통교상 많은 제약을 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일본국왕사를 사칭한 위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대마도는 많은

80) 荒木和憲, 『中世對馬宗氏領國と朝鮮』, 山川出版社, 2007, 133~134쪽

81) 荒木和憲, 위의 책, 291~292쪽

82) 한문중에 따르면 일본국왕사를 사칭하는 위사는 1470년을 전후해서 출현하였다고 한다. 그는 위사 출현 배경을 일본의 혼란한 국내정세와 조선정부의 일본에 대한 정보의 부족, 그리고 일본국왕사에 대한 통교상의 우대를 들었다(한문중, 「조선전기 日本國王使의 朝鮮通交」, 『한일관계사연구』 21, 23~24쪽).

83) 위와 같음.

양의 물품을 교역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구주지방의 호족이나 博多商人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에 걸쳐 일본국왕사를 사칭한 위사를 파견한 주체는 대마도를 비롯한 구주지방의 호족, 博多의 상인이었다.⁸⁴⁾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마도는 통신사의 파견으로 자신들의 위사파견 행위가 막부에 알려지는 것이 전혀 반가울 리 없었을 것이다. 결국 통신사행 중단의 배경으로 대마도가 주체가 된 위사의 파견이 활발하던 시기와 대마도가 해상안전과 국내 변란을 핑계로 통신사행 실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시기(성종대 이후)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전기 통신사행의 파견 실태와 구성, 파견목적, 사행 기간, 사행의 호송 등 통신사의 파견과정과 중단과정을 살펴보고, 조선정부가 통신사를 일본 막부장군에게 파견함으로써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조선전기 통신사 외교의 실체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조선 건국 후 조선정부가 조선국왕사를 통신사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413년(태종13) 정사 朴賁의 사행부터이다. 그러나 조선국왕사는 이후에도 회례사와 통신사가 혼용되어 나오다가 1432년(세종14)에 이르러 조선국왕사=통신사라는 명칭이 정착된다.⁸⁵⁾ <표 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기인 1590년 통신사 파견이 있기 전

84) 한문종은 삼포왜란 이후의 일본국왕사는 대마도주의 특송과 동행하거나 臨濟宗의 禪僧과 대마도 승려들이 사절의 정사 또는 부사로 활약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일본에서 임제종의 선승들이 室町幕府의 외교승으로 활약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막부장군을 선승들을 통해서 대마도가 국왕사를 사칭한 위사를 파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방조 내지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편, 조선에서는 삼포왜란 이후의 일본본국왕사가 위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왜구의 재발 등을 우려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결국 조선 후기 대마도에서 행해진 국서 개작사건(유천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한문종, 위의 논문(2004))

85) 조선시대 태조 이래 임진왜란 이전까지 조선에서 파견한 '일본국왕사'는 모두 24회였다. 그러나 이들 사절의 명칭이 모두 통신사는 아니다. 通信官, 朝官, 回禮使, 回禮官, 通信使 등 그 명칭이 다양하였다.

까지 조선전기 통신사의 파견 시도는 6차례 있었다. 그 가운데 교토에 가서 막부장군에게 국왕의 서계와 예물을 전달한 통신사행은 세종대에 실시된 3차례뿐(1429년·1439년·1443년)이었고, 나머지 3차례는 일본 출발 전에 경상도에서, 대마도에 가던 중 해상 조난을 만나서, 일본 국내의 兵禍 등을 이유로 중도에서 중지되었다.

조선후기와 달리 조선전기 통신사행은 조일 양국간에 합의된 정형화된 절차가 없었다. 足利幕府는 공식적인 외교통로를 통해서 조선에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구장군의 사망과 새 장군의 장군직 습직 사실을 직접 조선에 통지하지 않았다. 통신사행의 요청은 九州使客·早田氏·少貳氏·大内氏·대마도주 宗氏 등이 足利將軍의 장군직 교체 사실을 알려 오면서 비롯되었고, 사명은 조선측은 왜구금지요청과 국정탐색, 구장군의 치제와 신장군의 습직축하, 交聘 회복 등이었고, 일본측은 구장군의 치제와 신장군의 습직축하, 구호회복, 대장경 요청 등이었다.

전국 이래 대일외교의 최대현안이었던 왜구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자 조선정부는 足利幕府를 교린의 대상으로 삼고, 통신사행 실시의 정례화를 시도하였지만 막부는 교린에 입각한 외교적 관계보다는 대장경 청구나 불사의 비용 조달 등 물적 요구에 집착할 뿐이었고, 종종 통신사행은 예상치 못한 해난조난과 일본 국내의 내란상황으로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조선의 통신사의 파견에 대한 빈약한 환경, 그리고 室町幕府의 대단히 소극적이 대응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교린우호’, ‘舊好回復’을 앞세우며 지속적으로 통신사행의 실시를 논의하고, 파견을 위한 시도를 중단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조선전기 대일정책은 대단히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정부의 적극적인 통신사 외교의 배경으로, 먼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조일관계의 유지를 들 수 있다. 진정국면에 든 왜구문제가 언제 다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선정부는 통신사 파견을 통하여 막부정권과 교린에 입각한 통신관계를 설정하고 일본의 국내사정을 직접 견문함으로써, 일본의 국내 세력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정례적인 통로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둘째, 통신사행은 장군교체에 대한 치제와 축하, 구호회복이 정형화된 파견목적이라면

더욱이 동일한 사행에 대해서도 사행 명칭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조선전기 통신사 명칭의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는 줄고, 「조선전기 통신사의 개념과 성격」, 『전북사학』 37, 전북사학회, 2010, 48~54쪽 참조.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국정탐색이 목적이었음을 들 수 있다. 통신사행을 얻은 정보로 대일 외교체제의 정비를 도모하였다. 조선정부는 大内氏·少貳氏·대마도주 등 지역호족을 통해 얻은 정보 외에 통신사가 직접 교토까지 다녀오면서 보고 들은 일본의 국내정세, 즉 일본의 국내정세, 막부장군과 지방호족과의 세력관계, 일본 내의 해적 분포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써 조선정부의 일본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었고, 이를 토대로 대일의 교체제 재점검할 수 있었다.

셋째, 통신사에게는 室町幕府 외에도 별도의 사명으로 규슈 지역의 여러 세력과 우호의 임무가 주어졌다. 이는 조선초기 조선정부가 대일사행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막부장군만으로는 왜구를 금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외교교섭의 대상을 왜구를 통제할 수 있는 대마도주와 구주지방 세력까지 확대한 다원화 정책의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 결과 조선정부는 통신사행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경비 외에 일본 지방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서계와 물품 등이 여기에 더해졌던 것이다.

넷째, 통신사행 중 얻은 일본 국내 정보를 토대로 『해동제국기』와 같은 대일교섭 매뉴얼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추가로 얻은 정보를 보완함으로써 대일정책에 관한 매뉴얼을 완성하고 활용하고자 하였다. 통신사에게 『해동제국기』 내용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시하고 있는 것에서도 조선정부는 통신사 외교를 통해 적극적인 조일관계를 전개·유지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종대 1479년(성종10) 이형원 일행의 통신사가 대마도에서 사행을 중도에서 그만두고 귀국한 후, 임진왜란기인 1590년 통신사 파견이 있기까지 통신사의 파견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행 중 직면한 예상치 못한 해상조난과 일본의 국내사정을 첫 번째 통신사 중단 이유로 들 수 있다. 조선정부는 세조대와 성종대를 거치면서 통신사에 대한 제반 규정을 상세하게 마련하고, 통신사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통신사 파견에 임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해상조난과 내란상황이라는 일본 국내 사정으로 사행이 거듭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이 대일외교에 주요 현안이었던 왜구문제가 통교왜인에 대한 각종 통제제도의 실시와 계해약조 등으로 해결된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중앙정권으로서 室町幕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막부에 대한 실망이 더해진 상황에서 조선정부는 통신사행원들의 신변의 위협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사절을 파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둘째, 통신사를 받아들였던 일본측의 公家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 계층의 국제 감각의 회복성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통신사를 포함한 대일사행의 빈도가⁸⁶⁾ 태종·세종대와 달리 단종·예종·세조·성종대에는 적어졌고 그 대상도 대마도에 한정되었다.⁸⁷⁾

셋째, 통신사 파견에 대한 대마도의 조직적인 방해와 ‘僞使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적인 상황을 들 수 있다. 1450년대부터 대마도주는 深處倭 명義와 ‘王城大臣使’ 즉 일본국왕사 명義의 위사통교를 하였다. 1510년 삼포왜란이 일어나고 壬申約條로 단절되었던 조선과의 통교가 재개되었으나 대마도로서는 이전보다 통교상 많은 제약을 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국왕사를 사칭한 위사를 파견하였다.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에 걸쳐 일본국왕사를 사칭한 위사를 파견한 주체는 대마도를 비롯한 구주지방의 호족, 博多의 상인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일본국왕사를 사칭한 위사의 파견을 주도하고 있던 대마도로서는 통신사의 파견으로 자신들의 행위가 막부에 알려지는 것이 전혀 반가울 리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대마도가 주체가 된 위사의 파견이 활발하던 시기가 통신사의 해상안전과 국내 변란을 핑계로 대마도가 통신사행 실시에 반대하고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던 성종대 이후의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은 통신사행의 중단이 대마도가 주도한 위사파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43년 변효문의 사행을 마지막으로 조선전기 통신사가 교토에 가서 막부장군과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조선정부가 일본에 관한 정보를 대마도에만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조선은 임진왜란 전야의 일본 국내 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은 조선전기 한일관계에 있어서 취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86) 조선전기 대일사행은 막부장군과 대마도주에게 집중되었다. 조선전기 대일사행 65회 가운데 막부장군에게는 18회, 대마도주에게는 33회의 사행을 파견하였다. 특히 대일사행의 절반 이상을 대마도주에게 파견하였다는 사실은 조선전기 대일외교에 있어서 대마도와의 관계가 중시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한문중, 위의 논문(2104), 316쪽).

87) 關周一, 「高麗王朝末期·朝鮮王朝初期の對日使節」, 『年報 朝鮮學』 18, 2015, 16쪽.

「조선전기 통신사행과 對日外交의 특징」 토론문

이승민 (동국대학교)

1. 논문의 의의

발표자도 지적했다시피 조선시대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키워드 중의 하나가 바로 ‘통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주제와 대상이 되어 왔으나, 기존 연구는 대부분 조선후기 그것도 통신사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주로 통신사행을 통한 상호인식이나 문물문화교류에 치우쳐 온 감이 큼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통신사의 파견실태와 구성, 파견목적, 사행기간, 사행의 호송 등을 포함한 조선전기 통신사의 파견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 논문은 조선전기 통신사행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 당시 조선정부가 지향하고 있던 대일외교의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조선후기에 치우쳐 있던 통신사행 연구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질문사항

* 통신사의 명칭과 성격

- 1413년 박분을 정사로 하는 최초의 ‘통신사’가 파견되기 이전에는 회례사, 조관, 회례관, 통신관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여러 차례 일본에 사절이 파견되었고, 이후에도 회례사라는 명칭으로 몇 차례 사절이 파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절의 명칭이나 개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다르게 붙여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절의 명칭이 조선의 대일외교정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더불어 통신사라는 명칭으로 사절명이 일원화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이와 함께 통신사라는 명칭 이외로 파견된 다양한 사절들을 통신사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는지, <표 1>에서 제시하신 6차례의 통신사만을 조선전기의 통신사행으로 규정한다면 발표자가 생각하시는 조선전기 통신사를 규정할 수 있는 조건이나 성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통신사 파견 문제

- 본문 중에 통신사 파견이 명에 알려질 것을 우려한다는 신하들의 의견과 이에 대해 세종이 통신사는 반드시 파견해야 하며 명에서 이 사실을 알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의 신하된 자는 함부로 外人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人臣無外交’라는 말이 있는데, 조공책봉체제의 이념에서 책봉국은 피책봉국의 내정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었고 인신무외교라는 말 그대로 피책봉국은 외교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념일 뿐 실제와는 항상 거리가 있었습니다. 위의 세종대 사례처럼 통신사 파견을 둘러싼 논의에서 이를 인신무외교 이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아래에서 당시 조선은 일본으로의 통신사 파견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명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 통신사 파견 중단 배경

- 일반적으로는 15세기 후반 통신사 파견이 중단된 이유를 통신사행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막부의 약체화로 막부장군이 일본국왕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로 들고 있고, 이는 발표자의 논문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발표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파견 중단 이유를 ‘위사’ 문제를 들고 있는데, 통신사행의 중단과 대마도의 위사파견 시기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위사가 파견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밝혀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위사로 의심되더라도 조선에서는 이를 되돌려 보내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접대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조선정부도 대마도의 위사 파견에 대해 모르고 있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조선에서 알면서도 위사를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처리한 이유는 멀리서 온 사절을 박대할 수 없다는 명분론과 일본과의 불화 및 왜구의 재발 가능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5세기 후반 이후 통신사 파견이 중단된 이유를 반드시 대마도가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위사 파견 행위가 막부에 알려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대마도의 입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으나 좀 더 다각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5발표

인조대의 국정운영과 1636년의 통신사 외교

발표 : 이훈 (한림대학교) / 토론 : 신동규 (동아대학교)

1. 머리말
2. ‘권시지책’과 1636년의 통신사 파견
 - 1) 후금과 명 사이에서
 - 2) 국서개작사건 이후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인식
 - 3) ‘권시지책’으로서의 통신사 파견
3. 인조대의 국정운영과 통신사 외교
4. 의례의 변경과 국서의 왕복
 - 1) 의례의 변경
 - 2) 국서의 왕복
5. 맺음말
 - 통신사 외교의 의미 -

1. 머리말

임진왜란 이후 조일관계는 전쟁이라는 참화를 겪었음에도, 또 관민에 팽배한 반일정서에도 불구하고, 1607년의 국교 재개 이후 비교적 오랜 기간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1876년 조일수호조규 때까지 안정된 조일관계, 내지는 우호의 상징으로 ‘통신사’가 거론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통신사 연구를 보면, 임진왜란 이후 260년간 지속된 조일관계 속에서 12번에 걸친 통신사의 파견 시기만을 도려내어 사행원의 구성, 여정, 의례 등에 대한 검토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¹⁾ 즉 파견 사례를 중심으로 형태적인 연구가 중심을 이루다 보니 임란 이후 국교 재개 단계에서 파견된 ‘회답겸쇄환사’(1607·1617·1624년)에 대해서도 통신사의 초기형태 정도로 밖에 이해하지 않았다. 또 국교 회복(1607년) 이후 19세기말까지 조일간에는 정치·경제적인 현안을 해결하고 군사·안보에 대한 손익계산을 따지는 ‘외교 전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1636년부터 ‘통신사’라는 명칭으로 사절을 파견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조선의 필요보다는 일본사의 관점 내지 연구성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1636년의 병자 통신사를 ‘국서개작사건’(일본에서는 ‘야나가와 잇켄’(柳川一件)) 이후 막부측의 대조선외교체제 개편 수용과 막부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파견된 것으로 보는 평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임진왜란 이후 선조에서 광해군과 인조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명의로 국왕사절단을 파견할 당시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외교적인 관

1)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통신사 연구를 보면 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문화사절이라는 관점에서 통신사의 사행원들이 일본에 도착한 후 일본인들과의 우호적인 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연구로, 수량적으로는 1960년 이후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으나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또 하나는 역사적 관점에서 통신사를 외교적 사명을 띄고 일본에 파견된 정치사절로서 보는 관점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이민호, 「인조조의 대일관계고」, 『중재장충식박사화갑기념논총』 1992(이 논문은 『동서사학』 4, 이민호 박사정년퇴임기념논총, 1998)에 전재되었다.

문영규, 「인조대 대일외교의 성격」, 『한일관계사연구』 19, 2003.

정장식, 『통신사를 따라 에도시대를 가다』 고즈윈, 2005.

박화진·김병두, 『에도 공간 속의 통신사』 한울, 2010.

단력, 또 조선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이나 대일본전략 등은 소홀히 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대일본정책사적 관점에서 조일관계를 검토한 한명기와 정성일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²⁾ 한명기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전후한 시기 대일본 현안을 둘러싼 논의 과정 및 조선정부의 결정을 국내정치사는 물론 조선을 둘러싼 명·후금·일본(대마번)이라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정성일은 정묘호란을 계기로 조선후기의 대일·대청무역의 기초가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통신사 파견 자체를 검토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636년 통신사 파견에 대해서는 당시 국제관계의 결과물로서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본 발표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인조대에는 조일관계에 큰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에는 제3차 ‘회답겸쇄환사’(1624년)를 비롯하여 2번(1636·1643년)에 걸친 통신사 파견까지 모두 3번이나 국왕사절을 파견하였다. 조선의 역대 국왕 가운데 일본의 중앙정부와 가장 많은 교류를 한 셈으로, 사행 명칭이 ‘회답겸쇄환사’에서 ‘통신사’로 변경되었다. 또 1636년 인조의 국서에는 도쿠가와 쇼군의 호칭을 ‘日本國王’이 아닌 ‘大君’으로 표기하는 등, 외교의례상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통신사’라는 명칭 사용, 도쿠가와 쇼군의 외교칭호 변경 등은, 통신사가 마지막으로 파견되는 19세기 초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인조대가 조선후기 대일본관계에서 볼 때 하나의 분기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1636년 통신사 파견이 결정되기까지 논의과정을 보면, 임란 이후 축적된 일본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을 모색하되, 재정 내지 외교안보 비용의 측면에서 통신사 파견을 논의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1636년의 병자통신사 파견시 명·청 교체라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조선이라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려 했는지, 일본에 대한 인식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통신사 외교’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정성일, 「정묘호란과 조선의 무역정책 -1629년 일본 ‘국왕사’의 상경과 관련하여-」, 『사학연구』 49(1995).

한명기, 「정묘호란 무렵, 조선의 대일정책과 그 역사적 의미」, 『대동문화연구』 54(2006).

한명기, 「병자호란 무렵 조선의 대일정책과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7(2007).

2. ‘권시지책’(權時之策)과 1636년의 통신사 파견

주지하듯이 인조대에는 반정(反正)을 통해 즉위하자마자 ‘이괄의 난’(1623년)이 일어나 반란군을 피해 국왕과 대신들이 공주로 피난을 갔다. 밖으로는 명의 감시 및 두 번에 걸친 후금과의 전쟁(1627년의 정묘호란, 1636년의 병자호란)으로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았다. 말하자면 인조대에는 임진왜란에 버금가는 내우외환 속에서 일본과 외교관계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는데, 조선 정부측 기록에서 일본 관련 기사는 중국(명)이나 후금 관련 기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소략한 편이다. 1636년 병자통신사의 경우 사절 명칭이나 도쿠가와(德川) 막부 ‘쇼군’(將軍)의 외교칭호 등, 외교의례상에 큰 변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판단이나 결정 배경 등을 둘러싼 논의의 흔적은 별로 없다.³⁾

『변례집요』를 보면 1636(인조 14)년의 통신사 파견은, 그해 2월 대마번주가 차왜(橋成供)를 보내 처음으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⁴⁾ 예조참의 앞으로 가져온 대마번주의 서계에는, ‘大君’(家光)의 습직으로 ‘先大君’(秀忠) 사후 태평함이 배가되었기에 사자(盛价)를 보내 舊好를 닦자“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대마번 차왜는 서계를 예조에 직접 전달한다는 이유로 상경을 요청했다. 조선은 상경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인 1636년 3월 예조참의 명의의 답서로 통신사 파견 의사를 전달하였다.⁵⁾

일본측이 사자 파견을 요청하기 시작해서 조선측이 파견을 결정할 때까지의 교섭 단계

3) 인조대 조선 정부측 기록(『인조실록』·『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에서 일본 관련 기사는 중국(명)이나 후금 관련 기사에 비하면 아주 소략한 편이다. 그 이유로는 정묘호란 이후 후금과의 관계에서처럼 매년 무역확대를 비롯하여 정치 군사적인 요구와 관련된 긴급 현안이 빈번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임란 이후 선조와 광해군대에 걸쳐 도쿠가와 막부와는 ‘회담겸쇄환사 외교’, 대마번과는 기유약조로 통교·무역관계가 재편되면서 무역 규모, 부산 開市, 일본 사자의 上京 금지’라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일이 중앙의 결정을 받아 대응해야 하는 시스템은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막부측에서 대마번에 통신사 파견 요청을 처음 거론한 것은 국서개작사건이 마무리 된 후로 1635년 7월 로주(老中)의 지시가 있었으며(『柳川調興公事記錄』中, 27(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 6539), 1635년 8월 5일 대마번에서 작성한 초안(일본어)에 ‘大君’호가 사용되었다.

5) 『邊例集要』 권1 別差倭 1636년 2월.

의 절차만 보면 1636년의 통신사 결정은 불과 1달 밖에 걸리지 않았다. 1607년 제1차 ‘회답겸쇄환사’ 때에는 사명당이 1604년 일본에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진의를 파악하고 온 것부터 친다면 약 2년이 걸렸다. 그리고 1617년 제2차 ‘회답겸쇄환사’ 때 무려 3~4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한다면 유례없이 빠른 결정이다. 전쟁 직후 ‘회답겸쇄환사’ 파견시 반일정서 속에서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는 만큼 사행명칭 하나를 가지고도 국내적인 명분 찾기에 시간을 들인 것과는 대조적이다.⁶⁾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인조대에는 선조나 광해군대 처럼 일본과 외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 찾기가 필요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인조대에 들어 이렇게 1달 만에 대마번의 요구를 수용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은 왜일까? 통신사 파견에 대해 중앙의 조정에서 과연 논의다운 논의는 있었던 것일까?

『邊例集要』를 보면 1636년 2월 동래부사(鄭良弼)가 통신사 파견 여부에 대해 올린 장계를 놓고 조정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정의 논의란, “이번에 나온 대마도 차왜는 이미 ‘관백’(쇼군)의 명을 받고 나온 것이므로 ① ‘국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며, ② 조선의 형세가 이전과 다르니 ‘권시지책’(權時之策)을 발휘하여 통신사 파견을 허락함으로써 남쪽의 걱정을 덜도록 하자는 것으로 인조도 이를 허락하였다”는 대목이다.⁷⁾ ‘권시지책’이란 당시 조선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을 고려하여 기왕의 대일본 통교방침을 고집하지 말고 임기응변적으로 변통하여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통신사 파견이 ‘권시지책’으로 결정되었다는 이 논의는 내용은 아주 간략하지만 당시 조선의 대일본통교 방침과 배경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①은 통신사 파견 교섭시 절차 변경이 ‘국서개작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

6) 제1차(1607년) 및 제2차(1617년) ‘회답겸쇄환사’의 경우, ‘회답사’를 전제로 파견을 준비하다가 피로인을 찾아서 데려온다는 ‘쇄환’이라는 문언이 들어간 것은 사행이 떠나기 직전이거나 또는 이미 한성을 떠난 후였다.(이 훈, 「임란 이후 ‘회답겸쇄환사’로 본 대일본외교전략 -선조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9(2014) · 동, 「광해군대 ‘회답겸쇄환사’의 파견(1617년)과 대일본외교, 『한일관계사연구』 52(2015)).

7) 『邊例集要』 권8 信使 병자(1636년) 3월.

『增正交隣志』 권5 信行各年例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있다.

다. 여기에서 ‘국서’란 일본측의 ‘국서’, 즉 도쿠가와 쇼군의 외교칭호가 ‘일본국왕’으로 되어 있는 쇼군 명의의 ‘선위치서’(先爲致書)를 일컫는 것으로, 이번에는 임진왜란 이후 ‘회답검쇄환사’를 파견할 때처럼 일본측의 ‘선위치서’를 통교조건으로 내걸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선은 1635년 6월 문위행(問慰行)으로 에도(江戸)까지 갔다온 역관 홍희남의 귀국 보고, 또 그해 12월 수도서인 야나가와(柳川)씨에게 주었던 인장 등을 조선에 반환하기 위해 파견된 대마번 차왜(平智友)를 통해 국서개작사건에 대한 도쿠가와(德川) 막부의 판결 및 후속조치를 이미 알고 있었다.⁸⁾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는 대마번 차왜가 조선에 파견된 것이 1636년 2월이므로 도쿠가와 막부와 통교가 종래의 교섭 주체(대마번주 宗義成 및 柳川調興)나 절차로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현실을 인지한 후였다. 이에 향후 일본측의 달라진 교섭 조건에 맞추어 임기응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조선의 대일본 교섭자세 내지는 방침이 정해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1636년 3월 대마번주 앞으로 보내는 예조참의(鄭弘溟) 답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양국의 通好관계가 信義로서 맺어져 있으나 사자 파견에 있어서는 반드시 귀국의 서계를 기다려 그 청에 의해 보냈었다. 지금 귀 大君(家光)이 장군직을 계승한 후 국내가 평안하게 되었다 하니 隣好에 따라 修聘의 예로서 장차 사자(專使)의 파견을 조정에 품의하겠다”는 것이다.⁹⁾ 구체적인 강정교섭이 시작되기 이전임에도 쇼군의 호칭을 ‘貴大君’이라 기재해 준 것을 보면, 야나가와씨가 배제된 가운데 막부의 명으로 대마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가 추진하게 된 통신사 요청 교섭에 조선이 협조할 것이라는 의사표시 내지는 외교방침을 대마번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의 논의에서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통신사 파견을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②의 ‘조선의 형세’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통신사의 일본 파견문제가 후금과 명을 상대로 힘겨운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는 조선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8) 『변례집요』 권6, 書契路引, 을해년(1635) 12월. 별차왜, 을해년(1635) 12월.

서계의 원문은 『柳川調興公事記錄』 中, 29(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 6539)

9)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예조참의 鄭弘溟 답서(No.351).

『同文彙考』 附編 권8, <通信 1>에도 ‘崇禎九年丙子三月日’자의 예조참의 답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권시지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조선의 형세’란 무엇이며, ‘권시지책’이란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1) 후금과 명 사이에서

조선은 1627년 정묘호란 이후 후금과 형제관계에 입각한 강화를 맺어 가까스로 교린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후금의 조·명관계에 대한 견제, 세폐(歲幣)의 증액 요구, 교린 관계의 현상 변경 요구 등으로 양국관계는 순탄치가 않았다. 후금이 조선을 침략한 것은 정복과 사회의 변화로 급격하게 증가한 인구로 인해 식량 수급 등 자원 확보가 급선무였다는 지적이 있듯이,¹⁰⁾ 후금은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에 대해 끊임없는 요구를 해왔으며 예물 요구는 병자호란 직전까지도 지속되었다.

후금의 세폐 증액 요구는 그들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조선과의 관계를 ‘형제지맹’에서 ‘군신지의’의 관계로 변경해 가려는 시도로서, 1635년 몽고 평정 이후 후금 ‘한’(汗)의 존호(尊號)를 계기로 이러한 시도는 더욱 노골화되었다.

조선이 일본에 통신사 파견을 결정하고 파견 준비가 진행중이던 1636년은 후금 ‘한’의 외교칭호 및 외교문서 접수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양국의 긴장이 최고에 달한 시점이었다. 1636년 2월에는 금의 사자 龍骨太馬夫大 등이 인조의 비(仁烈王后 韓氏)에 대한 조위를 겸하여 몽고·서달(西達)의 사자를 동반하고 조선에 왔다. 금한의 서한(사본)에는 후금이 몽고(大元)를 획득하고, 옥새를 차지했다는 내용과 함께 후금의 ‘汗’칭호를 ‘황제’(天子)로 변경하는 문제를 조선과 상의하여 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홍문관의 신료(장령 홍익한)들은 ‘금한’의 ‘칭제’ 문제를 정묘호란 이후 맺게 된 형제지약을 10년 만에 군신관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 후금 사자의 상경을 불허하도록 요청하였다.¹¹⁾ 비변사에서도 인조의 후금 사자 접견을 반대하였다.¹²⁾ 이때 함께 온 서달 및 몽고 사자도 각각 국왕 인조 앞으로 서한을 지참해 왔는데, 발신인을 각각 「金國執政八大臣」

10) 김성근, 『조·청 외교관계의 변화 연구 -조공·책봉을 중심으로-』(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52쪽.

11) 『인조실록』 권 32, 인조 14년 2월 21일 병신.

12) 『인조실록』 권 32, 인조 14년 2월 21일 병신.

·「金國外蕃蒙古」, 수신인을 「奉書朝鮮國王」이라 하여 교린문서에 준해서 작성해왔다. 이는 후금의 집정과 조선국왕을 대등관계로 놓고 조선을 외번국의 반열에 두려는 의도로 후금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재편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¹³⁾ 이에 대해 대사간(鄭蘊)은 교빙의 전례가 없는 서달에 대해, 명을 공격한 원수이며 조선과는 君臣관계에 해당하는 이들과 관문에서의 교류까지는 끊을 수 없다 하더라도 통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등한 교제는 불가하다며 인조의 서달 및 몽고 사자의 접견을 반대하였다.¹⁴⁾ 심지어 성균관의 태학생들까지 상소를 올려 후금 사자의 참수를 건의하였다.¹⁵⁾ 이렇게 ‘금한’ 등의 서한 접수 여부를 둘러싸고 대사간과 홍문관, 비변사의 관리, 태학생들까지 상소를 올려 인조의 후금 사자 접견을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최명길은 후금 사자의 접견을 건의하는 차자를 올려 금과의 긴장을 늦춰보려 했다. 그러나 결국 인조는 후금의 국서를 받지 않았다. 이에 금한(金汗)의 서한은 물론, 서달·몽고의 서한을 퇴각당한 것에 화가 난 용골대가 한성까지 들어오지 않고 도중에 귀국해버린 불상사가 발생하였다.¹⁶⁾

정묘호란 이후 조선은 후금과 '형제지약'에 따라 10년 가까이 교린국간의 외교를 해왔다. 그러나 조선이 기미의 대상으로 여기던 '금한'의 '칭제' 문제에 대한 관민의 저항으로 인해 외국의 사자가 상대방에 외교문서를 전달하지도 못하고 귀국해버린 것은 그 후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예측할 수 없는 외교참사라 할 수 있다. 이에 국왕 인조는 바로 대신과 비변사의 당상, 3사와 함께 후금의 침략 가능성 및 피난까지도 염두에 둔 수준의 수습책을 논의했다.¹⁷⁾ 그리고 3월에는 민심의 소요를 의식하여 후금과 불상사가 생기게 된 경위와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 방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국왕 인조가 전국에 호소하는 하유(下諭)를 8도에 내렸다.¹⁸⁾

그리고 1636년 4월에는 후금이 '한'(汗)의 황제 즉위를 계기로 조선과의 외교관계 변경을 시도함에 따라 일촉즉발의 위기가 다시 찾아왔다. 후금의 태종(홍타이지)은 4월 국

13) 문영규, 「인조대 대일외교의 성격」, 『한일관계사연구』 19(2003) 88쪽.

14) 『인조실록』 권 32, 인조 14년 2월 24일 기해.

15) 『인조실록』 권 32, 인조 14년 2월 25일 병신.

16) 『인조실록』 권 32, 인조 14년 2월 26일 신축. 인조 14년 3월 3일 무신.

17) 『인조실록』 권 32, 인조 14년 2월 29일 갑진.

『승정원일기』 인조 14년 2월 30일.

18) 『인조실록』 권 33, 인조 14년 3월 1일 병오.

호를 ‘淸’으로 고치고 연호를 ‘崇德’, 여진과 몽고의 추대로 ‘汗’ 대신 ‘寬溫仁聖皇帝’라는 존호를 받았다. 이때 2월에 ‘춘신사’(春信使)로 후금에 파견되었던 나덕헌 등이 심양에 있으면서 즉위식에 참가했는데,¹⁹⁾ 이제까지와 서식이 다른 후금의 국서(원본)를 일단 받아가지고 오다가 귀국 도중에 이를 통원보(通遠堡)라는 곳에 버리고 사본만 가져온 전대미문의 외교참사가 발생하였다. 나덕헌의 귀국보고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후금측 국서의 ‘참호’ 문제였다. 후금의 국서에는 후금을 ‘大清皇帝’라 자칭하고 조선을 ‘爾國’이라 비하하는 문언이 있었다. 나덕헌은 그 문서를 후금 체류중에 바로 퇴각하지 않고 받아오다가 귀국 도중에 문서를 개봉해서 읽어본 후 차마 조선에 전달할 수 없어서 원본은 숙소(통원보)에 버리고 사본만 가져왔다는 것이었다. 춘신사라면 일본에 보낸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교린국에 보내는 국왕사절이라 할 수 있으며, 교린문서에서는 상대국을 ‘貴國’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금한’의 외교문서에 ‘爾國’ 등과 같이 대등에 벗어난 굴욕적인 문언이 들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후금측과 교섭하여 다른 문언으로 고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퇴각했어야 했는데, 나덕헌은 외교문서를 그대로 받아오다가 도중에 버리고 온 것이다.²⁰⁾ 일단 춘신사가 후금 체류중에 국서를 받았다면 후금으로서는 조선에 후금의 입장이 전달 내지는 수용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조선은 치욕은 둘째치더라도 외교적으로도 사후 수습을 어떻게 할지 난제중의 난제였다.

이에 4월 비변사가 제안한 수습책은 다음과 같았다. 나덕헌 명의로 “금한 국서의 굴욕적인 문언과 인문(印文)이 과거와 달리 교린문서에 어긋나 있기에 조선에 전달할 수가 없어 숙소에 버리고 왔다는 취지의「격서」를 국서를 버린 곳으로 보내, 그곳으로 하여금 조선이 후금 국서를 퇴각한다는 취지가 전달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²¹⁾

춘신사가 후금에 가지고 가는 국서는 교린문서였기 때문에 일본에 파견되는 통신사의 국서와 마찬가지로 印文은 1635년 1월까지 ‘爲政以德’을 사용하였다.²²⁾ 그러나 후금의 몽고 격과 이후 1635년 11월에는 천자를 상징하는 ‘制告之寶’를 사용할 것임을 암시해왔다.²³⁾ 실제로 나덕헌이 받았던 금한의 국서는 ‘制告之寶’를 사용했다고 생각된다.

19) 김종원, 「정묘호란」, 『한국사』 29(국사편찬위원회, 1995) 273쪽.

20) 『인조실록』 권 32, 인조 14년 4월 26일 경자.

21) 『인조실록』 권 32, 인조 14년 4월 26일 경자.

22) 『승정원일기』 인조 13년(1635) 1월 29일.

그리하여 6월에는 금한 국서의 내용에 대한 조선의 견해와 입장을 알리는「檄文」이 작성되었다. 후금이 먼저 조선을 협박하는 언사를 써서 대등한 예를 어기고 형제지약을 깨트리려 하고 있으나 조선이 교린관계를 단절할 의사는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비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檄文」의 첫머리에 후금의 국호를 ‘淸國’이라 써 보냄으로써 후금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지만, 내용으로 볼 때 후금과의 관계는 이미 교린국간의 외교라고는 할 수 없는 단계로 후금의 반응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다.²⁴⁾

1636년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후금의 외교문서를 2번이나 퇴각함으로써 후금과의 관계는 파탄 직전으로 긴장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다. 조선은 실제로 3월 이후 후금과의 전투를 예상한 가운데 철갑·칠주 등의 무기와 군수품을 서쪽의 변방으로 모으는 한편,²⁵⁾ 4월에는 비변사가 계를 올려 조총(鳥銃)을 제조하기 위해 산릉도감에서 쓰고 남은 正鐵 가운데서 5천근을 이급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다.²⁶⁾ 5월에는 함경도에서 군사를 징발하도록 했다.²⁷⁾ 그리고 하사도(下四道)에서도 사졸을 선발하는 한편 군율을 엄격하게 하라는 인조의 하교가 있었다.²⁸⁾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후금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비상시국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조선과 명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조선은 정묘호란으로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으면서도 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군신관계를 변경할 수 없는 원칙으로 고수했다. 명 또한 후금의 도전으로 조선과 후금관계를 주시했으며, 모문룡이 주창하고 있는 가도(槎島)의 동강진(東江津)을 조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점으로 삼았다. 정묘호란 이후 명 조정 일각에서는 조선이 후금과 강화한 것, 1629년 일본국왕사라 칭한 ‘玄方’ 일행의 상경을 허용한 것 등, 일본과 유화적인 관계 유지가 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였다. 이에 조선의 사행로를 육로가 아닌 해로(산해관)로 변경함에 따라 조선은 대일관계에 있어서도 명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긴장하였다.

23) 『인조실록』 권 31, 인조 13년 11월 12일 무오.

24) 『인조실록』 권 32, 인조 14년 6월 17일 경인.

25) 『인조실록』 권 33, 인조 14년 3월 10일 을묘.

26) 『승정원일기』 인조 14년(1636) 4월 29일.

27) 『인조실록』 권32, 인조 14년 5월 15일 무오.

28) 『인조실록』 권 32, 인조 14년 5월 26일 기사.

1633년 모문룡의 부하가 산동에서 반란을 일으킨 뒤 수군과 전함·홍이포를 가지고 후금에 귀순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명은 조선이 후금에 군함을 제공할까봐 우려하였으며, 조선에 함께 토벌할 것을 요청하였다.²⁹⁾ 명의 후금에 대한 긴장은 1634년 명이 왕세자 책봉을 위해 조선에 詔使를 파견해 왔을 때 일본의 조총을 구입해 간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³⁰⁾

병자호란 직전 이렇게 명과 후금의 대결구도 속에 끼어 양국과의 현안을 처리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에서 조선의 대일정책은 자연히 현상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³¹⁾ 이에 통신사 파견 준비가 진행중이던 1636년 7월, 최명길의 차자를 올려 일본과의 교린에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건의하였다. 즉 교린하는 도는 당연히 정해진 격식을 따라야 하지만, 만일에 일과 시기가 달라 변통해야 할 형편이라면 구례를 억지로 고수할 필요는 없으며, 관백(쇼군)에게 보내는 예물을 넉넉히 하여 대마번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조선의 변경을 편안히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³²⁾

요컨대 1636년 통신사 파견을 결정할 때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신료들은 후금과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명으로부터는 감시와 경제·군사적 요구라는 압박 속에서 명분에 구애받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도쿠가와 막부(일본)와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특단의 대책(‘권시지책’, 변통, 응급)을 강구할 것을 피력했던 것이다.

2) 국서개작사건 이후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인식

조선은 단지 후금과 명의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운데 일본의 통신사 요청을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받아들인 것일까? 기록이 충분치는 않지만, 조선이 통신사 파견을 결정할 때까지 인조를 포함한 신료들의 논의과정을 보면 도쿠가와 막부정권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서개작사건 이후의 조일 통교 조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

29)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제3부 인조반정과 대명관계의 추이, 역비한국학총서, 전근대편, 역사비평사, 2008.

30) 『승정원일기』 인조 12년(1634) 7월 5일.

31) 한명기, 「병자호란 무렵 조선의 대일정책과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7(2007) 322쪽.

32) 『인조실록』 권 33, 인조 14년 7월 23일 을축.

를 예측하고 있었다.

조선이 국서개작사건에 대한 막부 판결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야나가와(柳川)씨 소멸 이후 막부가 누구를 내세워 조선과 통교할 것인가였다.

사실 조선은 일찍부터 대마도 내 야나가와씨의 존재와 외교적 능력을 인지하고 있었다. 임란 직후 1599년 도쿠가와 이에아스(徳川家康)는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宗義智)와 함께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도 양국의 강화교섭(和好)에 나서도록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³³⁾ 이후 야나가와 시게노부는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와 마찬가지로 강화를 위한 피로인 쇄환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日本國豊臣平調信’)로 된 서계(외교문서)를 조선(예조)에 보내왔으며 조선도 수신인을 ‘日本國豊臣平公’으로 해서 답서를 보냈다.³⁴⁾ 이에 따라 조선은 야나가와 시게노부를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宗義智)와 함께 강화교섭의 주체는 물론, 막부에 대해서도 보고자로 파악하고 있었다.³⁵⁾ 『조선왕조실록』에서 대마도를 언급할 경우「義智·調信」, 또는「平義智·平調信」라고 병기한 것도 대마도내의 정치세력을 소(宗)씨와 야나가와씨의 양자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⁶⁾ ‘회답겸쇄환사’들이 그들의 『사행록』에서 대마번주 소(宗)씨와 야나가와씨에 대해 양자의 정치·외교적 능력을 비교해서 서술한 한편, 특히 야나가와씨에 대해서는 막부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³⁷⁾

물론 사절 파견을 요청하는 도쿠가와 막부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조선에 전해오는 것은 대마번주 소(宗)씨였다. 그러나 대마도 안에서 막부에 대한 전달력이나 교섭능력을 갖추

33) 『朝鮮通交大紀』 권4, 万松院公.

34) 『朝鮮通交大紀』 권4, 万松院公.

35) 홍성덕, 「조선후기 한일외교체제와 대마도의 역할」, 『동북아역사논총』 41(2013), 141쪽.

『선조실록』 권150, 선조 35년 5월 4일 을축·5월 21일 임오.

『선조실록』 권160, 선조 36년 3월 24일 경진.

36) 「平義智·平調信」로 병기된 사례는 1601년 7월 일본과의 강화 및 대마도의 개시(開市)에 관한 논의(『선조실록』 선조 34년 7월 1일 병신·7월 2일 정유·7월 4일 기해) 이외에도 많으며, 「義智·平調」사례 역시 일본과의 강화 논의시에 대마도의 교섭 주체로 언급되었다(『선조실록』 선조 34년 11월 신유, 선조 36년 3월 25일 신사). 여기에서는 일부만 예시하였다.

37) 1607년 경섬 『東槎錄』에서는 宗義智와 柳川景直을, 1617년 오윤겸의 『東槎上日錄』과 1624년 강홍중의 『東槎錄』에서는 宗義成과 柳川調興을 대조해서 서술했는데, 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양자가 거의 대등하게 서술되어 있다.

고 있는 것은 대마번주 보다도 막부 안에 인맥도 가지고 있는 가신 야나가와씨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조선은 일찍부터 대마번주 소(宗)씨와 마찬가지로 야나가와씨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소위 ‘관리’를 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조선이 기유약조(1609년)로 대마도와의 통교규모를 축소하자 대마번은 ‘수도서인’(受圖書人) 숫자의 확대를 통해 무역량을 늘리려 했는데, 조선은 1611년 야나가와씨에 대해 ‘柳川送使’(1611년) 파견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1622년에는 대마번주 소(宗)씨의 ‘万松院送使’와 동일하게 야나가와씨에 대해서도 ‘流芳院送使’(1622) 파견을 허락함으로써 무역상의 특혜를 보장해 주었다. 또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동래부사(柳大華)가 대마번주에게 서계를 보내 정묘호란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한편 병란이 끝날 때까지 사신의 파견을 일시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런데 이때 경상감사(金時讓)는 정묘호란 정보를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에게도 몰래 알려 도쿠가와 막부의 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를 하였다. 이것을 보면 조선 정부는 1627년 정묘호란 때 까지도 대마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와 그의 가신인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에 대해 막부와의 역학관계까지 고려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³⁸⁾ 따라서 조선은 1635년 12월 대마번이 예조참의에게 문서로서 국서개작사건의 판결 결과를 알려올 때까지 대마번내 권력관계의 향방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마번주 소(宗)씨와 가신 야나가와(柳川)씨의 권력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은 일찍이 쇄환 피로인(신응창)을 통해서 예고된 바 있다. 1611년 비변사가 올린 신응창의 진술 내용 가운데, “전부터 시게노부(調信) 부자의 권세가 그 주인(宗氏)을 압도했는데 지금은 대립하여 무리를 부식(扶植)하고 있으며,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나 속으로는 등을 돌리고 있어 대마도 내의 변이 오래잖아 발생할 것입니다.”라는 진술이 그것이다.³⁹⁾ 실제로 대마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와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의 갈등은 1631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상감사의 보고가 있었다.⁴⁰⁾

이에 조정에서는 1632년(인조 10) 8월 관백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의 사망을

38) 정성일, 「丁卯胡亂과 朝鮮의 貿易政策 -1629년 日本 ‘國王使’의 상경과 관련하여-」(『사학연구』 49, 1993) 72~75쪽.

39) 『비변사등록』 1617년(광해 9) 1월 9일.

40) 『승정원일기』 인조 9년(1631) 7월 1일 계유.

조위하기 위해 당상역관 한상(韓祥)과 당하 최의길을 대마도로 파견할 당시, 대마도 사정에 대한 탐문·보고도 별도로 지시하였다.⁴¹⁾ 1634년 12월 대마번 차왜(藤智繩)가 막부의 명이라며 조선에 마상재(馬上才)의 파견을 요청해 왔을 때 역관 홍희남·최의길을 파견했던 것도 바로 국서개작사건의 정확한 경위 파악과 일본측의 의도를 알고 싶어서였다.⁴²⁾ 홍희남 일행은 1635년 1월 마상재 일행을 데리고 에도(江戸)로 떠났다.

그런데 1635년 2월에는 한참 쟁송중인 소 요시토시(宗義成)와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가 기유약조에 규정되지 않은 차왜를 보내왔다.⁴³⁾ 조선이 영문을 몰라 하던 중, 대마번은 1635년 6월 차왜(杉原彌右衛門, 스기하라 야에몽)를 파견하여 국서개작사건의 전말을 알려왔는데, 이때 홍희남 일행이 에도(江戸)에서 탐색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手本)도 함께 가지고 왔다.⁴⁴⁾ 홍희남은 바로 다음달인 1635년 7월 귀국하여 국서개작사건에 대한 막부의 판결 결과를 보고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⁴⁵⁾ 국서개작사건에서 대마번주 소(宗)씨가 승소한 사실과 함께, 관백이 대마도주를 시켜서 마상재 파견을 요청했던 것은 시게오키의 조선에 대한 참소와 꾀방이 심하여 조선의 교린에 대한 진실 여부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 세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대마도주의 대조선외교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에서였다는 것이다.⁴⁶⁾

조선은 홍희남의 귀국 보고로 대마번주 소(宗)씨의 승소 사실은 확인했다. 그러나 7월 홍희남의 귀국보고 이후에도 연말까지 대마도에서 도주의 세권선이 나오지 않자, 막부의 최종 판결이 과연 조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심할 수 없었다. 신료들 사이에서도 일본의 정국 동향을 알 수 없어서 연말까지 일종의 불안이 지속되었던 것 같다.⁴⁷⁾ 대마번

41) 『증정교린지』 권6, 문위행, 『변례집요』 권18, 信使 附 渡海, 임신(1632).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1632년 7월 예조참의 李堧 서계(No.411).

42) 변례집요 권1, 별차왜, 갑술(1634) 12월.

43)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2월 3일.

44) 『변례집요』 권1 별차왜, 을해년(1635) 6월.

45) 국서개작사건에 대한 심리는 163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1635년 3월 중순(12~13일)경 이미 쇼군 이메미츠(家光)의 친재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나왔었다. 1635년 1월 역관 홍희남과 최의길 일행이 마상재를 대동하고 조선을 출발하여 에도에 도착한 것은 3월말로, 이때는 이미 판결 후였다(윤 유숙, 「조선후기 문위행(問慰行)에 관한 재고 -1635년 사행 및 막부의 재정원조를 중심으로-」, 『한일 관계사연구』 50, 2015).

46) 『인조실록』 권31, 인조 13년 6월 13일 신묘.

이 1635년분의 사송선을 보내지 않았던 것은 막부의 禁制 조치에 따른 것으로, 1634년 12월 국서개작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대마도 사송선의 조선 도항을 금지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⁴⁸⁾ 실제로 1635년에는 1월에 만송원송사의 파견, 6월과 12월에 국서개작사건의 결과 및 야나가와(柳川)씨의 圖書衣冠 만남 등, 사후 수습을 위한 사자가 파견된 것을 제외하면 세건선이 나오지 않았으며, 1636년 6월에서야 비로소 병자년 세건 1선이 파견되었다.⁴⁹⁾ 1635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 6개월간의 정보 공백은 대마번주 소(宗)씨의 잔류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불안하게 했던 것 같으며, 일본의 재침에 대한 공포로 이어졌던 것 같다. 후금과의 긴장이 높아가는 가운데 1635년 11월에는 臺諫(심지원, 민응형 등)들도 일본의 동향을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인조는 소 요시토시와 야나가와 시게오키의 쟁송 이후 내부적인 조정 때문에 세건선 파견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판단하였지만,⁵⁰⁾ 바로 다음날 대신(영의정·좌의정)들과 비변사의 당상관을 소집하여 왜정에 대한 방비 문제를 논의하였다.

“어제 두 대관(臺官)이 청대하여 왜정이 우려할 만하다고 하였는데, --“좌상의 생각은 어떠한가?”하니, 오운겸이 아뢰기를,

“신이 근래 병이 많아 정신이날로 쇠잔해져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신이 일찍이 통신사(信使)로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눈으로 보아 아는 것이니, 귀로 들은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전일 마상재(馬上才)가 떠나기 전에 신은 속으로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대개 왜인의 마음은 호승심(好勝心)이 강한데 만일 심양(瀋陽)에 들여보내는 폐물을 저들 나라보다 많이 배정한다면 반드시 그만 못함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니 - 원문 빠짐 - 우환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흥이, 의성이 나라를 욕되게 하였다고 관백(關伯)에게 참소하여 우리나라가 - 원문 빠짐 - 호인(胡人)을 우대하고 일본을 박대한 일을 관백이 - 5, 6자 원문 빠짐 - 알고 있습니다. (중략) 대개 의성과 조흥은 상하의 구분이 확실한데, 일본은 명분에 매우 엄격하므로 조흥이 의성을 참소하다가 패한 것입니다. 만일 의성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거나 혹은 관백이 다른 사람을 대마도(對馬島)로 보내 지키게 하는데 그 사람 또한 믿고 의지할 만하다면, 우리나라에 무슨 근심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47)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6월 6일. 『번례집요』 권2, 送使, 병자년(1636, 인조 14) 4월.

48) 『柳川調興公事記錄』 中, 47(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 6539).

49)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서계(No.345 만송원 1635년 1월 답서 및 No.354 병자 세건 제1선 답서) 『번례집요』 권2 송사, 을해년 1월.

50)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11월 6일.

하였다. 상이 이어 묻기를,
 “경의 생각으로는 적들에게 다시 쳐들어올 형세가 없다는 것인가?”
 하니, 오윤겸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중략)

신경진이 아뢰기를, “일본에는 3대에 걸쳐 주인이 되는 경우가 없었기에, 관백이 절로 이것을 두려워하여 여러 장수 - 원문 빠짐 - 모두 구류(拘留)시켰다고 합니다.”

하고, (중략) “왜장(倭將)의 처와 자식들을 모두 인질로 삼았다고 하니, 내부적으로 믿지 못함이 이와 같은데 다른 나라를 업신여길 만큼 한가하겠습니까.”

“세견선은 도주가 없기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흥이 비록 패배하였지만 잔당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 아마도 내보낼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홍서봉이 아뢰기를, “당초 원가강(源家康)이 대립(代立)하게 되자, 풍신수길(豐臣秀吉)이 생령(生靈)들을 죽이고 이웃 나라를 침략한 것을 죄안(罪案)으로 삼았습니다. 원수충(源秀忠) - 몇 자 원문 빠짐 - 이를 통해 보건대, 반드시 침범하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관백은 두세 세대를 세습하고 있기에 스스로를 지키기에도 겨를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웃 나라를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상이 또 이르기를, 그러나 내 생각은 이와 다르다. 어떻게 스스로 자기 장수를 의심하고 스스로 자기 병사를 의심하면서 간과(干戈)를 움직일 것을 피하며 외국을 침범하겠는가.⁵¹⁾

1635년 11월의 위 논의에서 인조의 최대 관심은 국서개작사건이 조일관계에 미칠 과장으로 일본의 조선에 대한 병력 가동 여부와 도쿠가와 막부 권력의 안정성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였다. 조선은 임진왜란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공포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게다가 도쿠가와(德川) 막부 역시 ‘세키가하라 전투’(1600년) 및 ‘오사카 전투’(1614~1615년)라는 두 차례의 내전을 치르면서 군사력을 통해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 사후 히데요리(豐臣秀頼) 잔당을 제거한 바 있다.⁵²⁾ 그런 만큼 일본의 재침을

51)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11월 7일 계축.

52) ‘세키가하라의 전투’(関が原の戦い)란,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 사후인 1600년 미노(美濃)의 세키가하라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대장으로 하는 東軍과 이시다 미츠나리(石田三成)을 중심으로 하는 反德川세력이 일으킨 내전으로, 동군이 승리함에 따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오사카의 전투’(大坂の陣)란, 1614년의 ‘大坂冬の陣’과 1615년의 ‘大坂夏の陣’에 대한 총칭으로 도쿠가와(德川)막부가 ‘세키가하라의 전투’(1600) 이후에도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도요토미(豐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위 논의에서 좌의정 오윤겸은 국서개작사건의 여파가 조선에 미칠 군사적인 영향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종의성의 가신(家臣) 조흥이 대마도주 종의성을 조선에 청번(稱蕃)했다고 막부에 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관백의 측근에 조흥의 인맥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막부가 일본의 수치 등과 같은 이유보다는 상하의 구분을 무시했다는 명분을 중시 여긴 결과 조흥이 패했다. 설사 이 사건을 막부가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마도주 종의성이 막부의 신뢰를 얻거나, 또는 막부가 대마번주를 다른 다이묘로 교체한다 하더라도 명분을 엄격히 하는 일본이 이 사건을 트집잡아 조선에 대해 병력을 동원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인조의 질문에 답변한 오윤겸은 1617년 회답검쇄환사의 정사로 파견되었던 인물이다. 오윤겸의 대답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야나가와(柳川)씨 배제 이후의 조일관계를 두 가지로 상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는 막부가 대마번주 소(宗)씨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의 조일관계와, 또 하나는 대마번주를 다른 다이묘로 교체했을 경우이다. 후자는 소위 ‘개역’(改易)이라는 것으로, 다이묘(大名)가에서 가신과의 내분(家騷動) 때문에 집안 단속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막부가 번주를 교체할 수 있었다.⁵³⁾ 오윤겸은 일본내 조선 사절의 기착지였던 아카마세키(赤間關), 효고(兵庫), 오사카(大坂)의 행정체제와 안정 등이 구 도요토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치른 2번의 내전(세키가하라의 전투 및 오사카의 전투)과 ‘개역(改易)·감봉(減封)·전봉(轉封)’ 등과 같은 전후처리 조치에서 얻어진 결과로 인식하고 있었다.⁵⁴⁾ 따라서 오윤겸은 도쿠가와 막부가 흑시라도 국서개작사건을 다이묘

臣) 家を 멸망시킨 전투를 말한다.

53) 에도(江戸)시대의 ‘개역’(가이에키)란, 다이묘(大名)로부터 신분과 居城, 영지 몰수를 통해 다이묘를無力化する 조치로, 군사적인 이유(세키가하라 전투와 오사카 전투에서 패배)를 비롯하여 후계자 단절, 막법(武家諸法度) 위반 등이 이유였으나, ‘家中’ 단속에 실패한 경우도 해당되었다. 즉 다이묘가(大名家)와 그의 家臣간의 내분도 ‘오이에소동’(家騷動)라 하여 ‘개역’(가이에키)의 대상이었다.

54) 오윤겸의 『東槎上日錄』에는 실제로 ‘세키가하라의 전투’(1600년) 및 ‘오사카의 전투’(1614~1615년) 이후 도쿠가와 막부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구 토요토미(豊臣) 계통의 다이묘(大名)들에 대해 ‘개역’ 또는 감봉 조치를 통해 도쿠가와 정권을 안정시킨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회답검쇄환사 일행의 일본 혼슈(本州)내 첫 번 기착지인 아카마세키(赤間關)에 대해서는 아키히로시마(安藝廣島)의 영주였던 모리 테루모토(毛利輝元)씨 일족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이에야스군에게 패한후 나가토(長門州) 태수(長州藩主)로 영지몰수 및 감봉된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16일 도착한 효고(兵庫)에 대해서는 관백의 私宅(직할

가의 내분(‘오이에소동,’ 他家騒動)으로 취급하여 ‘改易’(영지 몰수)을 단행함으로써 대마 번주가 소(宗)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다 하더라도 막부의 관심이 내전 이후의 다이묘에 대한 무력화(無力化)를 통한 지배체제 강화에 있는 것이라면 병력 동원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또 신경진 등도 다이묘(倭將)의 처와 자식들을 인질로 삼아 내부 단속 때문에 다른 나라 침범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는데,⁵⁵⁾ 이는 1635년(寬永 12) 도쿠가와 이에미츠(德川家光) 때 다이묘(大名)의 도쿠가와 쇼군가에 대한 軍役奉仕로서 제도화된 ‘참근교대’(參勤交代)를 언급한 것이다.⁵⁶⁾ 이 제도는 다이묘의 정치와 가독(家督)의 상속자는 에도(江戸)에 상주시킨 채 각 번의 다이묘만 1년 간격으로 영지와 에도를 왕복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여정에 소요되는 숙박비 등을 비롯하여, 재지의 번청과 에도 번저(藩邸)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각 번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 제도 역시 결과적으로는 다이묘가(각 번)의 군사력 저하로 이어져 오랫동안 전쟁이 없는 도쿠가와 막번체제가 유지되었다.

오윤겸, 신경진 등 신료들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결정권자로서 국왕 인조가 내린 결론은, 일본의 병력 가동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 같은 날의 논의이지만『인조실록』에는 인조가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막부의 조치들이『승정원일기』보다 더 구체적이다. 즉 “관백이 전쟁에 싫증이 나 총포를 쓰지 못하게 금지하였고, 사람들이 난리를 일으킬까

지)으로 가타기리 슈젠(片桐主膳)이 다스리는 곳이라 표현하고 있다. 효고는 원래 豊臣秀吉의 직할지로 1607년 ‘회담검쇄환사’들이 이곳을 들렀을 때 히데요리의 대관 가타기리 슈젠(片桐主膳)이 다스리는 곳이라 한 것을 보면, ‘오사카의 전투’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직할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 오사카에 대해서는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인 히데요리(秀頼)가 살던 성으로 ‘오사카의 전투’의 패배로 히데요리가 사망하자 이에야스가 특명을 내려 이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던 마츠다이라 다다이키라(松平忠明, 『東槎上日錄』에는 ‘松平下總’)를 오사카 번주(太坂藩主)로 삼아 오사카를 다스리는 한편, 전후 피해복구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東槎上日錄』, 8월 4일, 8월 16일, 8월 19일).

55)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11월 7일.

56) ‘세키가하라의 전투’(1600)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여 패권을 확립하자, 각 藩의 다이묘들이 이에야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에도에 ‘참근’(參勤)하게 되었다. 이에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때의 선례에 따라 에도성(江戸城) 하에 다이묘의 거처를 마련하여 그들의 처(정실)와 자(후계자)가 거주하도록 하였다. 처음에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던 ‘참근’은 제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츠(德川家光) 때 「武家諸法度」의 개정(寬永令)을 계기로 ‘參勤交代’가 다이묘의 의무가 되었다.

걱정하여 장수들의 처자를 모두 구금하여 인질로 삼았다 하니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를 넘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⁵⁷⁾ 즉 인조가 신료들과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세키가하라의 전투(1600년)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로부터 이에미즈(德川家光)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쇼군직은 세습했지만 막부를 위협할 정도의 다이묘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막부가 다이묘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로 參勤交代·철포 몰수 등이 언급되고 있었다. 그 결과 인조는 도쿠가와 막부 쇼군의 권력 장악, 내지는 정권의 안정을 다이묘의 군사력 억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일본의 병력 동원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물론 인조의 도쿠가와 정권에 대한 이해는 신하들과의 논의 한번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임란 이후 회답겸쇄환사들의 『사행록』에는 도쿠가와 막부의 권력 장악과 관련된 제도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⁵⁸⁾ 『승정원일기』에는 없는 ‘참근교대’ 내용이 『인조실록』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자들의 귀국보고나 『사행록』의 편찬을 통해 일본의 정국 동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의 축적이 있었다고 보며, 이러한 인식 공유가 있었기에 인조의 판단도 가능했다고 본다.⁵⁹⁾

요컨대 1636년 2월 대마번 차왜가 쇼군의 명이라며 통신사 파견을 요청해 왔을 때 조선이 1달만인 3월에 신속하게 파견을 결정했던 것은, 그 이전 1635년 12월 대마번 차왜가 국서개작사건에 대한 막부의 판결 내용을 알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로는 이미 1635년 11월 시점에서 신료들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결정권자인 국왕 인조가 도쿠가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일종의 신뢰(자신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57) 『인조실록』 권31, 인조 13년 11월 7일 계축.

58) 정은영, 「회답겸쇄환사의 일본정보 탐색 연구」, 『겨레어문학』 54(2015) 252쪽.

59) 국교재개 이후 일본에 회답겸쇄환사를 파견했던 것은 국서전달이나 피로안 쇄환이라는 사명 이외에도 임란 이후 일본의 동태를 정탐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회답겸쇄환사들이 귀국후 제출한 『사행록』에는 일본의 정세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었는데, 1617년 회답겸쇄환사의 정사로 파견되었던 오윤겸의 『東差上日錄』에는 오사카 전투 이후 히데타다의 정국 장악에 대한 내용이, 1624년 회답겸쇄환사 때 부사였던 강홍중은 『東差錄』에서 히데타다 이래 다이묘 군사력 억제를 위한 제도로써 ‘一國一城制, 다이묘의 관할 영지 교체(개역), 參勤交代, 각 번의 군사들이 포 쏘는 것을 금지하고 축성에 동원되는 것 등을 보고하였다.

3) ‘권시지책’으로서의 통신사 파견

그렇다면 국서재작사건 이후 대일본전략으로 강구된 ‘권시지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앞서 1635년 11월 인조가 대신(영의정·좌의정)들과 비변사의 당상관을 소집하여 일본 정국 동향에 대한 방비 문제를 논의했을 때, 오윤겸은 국서개작사건의 판결 결과가 앞으로 조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오윤겸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왜차(倭差)가 머지않아 나올 것인데, 나오면 반드시 강정(講定)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때 아마도 마찰이 생길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 규례를 고수하려고 하는데, 저들은 들어주기 어려운 요청을 한다면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개 왜국은 명분을 위주로 한다.”하였다.

오윤겸이 아뢰기를, “조홍이 도주가 되어 우리나라를 위해 성의를 다한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대개 대마도는 우리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우리나라를 위해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 몇 자 원문 빠짐 - 하는 일은 전적으로 대마도에 달려 있습니다.”

즉 일본이 국서개작사건의 후속조치로 조선에 사자를 보내 조일간의 통교 규정이나 절차에 대한 변경 내지는 조정을 시도하려고 할 경우, 조선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대마번주 소(宗)씨의 입장을 편안히 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인식은 앞서 보았듯이, 1636년 2월과 4월에 후금측 외교문서를 퇴각함으로써 후금과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더욱 절실했던 것 같다. 1636년 7월에는 최명길 이 차자를 올려 시기가 달라져서 ‘변통’해야 할 형편이라면 국가를 보위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일본과의 교린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건의하였다.⁶⁰⁾

“교린(交隣)하는 도는 당연히 정하여진 격식을 그대로 따라야지 형세에 따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임

60) 『인조실록』 권 33, 인조 14년 7월 23일 을축.

니다. 그러나 만일에 일과 시기가 달라서 꼭 변통해야 할 형편이라면 구례를 억지로 고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중요한 것은 국가를 보위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일본(日本)의 사기(事機)가 조금 달라진 것을 인하여 지난번에는 미봉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재(馬才)를 보내고 서식(書式)을 고친 것은 모두 마도(馬島)의 청을 그대로 따랐으나 유독 예단(禮單) 한 가지 일만은 준허를 입지 못하였으니, 신은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본국이 덕천가강(德川家康)과 화친을 맺을 때에는, 가강이 새로 뜻을 얻어 풍신수길(豐臣秀吉)이 하는 일을 모두 반대하여 화친을 구하는 뜻이 지성에서 나왔으며, 강화하는 일을 전적으로 도주(島主)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주가 우리 나라와 교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의 지극한 소원이었으므로 예단의 많고 적은 것은 원래 개의치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너무 소략한 것을 혐의스럽게 여겨 본도(本島)에서 약간의 물건을 더 준비하여 관백(關白)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이미 사신의 일기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 역관이 지어낸 말이 아닌 듯싶습니니다.

더구나 지금의 관백은 연소하고 경망스러우며 조부의 부강함을 믿고 지나치게 허세를 부리는데다가 조흥(調興)의 참소로 인하여 의심이 누적되어 있으니, 인서당(麟西堂)이 나온 데서 도주가 위태로운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주가 죄를 입고 조흥이 다시 등용되면 화가 양국에 전가될 것은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그렇다면 도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곧 우리 변경을 편안히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격식을 어기는 것 때문에 어렵게 여긴다면 마상재(馬上才)는 보낼 필요가 없고 서식을 고칠 필요가 없으며, 만약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2필의 말과 20필의 비단은 지극히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니 해마다 보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소비되는 것 때문에 변경의 걱정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10년에 한번 행하는 데이겠습니까. 이 일의 이해와 득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차라리 도주에게 기풍을 당할지언정 너무 인색하게 하고 고집을 부려 변경의 사기(事機)를 그르칠 수는 없다고 여겨집니다.⁶¹⁾

위의 논의를 보면 최명길의 “인서당(麟西堂)이 나온 데서 도주가 위태로운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막부가 국서개작사건 이후 대마도의 이테이양(以酤庵)에 윤번승(麟西堂)을 파견하는 새로운 제도를 대마번주 소(宗)씨의 입장 약화로 이해했던 것 같다. 따라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이번 통신사 파견 교섭에서는 대마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의 외교력을 막부에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조선에 가장 이득이 된다는 최명길의 인식이다.

국교 재개 이후 대마번에서는 이테이양(以酤庵)의 승려 겐포(玄方)가 고도의 한문지식을 바탕으로 대조선외교문서를 작성해 왔었다. 그런데 그가 국서개작사건에 연좌되어 처벌을 받자, 대마도 안에는 한문으로 된 외교문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게 되었

61) 『인조실록』 권 33, 인조 14년 7월 23일 을축.

다. 이에 당시 에도에 있던 대마번주 소 요시나리가 1635년 4월 막부(老中)에게 한문 문서를 다룰 수 있는 ‘書契役僧’을 새로 임명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막부는 1635년 8월 도후쿠지(東福寺)의 승려 玉峰光璘(璘西堂)에게 ‘書契役僧’의 역할을 맡기게 되었다. 대마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의 대마도 귀환시 함께 동행해온 린서당은 10월(11월)부터 대마도의 以酤庵에 입주하여 외교문서의 작성 등, 업무를 시작하였다.⁶²⁾

윤번승 린서당의 대마도 부임 이후 대마번에서는 국서개작사건에 대한 막부의 판결 결과와 조선이 야나가와(柳川)씨에게 허락했던 송사선의 인장(圖書)과 관복을 반환하라는 서계를 가져왔다. 이 가운데 막부의 판결 결과를 통보하는 1635년 11월자 서계는 초안(일본어)을 린서당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⁶³⁾ 발신인이 「日本國對馬州太守拾遣平義成」, 수신인이 「朝鮮國禮曹太人」으로 되어 있는 이 서계는 12월 대마번 차왜(平智友, 唐坊佐左衛門)가 지참해왔다. 그런데 이 서계에는 막부 쇼군을 처음으로 ‘大君’으로 기재해 온 것을 비롯하여, 예조참의에 대한 경칭을 ‘閣下’에서 ‘足下’로 격하하였으며, 연기도 명의 연호(崇禎) 대신 ‘龍輯乙亥’라 기재해왔다. 또 다른 서계에는 ‘星舍乙亥’로 기재되어 있었다.⁶⁴⁾ 조선에서는 린서당의 대마도 부임 이후 조선에 처음으로 가져온 서계에 보이는 일본측의 일방적인 서식 변경을 막부의 간여가 있는 것으로 여겨 매우 불쾌하게 여겼으나 후금과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문서를 퇴각하지는 않았다.⁶⁵⁾

최명길의 인식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건의란 대마번이 1634년 마상재 요청과 1636

62) 이후 막부는 교토(京都)의「五山碩学」이라 불리우는 승려 중에서 ‘朝鮮修文職’ (朝鮮書契御用·對州書役) 을 임명하여 以酤庵에 1年 (나중에 2年) 씩 교대 근무하면서 외교문서의 작성 등, 대마도의 대조선외교업무를 감독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소위 ‘以酤庵輪番制’이다. 이정암 윤번승들은 外交文書作成 뿐 아니라, 통신사가 일본에 갔을 때 이들에 대한 응접, 표류민 송환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여 조선과의 통교무역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정암 윤번승들은 대마번 근무중 조선에 보내는 서계(한문) 작성을 비롯하여 조선에서 받아오는 회답서계에 대해서도 검분·필사·관리하는 일을 맡아 보았는데, 이 임할 때 조선과 주고받은 왕복서계에 대한 부분(副本)을 3부 작성하여 대마번에 제출한 것이 『本邦朝鮮往復書』이다.

63) 『변례집요』 권2, 圖書 賞職, 을해년(1635) 12월.

서계의 원문은 『柳川調興公事記錄』 中, 29(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증가문서 기록류, No. 6539).

64) 『변례집요』 권6, 書契路引, 을해년(1635) 12월. 별차왜, 을해년(1635) 12월.

서계의 원문은 『柳川調興公事記錄』 中, 29(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증가문서 기록류, No. 6539).

65) 『인조실록』 권31, 인조 13년(1635) 12월 17일.

년 연초 통신사 강정 교섭시 국서의 서식 개정을 요청해왔을 때 이를 수용했던 것처럼, 예단도 넉넉하게 준비하여 대마번주가 통신사 요청 업무를 무난히 수행하게 함으로써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대마번주의 외교력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막부가 대마번주에 대한 ‘개역’을 단행하지는 않았지만, ‘이정암 윤번승제’의 실시로 막부측이 외교문서를 주관하는 식으로 통교환경이 이미 변경되었다고 인식한 상황에서 조선은 도쿠가와 막부의 대조선외교에 대한 영향력(주도권)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최명길의 ‘차라리 대마도주에게 기룡을 당할지언정’이라고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통신사란 10년에 한번 정도 파견하면 되는데다, 설령 대마번이 예물 등 과다한 요구를 해오더라도 대마도라면 조선이 얼마든지 통제 가능한 상대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으로서는 임란 이후 ‘조선→대마번주 소(宗)씨→막부’로 이어지는 기왕의 교섭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도쿠가와 막부를 상대하는데 가장 부담이 없었으며, 대마번주의 외교력을 막부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대조선외교에 대한 막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은 비변사도 마찬가지였다. 비변사는 막부가 승려에게 문서를 주관하도록 한 이후부터는 대마도주가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신사의 예단을 넉넉하게 갖추어 대마도주의 입장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막부의 불만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⁶⁶⁾ 비변사의 이러한 건의는 막부의 병기 수출 금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 요청에 대비하여 일본으로부터 무기 구입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교섭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었다.⁶⁷⁾

한마디로 국서개작사건 이후, 인조를 최고결정권자로 하는 조선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강구한 ‘권시지책’, 또는 ‘변통’이란, 구체적으로는 통신사 파견을 통해 ‘조선→대마번주 소(宗)씨→막부’로 이어지는 기존의 교섭라인 안착을 통해 조일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오윤겸이 우려했듯이, 혹시라도 국서개작사건의 후속조치로 ‘개역’을 단행하여 대마번주가 소(宗)씨가 아닌 새로운 다이묘로 변경될 경우, 새로운 상대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불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로 새로운 부담이 발생할

66) 『승정원일기』 52책, 인조 14년(1636) 7월 15일.

67) 한명기, 「병자호란 무렵 조선의 대일정책과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7(2007), 327쪽.

수 있었다. 따라서 국서개작사건 이후 ‘이정암 윤번승제’의 실시와 같이 막부의 간여가 초래되기는 하지만, 종래와 마찬가지로 대마번의 소(宗)씨가 온존된 상태에서 막부에 대마번의 외교력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줄 수만 있다면, 조선으로서는 대조선외교에 대한 막부의 영향력을 확대시키지 않으면서도 도쿠가와 막부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도쿠가와 막부와 관계 안정이란 남변의 방어에 굳이 새로운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 즉 조선으로서는 대마번주 소(宗)씨라면 익숙하고 통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1636년의 통신사 파견이란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1636년 통신사의 정사 임광(林統)이 쇼군 이에미츠(家光)가 대마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를 통해 닛코산(日光山) 유람을 요청해왔을 때 이를 수락했던 것도, 수행역관 홍희남의 말대로 “조선의 이번 통신사 파견을 대마도주(宗義成)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다.⁶⁸⁾

3. 인조대의 국정운영과 통신사 외교

앞서 1635년 최명길과 비변사의 건의에서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권시지책’으로 표현된 대일본통교 방침이 외교안보 비용(재정) 측면에서 제안되었다는 것이다. 앞의 기록을 다시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격식을 어기는 것 때문에 어렵게 여긴다면 마상재(馬上才)는 보낼 필요가 없고 서식을 고칠 필요가 없으며, 만약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2필의 말과 20필의 비단은 지극히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니 해마다 보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소비되는 것 때문에 변경의 걱정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10년에 한번 행하는 데이겠습니까. 이 일의 이해와 득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차라리 도주에게 기물을 당할지언정 너무 인색하게 하고 고집을 부려 변경의 사기(事機)를 그르칠 수는 없다고 여겨집니다.⁶⁹⁾

68) 林統, 『丙子日本日記』 병자년 12월 11일(신사).

69) 『인조실록』 권 33, 인조 14년 7월 23일 을축.

최명길 등은 통신사 파견으로 예물 비용을 다소 소비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안정된다면 손보다는 득이 많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것을 당시 조선을 둘러싼 외교관계를 염두에 두고 추측해 본다면, 통신사 파견이란 후금에 보내는 춘신사나 추신사 처럼 매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일본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10년에 한번 정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물 비용을 다소 소비한다 치더라도 긴장을 초래하여 새로 들어가야 하는 부담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설령 대마변주가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 하더라도 소(宗)씨라면 조선이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보다는 이득이 많다는 의견이다.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재정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을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위의 논의로 볼 때 대명·대후금관계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대일본외교에 들어가는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먼저 조선의 후금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였을까?

우선, 1627년 정묘호란 이후 후금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예폐’(禮幣)는 목면 15,000필, 백저포 250필, 호피 60필, 녹피 40필, 왜도 8자루, 안구마 1필이었다. 그리고 ‘세폐’(歲幣)라 하여 조선과 후금이 맺은 ‘맹약’에 따라 해마다 조선의 방물을 후금에 보냈다. 세폐 액수는 매년 목면 7,000필 등 대략 12만냥(동전)에 해당하는 24종의 물품으로,⁷⁰⁾ ‘맹약’에는 인조가 그 액수를 스스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후금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증액이 가능한 불평등한 조건이었다.

또 후금은 맹약에 따라 호란 때 후금에 포로로 잡혀간 피로인의 贖還(유상송환)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려 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갔던 피로인이 무상송환이었던 것과 달리 후금 피로인은 유상송환이었기 때문에 조선이 이들을 귀국시키려면 송환비용을 재정에서 감당해야 했다. 따라서 피로인의 송환이 여의치 않자 후금은 재원 확보를 위해 개시(開市)를 제안하였다. 1628년에는 중강 개시, 1629년에는 회령 개시가 개설되었으나 개시일에 후금 상인의 보호를 위해 파견되는 후금 군인에 대한 조선측의 접대비 부담, 조선 상인들의 개시 회피로 후금과의 개시는 지속될 수 없었다.⁷¹⁾

그리하여 1631년에는 대안으로 조선이 춘추 2번에 걸쳐 후금에 통신사를 파견할 때

70) 전해종, 「정묘호란의 화평교섭에 대하여」,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1970, 135~138쪽.

71) 정성일, 「정묘호란과 조선의 무역정책 -1629년 일본 ‘국왕사’의 상경과 관련하여-」, 『사학연구』 49(1995).

상인을 팔려 보내 교역하게 하는 사행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춘신사·추신사 파견 이후에는 조선이 가지고 가는 ‘예물’이 큰 부담이었다. 후금은 1631년 1월 춘신사(박난영), 1632년 9월 추신사(박난영), 1633년 1월 춘신사(신득연)가 가지고 간 예물이 부족하다며 받지 않았는데, 1632년 11월 후금의 사자가 조선에 요구한 예물은 전년도의 10배에 해당하였다. 1633년 5월 후금이 춘신사(박로) 편에 예물의 증액을 요구함에 따라, 1636년 2월에는 대폭 증액한 결과 다음과 같은 액수로 정해졌다.⁷²⁾ 이를 정조·순조대의 물가로 환산할 경우 12만4천냥에 해당하였다.⁷³⁾

〈표 1〉 후금에 보내는 예물

세폐(1636.2.4)		춘·추통신사 예단(1633~36)	
품목	수량	품목	수량
잡색주	600필	각색면주	600필
백주	(+200필)	저포	
백저포	200필	마포	합 600필
백포	400필		
잡색목면	2,000필	각색목면	7,000필
정목면	5,000필(+3000필)		
표피	50장	표피	50장
수달피	200장	수달피	200장
청서피	160장(+40장)	청서피	160장
상화지	50권	상화지	500권
백면지	1000권(+500권)	백면지	1000권
채화석	50장	각색채화석	100장
화문석	50장		
용석	1장	세룡석	1장

72) 김종원, 「정묘호란」, 『한국사』 29, 국사편찬위원회, 1995) 255~258쪽.

『인조실록』 권 28, 인조 11년(1633) 5월 3일 갑오.

<표>의 세폐 액수는 『인조실록』 권 32, 인조 14년 2월 4일 기묘.

73) 김종원, 「정묘호란」, 『한국사』 29(국사편찬위원회, 1995).

好刀	8자루(12병)	호도	8자루
小刀	8자루(12병)		
단목	200근	단목	200근
호초	10두	호초	10두
黃栗	10두	황물	10두
대추	10두	대추	10두
銀杏	10두		
乾柿	50첩	乾柿子	50첩
전복	10첩	전복	10첩
천지차	50봉		
작설차	50봉		
합 12만4천냥			

위의 <표 1>에서 정묘호란 이후 세폐란 사행무역 이후의 예물과 동일한 의미로 보편 될 것 같다. 조선은 후금의 탐색을 위해서 1634~1636년 병자호란 직전까지도 춘·추통신사를 후금에 파견했다. 이때 후금은 조선측의 예물에 대해 후금측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후금은 1635년 12월에도 예단의 증액을 요구함으로써 조선과 마찰이 있었다.⁷⁴⁾ 그런데 조선측의 예물 액수가 부족하다고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후금측이 조선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회답예물을 주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측의 예물이 무상으로 일방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교린국간의 우호적인 사신외교라고는 보기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다.

한편 1633년에는 예물의 증액과 함께 병선 300척을 제공하여 가도(假島) 공략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후금에 대한 부담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후금이 필요한 물자 확보를 위해,⁷⁵⁾ 또는 상인을 데리고 무역을 하기 위해,⁷⁶⁾ 교린국간의 조정사 위로 차, 후금의 ‘칭제’ 사실을 알리

74) 노기식, 「만주의 흥기와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중국사연구』 16, 2001, 25~30쪽.

75) 『인조실록』 권 31, 인조 13년 8월 8일 을유.

76) 『인조실록』 권 31, 인조 13년 5월 2일 신해, 인조 13년 5월 23일 임신.

기 위한 것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조선에 사자를 파견해 왔다. 당연히 이들이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의 접대비 및 예단의 준비도 부담이었다.⁷⁷⁾ 이러한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교린지 국간의 사신외교에 들어가는 비용이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1636년 2월에는 후금 사자 용골대가 지참해온 금한의 외교문서를 신료들의 반대로 퇴각하였다. 그리고 1636년 4월에는 춘신사로 갔던 나덕현이 귀국 도중에 후금의 외교문서를 버리고 왔다. 국제관계에서 상대국의 외교 문서를 퇴각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계 단절을 염두에 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조선은 이후 후금의 침략을 염두에 둔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1636년 2월 비변사의 계에 따라 병력 징발과 이동이 이루어졌다. 어영청과 훈련도감에서 선발된 포수와 하삼도(下三道)의 감사와 병사 휘하의 정예 병사 5천명을 안주(安州)로 이동시켜 사수하도록 하였으며 교대 병력은 하삼도의 속오군에서 선발하도록 했다.⁷⁸⁾ 병사의 안주 이동은 1635년 11월 이후의 후속조치로 보이며 11월에도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병사 8천명 가량을 안주로 이동시켜 병력을 서쪽으로 집결시키는 한편,⁷⁹⁾ 1636년 3월에는 군수품(철갑·절주)을 서쪽 변방으로 이동시키고,⁸⁰⁾ 5월에는 함경도에서 병사를 추가 징발하도록 했다.⁸¹⁾ 또 정묘호란 이후 1633년에는 청천강 이북의 정방산성, 백마산성 등을 새로 수축하기에 이르렀는데, 1635년에는 인조가 대신 및 비변사의 신료들과 함께 산성의 역할을 점검하였다.

후금의 재침을 염두에 둔 전시 태세 준비란 후금과의 외교비용은 차치하고라도, 군사 징발, 병력 이동에 따른 군량미 등 군수물자의 이동, 산성 축조, 무기 제조 등, 여러 방면에서 부대비용을 발생시켰다. 후금과의 긴장 고조에 따른 이러한 비용은 결국 민간에서 거두어들이는 증세(增稅)를 통해 실현하는 수밖에 없었다.

인조대는 광해군대의 궁궐 공사를 위한 과잉 징수 등 실정으로 인한 부담을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과세 탕감을 통해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대과제였다. 인조

77) 『승정원일기』 인조 12년 12월 27일.

78) 『승정원일기』 인조 14년 2월 30일 을사.

79) 『인조실록』 권 31, 인조 13년 11월 3일 을묘, 인조 13년 11월 7일 계축.

80) 『인조실록』 권 32, 인조 14년 3월 10일 을묘.

81) 『인조실록』 권 32, 인조 14년 5월 15일 무오.

즉위 이후 끊임없는 양전(量田)조사와 세제(대동법, 軍政) 개혁이 논의되었던 것은 은결과 누결을 찾아내 민생의 부담은 감소시키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⁸²⁾ 징세 부담 가운데서도 군사의 징발은 양민의 군역에 기초한 것으로 양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635년에는 비변사의 건의에 따라 양민의 군역을 과하여 군보(軍保)로 삼고, 공사천(公私賤)을 속오군(束伍軍)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1636년에는 遠道(경상도·전라도 등)의 역군을 모집하기 보다는 차라리 價布(軍布)를 거두어 그 비용으로 현지(西路)에서 역군을 모집해서 대응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었다.⁸³⁾ 당장 1634~1635년의 추이를 보더라도 후금과 명의 틈바구니에서 외교안보비용은 증가일로에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비상시의 전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세금의 금납화, 병사의 현지 고용 등, 세제의 개혁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면 명과의 관계 유지에 드는 비용은 어땠을까?

인조반정(즉위) 직후 조선은 스스로 친명을 표방한데다 명으로부터 조선국왕의 승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모문룡의 역할이 있었다. 명의 대요동·조선정책의 창구가 가도(槎島)로 일원화 되면서 조선은 모문룡에 대한 군량 지급을 경제적 부담으로 안게 되었다. 1626(인조 4)년 모문룡에게 지급했던 군량이 15만석, 1627(인조 5)년에는 1년 국가 경비의 1/3에 이르렀다. 여기에 요동지역을 떠나 조선으로 몰려들었던 명의 난민들에 대한 접대도 큰 부담이었다. 1629년 모문룡의 사후에도 가도에 대한 군량 공급은 끊이지 않았는데 친명사대의 표현이었다.

또 1633년에는 명의 공유덕이 등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후금으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 명의 도독(吳安邦)이 조선과 함께 이들을 소탕하자며 군량 3천석을 받아갔다.⁸⁴⁾

이밖에도 명에 대해서는 매해 정기적인 사신의 파견, 명의 칙사에 대한 접대 등, 사신 외교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에 비해 일본과의 통교 유지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82) 오항녕, 「내상(內傷)과 외상(外傷)을 넘어 -인조시대 대내외정책-」, 『한국불교사연구』 4, 2013.

83) 『인조실록』 권 32, 인조 14년 1월 7일 계축. 인조 14년 3월 27일 임신.

84)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제3부 인조반정과 대명관계의 추이, 역비한국학총서, 전근대편, 역사비평사, 2008.

까? 우선 임란 이후 1609년 기유약조로 대마도와 통교를 재개함에 따라 대마도와의 무역 액수가 정해졌지만 무역 규모는 임진왜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대마도주에 대한 세사미두나 세견선 수도 20척으로 임란 이전의 50척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다. 조선에 무역선을 파견할 수 있는 대마도의 수직인, 수도서인 숫자도 감소시켰다. 그런데 이들이 파견하는 선박은 기본적으로는 조일간에 가격을 바탕으로 필요한 물품 확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조선이 무상으로 부담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또 기유약조의 후속조치로 1610년 12월 부산 개시 허용 방침에 따른 상경(上京)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왜관이 부산 1곳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부산 단일왜관체제 이후 조선이 일본에 대해 무상으로 일방적으로 부담한 비용이라면 왜관 유지비용(왜관 체류자에 대한 숙식 및 연료)인데, 임란 이전 대마도 사자의 한성 왕복과 체류에 드는 비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1636년 통신사를 파견할 경우 새로 발생하는 부담이라면 예단 비용을 상정할 수 있다. 비변사가 ‘권시지책’의 방안으로 능단(綾緞)의 양색 비단을 각각 20필로 증가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⁸⁵⁾ 인조가 1624년의 전례에 따를 것을 지시함에 따라 1636년 통신사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간 예물은 다음과 같았다.

〈표 2〉 1636년 통신사가 지참한 예물⁸⁶⁾

품목	지급 대상		
	관백(쇼군)	집정(로중) 6인(각)	봉행--신례 3인(각)
대단자(大緞子)	10필		
대수자(大繻子)	10필		
마(麻)	2필		
백저포(白苧布)	30필		
색지(色紙)	30권		
생저포(生苧布)	30필		

85) 『승정원일기』 인조 14년 7월 15일 정사.

86) 『通航一覽』 권 94(102쪽), 권 104(219쪽).

어피(魚皮)	100장		
응자(鷹子)	20런	1런	1런
인삼(人蔘)	50근		
진묵(眞墨)	50홀	20홀	20홀
채화석(彩花席)	20장		
청밀(淸蜜)	10두		
청서피(靑黍皮)	30장		
표피(豹皮)	20장		
호피(虎皮)	15장	2장	2장
황모필(黃毛筆)	50병	30병	30병
황밀(黃蜜)	100근		
흑마포(黑麻布)	30필		
합계: (평균 34,192錢兩)			

<표 2>에서 1636년 통신사 일행이 장군 앞으로 가지고 간 예물은 대단자(大緞子)를 비롯한 18종으로, 1617년 제2차 ‘회답겸쇄환사’가 쇼군 앞으로 가지고 갔던 예물에 비하면 오히려 감소된 액수였다.⁸⁷⁾ 1636년의 예물 품목과 수량은 1811년의 마지막 통신사 때 까지 전례가 되었다. 인조대에는 1636년 통신사 파견 이후 7년만인 1643년에도 통신사를 파견했는데, 이때의 예물 총액은 19세기의 단일 물가로 환산했을 때 36,300錢兩이었다.⁸⁸⁾ 그리고 이 환산율을 적용할 경우 임란 이후 통신사를 한 번 파견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예물가는 34,192錢兩이었다. 이 예물 비용을 1636년 후금에 보내는 춘신사·추신사가 가지고 가는 예물가격 12만錢兩과 비교할 경우 약 1/4(1/3.5)에 못미치는 금액이었다.⁸⁹⁾

87) 1617(광해군 9)년 도쿠가와 막부 쇼군 앞으로 보내는 예물은 다음과 같다.

金襴 30필, 帽段 100필, 백면주 50필, 백저포 50필, 백지 30권, 응자 50런, 인삼 200근, 진묵 30정, 청서피 10매, 표미 30장, 호피 30장, 花絲絹 50필, 화석 20장, 황모필 200병, 흑마포 20필 (김덕진 외, 『외교와 경제 -조선후기 통신사외교와 경제시스템 -통신사 예단을 통해서 본 조일외교의 특징과 그 변화』(『한일관계사연구』 26, 2007))

88) 김덕진 외, 『외교와 경제 -조선후기 통신사외교와 경제시스템 -통신사 예단을 통해서 본 조일외교의 특징과 그 변화』(『한일관계사연구』 26, 2007) 198~200쪽.

더구나 통신사들이 일본에 가지고 가는 예물은 춘신사·추신사 처럼 매년 조달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일본의 요청으로 1624년(제3차 회답검쇄환사) 이후 12년만에 파견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조선측 예물에 대해 품목당 단가를 계산하여 거의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조선측에 회답예물로 주었기 때문에 예물비용으로만 보면 조선이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부담하는 것만은 아니었다.⁹⁰⁾

그리고 앞의 1635년 11월 인조가 대신과 비변사의 신료들과 왜정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을 보면, 인조가 일본의 병력 동원 가능성이 없다고 최종판단함에 따라, 1636년 통신사 파견시 남변의 방어에 드는 새로운 부담은 책정되지 않았다. 병조판서(이홍주) 대간 등의 신료들이 산성과 수군(舟師)을 정비하여 왜적에 대해 방비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인조의 답변은 현재 국력이 넉넉지 않으니 방비와 관련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에게 병력을 움직이는 형세가 있음을 인지한 후에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앞서 보았듯이, 인조는 일본의 도쿠가와 정권이 다이묘의 군사력을 억제에 바탕을 두는 한 조선을 재침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밀양 등지의 산성 등, 기존의 방어체계를 점검한 것 이외에 추가 조치는 없었다. 명이나 후금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안보 비용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방비 역시 증세로 인한 민폐와 직결되는 문제였으므로 가능성만 가지고 병력을 동원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즉 조선으로서는 일본측의 요청대로 통신사를 파견할 경우, 남변 안보에 있어서 기존의 관리 비용에 예물 비용 정도를 추가하는 정도로 조일관계를 안정시킬 수가 있었다. 따라서 1636년의 통신사 파견이란, 후금에 대한 전시 상태, 명의 군사적인 요구 속에서 남변의 방어를 위해 추가로 군사안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89) 김성근, 『조청 외교관계의 변화 연구 -조공·책봉을 중심으로-』(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47쪽.

90) 1636년 통신사가 쇼군 앞으로 가져간 예물에 대해, 쇼군의 회답예물은 다음과 같다.

金屏風 20쌍, 銀臺子 2式과 딸린 爐釜, 杓立, 水滴, 綿衣 50領

그리고 1811년 신미통신사행의 경우이긴 하지만, 조선측(예조 및 통신사)의 예물에 대한 일본측(막부측 上使)의 회답예물에 대해서는, 일본측 자료(對馬宗家文書)를 분석한 결과 각 품목당 단가를 기준으로 비슷한 액수로 하되 상대방의 기호품을 우선시하여 마련되었음이 구체적인 수치로 예시된 바 있다(이 훈, 『비용으로 본 교린의례-1811년 신미통신사 파견시 예물 교환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8, 2011).

4. 의례의 변경과 통신사 외교

1) 의례의 변경

1636년의 통신사 파견시 조선의 ‘권시지책’, 즉 대마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의 외교력을 도쿠가와 막부에 인식시킨다는 특단의 대일본통교 방침이 정해지자, 실제로 통신사 파견을 위한 준비도 되도록 대마번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⁹¹⁾

이에 1636년 4월 대마번이 새로운 차왜(藤智繩)를 파견해 오자, 조선은 역관 홍희남(洪喜男)으로 하여금 대마번 차왜와 함께 통신사의 일정을 비롯하여, 국서의 서식, 쇼군의 외교칭호, 예물, 의식 등에 관한 강정절목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 강정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과거 ‘회답검쇄환사’(1607·1617·1624년) 파견 때와 달리 의례 및 교섭절차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18개에 이르는 강정절목 가운데 우선 이전과 다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一. 信使時, 國書以日本國大君殿下書送事
- 一. 信使三位, 以大官入送, 凡行規善爲事
- 一. 執政處, 各各書契修送事
- 一. 信使到日本, 大君及執政處, 呈禮單事
- 一. 雜藝技能者 率來事.
- 一. 善畫者, 率來事.
- 一. 善寫者·名醫, 率來事.
- 一. 能馬上才人, 率來事.⁹²⁾

91)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몰아 1636년 6월 대마도가 특송선을 파견하면서 보내온 서계가 구례에 어긋나 違式이 문제가 되었다. 진공하는 예물 목록에서 ‘進上’이라는 문언을 쓰지 않은 것이다. 조정에서는 조선을 무시한 것으로 인식했으나 크게 문제삼지는 않았었다.(『인조실록』 권 32, 인조 14년 6월 25일 무술).

92) 『邊例集要』 권8 信使 병자(1636년) 4월.

위의 통신사 강정절목에서 가장 큰 변화라면 국서에서 쇼군의 호칭을 종래의 ‘일본국 왕’이 아니라 ‘大君’으로, 경칭은 ‘殿下’로 해서 조선측 국서를 작성해 주도록 한 것이다. ‘대군’이라는 칭호에 대해서는 누가 처음 고안했는지 여러 견해가 있지만 대마번 관계자와 막부의 로쥬(老中 井伊直孝·松平信綱·土井利勝·酒井忠勝), 林道春이 관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⁹³⁾

다음으로 대마번이 막부측의 집정 앞으로 예조에서 외교문서를 따로따로 작성해 주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예조 계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는 전례가 없어 당혹했던 것 같으나 결국은 인조가 작성을 운허했다.⁹⁴⁾ 과거 ‘회답검쇄환사’(1607·1617·1624년) 때 피로인 쇄환 요청과 같은 실무적인 내용은 예조(참판)가 집정(老中) 앞으로 서계를 보냈다.⁹⁵⁾ 그런데 1636년의 경우 집정이란 로쥬(老中) 3명(井伊直孝·土井利勝·酒井忠勝)과 부교(奉行) 4명(松平信綱·阿部忠秋·屈田正盛·板倉重宗)을 합한 7인으로, 봉행 앞으로 보내는 서계는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수용하였다. 『사행록』에 따르면 국서개작 사건 이후 막부 안에는 아직도 야나가와(柳川)씨의 인맥이 존재하는 가운데 土井利勝·屈田正盛·板倉重宗을 야나가와씨 인맥으로, 井伊直孝·伊達政宗을 소 요시나리(宗義成)의 인맥으로 파악하고 있었다.⁹⁶⁾ 이에 피로인 쇄환을 요청하는 조선측 문서도 井伊直孝가 대마번에 조언해 준 것을 참고하여 봉행 앞으로 작성되었다.⁹⁷⁾ 봉행 앞으로 보내는 서계는 이후 통신사 파견시의 전례가 되었다.

이밖에도 대마번은 통신사(3사)를 이전보다 고관(高官)으로 해줄 것, 그리고 수행원 가운데 서화(書畫)에 뛰어난 사람, 의원, 마상재 등 기예가 있는 사람들의 인원수를 더 증가시켜 줄 것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것 역시 수용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이 쇼군의 외교칭호로서 ‘大君’호 수용을 비롯하여 대마번이 요구한 여러 가지 신례를 수용했던 것은, 대마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의 대조선 외교력을 막부

93) 池内敏, 「大君号の歴史的 성격」(『大君外交と武威』所収、名古屋大学出版会、2006、30쪽).

94) 『승정원일기』 인조 14년(1636) 8월 8일 기묘

95) 『同文彙考』 附編 권 8, <通信 1> 禮曹參判與日本諸執政書.

96) 임광, 『병자일본부일기』 12월 9일, 11일, 14일.

김세렴, 『海槎錄』 9월 21일.

97) 김세렴, 『海槎錄』 9월 21일.

쇼군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것이야말로, 대조선외교에 대한 막부의 영향력을 최소화 함으로써 조일관계의 현상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도 조선의 변경을 안정시키는 것과 직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예조, 비변사 등, 당시 조선정부의 공통된 입장이었다.⁹⁸⁾

한편, 위와 같은 강정 결과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1636년의 통신사 때부터 조선 국왕의 국서가 ‘봉서’(奉書) 형식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임란 이후 반일정서가 남아있는 가운데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일본측이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는 ‘일본국왕’(막부 쇼군) 명의로의 ‘先爲致書’(奉書)를 조선에 먼저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였다. 이에 ‘회답겸쇄환사’(1607·1617·1624년)가 지참한 조선국왕의 국서는 ‘선위치서’에 회답하는 형식의 ‘봉복’(奉復)으로 작성되었다. 조선은 조선이 통교 조건으로 제시했던 ‘일본국왕’ 명의로의 ‘선위치서’가 바로 대마번의 국서개작사건과 같은 외교참사로 귀착된 것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1636년 병자통신사 때부터는 조선국왕의 국서를 ‘奉書’의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선위치서’를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되자, 조선은 대마번 차왜(1636년 2월, 橋成供)가 예조 앞으로 보내온 서계를 대마번주가 도쿠가와 쇼군(家光)의 지시에 따라 보내온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일본 쪽에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해 올 때의 첫 번째 절차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자 대마번에서는 이를 ‘通信使請來差倭’의 전례로 삼았다.

이와 같이 강정절목이 정해지자, 1636년 7월부터 8월까지의 통신사 수행원의 자질 점검을 비롯하여, 통신사행원의 일본 체류시의 언동에 관한 지침, 예물의 준비, 국서를 비롯한 막부 고관에 대한 외교문서의 작성, 마상재 준비, 통신사의 복색 등, 통신사 파견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⁹⁹⁾

2) 국서의 왕복

그러면 조선측의 국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작성되었을까?

98) 『승정원일기』 인조 14년(1636) 9월 3일 갑진.

99) 『승정원일기』 인조 14년(1636) 7월 2일 갑진. 7월 11일 계축 임광의 계. 7월 14일 병진 마상재. 7월 15일 정사 비변사의 계. 7월 19일 신유 예조 계. 8월 8일 기묘 봉행 서계. 8월 10일 신사 국서 등.

앞서 보았듯이, 1636년의 통신사 임광 일행이 지참할 인조의 국서는 조선으로서는 처음으로 ‘봉서’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또 국서개작사건으로 야나가와(柳川)씨가 사라진 이후 대마번주 소(宗)씨가 독자적으로 교섭을 추진하는 만큼, 문서의 서식이나 외교 칭호는 물론 그밖의 문언 등에도 요구가 많았다. 이에 4월 대마번 차왜(藤智繩)가 나올 때 대마번 가로급 번사(平成春, 島川式部)도 함께 왜관에 체류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결정을 하였다. 예를 들면 인조 국서에 수신자로서 도쿠가와 쇼군을 ‘대군’으로 지칭해달라는 것은 이미 강정교섭에서 정해졌지만, 국서의 내용에서도 ‘대군’을 ‘귀국’(일본)보다 2글자 높게 ‘대두’해서 써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또 9월쯤 작성된 초안의 열람을 요청한 평성춘은 ‘쇼군’에 대한 표현이 ‘賢君’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일본에서는 ‘賢’이 교묘하다는 뜻으로 쓰이므로 ‘丕承先緒’로 고쳐서 써 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던가, ‘弊邦이하 16자’를 삭제할 요구하였다.¹⁰⁰⁾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 다음의 인조 국서이다.

朝鮮國王李倧 奉書

日本國大君 殿下

信音間闊, 星口回環, 每徼風儀, 徒勤景仰, 比因馬州行李往來, 竊聞比承先緒, 克恢先烈, 疆域靜謐民生阜樂, 泰寧之福悠久可期, 無任慶喜之至, 茲遣使价兼候起居, 不腆土品聯以修敬, 所願益敦世睦, 寄承天保, 幸甚多少, 不宣

崇禎九年八月十一日

朝鮮國王李倧¹⁰¹⁾

수신자로서 쇼군의 외교칭호는 ‘大君’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을 보면, ‘大君’이라는 구체적인 지칭이 없이, “대마도 사자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쇼군이) 선대의 대를 이어 강역이 안정되고 만민이 편안하고 태평하니 사자를 보내 축하한다는 뜻과 안부를 묻는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조선은 대마번 차왜가 ‘대군’을 ‘귀국’보다도 높이 대두해서 써달라는 요청 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다.

100) 『邊例集要』 권8 信使 병자(1636년) 8~9월.

『増正交隣志』 권5 信行各年例.

101) 『通航一覽』 권94, 朝鮮國部 70, 兩國書儀并信使御暇等 寛永度.

그리고 국서의 내용을 보면 상대국의 평안과 문안만을 묻고 있을 뿐, 당시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서개작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다. 통신사 임광은 사행에 앞서 인조를 면대한 자리에서 일본 체류중에 국서개작사건과 관련된 문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언동에 대한 지침을 요청한 바 있다. 통신사가 출발하기 직전 조선이 이 사건에 대해 통신사 일행에게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기록 부족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조선은 문위역관 홍희남이나 대마번 사자를 통해 국서개작사건의 전말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막부의 조치가 조일관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던 바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에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것은, 막부내에 아직 야나가와(柳川)씨의 인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은 채 태평의 기원과 안부를 묻는 무난한 문장으로 마무리했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1636년 인조의 국서는 임란 직후 ‘회답검쇄환사’들이 지참해간 국서보다는 교린의 취지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1607년 선조의 국서는 임란 직후 도쿠가와 막부의 요청으로 국교를 재개함에 있어서 조선측의 외교적 명분 피력(선위치서에 대한 회답, 범릉적박송 충족)에 중점을 둔 측면이 있었다. 또 1617년 광해군의 국서에서는 오사카 평정(大坂의 역) 축하를 위한 사자 파견이 명(‘天朝’)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일본과의 수교가 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시사함으로써 조일관계가 한시적일 수도 있음을 암시한 측면이 있었다. 위의 두 국서가 조선의 사자 파견 배경으로 대내외적인 명분을 부각시킨 것에 비한다면, 1636년의 인조 국서에서는 통신사 파견과 관련된 명분 추구는 보이지 않으며, 일본(도쿠가와 막부)에 대해 교린 우호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해 통신사 일행이 에도성에서 ‘전명의’(傳命儀)를 치른 후 직접 받아 온 이에미즈의 답서는 다음과 같다.

日本國源家光 奉復

朝鮮國王 殿下

聘价遠馳, 禮意益敬, 見書就慶我治平, 贈其物產, 依數領之, 懇款深切, 慰悅殊深, 爰聽義成調興相訟, 則有偽造書印者, 革正糾察焉, 貴國早聞知, 而今改往自新, 至此誠可也, 交道有義, 不渝舊約, 則彼此好也, 有小信物附使价還, 宜如別幅檢領, 餘冀亮察, 不宣.

寬永十三年十二月二十七日 日本國源家光¹⁰²⁾

이에미즈의 답서의 특징으로는 “義成·調興相訟”과 같이 국서개작사건을 구체적으로 언

급하면서 과거 국서와 인장을 위조했던 것을 인정하는 한편, 이를 바로 잡아 일본의 대조선 통교에 변경사항이 생긴 것, 우호 유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¹⁰³⁾ 국서개작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마번 차원에서 조선(예조)에 보고(1635년 12월)가 있었다. 그러나 이에미츠의 국서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식 보고로 교린관계의 계속에 대한 확인의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⁰⁴⁾

물론 이에미츠의 답서를 문서형식으로 본다면 발신인의 명의를 ‘日本國源家光’로 되어 있어, 조선측에는 ‘대군’호를 요구했으면서도 스스로 ‘대군’호를 스스로 명기하지는 않았다. 또 연기(年紀) 부분도 과거 일본측 국서에 ‘龍集干支’를 기재했던 것과 달리 ‘寬永’이라는 일본 연호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통신사 임광 일행은 에도 체류 중 쇼군의 답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은 일본측의 사정을 납득하여 개찬에 이르지 않았다.¹⁰⁵⁾

즉 1636년 조선의 통신사 파견에서는 조선측이 명분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중앙정권으로부터 국서개작사건에 대한 해명과 교린우호의 계속 유지라는 교린관계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남변의 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5. 맺음말

조선이 ‘통신사’라는 명칭으로 일본에 사절을 파견했던 1636(인조 14)년은 ‘칭황제’ 등, 교린문서식에 어긋난 후금의 외교문서를 조선이 2번이나 퇴각함으로써 후금과는 사실상 외교관계가 파탄이 났다. 언제 후금이 공격해 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전쟁 직전의 상황

102) 『通航一覽』 권94, 朝鮮國部 70, 兩國書儀并信使御暇等 寬永度.

103) 『同文彙考』附編 권8, <通信 1> 日本執政答禮書參判書(寬永 14년 정축월일).

104) 仲尾宏, 『朝鮮通信使と徳川幕府』(明石書店、1997) 118쪽.

105) 막부 쇼군의 외교칭호 ‘대군’에 대해서는 1711년 막부측(新井白石)의 빙례개혁에 따라 ‘국왕’으로 일시 변경된 적이 있었으나 1719년 요시무네(徳川吉宗)의 쇼군 습직을 위한 통신사 파견시 다시 ‘대군’으로 환원되었다. 1636년 이후 쇼군의 외교칭호가 일본 국왕은 아니었지만 조선이 ‘대군’을 일본의 중앙정권을 대표하는 수장의 칭호로 받아들임에 따라, 서로가 발신인과 수신인이 되어 교린문서를 주고받는(왕복) 외교시스템은 통신사가 단절되는 19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으로 인조대에는 병사와 군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정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명으로부터는 후금의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및 무기 구입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야기되어 남변의 방어에 군사안보 비용을 새로 투입할 경우 재정은 물론 왕권의 유지도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조선은 북쪽의 전쟁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1636년 통신사 파견을 결정한으로써 우호 유지라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 배경으로는 도쿠가와 막부 정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다. 국서개작사건(1631~1635)에 대한 도쿠가와(德川) 막부의 판결로 대마번주 소(宗)씨는 온존되었지만 막부의 지시로 1635년 세견선 파견이 중지되자 조선에는 1635년 12월까지 일본에 대한 정보의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정보의 공백은 도쿠가와 막부의 병력 동원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졌으나, 국왕 인조와 신료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로부터 이에미츠(家光)에 이르기까지 도쿠가와 막부의 정치적 안정을 다이묘의 군사력 억제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식하여 조선에 대한 병력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럴 경우 남쪽 변경의 방어에 새로운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었으며, 최종적으로 일본의 통신사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시의 국정운영으로 볼 때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여 우호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란 후금 및 명과의 외교관계 유지에 소요되는 외교안보 비용과 비교할 경우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저렴하여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1636년 조선의 통신사 파견 결정을 당시 신료들은 ‘權時之策’(변통, 임기응변)이라 칭하였으나, 사실은 조선이 도쿠가와 막부 정권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내린 정책적 판단으로 전쟁직후 ‘회담검쇄환사’ 때의 명분 중시보다는 실리를 추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1636년의 통신사 파견을 통해서 본 당시의 대일본전략이란 구체적으로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조선→대마도주 소(宗)씨→도쿠가와 막부’라는 교섭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는 국서개작사건 이후 ‘이정암 윤번승제’의 실시를 계기로 대조선의 교에 있어서 도쿠가와 막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은 국서개작사건에 대한 막부의 조치로 만약의 경우 대마번주 교체까지도 상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서개작사건 이후 대마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가 온존된 이상, 도쿠가와 막부가 그의 대조선 교섭력을 시험하기 위해 조선에 통신사 파견 요청을 지시한 것이라면, 대마번주의 외교력을 막부에 각인시키는 것이 조선으로서는 조일관

계의 안정은 물론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였다. 따라서 1636년 통신사 파견을 위한 구체적인 강정교섭에서도 대마번주 소 요시나리 입장을 고려하여 거의 대부분 대마번의 요구를 수용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의 에도(江戸) 체류 시 쇼군 이에미즈(家光)가 소 요시나리를 통해 강정 내용에도 없던 ‘닛코산(日光山) 유람’을 요청해 왔을 때 정사 임광이 이를 수락했던 것도, 막부 내에 야나가와(柳川)씨의 인맥이 잔존하는 가운데 쇼군에게 소 요시나리의 교섭력을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통신사의 ‘닛코산(日光山)유람’ 이후 도쿠가와와 쇼군의 답서에서도 국서개작사건에 대한 정중한 보고 및 선린우호 계속 유지에 대한 의사가 표현되는 등, 조선이 의도한 대로 조일관계의 안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일본과의 우호유지란 남변의 군사안보를 위해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었던 셈으로, ‘조선→대마도주 소(宗)씨→도쿠가와 막부’ 루트 유지 전략은 향후 대일본 관계에 있어서도 기본 방향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마번주 소(宗)씨라면 조선이 통제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조선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대마번주 소(宗)씨를 통해 조일간의 우호관계를 유지 내지 관리하려 했다고 생각된다. 17세기말 ‘안용복 사건’으로 조선정부의 대응이 공세적인 때도 있었지만, 이러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19세기말 메이지 신정권의 수립 이후 조일통교체제의 재편 때까지 유지되었다고 본다.¹⁰⁶⁾

106) 현명철, 「기유약조체제의 붕괴과정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54(2016).

이훈 선생님의 「인조대의 국정운영과 1636년의 통신사 외교」에 대한 토론문

신동규 (동아대학교)

이훈 선생님의 발표는 1636년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를 명칭교체기라는 동아시아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고찰한 것으로 특히, 조선의 국가 존립이라는 측면에서 통신사 외교로 대일본 관계를 검토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636년 통신사 파견이 ‘權時之策’에 의한 외교대응이라는 것을 국제관계에서 파악하신 점과 더불어 서론에서 그간의 통신사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관련 연구자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신사 관련 연구에 일천한 저로서는 선생님께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싶은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1636년 일본의 통신사 파견 요청에 ‘柳川一件’이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또 선생님께서도 1611년 비변사의 신응창의 진술 내용과 1631년 경삼감사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조정에서는 소씨와 야나가와씨의 갈등 내지는 불화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조정은 대일외교 대응에 이들의 불화를 이용했을 것도 같은데,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조선후기의 전통적 대일외교의 기본 노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1635년 11월에는 대신들과 비변사의 당상관을 소집하여 왜정에 대한 방비 문제를 논의하였을 때, 조정에서는 아직도 일본의 조선침략(병력동원)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종결 후 3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또 이미 3차례의 회담겸쇄환사를 파견해 일본의 사정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조선의 전통적 대일외교의 기본 노선이 말 그대로의 교린이 아니라, 침략을 막기 위한

피상적 교린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조선의 대일외교의 기본 노선에 대해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조정에서 강구한 ‘권시지책’, 또는 ‘변통’이란 구체적으로는 통신사 파견을 통해 ‘조선→대마번주 소(宗)씨→막부’로 이어지는 기존의 교섭라인 안착을 통해 조일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만, 막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柳川一件’의 해결을 통해 쓰시마번의 독점적인 대조선외교 장악을 일정 부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갈등 요소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모순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과 이에 대해 사례가 있다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조선의 기본 외교노선이라는 측면에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후금과 일본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 어떤 측면에서는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또는 막대한 비용감수를 통한 평화유지(조선의 존립 유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6발표

강화도 조약과 제1차 수신사

발표 : 현명철 (경동고등학교) / 토론 : 양흥숙 (부산대학교)

- I. 머리말
- II. 수신사의 성격과 파견 과정
- III. 수신사행의 활동
- IV. 맺음말

I. 머리말

수신사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다.¹⁾ 그 중 대부분은 수신사행의 기록류를 분석한 논문이며 사상사적 접근이 많다. 그런데 수신사행의 평가를 둘러싼 포괄적 연구는 있어도 수신사 사행 그 자체를 이해하려는 미시적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전통적 사대교린에서 근대적 외교 관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신사가 갖는 의미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수신사가 강화도 조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자신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는지, 일본 내 각 방문지에서의 문답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일본의 접대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발표의 과제이다.

기존의 연구는 강화도 조약을 개국조약으로 수신사를 개국에 따른 건문 사절로 이해해 왔다.²⁾ 그러나 조선의 입장에서 강화도 조약은 중수구교의 조약이었고 개국이나 문명개화를 의도한 조약은 아니었다. 또한 수신사는 중수구교를 확인하기 위해 파견된 사절이었고 근대문물에 대한 건문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이 점을 본 논문에서는 강조하게 될 것이다.

조선 후기 260여 년간 이어져 오던 조선과 일본의 관계 즉 기유약조 체제는 1869년 막부의 멸망과 1871년 폐번치현으로 파행적으로 유지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1872년 9월 하나부사가 왜관에 도착하여 세건선의 폐기와 대관소 폐지, 표류민 송환에서 영래서계의 폐지를 선언함으로 기유약조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³⁾ 그 후 동래부와 일본 외무

-
- 1) 田保橋潔, 「丙子修信使の差送」(『近代日鮮關係の 研究』 1940, 김종학 옮김, 일조각, 2013, 528~545쪽)
 조항래, 「丙子修信使 金綺秀 使行考」(『대구사학』 1집, 1969년)
 하우봉, 「개항기 修信使行에 관한 一研究」(『한일관계사연구』 10집, 한일관계사학회, 1999년 139~167쪽)
 한철호, 「제1차 수신사(1876) 김기수의 건문 활동과 그 의의」(『韓國思想史學』 27집, 한국사상사학회, 2006년, 283~315쪽)
 鈴木文, 「第一次朝鮮修信使來日時にみる日本人の朝鮮認識と自己認識」(『朝鮮史研究會論文集』 45집, 朝鮮史研究會, 2007년, 63~90쪽)
 정훈식, 「사행록의 역사적 전개와 『일동기유』」(『열상고전연구』 26집, 열상고전연구회, 2007, 255~285쪽)
 박단, 「일본 수신사의 사행록 연구」강원대 박사학위논문. 2009년
 이효정, 『朝鮮修信使の來日記録研究』, 2015년, 국제기독교대학 박사학위논문.
- 2) 한 예로 한철호는 제1차 수신사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외교 사절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철호, 전개 논문) 하지만 근대적 외교 사절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 할 것이다.
- 3) 졸고, 「기유약조 체제의 붕괴 과정에 대하여」(『한일관계사연구』 54, 2016년)

성 사이에서는 조약이 없는 상황에서 팽팽한 신경전과 탐색전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 와중에도 표류민이 송환되었고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물밑 교섭은 계속되었으나, 전쟁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러한 위기는 새로운 조약 즉 강화도 조약을 맺음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얻었다. 이 조약을 완성하기 위해 파견된 사절이 수신사였다.

수신사가 지참한 예조판서의 서한에

...갑자기 어떤 사정으로 피차간에 서로 의심하게 되었으나...지난번에 귀국 대신이 바다를 건너 ...답판한 지 며칠 만에 자세히 판명되어 여러 해 동안 쌓인 것이 하루아침에 풀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쾌활하며 기쁜 일인지요.⁴⁾

라고 그동안의 의심이 풀린 일로 만족을 표현하고 있다. 메이지 일본에 의해 갑자기 등장한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명호의 문제, 즉 조선을 하위의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강력한 의도가 몇 년 사이에 아주 사소한 문제로 둔갑하면서 메이지 전권사절 구로다가 왔을 때에는 오로지 우호만이 중요한 일로 바뀌었던 것이다.⁵⁾ 그러므로 조선에서 강화도 조약은 ‘중수구교’의 의미를 갖는 조약으로 인식되었을 뿐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씻어준 조약이 되었던 것이다.

역시 수신사가 지참한 예조참판의 서한에도

...바다가 사이에 막혀 멀리 떨어져 있으며 傳聞된 말이 그릇되기가 쉬우므로 두 나라가 서로 의심하여 이것이 벌써 여러 해 되었으니 인교의 구의를 생각할 적마다 개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귀국 대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본방의 대신과 명백히 담판하여 다시는 장애될 일이 없게 되었으니 마치 비바람이 지나간 난초 밭에 꽃향기만 여전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구의를 두텁게 하고 영구적인 우호를 계속한다면 기쁨이 한량없겠습니다.⁶⁾

4) 『주석 일동기유 4권』(부산대학교 한일문화연구소 간행, 1962년) 文事, 213쪽.

이하 『일동기유』는 이 책을 지칭한다.

5) 현명철, 「한·일 역사 갈등의 뿌리를 찾아서」(『한일관계사연구40』 2011년 3.국제법의 수용과 한일관계사의 왜곡, 186~191쪽)참고.

6) 『일동기유 4권』(전게서) 文事, 214쪽.

라고 하여 두 나라 사이의 의심은 대마주와 동래부에서 잘못 전달된 말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서한의 내용을 보면 강화도 조약은 지난 260여년간의 우호를 다시 확인하는 조약이었다. 즉 막부시절의 좋은 관계를 메이지 정부에서도 유지하자는 뜻이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본고의 제Ⅱ장에서는 수신사의 성격과 파견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 정부는 어떤 협의와 과정을 통해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수신사를 파견하였을까. 그리고 수신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본으로 향하였을까. 이는 강화도 조약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전통적 사대교린의 외교가 근대적 외교로 이행하는 첫 걸음으로서의 수신사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제Ⅲ장에서는 수신사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복원함으로써 수신사의 성격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일정은 어떻게 편성되었고 각 방문지에서는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일본의 접대에 수신사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수신사는 전통적 사대교린의 틀 안에 자신을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Ⅱ. 수신사 파견 과정과 성격

1) 한일 양국의 기본 합의

1876년 2월26일(음력 2월2)7) 미야모토 코이치[宮本小一]가 통사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를 통해 어영대장 신헌에게

저희가 여기 와서 며칠간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깊은 은택에 모두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땀과 솟, 방세, 샴 등으로 끼친 허다한 폐는 값을 치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촉하셔서 혹시라도 거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만약 그 값을 치르지 않고 조정에 돌아간다면 반드시 논책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귀 대신께

7) 본 논문에서 일자는 양력을 사용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음력은 ()에 삽입한다. 단, 사료는 음력이다.

서는 이 일을 깊이 양해하시어 절대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⁸⁾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외교 관계는 서로 폐를 끼치지 않는 것임을 언급하였다. 이는 조선 조정으로서도 상당한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막부 말기의 막부 사절 파견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나 메이지 일본의 국사 파견에 난색을 표시하였던 이유가 실은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일본이 국사를 파견하게 되면 통신사와 같은 대우를 해줘야한다는 대마주의 주장에 조선의 외교 라인이 힘들어 하였던 것이 1867년, 1870년 두 차례나 있었음을 상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온 일본의 사절들은 강화도에 잠깐 체류⁹⁾한 비용도 지불하겠다고 나섰다. 신헌은 폐를 보답하는 길은 우호를 유지하도록 서로 노력하는 일이라고 덕담하면서 물리쳤다.

뒤이어 2월28(2월4)일에는 전권 구로다 기요다카[黒田清隆]가 찾아와 신헌에게 말하기를

교린을 하는 방법은 풍속을 상세히 살핀 후에야 의심을 타파할 수 있는 법입니다. 6개월 후에 공무(수호조규 부록의 협상)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리를 이해하는 자를 보내어 우리나라의 물정을 살핀다면 ...세부 항목을 다룰 때에 다룰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아카마세키[赤間關]의 화륜선을 빌려 타면 6-7일에 도쿄[東京]에 도착할 수 있으며, 예폐를 마련하고 식량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폐단도 없을 것입니다.¹⁰⁾

라고 사절의 파견을 제안하였다. 같은 날 미야모토도 같은 제안을 하여 신헌은 아까 귀국 대신에게 들은 말이며 사절 파견에 대해 자신은 조정에 아뢰기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위와 같이 왕래가 편리하고 신속해 지고 비용이 절감된다면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사절 파견 명령이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사실은 3월1(2월6)일 신헌이 국왕에게 보고하는 중에도 나타난다.

8) 신헌, 『심행일기』(김종학 옮김, 푸른역사, 2010년) 272~273쪽. (단, 김종학씨는 미야모토 오카즈로 표현하였는데 미야모토 코이치가 일반적이므로 고쳐 쓴다.)

9) 첫 회담은 2월10(正月16)일이고 조약이 비준된 것은 2월 25(2월 1)일이다. 그들이 강화부에 입성한 것이 2월 9일이었으므로 머무른 것은 17일 정도였다.

10) 신헌, 『심행일기』, 전개서, 282~283쪽.

상 : 이제부터는 국서를 없애는가.

대관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의정부와 저들의 태정부, 그리고 우리 예조와 외무성이 상호 왕복하기로 굳게 약정했습니다.

상 : 또 아뢴 말이 있는가.

대관 : 6개월 안에 사신을 보내어 회사하고 풍속을 채탐하며 다른 한편으로 유람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아카마세키의 화륜선을 빌려 타면 아카마세키에서 도쿄까지는 7-8일 내에 도착할 수 있으니 별반 노고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상 : 통신사를 보내는 것인가.

대관 : 품질의 상례에 구애받지 말고 단지 사리를 이해하는 사람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피차 사행에 예폐를 모두 없애고, 저 나라에 가면 방세를 지급하고 체류하고 식대를 지불하면서 밥을 먹게 되니 이것이 통신사와 다른 점입니다.¹¹⁾

라고 하였다.

위 보고의 내용에서 통신사와는 다른 점차 근대적 외교 사행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찾을 수 있다. 밑줄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의정부와 일본의 태정부가 그리고 우리 예조와 일본 외무성이 동등한 예로 서한을 왕복시킨다는 것,¹²⁾ 출발부터 화륜선을 임대하는 것, 숙박과 음식의 비용은 전부 자체 부담을 한다는 것으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합의 하에 260여 년 간 유지되었던 도쿠가와 막부와와의 좋은 관계를 메이지 정부에서도 유지하자는 합의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2) 수신사 사절의 성격

조선 정부는 3월18(2월22)일 홍문관 응교 김기수를 통정대부로 진급시키고 예조참의를 겸임시켜서 수신사로 임명하였다.¹³⁾ 조약 체결 후 20일 만의 일이며 담당자인 신현의 복명 보고를 받고 17일 만의 일이다. 이렇게 신속하게 수신사를 파견하게 된 이유는 무엇

11) 신현, 『심행일기』, 전거서, 308~309쪽.

12) 이는 1870년 왜관에서 훈도 안동준과 통사 우라세 사이스케 사이에 합의를 이루어 대마도주 종의달이 외무대승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그 의례관계가 정착된다고 할 수 있다.

현명철, 「기유약조체제의 붕괴과정에 대하여」(『한일관계사연구 54집』 2016년) III-3 참고.

13) 『고종실록』 개국 485년 2월 22일.

보다 강화도조약에 대한 만족감 때문이라 생각된다. 당시는 강화도 조약에 대해 불평등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구로다의 파견을 ‘오로지 우호를 맺기 위한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강화도 조약의 담당자로 국외 사정에 밝았던 강위도

한 가지 괴이한 것은 저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통상한 후에 무슨 이득이 있어서 수고와 비용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거창한 일을 시행했는가라는 점이다. 이제 이미 서로가 영구히 우의를 돈독히 하기로 약속하였으니 명호를 따지기 위해 침범한 일은 아니었고, 또 각국의 호시에 이미 완성된 규칙이 있으니 상세에 편중된 뜻도 아닐 터이다.¹⁴⁾

라고 일본이 크게 득을 본 것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로서도 명호(명분)에 있어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손해를 보지 않은 조약이라는 인식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신사를 파견하는 정부의 인식은 주목된다. 즉,

지난번에 일본 사신의 배가 온 것은 전적으로 우호를 맺기 위한 것이었으니 선린(善隣)하려는 우리의 뜻에서도 마땅히 이제 전권 사신(全權使臣)을 파견하여 신의를 강조해야 하겠습니까. 사신의 칭호는 수신사(修信使)라고 할 것이며 응교(應敎) 김기수(金綺秀)를 특별히 가자(加資)하여 차하(差下)하되 따라가는 인원은 일에 밝은 사람으로 적당히 선택하여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호를 맺은 뒤 처음 있는 일이니 이번에는 특별히 당상(堂上)이 서계(書契)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서계를 종전대로 동래부(東萊府)에 내려 보내어 강호(江戶)에 전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¹⁵⁾

라는 부분은 주목된다. 조선 정부는 메이지 일본 사절의 파견을 전적으로 우호를 맺기 위한 것이었다고 믿고 있으며, 수신사의 파견은 여기에 화답하여 신의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만 사절을 파견하고 앞으로는 동래부에서 왜관을 통해 서계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은 동상이몽에 가까운 인식¹⁶⁾이지만, 강화도

14) 강위, 「심행잡기」(신현 『심행일기』, 김종학 옮김, 전게서) 부록, 330쪽.

여기서 명호를 따진다는 것은 '천황'이나 '칙' 외교 명분상의 기존의 갈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서계의 명호를 분변하는 것보다 막중한 일이 없는데 저들이 이미 폐기하였고, 하남을 들이는 것(세 건선)보다 막대한 이익이 없는데 저들이 이미 혁파했으니"(동, 332쪽) 라고 하여 일본에 의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의혹을 풀도록 권유하였다.

15) (『고종실록』 개국 485년 2월22일)

조약을 중수구교의 조약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3) 수신사 김기수의 마음가짐

그렇다면, 당사자인 수신사 김기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일본으로 향하였던 것일까. 수신사는 출발에 앞서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중에는 전 영의정 박규수가 있었다. 그는 글을 보내어 “내가 나이만 공연히 이처럼 되어서 壯行을 드디어 자네에게 양보하게 된 것이 유감스럽다”¹⁷⁾고 하며 새로운 문물에 대한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혹자는 “일본도 자립한 나라이며 힘이 부족하여 서양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조선과 중국이 합하여 서양을 방어할 계획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실을 타진하고 친교를 맺어야 한다.”라고도 하였으니, 이들은 일본과 친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혹자는 “왜는 서양의 앞잡이이며 ...조선의 물산을 크게 욕심내는 자들이며 겉과 속이 다르니 조심하라”고 하여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또한 혹자는 “일본에서 유람을 일삼지 말라 우리가 유람하면 그들도 여기에 와서 유람을 할 것이다.”라고도 하였으니, 이들은 일본을 믿을 수 없는 대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강화도에서 회담이 있을 때부터 회담의 성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회담이 성립된 다음에도 회담의 성공을 축하하는 사람들과 위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회담의 성공을 축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리학적 위정척사의 사상에 철저한 사람들이 많았음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성리학적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일본을 서양의 방어막으로 간주하고자 하였던 것이었다.

「강대한 이웃나라 보기를 오랑캐로 여기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금수로 여기고 자신에게 금수를 제어할 힘도 없으면서 한갓 한 번 꾸짖음으로 당해내려는」사람들을 경계하고 「모든 잘못은 약함에 있다」고 설파하여 선린을 강조하는 사람들¹⁸⁾에 의해 강화도 조약이

16) 일본은 수도에 공사관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17) 『일동기유』, 전거서, 差遺, 참고로 박규수의 나이는 70이었고 다음해 사거한다.

맺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철호도 “수신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 조야의 반일적인 분위기를 이해”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타당한 지적이다.¹⁹⁾ 수신사의 마음가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5년 후, 조사시찰단이 조야의 격렬한 반대로 암행 어사로 위장하여 동래에 집결하였던 상황도 아울러 생각해야 한다.

또 혹자는 “말이 충신하고 행실이 篤敬하면 오랑캐의 나라에 가더라도 일이 잘 이루어 질 것이니 행동에 조심하라”고 하였는데, 김기수는 이 마지막 ‘忠信言과 篤敬行’을 권유한 사람에게 절을 하였다.²⁰⁾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다. 수신사 김기수는

수신이란 것은 舊好를 講修하고 신의를 敦申하고 辭命을 서로 통하고 위신으로써 일을 이루어 과격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며 자기의 태도 가지기를 장중 근신하여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 거의 그 적당할 것으로다.²¹⁾

라고 하였다. 수신사 김기수의 마음가짐은 舊好를 유지하고 조선의 국체를 보존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일본에 가게 되자 전송 나온 사람들이 제각기 한말씩 일러 주는데 ...“이번 그대의 행차는 전번 다른 사람의 행차보다 정세가 달라져 있으니 일언일동 일유일람이 대경대법에 벗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권도에 어긋나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대는 수레 탄 사람처럼 앞을 단단히 잡고 뒤로 기대서 굳이 도리에 벗어나는 점이 없는 한 아직은 그들의 호감을 사서 두어야지 만약 정색하고 편잔을 준다거나 매몰스럽게 돌아서서는 안 된다. ...또한 저들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 해도 우리 편에서 먼저 서둘러는 말아야 한다.” 나는 그 말에 심히 감복하여 자고 쉬고 할 때면 항상 마음으로 되새겼다.²²⁾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며 국체를 흔드는 일은 그가 원치 않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개화문물의 탐색은 그렇게 절실한 과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만일 일본인들이

18) 강위, 「심행잡기」, 전게서, 부록, 334쪽.

19) 한철호 전계논문, 290쪽.

20) 『일동기유』, 전게서, 商略

21) 『일동기유』, 전게서, 商略

22) 『일동기유 권4』, 전게서, 文事, 236~237쪽

권한다면 굳이 거절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렇다고 먼저 보려고 하지는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김기수의 마음가짐은 그의 사행을 통하여 잘 드러난다. 후술하겠지만 일본의 거둬들인 문물 시찰 요청을 아주 소극적으로 행하고 수행원들에게 통행패(목패)를 나누어 주지 않았던 모습, 배에 타고 있었던 서양 기사를 하선시킨 일화, 서구 문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전기에 대한 대화 내용, 그리고 개항에 부정적인 복명보고 등을 통해 변화에 대한 저항감과 두려움이 간절하게 다가온다.²³⁾

이처럼 수신사는 개국에 따른 견문사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인물이 아니지만, 에도막부와의 오랜 우호 관계를 메이지 일본과 다시 맺는 사절로서는 최적의 인선이었다. 그는 당시 박규수와 신현의 추천을 받았으며, 또한 보수적인 유생들과도 좋은 교유를 맺고 있었다. 양 극단에서 거부감을 받지 않는 가장 적합한 인선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수신사 스스로도 문물의 정탐에는 스스로도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문물의 정탐에 조심스러웠다. 『일동기유』 후기에도

동지인 친구가 노고를 위로해 말하기를 「...이것을 이른 바 정탐이라고 하는데 그대는 이 점에서 얻은 것이 있습니까」하거늘 나는 대답하기를 「남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은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나는 남이 하는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자 하면 나는 진실로 남을 정탐하지도 못하면서 남만 장차 나의 허실을 정탐하게 될 것이니, 다만 나의 응대를 조리있게 하고 나의 위의를 존엄하게 하여 차라리 나는 남을 정탐하지 못할지라도 남이 나를 정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나는 감히 정탐을 일삼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²⁴⁾

라고 기술하고 있다. 진실성이 느껴진다.

수신사 김기수는 자신의 사명을 ‘...이번 사행은 왕명으로 양국의 우호를 닦는 것’²⁵⁾이

23) 여기에 대하여 하우봉은 「개항기 수신사행에 관한 一研究」 전계논문, 153쪽에서 제1차 수신사의 성과를 정리해 보면, “회례와 수신이라는 임무는 이상 없이 수행하였다. 일본 천왕을 접견할 때에도 의례면에 신경을 써서 조선 국왕에게 하는 방식 그대로 하겠다고 주장하여 관철시켰고, 조선국왕의 수호 의사를 잘 전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실정 탐색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고종의 간곡한 지시와는 달리 김기수는 일본의 국정 탐색을 그리 절실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 ...개화문물의 탐색에는 부적절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하였다.

24) 『일동기유』 전계서, 후기, 279쪽.

25) 『일동기유2권』, 전계서, 玩賞.

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강화도조약을 전통적인 교린관계의 회복(중수구교)으로 간주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사절이라는 마음가짐을 보여준다.

4) 출발 준비 과정

사절의 명칭을 수신사로 칭하고 통신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국서를 가지고 가지 않고, 의례적인 면보다 실무적인 면을 중시한다는 양국 간의 합의에 합당하는 명칭을 찾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서계는 국서는 피하고 당분간 예조판서와 외무경 사이에 왕복하기로 했으며 서계식도 이미 대체로 협정되어 있었다. 예물 또한 공예단은 그만두도록 협정이 되어 있었으나 강화 부에서 일본 사신과 증답을 보낸 전례에 따라서 수신사의 사예단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3월 20일, 의정부는 예조와 호조에 명하여 사절의 예단과 노자를 준비하게 하였다.²⁶⁾ 3월27(3월1)일에는 수신사 파견에 대해 청나라에 알리도록 하였다.²⁷⁾

수신사 일행에 포함된 훈도 현석운은 먼저 동래로 내려와 4월10(3월16)일 일본 공관 장대리 야마노조 스케나가[山之城祐長]와 회담하여 동래부사 홍우창의 명으로 기선 차용을 의뢰하고 수신사 일행의 명단을 알려 주었다.²⁸⁾ 이날 동래부사 서한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一, 외무경과 외무대승에게 보낼 예조판서의 서계와 예조참판의 서계를 가져갑니다.

一, 귀 조정에 전하여 화륜선 1척을 파견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5월13(4월20)일 부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26) 『승정원일기』 2월 24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수신사(修信使)는 지금 막 차출(差出)하였습니다. 일본에 증정할 물건과 예단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참작하여 준비하도록 하며, 사신 일행의 노자도 함께 마련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27) 『승정원일기』 3월 1일 승문원(承文院)에서 아뢰기를, “전에는 일본에 사신을 보낼 때 중국에 자문(咨文)을 보내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수신사(修信使)를 차임(差任)해 보내게 된 이유를 괴원(槐院)으로 하여금 자문을 만들어 만부(灣府)에 내려 보내어 봉성(鳳城)에 전해주고 다시 북경(北京)에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28) 미리 3월 28(3월3)일 별차 이준수가 야마노조와 면담하여 수신사를 보내기로 치정되었음을 알렸다. 『大日本外交文書』 第九卷, (日本國際聯合協會 發行)「事項三, 朝鮮國修信使來聘一件」, 188~209쪽.

- 一, 선척 임대 비용은 귀국의 청구에 따라 은자(銀子)로 계산할 것이니, 오는 화륜선 편에 그 비용을 알려 주십시오.
- 一, 선척을 임대한 후에 귀국의 선원이 형편상 함께 탑승할 수밖에 없으니, 이들을 감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 一, 귀국의 통역관 몇 사람을 함께 태워서 왕래하고자 합니다.
- 一, 수신사 일행이 머무를 곳과 노정(路程)을 화륜선 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 一, 일행의 식사는 우리가 준비할 것이나 혹시 부족한 물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²⁹⁾

이는 사행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동래부사의 서한을 받은 아마노조는 외무성 7등 서기생 오마 게이지[尾間啓次(治)]를 급히 귀국 상경시켜서 이를 보고하게 하였고, 4월22일, 데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 외무경은 태정대신 산조 사네도미[三條實美]에게 이를 보고하여 수신사의 방일은 일본 전체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4월26일에는 강화도에 왔었던 외무대승 미야모토가 구로다와 이노우에에게 접대 방침을 보고³⁰⁾하고 수신사 영접을 준비하였다.

수신사의 파견 보고를 받은 외무성은 즉시 내무성 역체료의 우편선이었던 고류마루[黃龍丸]를 차출하여 수신사가 탑승할 배로 정하고, 영접관으로 외무소록 미즈노 세이치[水野誠一], 감독관 역체 권대숙 고스기마사미[小杉雅三], 통역관으로 나카노교타로[中野許太郎], 군의관 시마다 슈카이[島田修海]에게 합류를 명하였다.

한편, 4월27(4월4)일, 수신사 김기수는 국왕을 알현하여 출발에 앞서 인사를 하였다.³¹⁾

Ⅲ. 수신사의 활동

그러면 <표 1-수신사 연표>³²⁾를 참고로 날짜순으로 수신사 일행의 일정을 검토해 보자.

29) 『大日本外交文書』 전게서, 190쪽, 「大朝鮮國 東萊府使 洪祐昌 條陳」.

30) 『大日本外交文書』 전게서, 192쪽, 「朝鮮國修信使迎接に關し条陳ノ件」.

31) 『승정원일기』 1876년 4월4일 미시(未時).

〈표 1〉 수신사 년표

일자	내 용
2월26(2.2)	미야모토 체류비용 지불 건의
2월28(2.4)	구로다, 신사 파견을 제의, 미야모토 등 제안.
3월1(2.6)	신헌 국왕에 복명보고
3월18(2.22)	수신사 임명
3월20(2.24)	예조에 선물과 예단 및 노자를 준비하도록 지시
3월26(2.30)	사역원에서 이용숙과 현석운을 수신사에 포함.
3월27(3.1)	중국에 자문을 보내도록 함
3월28(3.2)	별차 李濬守, 야마노조에게 수신사 파견이 치정되었음을 우선 알림.
4월6, 7일	별차 이준수, 기선 차용을 의뢰함.
4월10(3.16)	훈도 현석운, 동래부사 홍우창의 명으로 기선 차용을 의뢰하고 수신사 일행의 상관 명단을 알려줌. 7등 서기생 尾間이 상경하여 구진함. 4/20일 도착함
4월22(3.28)	테라시마 외무경, 산조 태정대신에게 조선이 수신사를 파견함을 급히 알림.
4월26(4.3)	미야모토 외무대승, 참의 구로다, 의관 井上에게 수신사 영접에 대해 진술.
4월27(4.4)	수신사 김기수, 대궐에서 辭陞함.
5월13(4.20)	黃龍丸, 부산항 입항.
5월14(4.21)	야마노조, 훈도 현석운에게 영접과 선내 규칙을 알림.
5월17(4.24)	훈도, 선장과 영접관에 酒肴를 접대. 답례로 紋紙 200장을 보냄.
5월19(4.26)	수신사, 부산에 도착.
5월20(4.27)	수신사, 영가대에서 海神祭를 지냄.
5월21(4.28)	동래부사 주최의 연회, (동래부사, 울산부사, 양산군수, 기장현감, 부산첨사, 다대첨사, 각 진의 변장 등) 훈도 현석운과 상관사 고영희, 黃龍丸을 답사하여 방을 배정하고 명패를 붙임.
5월19-22	수신사 일행의 화물을 적재(대소616상자) 자세한 물품은 掌務官의 사례책자에 자세하다고 되어 있다.
5월22(4.29)	수신사일행 76인 승선함. 인사함. 오후 4시 출발
5월23(5.1)	오전7시40분 시모노세키[下關]착. 상륙, 永福寺에 들어감. 야마구치현 순사 20명

32) 표는 『大日本外交文書』와 『일동기유』, 『창사기행』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이 출장하여 경비함. 원래 육상에서 숙박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일행 멀미로 체력 소모가 심하여 부탁을 함.
5월24(5.2)	오후 4시 출발. 시모노세키 체재 중 동래부사에 서한을 나가사키현령을 통해 야마노조에게 보냄.
5월25(5.3)	밤12시 고베 착
5월26(5.4)	오전 7시 30분 수신사 일행 상륙. 여관과 무역회사를 살펴봄. 고베 시민들이 수신사의 무사 도착을 축하하여 과일 바구니를 전달함. 만나 심문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효고현 대속 출두하여 수신사를 면알함. 답례로 현제순이 효고현청에 출두함. 낮에는 국기를 달고 밤에는 홍등을 달아 장관을 이룸. 오후 5시 승선
5월27(5.5)	오전 6시 고베 출발.
5월29(5.7)雨	오전 4시 요코하마 착. 8시 상륙, 회계소에 들어가 휴식, 10시 45분 기차로 동경으로 출발. 오후 1시30분 여관에 들어감. 외무권소승 古澤, 다음날 외무성을 방문하여 서계를 전해 줄 것을 요청.
5월30(5.8)	신사 외무성 禮房 : 예조판서 김상헌→ 寺島외무경 서한 전달. 예조참판 이인명→ 외무대승 서한 전달. 12시 귀관함. 천황에게 사예단 進獻을 외무경 이하에게 부탁함.
5월31(5.9)	외무경, 수신사에 천황 특별 알현을 통고함. 아카사카의 황거로 오도록 서한으로 신청함. 수신사, 받아들임을 서한으로 알림. 수신사 현제순, 궁내성에 헌상품을 전달함. 귀로에 박물관을 견학함.
6월1(5.10)	수신사, 천황 참내, 瀧見 이궁 御花苑을 견학, 오찬(모리야마가 대접), 오후 3시 경 귀관
6월2(5.11)	太神樂을 여관에서 연기함. 훈도, 종의달에 대해 질의함.
6월3(5.12)雨	신사 및 상상관 延遠館에서 오찬. (하선연으로 생각) 濱離宮을 拜見하고 미야모토와 함께 박물관을 관람하고 귀관. 수신사, 屬官을 보내어 각성 장관을 방문하게 함. 영국 선박이 구한 평안도 의주 표류민 이원춘을 수신사에 인계함. 수신사 감사의 뜻을 영국에 전해 주도록 부탁함.
6월4(5.13)	수신사, 屬官을 보내어 구로다와 이노우에를 방문하게 함. 귀로에 박물관 견학. 오후6시 手品師를 여관에 불러 공연함. 종의달과 이노우에 방문함.
6월5(5.14)	모리야마 견학을 종용. 신사 고사함. 결국 훈도 이하 18인을 지폐료, 우에노공원, 아사쿠사 본원사, 하나야시키, 자의전기기계 등을 순람.
6월6(5.15)	오전 8:30 신사일행 66인 출문, 히비야 연병소에서 보병, 기병, 포병의 훈련을 견학, 영국,이태리 양국 공사와 면접함. 외무성에서 오찬하고 돌아감.
6월7일(5.16)	오후1시, 수신사, 미야모토의 저택(長華園)을 방문하여 오후9시 귀관함.

6월8(5.17)雨	병학료에서 大砲空發 및 火矢, 해군성에서 水雷砲 발사를 지켜봄. 기타 병학교장 등을 견학함. 이노우에 초대에 응하여 이노우에 집으로 감. 9시40분 귀관함.
6월9일(5.18)	오전, 신사들에게 사진을 찍게 함. 설득하는 데에 힘들었음.
6월10일(5.19))	오전9시 초대를 받고 중의달의 深川별장으로 감. 오후 8시 귀관함.
6월11(5.20)	오후1시, 초대를 받고 외무권대승 모리야마의 집으로, 오후 8시 귀관.
6월12(5.21)	오전9시, 近衛병영에서 포병본창을 일람함. 오후에 해군성 병학료 및 제작소를 일람함. 이토히로부미 공부경 집에서 만찬을 베풀. 공부성 공학료에서 전선을 관람함. 오후8시 귀관.
6월13(5.22)	高澤, 수신사의 배가 입항하였음을 수신사에 알리고 귀국일자를 조정함. 수신사 김기수, 외무경에게 귀국일정이 확정되었음을 통고함. 외무경, 宮本 파견을 서한으로 수신사에게 전달함. 수신사, 접수하였고 전달할 것임을 서한으로 알림.
6월14(5.23)	오후4시, 수신사일행 문부성 방문, 서적관에 이르러 공자 목상을 배하고 강당에서 만찬. 여자사범학교 및 개성학교를 시찰함.
6월15(5.24)	延遼館에서 조찬(상선연으로 생각) 오전10시 원로원을 방문하여 의사당을 시찰 延遼館에서 중식. 마상타구를 일람하고 오후 7시 귀관함.
6월16(5.25)	서서관 박영선, 순천당에서 중두법을 배우고 돌아옴.
6월17(5.26)	오전10시, 외무성을 방문. 외무경과 외무대승(宮本, 森山)의 회답서계와 토산품을 받아옴. 외무경, 귀로에 오사카에서 조폐료를 일람하도록 권유함. 수신사 긍정의 답을 보냄.
6월18(5.27) 雨	오전 10:30, 수신사 출발, 정오 기차에 탑승, 오후 5시45분, 黃龍丸으로 출발. 6시45분 요코스카 입항.
6월19(5.28)	11시 훈도 상륙하여 天城, 迅鯨 2척의 제작을 실험함. 각 지역을 순시하여 귀함. 오후 5시15분 발묘함. 풍랑으로 회항하여 근처에 다시 정박함.
6월20(5.29)	다시 출항,
6월22(윤5.1)	고베착. 풍랑으로 지연되었음.
6월23(윤5.2)	이날 수신사 병으로 오사카 조폐소를 견학하지 못하겠다고 외무경에 편지를 보냄. 오전, 미국영사 방문, 영문편지 3통을 보내왔으나 수신사 이를 거절함. 오전10시15분, 상륙, 무역회사에서 휴식을 취함. 밤 12시 출발함.
6월25(윤5.4) 風雨	오전6시, 馬關에 도착. 상륙, 永福寺에서 휴식, 오찬, 오후 4시45분 拔錨, 風雨로 회항하여 정박함.

6월26(윤5.5)	오후4시45분, 嚴原작, 수신사일행 상륙, 西山寺(以酤菴) 에서 만찬, 숙박함. 종의달의 家扶가 방문함. 현석운 답례로 찾아가 회례함.
6월27(윤5.6)	오전 수신사 일행 종의달의 저택을 방문하여 宗義和의 만찬을 받고 오후 8시 귀선함.
6월28(윤5.7)	오전 7:30 부산포에 도착함. 수신사 일행 상륙, 大東館으로 사라짐. 수신사 외무경에 편지를 보내어 고베에서 보낸 편지가 도착하였는지를 물음. 수신사 5일간 동래부에 머무름. 귀경18일.
6월30(윤5.9)	黃龍丸, 부산항을 발묘함.

5월13일 수신사를 태울 기선이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5월14일, 공관장 대리 야마노조는 훈도 현석운에게 다음과 같은 영접 방침을 서신으로 보내왔다. 이 방침은 4월26일 미야모토 코이치가 참의 구로다와 의관 이노우에에게 보낸 계획안과 대동소이하다.

- 一. 화륜선 黃龍丸을 제공하며, 석탄 등 모든 비용은 일본 정부가 부담하니 수신사가 雇賃할 필요는 없습니다.
- 一. 외무소록 水野誠一와 7등 서기관 尾間啓次가 영접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 一. 통역으로 6등 서기생 荒川德滋, 中野許多郎 그 외 생도 11명을 동승시켜 통역과 접대를 맡게 합니다.
- 一. 숙소는 小川町 錦小路1번지로 정하고 숙소도를 첨부합니다.
- 一. 선내의 음식은 모두 외무성이 공급합니다. 이는 같은 부엌에서 취사를 하기 때문에 주인과 손님이 누가 부담해야 할 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一. 군의관 1명(시마다슈카이[島田修海])이 선내에 동승합니다.
- 一. 배가 馬關, 兵庫에 도착하였을 때 상륙하여 산보, 목욕 이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一. 요코하마에서는 기차로 동경으로 향할 것이며 외무관원이 영접할 것입니다.³³⁾

여기서 원래의 계획과는 다른 동양적 정서가 발현됨을 찾을 수 있다. 결국 기선의 임대, 선박 내에서의 식사 모두 일본 외무성이 제공하기로 되어, 결국 수신사는 기선 교류마루[黃龍丸]의 임대주가 아니라 손님이 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선 정부도 통신사의 전례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고 있으며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강하게 요구한 흔적도 없다.

훈도는 17일 선장과 영접관에게 酒肴를 보내어 수고를 위로하였고 영접관(미즈노)도

33) 『大日本外交文書』 전게서, 193~194쪽, 부속서1 「迎接條陳書」 및 『일동기유』, 전게서, 規則, 186~187쪽.

답례를 보내었다. 수신사 일행도 19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즉시 수신사 일행의 화물³⁴⁾이 적재되기 시작하였으며, 수신사는 20일 海神祭를 올리고 21일 동래수사 주최의 연회³⁵⁾를 받았다.

같은 날 5월21일 훈도 현석운과 고영희³⁶⁾는 배에 올라 방을 배정하고 명패를 붙였다.

1) 행로

5월22(4월29)일 수신사 일행 76인은 기선에 승선하여 영접관(水野誠一)과 선장(鳥谷保)과 인사를 나누고 오후 4시에 부산을 출항하였다. 수신사는 화륜선의 거대한 굴뚝에 압도된다.

나는 몸가짐을 진중히 하느라고 마음대로 구경하지도 못하였다.³⁷⁾

화륜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김기수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처음부터 얼마나 조심스럽게 처신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5월23(5월1)일 오전 7시에 기선은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였고 수신사 일행은 상륙하여 에이후쿠지[永福寺]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다. 이때 야마구치현에서 경찰 20명이 파견되어 숙소를 경비하였다. 원래 육상에서 숙박하지 않기로 합의되었으나 수신사 일행이 부탁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숙박하였다고 영접관은 보고³⁸⁾하고 있다. 그러나『일동기유』에는 자연스럽게 숙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때 일본인이 많이 몰려들어 서화(書畵)를 요구하여 팔뚝이 탈락할 정도였다’³⁹⁾라는 기술을 보면 야마구치현[山口縣]에서

34) 대소 616상자였다고 하며, 자세한 것은 掌務官(현제순)의 『사례책자』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는 장무관의 『사례책자』를 찾지 못하였다.

35) 경상좌수영 수군절도사를 ‘동래수사’로 표현하였다. 참석자는 동래부사, 울산부사, 양산군수, 기장현감, 부산첨사, 다대첨사, 그리고 각 진의 변장 등도 함께 하였다.

36) 고영희는 乾糧官으로 수신사행에 가담하였으며 역시 왜학 훈도였다.

37) 『일동기유』, 전게서, 乘船, 28~31쪽, 마음대로 구경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38) 『大日本外交文書』, 전게서, 「修信使迎船乗組水野小祿等ノ復命書」 195~197쪽.

39) 『일동기유』, 전게서, 정박, 34쪽.

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영향력이 있었던 아마구치현이 외무성에 압력을 넣어 부탁하고 영접관이 어쩔 수 없이 처리한 다음 수신사의 요청이라고 핑계를 댄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통신사의 예와 같은 서화의 요구에 수신사는 고무되었고 학문적 자존감을 회복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5월24(5월2)일 오후 4시에 수신사 일행은 시모노세키를 출항하여, 5월25(5월3)일 밤 12시에 기선은 고베[神戸]에 도착하고 배에서 밤을 보낸 다음날 아침 7시 30분, 수신사 일행은 상륙하여 무역회사를 방문하여 시찰하였다. 고베 시민들이 수신사의 무사 도착을 축하하여 과일바구니를 전달하고 효고현 관리가 수신사를 방문하였기에 답례로 현제순이 효고현청을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물론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시모노세키에서의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전해져 고베 역시 경쟁적으로 환영행사를 준비하였던 것 같다. 고베시에는 수신사의 방문을 환영하여 낮에는 국기를 달고 밤에는 홍등을 달아 장관을 이루었다고 한다.⁴⁰⁾ 수신사 일행은 오후 5시경 귀선하여 배에서 숙박을 하고 5월27(5월5)일 아침 6시에 고베를 출발하였다. 내해(内海)를 벗어나 태평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풍량이 험하여 일행이 배멀미로 고생하였다고 한다.

5월29(5월7)일, 오전 4시 수신사 일행은 요코하마[横浜]에 입항하였다. 8시에 상륙하여 회계소에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0시 45분 특별열차로 도쿄[東京]로 향하였다. 수신사는 열차에 대해 감상을 남기고 있다.⁴¹⁾ 수신사 일행은 12시 넘어 신바시[新橋]역에 도착하였으며 수신사는 가마, 상관 이상은 인력거, 중관 이하는 도보로 의장 기병의 호위를 받으며 1시 30분에 여관으로 들어갔다.

2) 도쿄 체제 기간의 활동

40) 『大日本外交文書』, 전게서, 「修信使迎船乗組水野小祿等ノ復命書」 195~197쪽.

“晝間は市中一般国旗を掲げ、夜は街頭に紅燈を張り壯觀をなせり。”

『일동기유』전게서, 碇泊에는

“시민이 과실 …을 주니 한 짐이나 되었다. 밤에 배에 돌아와서 유숙하니 …현령은 집집에 명령하여 등을 달게 하매 등잔 그림자가 수면에 떨어져 대낮과 같이 밝게 비쳤으니 나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 라고 감동을 억제하는 차가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41) 『일동기유』, 전게서, 완상, 62~64쪽.

영접관 외무소록 미즈노는 여기까지가 자신의 임무였으므로 수신사에게 인사를 하고 떠났으며 다음날 복명 보고를 하였다.⁴²⁾ 도쿄 체제 중의 접대는 외무권소승 후루사와 게이한[古澤經範]과 오키 기세이[奥義制]가 담당하게 되었다. 후루사와는 인사를 마치고 다음날 외무성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통역관은 작은 목패 4-50매를 전해 주면서 이 표찰이 있으면 곤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행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마음껏 견학을 하도록 설명하였다. 그러나 수신사 김기수는 정식 행사 이외에는 외출을 엄금하였다. 『일동기유』에

나는 그것을 받아 머리맡에 두었다가 관을 나오는 날(음력5월27)일에 돌려주니 먼지가 목패에 끼어 패면의 글씨를 분별할 수 없었다.⁴³⁾

고 자랑스럽게 회고하고 있다. 목패를 나누어 주어 수행원들이 밖에서 무역에 종사하거나 사건을 일으켜 국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미리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여관에서의 접대는 통역 나카노교타로와 이시다 나오유키가 접반관으로 종일 관에 머무르면서 접대에 임하였다.

5월30(5월8)일 후루사와와의 일정 조정에 따라 수신사 김기수는 외무성을 방문하였다. 참의겸 외무경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 외무대보 사메지마 나오노부[鯨島尚信] 외에 외무대승 미야모토 코이치, 권대승 모리야마 시게루, 권소승 후루사와 게이한등이 수신사를 맞이하였다. 인사를 나눈 후 수신사가 사명인 예조판서와 예조참판의 서한을 전달하였고 아울러 사예단⁴⁴⁾을 천황에게 진헌해 줄 것을 외무경에게 요청하였다. 이 때 김기수는

이 사람이 올 때에 다만 명령을 받들어 춘간(春間)에 귀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온 것에 회사하여 예전 신의를 수호할 뿐이므로 처음부터 국서는 없었으니 실로 귀국 황상을 배견할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와서 보니 우리의 정의(情誼)로 서운한 것이 있어서 변변치 못한 물건이나마 조그만 성의를

42) 『大日本外交文書』, 전게서, 「修信使迎船乗組水野小祿等ノ復命書」.

43) 『일동기유』, 전게서, 유관, 46쪽.

44) 설한단 5尺, 호피 5승, 표피 5승, 청맥피 20장, 백저포 20필, 백면주 20필, 백목면 20필, 采花席 20장, 鏡光紙 20권, 황밀 30근.

표하오니 잘 진헌해 주시겠습니까.⁴⁵⁾

라고 하였다. 아울러 선물 증정⁴⁶⁾이 이루어지고 이로 회견을 마쳤다.

수신사가 회견을 마치고 여관으로 돌아온 후 미야모토 코이치[宮本小一]와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가 찾아와 메이지 천황의 특지에 따라 수신사에게 배알의 분부가 내려다는 말을 전하였다. 이에 김기수가 국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예가 아니며 우리 주상의 명을 받지 못하였으니 독단으로 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사양하였으나 수신사의 성격상 거절도 예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받아들이고 다만, 조선 국왕을 근현하는 의례로 할 것을 조건을 내걸고 있다.⁴⁷⁾ 조건은 쉽게 받아들여졌고 모리야마는 배견(拜見)의 예가 끝난 다음에 바로 8성의 장관들을 만나보도록 권하였다. 그러나 수신사는 자신의 사명 밖의 일이라고 거절하고 있다.

이번 걸음은 우리 주상의 명령을 받들고 귀국 외무성에 나아가 중간에 귀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던 예를 회사하고 옛날 신의를 수호할 뿐이며, 다른 성의 장관들을 찾아보라는 명령은 듣지 못하였으니 다른 예를 독단으로 처리할 수는 감히 없는 것입니다.⁴⁸⁾

45) 『일동기유』 전게서, 문답, 114~115쪽.

46) 외무경에 대한 사예단(선물)으로는 호피2장, 표피2장, 雪漢緞 2필, 白綿紬 10필, 백저포 10필, 백목면 10필, 각색필 50자루, 진목 30觔이었으며, 외무대승에 대한 사예단(선물)으로는 표피 2장, 靑麥皮 10장, 설한단 2필, 백면주 10필, 생저포 10필, 백목면 10필, 각색필 50자루, 진목 30홀이었다. 세견선에 대한 답품보다 간략해졌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왜관에서 대차왜에 대한 贈給品은 인삼 13근12냥, 호피6장, 표피5장, 백저포 70필, 백면주 70필, 흑마포 48필, 백목면 132필, 황모필 260자루, 도화지 6권, 황국지 6권, 향화지 9권, 운암지 6권, 초주지 6권, 장지 32권, 백지 18권, 大厚油紙 53장, 화연 5면, 도화당우 13자루, 운암당우 13자루, 백당우 78자루에 달하였다.

47) 『일동기유』 전게서, 문답, 118쪽.

“숙배할 곳이 멀고 가까운 것과 입시할 예의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지시대로 하겠으나 예를 행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마땅히 우리 주상을 배견하는 예로써 귀국 황상을 배견하겠으니 이 뜻을 양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48) 『일동기유』, 전게서, 문답, 118~119쪽.

비록 거절하였으나 김기수는 장무관 현제순을 6월 3(5월 12)일 각 성의 장관과 참의 구로다 및 의관 이노우에를 방문하도록 하였다.

모리아마는 또한 편리한 기계를 모방하고 좋은 제도를 습속하도록 유람을 권유하였다.

다음날 장무관 현제순은 궁내성으로 가서 사예단(진헌물품)을 전달하고, 귀로에 박물관을 견학하였다.

6월1(5월10)일 수신사는 아카사카[赤坂]의 황거를 방문하여 천황을 알현하였다. 그 후 다키미[瀧見] 이궁(離宮)의 정원[御花苑]을 견학하였다. 이날 모리아마가 오찬을 대접하였다. 모리아마는 수신사에게 다시금 군제 개혁과 기계의 도입, 그리고 풍속의 채용을 통해 부국 강병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나 수신사는 그저 고맙지만 자신의 임무가 아니라고 사양하고 있다. 수신사 일행은 오후 3시경 여관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은 여관에서 다이카구라[太神樂] 연주⁴⁹⁾가 있었고 이때 훈도는 종중정(종의달의 개명)에 대해 오쿠 기세이에게 물었다. 기존의 외교 관계의 변모와 폐번치현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었다.⁵⁰⁾

6월3(5월12)일 태정대신 산조는 칙명에 따라 김기수, 이용숙⁵¹⁾, 현석운을 엔료칸[延遼館]⁵²⁾으로 초대하여 오찬 모임을 가졌다. 이때 참석한 자들은 사법경 오키 다카토[大木喬任], 공부경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육군경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의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그리고 외무경과 외무대보, 외무대소승 등이었다.⁵³⁾ 이때 사예단에 대한 천황의 하사품⁵⁴⁾이 전달되었다. 그들은 하마리큐[濱離宮]을 견학하고, 미야모토 대승과 함께 박물관을 관람하고 여관으로 돌아왔다. 당일 미야모토는 7일 수신사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현하였고 수신사는 기꺼이 초대에 응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외무경 데라시마는 표류민 이원춘을 영국영사관에서 받아 수신사에게 인도하

49) 사자무(獅子舞)의 기원. 이세[伊勢]의 皇大神宮에 참예(參詣)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당(승려)들이 사자(獅子)의 머리를 뒤집어 쓰고 각지에서 악마를 퇴치하고 가내안전(家内安全)을 기원하는 춤을 추는 것이다.

50) 이에 따라 후루사와와 오쿠는 은거하고 있었던 종의달에 연락을 넣어 6월 4일 종의달은 수신사를 방문하였고 수신사는 6월 10일 종의달의 별장으로 초대를 받게 된다.

51) 별건 한학 당상관으로 훈도 현석운과 함께 사역원에서 파견한 사람이다.

52) 서양식 석조 건축물. 일본 막부 말기에 해군 시설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으나, 메이지 2(1869)년에 하마리궁(浜離宮) 내의 영빈관으로 정비되어 많은 국민을 맞아들었다.

53) 『일동기유 권2』 전계서, 燕飲, 101~102쪽.

54) 하사품은 刀 1구, 칠기 6개, 사쓰마 花瓶 1쌍, 赤地綿 1권, 紅白絹 2필, 甲斐色絹 12필, 越後白縮布 12필, 越後生縮 12필, 奈良曝麻布 15필이었다.

였다. 수신사는 다음날 영국에 감사를 전해달라고 서한을 발송하였다.⁵⁵⁾

한편, 당일 수신사는 장무관 현제순을 보내어 각성 장관을 방문하게 하였고, 다음날에는 참의 구로다와 의관 이노우에를 방문하게 하였다. 이는 지난 5월30일, 일정을 의논하면서 미야모토와 모리야마가 각 국의 使行은 각 성의 장관들을 방문하는 것이 관례이니 수신사도 각 성의 장관들을 만나도록 권유한 바에 대한 타협점이었다.

6월4(5월13)일에는 다시 여관에서 手品師(마술사)의 공연이 있었다. 이날 종의달과 이노우에가 방문하였다. 이노우에는 수신사에게

러시아가 動兵할 징조가 있음은 내가 강화도에서 이미 말한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러시아에 가 보면 그들이 날마다 병기를 만들고 흑룡도에 군량을 많이 저장하는 것을 봅니다. 귀국도 마땅히 미리 대비하여 기계를 수선하고 병졸을 훈련시켜서 방어의 계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⁵⁶⁾

라고 말하자 수신사는 놀라운 대답을 한다. 즉

러시아를 막는 방도는 무기를 예리하게 하고 군복을 輕便하게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선왕의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고, 선왕의 옷이 아니면 입지 아니합니다. ...지금은 비록 죽고 망하는 한이 있어도 기이하고 과도한 기교를 만들어 남과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⁵⁷⁾

군비증강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한 것으로 10만 양병설에 반대하였던 조선 유학자의 정신을 연상시킨다.

이노우에는 자신의 건의는 조선이 후환을 없애기 위해 한 말이니 귀국 조정에 전달해 주기를 원하였고 수신사는 반드시 보고할 것이라고 약속함으로써 논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이날 이노우에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6.8)를 하였고 김기수는 응하였다.

6월5(5월14)일 모리야마가 와서 견학을 종용하였으나 수신사는 고사하였고 그 대신 훈도 현석운 이하 18인이 그를 따라서 우에노 공원, 아사쿠사 혼간지[本願寺], 하나야시

55) 이원춘은 평안도 의주사람으로 1875년 10월 표류 중 영국 선박에 구조되어 하코다테 영국 영사관에 머물다가 東京 영사관으로 이송되었고 수신사에게 인계되었다. 『일동기유 권4』 전게서, 文事, 220~221쪽.

56) 『일동기유』 전게서, 문답, 124쪽.

57) 『일동기유』 전게서, 문답, 125쪽.

키[花屋敷], 자의 전기기계소 등을 순람하였다.

6월6(5월15)일 오전 8시 30분, 수신사 일행 66인은 여관을 나와 히비야[日比谷] 육군 연병소로 가서 보병, 기병, 포병의 훈련을 견학하였다.⁵⁸⁾ 외무성에서 오찬을 하고 여관으로 돌아왔다.

6월7(5월16)일에는 미야모토의 초청을 받아들여 그의 저택(長華園)을 방문하여 저녁 9시에 돌아왔다.⁵⁹⁾

6월8일, 수신사 일행은 해군성으로 가서 대포공발, 화시, 수뢰포 등의 발사를 견학⁶⁰⁾하고 또 육군성 병학료를 방문하여 기타 시설들을 시찰하였다. 이날 수신사는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기교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한 개의 화륜으로써 천하의 능사를 다하게 되니... 공자의 말씀하신 바가 아니니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지난번에 나에게 유람을 저지한 사람이 옳았고, 나에게 유람을 권유한 이는 옳지 못하였는데 나는 그 옳은 말들을 좇지 못하였으니 나의 유람은 옳지 못한 것인가. ...나는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온다. 저들이 나에게 유람을 권유한 것이 도리에 위반되지 않았고 동시에 나의 유람도 이편에서 먼저 서둘지는 않았을 뿐이라고.⁶¹⁾

마치 진화론을 접한 크리스티고 신자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을 움츠리는 모습과도 같다. 변화에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조선 지식인으로서의 김기수가 새로운 문물을 목격하고 자신과 국가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날 수신사는 초대에 따라 의관 井上의 저택을 방문하였다⁶²⁾. 이노우에의 저택에는 미야모토도 함께 있었다. 이날 이노우에는 다시금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고 자신의 말을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세계지도를 주었다. 수신사는 미야모토에게 가로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야모토가 이 법(전기)을 조선에서 도입하도록

58) 『일동기유 권2』 전게서, 완상, 66쪽.

59) 이 때의 상황에 대해 김기수는 『일동기유』 전게서, 燕飮, 103~104쪽에 자세히 기록하였다. 특히 손님을 상석에 모시고 주인이 말석에 앉은 것과,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와서 먼저 절을 하였기 때문에 매우 당황하여 실례를 사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60) 『일동기유 권2』 전게서, 완상, 66~68쪽.

61) 『일동기유 권4』 전게서, 文事, 238~239쪽.

62) 『일동기유』 전게서, 燕飮, 105쪽. 별로 볼 만한 것이 없었다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권유하자 김기수는

우리나라에 기름이 넉넉하고 사람들도 또한 재주가 없으므로 이러한 술외의 술로써 사람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⁶³⁾

고 하며 이것을 사절하였다. 새로운 문물의 도입에 대한 김기수의 마음가짐을 잘 알 수 있다.

6월9일 오전에 사진 촬영이 있었다. 수신사 일행이 사진을 거부하여 설득하는 데 힘들었다고 오쿠는 기록하고 있다.⁶⁴⁾

6월10일(5월19)에는 종의달의 초대를 받고 후카가와[深川]의 별장에서⁶⁵⁾, 또한 6월 11일에는 모리야마의 초대를 받고 모리야마의 저택을 방문하였다.⁶⁶⁾

6월12일, 수신사 일행은 근위병 병영을 방문하여 포병본창을 시찰하고 오후에는 해군성 제작소를 시찰하였으며, 공부성 공학료에서 병기, 농기구, 각종 기계 및 전선을 관람⁶⁷⁾하였다. 공부경 이토 히로부미가 집으로 초대하여 만찬을 베풀었다.⁶⁸⁾ 오후 8시에 귀관하였다.

6월13(5월22)일에는 후루사와가 와서 귀국 날짜를 의논하였으며, 6월18(5월27)일로 결정하였다. 또한 외무대승 미야모토가 이사관으로 서울로 파견되어 통상장정을 논의하게 될 것임이 외무경 서신으로 통고되었고, 수신사는 그 서신을 인편으로 가지고 가서 전달할 것임을 외무경에게 서신으로 알리고 아울러 귀국 일자를 알렸다.

6월14(5월23)일, 수신사 일행은 문부성 문학료를 방문하여 문부대승 구키 류이치[九鬼隆一]의 간곡한 접대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구키가 조선의 학문에 대해 묻자 김기수는

63) 『일동기유』 전게서, 城郭, 155쪽.

64) 『大日本外交文書』, 전게서, 「明治九年五月朝鮮修信使來聘日表」, 205~209쪽.

65) 『일동기유』, 전게서, 燕飲, 104~105쪽. 송나라 휘종의 그림 족자가 있었는데 종의달이 어느 시대의 그림인지 문기에 자세히 설명해 주니 그때서야 보물인 줄 알았다고 하였다.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66) 『일동기유 권2』 전게서, 燕飲, 105쪽.

67) 『일동기유 권2』 전게서, 완상, 68~70쪽.

68) 『일동기유 권2』 전게서, 燕飲, 105~106쪽.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학문은 500년 동안 주자만을 숭상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난적이라는 이름으로 처단하였으며 국법이 매우 엄한 까닭으로 상하 귀천이 모두 주자만을 숭상합니다. 그리하여 군주는 군주의 도리대로 하고, ...다른 갈림길이 엇갈릴 수 없으며 다른 술수가 현혹시킬 수도 없었습니다.⁶⁹⁾

김기수의 확고한 말에 구키는 머리를 끄덕거렸을 뿐이었다. 김기수는 공자의 목상(木像)에 예를 표하고 문부성 강당에서 만찬을 하고 여자 사범학교와 개성학교를 시찰하였다.⁷⁰⁾

수신사 일행의 출발 일자가 알려지자, 6월15일에는 산조 태정대신이 다시 엔료칸에서 조찬회를 열었다. 수신사 김기수는 이를 상선연으로 이해하였다.⁷¹⁾ 즉 이별의 파티인 것이다. 배빈으로 야마가타 육군경, 이토 공부경, 가와무라 해군대보에 이어 개척장관 구로다, 가나가와 권현령 노무라 야스시, 개척소관관 야스다 사다노리 등도 참석하였다. 이들은 강화도 조약 당시 수행원으로 조선인 사이에 지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수신사 일행은 원로원을 방문하여 의사당을 시찰⁷²⁾하였고 다시 엔료칸에서 중식을 하였다. 이날 미야모토가 다시금 자신이 조선에 조약을 맺기 위해 출발할 것을 알리고 모든 접대 절차는 간략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6월16일 서서관 박영선이 통역과 함께 순천당으로 나가 종두법을 배우고 돌아왔다고 오쿠는 기록하고 있다.⁷³⁾ 이 역시 수신사의 허락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6월17(5월26)일 수신사는 외무성을 방문하여 예조의 서계에 대한 회답서계를 받고 도쿄에서의 체재 일정을 완수하였다. 외무경은 천황의 고별 예단을 손수 전해 주었다. 그

69) 『일동기유』 전게서, 문답, 118~119쪽.

70) 『일동기유 권2』 전게서, 완상, 70쪽.

71) 『일동기유 권2』 전게서, 燕飮, 103쪽.

72) 『일동기유 권2』 전게서, 완상, 70~71쪽.

73) 이선근은 박영선이 귀국시 久我克明의 『種痘龜鑑』을 가지고 들어와 지식영에게 전해주었고, 지식영이 훗날 부산의 제생의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종두를 시행했다고 하였다(1950, 『한국사』, 을유문화사, 444~445쪽). 그런데 수신사를 영접하러 온 군의관 시마다슈카이[島田修海]가 수신사 출발 전에 언젠가 이를 수술해 주고 종두를 시행하였다는 기록도 있다(『大日本外交文書』 전게서, 「朝鮮國滯在中 同國人民に種痘其他治療ヲ施シタル旨報告ノ件」), 203~205쪽.

리고는 수신사의 행동이 매우 정중하여 자기들로서는 깊이 감탄하고 있다고 말하고 일본의 성의를 이해하는지 물었다. 그리고는 귀로에 오사카에 있는 조폐료를 견학하도록 서신으로 권유하여 수신사는 그러겠다고 답하였다.

6월18일, 수신사일행은 정오에 기차에 탑승하여 요코하마로 가서 기선에 승선하였다.

3) 귀로

귀로는 오마게이지가 호송관으로 임무를 담당하였다. 기선은 오후 5시45분 출항하여 1시간 후 요코스가[横須賀] 해군기지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19일 일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수신사가 시찰을 고사하여 대신에 훈도를 비롯한 몇 명만이 상륙하여 해군기지를 순시하고 天城, 迅鯨 두 척의 함선 제작을 관람하였다.

그날 오후 5시 15분 黃龍丸은 요코스가 기지를 출항하였으나 풍랑으로 회항하여 근처에 다시 정박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출항하여 6월 22(윤5월1)일 밤 고베에 도착하였다.

6월23(윤5월2)일, 원래는 오사카의 造幣所를 견학할 예정이었으나 수신사는 풍랑에 긴장을 하였는지 건강을 잃어 견학을 사양하겠다고 외무경에게 편지를 보내고 견학을 취소하였다. 일행은 상륙하여 무역회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항하였다. 이 사이에 김기수는 배 갑판에 외국인 선원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그가 내리지 않았는데 배가 출항하자 호송관 오마[尾間]에게

이 배가 비록 일본의 배이지만 지금은 우리의 행차를 전송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배에 어찌 양인을 태울 수 있는가, 빨리 이 사람을 배에서 내려 보내고 머물지 못하게 하라.⁷⁴⁾

고 항의하였다. 결국 오마가 외무성의 지시를 받고 그 외국인 선원은 시모노세키에서 하선하였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을 뿐이고 서양인 배척은 지속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일화이다. 그리고 그러한 조선의 인식을 일본에 확인시킨 것이었다.

74) 『일동기유』 전계서, 정박, 37쪽.

6월25(윤5월4)일,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여 永福寺에서 휴식을 취하고 식사를 한 후 오후 4시 45분 출항하였으나 다시 강풍으로 다시 돌아와 정박하였다가 26일 다시 출발하였다. 기선은 강풍으로 인하여 바로 부산으로 향하지 못하고 대마도 이즈하라[嚴原]에 도착하여 서산사(西山寺-以酣菴)에서 만찬을 받고 숙박하였다. 다음날(27일)은 종의달의 제택을 방문하여 종의달의 부친인 宗義和⁷⁵⁾의 접대를 받고 종일 환담을 나누고 귀선하여 출항하였다. 대마도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씻을 수 있었던 일정이 되었을 것이다.

6월28(윤5월7)일 오전 수신사 일행을 태운 黃龍丸은 무사히 부산항에 입항하여 즉시 장계를 올렸다.⁷⁶⁾ 그는 20여일이 지난 7월21(6월1)일에 상경 복명하였다.⁷⁷⁾

복명 보고 내용 중,

이번의 사행은 저들의 강청(强請)에 따라 부득이 사행하게 되었다는 뜻을 보이기 위하여 이러한 여러 기술에 대해서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일본의 권유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모습을 연출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IV. 맺음말

이상 전통적 사대교린에서 근대적 외교 관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신사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사의 성격과 파견과정, 그리고 수신사의 일정에

75) 1863년 조슈[長州]와 동맹을 맺을 때 아들 종의달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은거하였다. 이때가 46세의 일이었으니 수신사를 만났을 때 59세가 된다.

76) 『고종실록』 윤5월18일조.

수신사(修信使) 김기수(金綺秀)가, '4월 29일 부산포(釜山浦)에서 배를 떠나 5월 7일 동경(東京)에 도착하였으며, 원로관(遠遼館)에 20여 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5월 27일에 동경(東京)을 떠나 윤5월 7일 진시(辰時)에 부산포에 돌아와 숙박하였으며, 일본 외무경(外務卿)의 회답 서계(書契) 및 공문 1통과 한문(漢文)으로 번역한 문서 1통을 해조(該曹)의 당상에게 올려 보냈고, 역관(譯官) 현석운(玄昔運)은 임소에 뒤쳐져서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77) 『승정원일기』 6월1일조.

따라 오고간 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신사는 전통적 사대교린의 틀 안에 자신을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수신사의 기대와는 달리 봉건 막번체제의 일본과 메이지 군현제의 일본에 파견하는 사절이 같은 접대를 받을 수 없었다. 우선 통신사 파견시 접대를 담당하였던 연도의 다이묘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어 수신사행은 오직 외무성의 영접하에 이루어졌다. 메이지 정부는 조선의 사절을 제 외국의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다음으로는 교통수단(화륜선)의 등장으로 연도에 부담을 끼치지 않고 바로 도쿄로 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수신사는 부산항을 출발하여 부산항에 도착할 때까지 총38일(도쿄 체재기간 20일을 포함)이라는 통신사행에 비하여 매우 짧은 일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이 보여주려고 하였던 근대문물도 수신사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은 부정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일본이 환대한 이면에는 많은 외교적 목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통신사행과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수신사 일행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수신사는 화륜선을 임대하고 숙박비를 지급하며 식비를 자체 부담하기로 기본합의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외무성의 손님으로 통신사와 같은 대접을 받았다.

2. 수신사의 파견은 강화도 조약을 구교를 회복한 조약으로 간주하고 강화도 조약을 완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예조는 그 이전의 외교 갈등을 대마주와 동래부의 전달이 잘못된 것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다. 강화도 조약을 개국조약으로 인식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3. 수신사는 당시 예조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위정척사파로서도 지지를 받았고 신현이나 박규수로부터도 추천을 받은 가장 적합한 인선이었다. 그는 전통적인 교린관계의 회복을 완수하기 위한 사절의 마음가짐으로 도일하였다.

4. 일본은 수신사를 극진히 맞이하였으나 수신사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임하였다. 몸가짐을 진중히 하여 화륜선에 대해 이것저것 묻지 않고 담담히 관찰하는 모습이나, 수행원들에게 목패를 나누어주지 않고 엄중하게 일행을 단속하는 모습, 천황 배견에서도 명령을 받지 못하였다고 사양하면서도 예를 지키기 위해 그렇다면 조선국왕을 근현하는 예로 하겠다고 주장하여 관찰하는 모습, 8성의 장관들을 만나보라는 권유를 거절하였지만 장무관(현제순)을 보내어 예를 지키는 모습, 군비증강을 요구하는 이노우에(井上)에게 이를 거

부하는 모습, 가로등을 도입하라는 미야모토[宮本]의 제안을 거절하는 모습, 구키[九鬼]에게 주자학에 대해 확고한 태도로 설명하는 모습, 귀로에 서양인 기사를 하선시키는 모습 등을 통하여 수신사가 무엇을 지키고자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5. 수신사의 귀국 후 복명 보고 역시 큰 충격을 주지 않았고 조선이 천천히 개국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2차 수신사가 돌아와 보고한 내용이 조야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나 1881년 조사시찰단이 파견되었을 때 조야의 격렬한 반대로 그들이 암행어사로 위장하여 동래에 집결할 정도였던 것을 함께 생각하여야 한다.

6. 수신사가 통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고⁷⁸⁾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아직 서양 여러 나라와 통상하는 것이 시기상조이며, 장구한 술책이 될지 알 수 없음을 주장한 것이었다. 당시 대표적 조선 지식인으로서의 수신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견문하였고 어떠한 보고서를 남겼는가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생각해 보면, 교과서에 강화도 조약을 개국조약으로 기술한 것도, 수신사를 개항에 따른 견문 사절로 이해하거나 최초의 근대적 외교 사절로 이해하려는 것도 총독 부시기부터였으니 일본의 입장과 희망이 반영된 인식이다.

그러나 기유약조 체제가 붕괴된 다음 한일 간의 우호를 다시 수립하기 위해 수신사가 도일하였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수신사의 태도는 최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신사는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에 대해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그들에게 말려들지 않고 존경을 얻어 내는 데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서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⁷⁹⁾이다.

이제 강화도 조약에서 수신사까지는 조선의 외교가 실패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하지

78) 『일동기유 권4』 전게서, 환조, <행중견문별단> 272~273쪽.

“지금 일본이 세계 각국에 통상하는 것이 그 수가 매우 많으나 가서 통상하는 나라는 일본 하나이고 와서 통상하는 나라는 여러 나라인데 … 생산하는 자는 하나 뿐이고 소모하는 자가 여럿이 되면 물가가 등귀할 것입니다. 이에 날마다 화폐를 만들어 이를 당해내니 돈은 천하게 되고 물건은 귀하게 되어 이는 반드시 실패하는 도리입니다. 하물며 교모하지 않은 기술이 없고 정교하지 않은 기예가 없어 대자연의 이치를 다 이용하여 다시 여지가 없게 되었으니 겉모양을 본다면 이보다 더 부강할 수는 없으나 가만히 그 형세를 보면 장구한 술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79) 현명철, 「조선총독부 시기의 역사 교과서」(『한일수교 50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재검토2』 한일관계사학회, 2016년), 267~298쪽 참고.

만 이는 많은 문제점들을 뒤로 미룬 것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외교란 중요한 것, 합의가 가능한 것들만 합의하고 합의가 어려운 문제는 싸우지 않고 뒤로 넘기는 것이다. 강화도 조약에서 중요시 된 것은 대등한 외교 관계와 우호에 대한 약속이었고, 수신사는 그에 대한 확인이었다. 앞으로 미야모토가 도한하여 구체적으로 부속조약을 맺는 과정에 어떤 갈등이 있었으며 어떠한 합의가 성립되는지 외교 경제사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전통적 사대교린의 외교가 근대적인 외교로 변화하는 과도기의 모습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화도 조약과 제1차 수신사」 토론문

양흥숙 (부산대학교)

발표자께서 머리말에 쓰신 것처럼 이 글의 목적은 ‘전통적 사대교린에서 근대적 외교관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신사가 갖는 의미를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강화도조약과 수신사에 대한 의미가 개국조약으로, 개항견문사절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발표자께서는 강화도조약과 수신사의 위치는 전통적→근대적 외교관계로 가는 과도기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화도조약에 대한 연구는 운요호사건, 일본 외무성의 계획 등이 강조되면서 강화도조약에 대한 침탈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전통적 관계가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한번 결절이 생기는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이런 합의 하에 260여 년 간 유지되었던 도쿠가와 막부와 좋은 관계를 메이지 정부에서도 유지하자는 합의가 성립되었던 것이다.’라고 한 점은 어떤 의미인지? 조-일 양국 모두 전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전통을 잇는 것이고, 어떤 것은 새로운 것인지? 또한 새로운 것은 근대적인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진짜 좋은(?) 합의라고 할 수 있을까? 수신사가 갔을 때 끊임없이 일본의 문물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은 양국의 목적이 달랐던 것은 아닌지요? 조약이라는 합의, 그 이면의 정치적, 외교적 문제를 부연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수신사의 명칭과 명분

7쪽 ‘사절의 명칭을 수신사라 칭하고 통신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국서를 가지고 가지 않고, 의례적인 면보다 실무적인 면을 중시한다는 양국 간의 합의에 합당하는 명칭을

찾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하셨는데 김기수가 『일동기유』에서 적은 것은 ‘수신이란 것은 舊好를 講修하고 신의를 敦申하고 辭命을 서로 통하고 위신으로써 일을 이루어 과격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며 자기의 태도 가지기를 장중 근신하여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 거의 그 적당할 것’이라고 해서 과거의 외교관계를 유지 또한 외교관으로서의 태도 보전 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례가 간소화 되는 것과 실무적인 것의 관계는? 일본에서 수신사 명칭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습니까?

3. 10쪽

4월 26일 미야모토 코이치(宮本小一)가 참의 구로다와 의관 이노우에에게 보낸 계획안과 5월14일 공관장 대리 야마노조가 훈도 현석운에게 보낸 (수신사) 영접 방침이 대동소이하다고 함. 영접 방침 중 하나에 ‘배가 馬關, 兵庫에 도착하였을 때 상륙하여 산보, 목욕 이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일본에서도 수신사가 시모노세키에 도착하면 휴식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임. 발표자께서 ‘그렇다면, 당시 영향력이 있었던 야마구치현이 외무성에 압력을 넣어 부탁하고 영접관이 어쩔 수 없이 처리한 다음 수신사의 요청이라고 핑계를 댄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라고 하심. 숙박 여부에 대해 압력이 작용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4. 문화사절?

또한 일동기유에서 ‘이 때 일본인이 많이 몰려들어 서화(書畫)를 요구하여 팔뚝이 탈락할 정도였다’라고 쓴 것에 대해 ‘통신사의 예와 같은 서화의 요구에 수신사는 고무되었고 학문적 자존감을 회복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칫 수신사가 여전히 ‘우물 안 개구리’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도조약을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는 하지만 양국의 위정자 등은 이러한 새로움을 인식하지만 조-일간의 외교에 참여하지 않는 일본인은 여전히 전근대 통신사 왕래와 동일하게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수신사 구성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신사가 일본에 체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같은 속도로 바뀔 수가 없고 여전히 통신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신사와 관련된 서술은 ‘새로운 외교관계 정립’이라는, 전통적인 것과 다른 시간대가 시차(時差)를 발생시키고 계층 간의 시차(視差)를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5. 수신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

계획에 없던 시모노세키에서의 숙박, 고베현청 방문에 대해 수신사는 어떻게 보고하고 수신사가 반대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이것을 조선 조정에 보고했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조선 조정의 대응은 어떠했습니까? 천황을 보는 것 등 일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에 대해 일본의 의도, 조선조정의 대응, 수신사 구성원 내부의 대응이 모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대’, 개항 등에 대해 희망을 가진 조선인들의 김기수, 수신사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